

310.123  
8146

번역자료

# 일본 현민경제계산표준방식 추계방법

(2002년 판)



2004. 3.

844003

통계청 경제통계국 통계분석과

[참고] 일본식 표기 => 우리나라 표기

| 일본식 표기          | 우리나라 표기       | 일본식 표기           | 우리나라 표기         |
|-----------------|---------------|------------------|-----------------|
| 가임              | 집세            | 소득 부 등에 부여되는 경상세 |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건축업             | 건설업           | 소득분배감정           | 소득분배계정          |
| 경리              | 회계(처리)        | 損金經理             | 비용처리            |
| 관계자료            | 관련자료          | 수순               | 순서              |
| 公務              | 공공 또는 공무원     |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관세    | 수입세·관세          |
| 공사高             | 공사액           | 수취로 취급한다.        | 수취로 처리한다.       |
| 公的기업            | 공공기업          | 引當金              | 충당금             |
| 국가의 비율을 준용한다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1四半期             | 1분기             |
| 國出先機關           | 정부산하기관        | 的確한 파악           | 정확한 파악          |
| 권리금             | 보증금           | 정부관장             | 정부관할            |
| 그 외의 경상이전       | 기타경상이전        | 繰越               | 이월              |
| 그 외 제조업         | 기타 제조업        | 주거자              | 거주자             |
| 期首잔고            | 기초잔고          | 持家               | 자가주택            |
| 貸자동차업           | 자동차임대업        | 총합               | 총합              |
| 단신세대            | 독신세대          | 取引               | 거래              |
| 매상高             | 매출액           | 출장기관             | 산하기관            |
| 매상원가            | 매출원가          | 통계상不突合           | 통계상불일치          |
| 벤치마크로 하고        | 기준으로 하고       | 품목별로 취한다         | 품목별로 집계한다.      |
| 보간보외            | 보정보완          | 表彰된다.            | 제표된다.           |
| 분할합             | 구성비           | 할합               | 비율              |
| 仕掛工事            | 건설중인(진행중인) 공사 | 현물사회이전           | 사회적현물이전         |
| 仕掛品             | 재공품           | 현물이외에 따른 사회급부    | 현물이외에 의한 사회급부   |
| 仕送金             | 송금            | 현실사회부담금          | 실제사회부담금         |
| 산업격부            | 산업분류          | 互助               | 상조              |
| 산업행동            | 산업활동          | 還付金              | 환급금             |
| 상근役員            | 상근임원          |                  |                 |
| 上積금부            | 부가금부          |                  |                 |
| 상품순환법           | 재화흐름법         |                  |                 |
| 생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생산 및 수입세      |                  |                 |
| 세대인원            | 세대원           |                  |                 |



## 이용자를 위하여

이 책자는 일본의 지역계정인 「현민경제계산」에 대한 추계방식의 표준화를 위하여, 중앙의 주관부서(국민경제계산부 지역계정과)에 의하여 작성된 추계매뉴얼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번역하였음

- 원문 참조시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번역문의 쪽수, 내용 및 번호체계 등을 원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
- 일본식 표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우리나라 표기방식으로 바꾸었음(다음쪽 참조)  
다만,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될 경우에 한하여 일본고유 용어를 원문 그대로 표기함

<원문 그대로 표기한 일본식 용어>

고용자보수(피용자보수), 고정자본감모(고정자본소모), 공과제부담(제세공과), 구입자가격(구매자가격), 勞災보험(산재보험), 당해계수(당해수치), 사업소(사업장), 신장률(증가율), 안분(배분),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恩給(연금), 日雇(일용), 조회(문의), 종업자(종사자), 지불(지급), 현민소득(지역민소득) 등

-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漢字로 표기하거나, 注記(편집자주)를 하였으며, 계정항목명, 통계조사명, 간행물명 등 용어는 모두 붙여쓰기 하였음
- 일본의 연호표기는 모두 西曆으로 전환 표기하였으며, 일본의 현민계정은 연도(FY) 기준으로 작성됨에 유의
  - 昭和 元年 : 1925년, 平成 元年 : 1989년
  - 年度(FY) : 當年 4.1 ~ 翌年 3.31, 曆年(CY) : 1.1 ~ 12.31

## 목 차

### 제1부 생산계열

|                       |      |
|-----------------------|------|
| 서장 생산계열의 개요           | 1-1  |
| 제1장 생산자가격표시의 산출액·중간투입 | 1-13 |
| 제1절 산업                | 1-13 |
| 1. 농림수산업              | 1-16 |
| 2. 광업                 | 1-20 |
| 3. 제조업                | 1-22 |
| 4. 건설업                | 1-30 |
| 5. 전기가스·수도업           | 1-31 |
| 6. 도매·소매업             | 1-35 |
| 7. 금융·보험업             | 1-41 |
| 8. 부동산업               | 1-72 |
| 9. 운수·통신업             | 1-74 |
| 10. 서비스업              | 1-85 |
| (1) 교육                |      |
| (2) 연구                |      |
| (3) 의료·보건위생, 간호       |      |
| (4) 기타 공공서비스          |      |
| (5) 광고업               |      |
| (6) 업무용품·품임대업         |      |
| (7) 자동차·기계 수리업        |      |
| (8) 기타 對사업소서비스업       |      |
| (9) 오락업               |      |
| (10) 방송업              |      |
| (11) 음식업              |      |
| (12) 여관               |      |
| (13) 세탁·이용·욕탕업        |      |
| (14)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       |
|----------------------------|-------|
| (15) 분류불명산업                |       |
| 제2절 정부서비스생산자               | 1-97  |
| 제3절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 1-101 |
| 제4절 수입세·관세                 | 1-102 |
| 제5절 (공제)총자본형성에 관련있는 소비세    | 1-102 |
| 제6절 (공제)귀속이자               | 1-102 |
| 제2장 생산자가격표시의 현내총생산         | 1-103 |
| 제3장 고정자본감모                 | 1-104 |
| 1. 산업                      | 1-104 |
| (1) 농림수산업                  | 1-104 |
| (2) 광업                     | 1-105 |
| (3) 제조업                    | 1-105 |
| (4) 건설업                    | 1-105 |
| (5) 전기·가스·수도업              | 1-105 |
| (6) 도매·소매업                 | 1-105 |
| (7) 금융·보험업                 | 1-105 |
| (8) 부동산업                   | 1-105 |
| (9) 운수·통신업                 | 1-106 |
| (10) 서비스업                  | 1-106 |
| 2. 정부서비스생산자                | 1-107 |
| 3.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 1-107 |
| 제4장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순생산         | 1-108 |
| 제5장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 1-109 |
| 제6장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          | 1-127 |
| 제7장 고용자보수                  | 1-127 |
| 제8장 영업잉여·혼합소득              | 1-127 |
| 제9장 재고품 평가조정액의 추계방법        | 1-128 |
| 참 고 경제활동별분류와 일본표준산업분류의 대응표 | 1-143 |
| 補 論 사업소와 본사의 관계            | 1-148 |

## 제2부 분배계열

|                     |      |
|---------------------|------|
| 서장 분배계열의 개요         | 2-1  |
| 제1장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 2-14 |
| 제1절 고용자보수           | 2-14 |
| 1. 임금·봉급            | 2-15 |
| (1) 현금급여            |      |
| (2) 현물급여            |      |
| (3) 임원급여수당          |      |
| (4) 의원세비 등          |      |
| (5) 급여주택차액집세        |      |
| 2.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 2-21 |
| 3.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     | 2-22 |
| (1) 퇴직일시금           |      |
| (2) 공무재해보상비         |      |
| (3) 기타              |      |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       | 2-24 |
| 1. 직접추계영업잉여         | 2-27 |
| (1) 금융보험업(민간, 공공)   |      |
| (2) 공공기업(금융기관 제외)   |      |
| (3) 주택임대업(자기소유)     |      |
| 2. 기타 추계영업잉여 및 혼합소득 | 2-28 |
| (1) 민간 비 금융 법인기업    |      |
| (2) 개인기업            |      |
| 제3절 생산 및 수입세(순)     | 2-33 |
| 제4절 재산소득            | 2-34 |
| 1. 이자               | 2-35 |
| (1) 지불이자            |      |
| (2) 수취이자            |      |
| 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2-53 |
| (1)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지불   |      |

|  |       |
|--|-------|
| (2)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수취                            |       |
| 3. 보험계약자에 귀속한 재산소득                           | 2-58  |
| (1) 보험계약자에 귀속한 재산소득의 지불                      |       |
| (2) 보험계약자에 귀속한 재산소득의 수취                      |       |
| 4. 임대료                                       | 2-66  |
| (1) 토지의 순임대료                                 |       |
| (2) 저작권·특허권 등 사용료                            |       |
| 5. 기 타                                       | 2-71  |
| <br>   |       |
| 제5절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이외의 이전)                       | 2-73  |
| 1.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2-73  |
| 2. 사회부담금 및 3. 사회급부                           | 2-78  |
| 4. 귀속사회부담금 및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                     | 2-102 |
| 5. 사회부조급부                                    | 2-103 |
| 6. 기타경상이전                                    | 2-104 |
| (1) 비생명 보험금 및 비생명 보험 순보험료                    | 2-104 |
| (2)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경상이전                          | 2-109 |
| 제6절 최종소비지출                                   | 2-119 |
| 제7절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                           | 2-119 |
| 제8절 저축                                       | 2-119 |
| 제2장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의 계상내역(표)            | 2-120 |
| 참고1 소득지출계정과 현외계정의 관계                         | 2-122 |
| 참고2 국가·일반회계 세입세출과목 구분표 및<br>지방보통회계 세입세출 거래분류 | 2-124 |

|                                  |      |
|----------------------------------|------|
| 제3부 지출계열(명목, 실질)                 |      |
| 서장 지출계열의 개요 -----                | 3-1  |
| 제1장 縣內총지출 -----                  | 3-8  |
| 제1절 민간최종소비지출 -----               | 3-8  |
| 1. 가계최종소비지출 -----                | 3-8  |
| (1) 추계의 개요                       |      |
| (2) 가계조사법에 의한 추계                 |      |
| (3) 직접추계법에 의한 추계                 |      |
| 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       | 3-17 |
| 참고1. 가계최종소비지출의 목적별분류 -----       | 3-18 |
| 補論1. 인원조정계수에 대해서(2인이상의 세대) ----- | 3-23 |
| 補論2. 단가(1㎡당 집세) 추계방법 -----       | 3-24 |
| 補論3. 보증금비율의 추계 -----             | 3-26 |
| 제2절 정부최종소비지출 -----               | 3-29 |
| 제3절 縣內 총자본형성 -----               | 3-31 |
| [투자액(총합표시)의 추계]                  |      |
| 1. 총고정자본형성 -----                 | 3-31 |
| (1) 주택투자                         |      |
| (2) 非주택투자                        |      |
| 2. 재고품 증가 -----                  | 3-36 |
| (1) 민간                           |      |
| (2) 공공(공공기업·일반정부)                |      |
| (3) 재고품 평가조정                     |      |
| [세액공제액의 추계]                      |      |
| 1. 총고정자본형성 -----                 | 3-37 |
| (1) 주택                           |      |
| (2) 기업설비                         |      |
| (3) 일반정부                         |      |
| 2. 재고품 증가 -----                  | 3-39 |

|                                  |      |
|----------------------------------|------|
| 제4절 재화·서비스의 이출입 -----            | 3-40 |
| 1. 추계의 기본 -----                  | 3-40 |
| 2. 추계방법 -----                    | 3-40 |
| (1) 재화·서비스의 이출                   |      |
| (2) 재화·서비스의 이입                   |      |
| 補論1 상품유통조사와 산업연관표의 개념상의 차이 ----- | 3-42 |
| 제5절 통계상의 불일치 -----               | 3-44 |
| 제6절 현외로부터의 소득(순) -----           | 3-44 |
| 제2장 실질 縣內총지출 -----               | 3-45 |
| 제1절 민간최종소비지출 -----               | 3-45 |
| 1. 가계최종소비지출 -----                | 3-45 |
| 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       | 3-45 |
| 제2절 정부최종소비지출 -----               | 3-45 |
| 제3절 縣內 총자본형성 -----               | 3-45 |
| 1. 총고정자본형성 -----                 | 3-45 |
| 2. 재고품 증가 -----                  | 3-45 |
| 제4절 재화·서비스의 이출입 -----            | 3-46 |
| 1. 이 출                           |      |
| 2. 이 입                           |      |
| 제5절 통계상 불일치 -----                | 3-46 |
| 제6절 현외로부터의 소득(순) -----           | 3-46 |

# 제 1 부 생 산 계 열



## 서장 생산계열의 개요

주요계열표-1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은 부표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 및 요소소득」 중 縣內총생산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계열에 있어서는 부표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 및 요소소득」의 작성이 추계의 기본이 된다.

아래에서는 부표를 중심으로 생산계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다.

### 1. 縣內총생산의 추계절차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은 각 경제활동별로 생산자가격표시의 산출액을 추계하고,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원재료, 연료 등의 물적경비 및 서비스경비 등)을 공제하는 방법, 이른바 「부가가치법」에 따라 추계한다. 이렇게 구한 생산자가격표시의 경제활동별 현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감모를 공제해서 생산자가격표시의 현내순생산을 구하고, 여기에서(생산 및 수입세 마이너스 보조금)을 공제해서 현내요소소득(= 요소비용표시의 현내순생산)을 추계한다. 또한 이 현내요소소득에서 별도로 추계한 현내기준 고용자보수를 공제하여 영업잉여·혼합소득을 구한다.

상기의 추계절차를 식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현내총생산 = 산출액 - 중간투입액  
(생산자가격표시)
- ② 현내순생산 = 현내총생산 - 고정자본감모  
(생산자가격표시)
- ③ 현내요소소득 = 현내순생산 -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④ 영업잉여·혼합소득 = 현내요소소득 - 고용자보수(현내기준)

위의 추계는 국민경제계산에 있어서의 경제활동별 분류에 준거하고 산업, 정부서비스 생산자 및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제활동주체별로 행해진다.

경제활동별분류와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와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일람표를 생산계열 권말에 게재했다.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코드는 1993년 10월에 개정된 것이다.

## 2. 제표형식

주요계열표-1 및 부표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주요계열표-1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

| 항 목                 |
|---------------------|
| 1. 산업               |
| (1) 농림수산업           |
| ① 농업                |
| ② 임업                |
| ③ 수산업               |
| (2) 광업              |
| (3) 제조업             |
| ① 식료품               |
| ② 섬유                |
| ③ 펄프·종이             |
| ④ 화학                |
| ⑤ 석유·석탄제품           |
| ⑥ 요업·토석제품           |
| ⑦ 1차금속              |
| ⑧ 금속제품              |
| ⑨ 일반기계              |
| ⑩ 전기기계              |
| ⑪ 수송용기계             |
| ⑫ 정밀기계              |
| ⑬ 기타 제조업            |
| (4) 건설업             |
| (5) 전기가스·수도업        |
| (6) 도매·소매업          |
| (7) 금융·보험업          |
| (8) 부동산업            |
| (9) 운수·통신업          |
| (10) 서비스업           |
| 2. 정부서비스생산자         |
| (1) 전기가스·수도업        |
| (2) 서비스업            |
| (3) 공무              |
| 3.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
| (1) 서비스업            |
| 4. 소계 (1+2+3)       |
| 5. 수입세·관세           |
| (공제) 총자본형성에 관련된 소비세 |
| (공제) 귀속이자           |
| 6. 현내총생산 (4+5)      |

付表：경제활동별 현내총생산 및 요소소득

| 경제활동의 종류                         | 생산자가격표시의 산출액 | 중간투입 | 생산자가격표시의 현내총생산 |
|----------------------------------|--------------|------|----------------|
|                                  | ①            | ②    | ③=①-②          |
| 1. 산업                            |              |      |                |
| (1) 농림수산업                        |              |      |                |
| ① 농업                             |              |      |                |
| ② 임업                             |              |      |                |
| ③ 수산업                            |              |      |                |
| (2) 광업                           |              |      |                |
| (3) 제조업                          |              |      |                |
| (4) 건설업                          |              |      |                |
| (5) 전기·가스·수도업                    |              |      |                |
| (6) 도매·소매업                       |              |      |                |
| (7) 금융·보험업                       |              |      |                |
| (8) 부동산업                         |              |      |                |
| (9) 운수·통신업                       |              |      |                |
| (10) 서비스업                        |              |      |                |
| 2. 정부서비스생산자                      |              |      |                |
| (1) 전기·가스·수도업                    |              |      |                |
| (2) 서비스업                         |              |      |                |
| (3) 공무                           |              |      |                |
| 3.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              |      |                |
| (1) 서비스업                         |              |      |                |
| 소 계                              |              |      |                |
| 수입세·관세<br>총자본형성에 관련된 소비세<br>거숙이자 |              |      |                |
| 합 계                              |              |      |                |

| 고정자본감모 |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순생산 | 생산 및 수입세<br>(공제)보조금 | 현내요소소득 | 고용자보수 | 영업잉여·<br>혼합소득 |
|--------|----------------|---------------------|--------|-------|---------------|
| ④      | ⑤=③-④          | ⑥                   | ⑦=⑤-⑥  | ⑧     | ⑨=⑦-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표형식에서의 구성항목 개요

(1) 산출액은 생산자가격으로 평가된다. 산업연관표와 같이 최종생산물만이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중간생산물도 원칙적으로 산출액에 포함된다. 생산자가격이라는 것은, 상품이 생산자의 사업소에서 판매되는 시장가격을 말한다.

(2) 중간투입액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내구재 (원재료 및 연료 등)와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투입되는 재화는 구입자가격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연관표에서는 숙박·일당, 교제비 등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는 제외)의 가계외소비지출은 부가가치에 포함되지만, 현민경제계산에 있어서는 국민경제계산의 처리에 준하여 중간투입에 포함한다.

구입자가격은, 소비하는 사업소가 구매하는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3) 縣內총생산은 일정기간內에 현내경제부문의 생산활동에 의해서 새롭게 부가되는 가치의 평가액을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라는 경제활동별로 나타낸 것이고,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것이 해당된다.

縣內총생산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縣內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라 해도, 타현의 현민에 의하여 현외로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은 포함되지만, 현외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이 타현內의 생산에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민총생산은 속인주의를 받아들여서, 縣內총생산에 縣間의 소득수불의 차액으로 현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순)을 가산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

(4) 고정자본감모는 건축물, 설비 및 기계 등 재생산 가능한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통상의 마손 및 손상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화재, 풍수해 등의 우발사고에 의한 가치손실에 해당하는 자본우발손으로 구성되며,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총생산의 일부를 구성한다.

(5) 생산 및 수입세는 ①재화서비스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에 관련된 생산자에

- 부과된 조세 및 세외부담금이고 ②세법상 비용산입이 인정되는 소득은 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그 부담금이 최종구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소비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외수입(일본중앙경마회 납부금 등)도 생산 및 수입세에 포함된다. 생산 및 수입세의 경제활동별의 배분은 원칙으로서 직접 세금을 지불한 경제활동으로 계상한다. 이 생산 및 수입세는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일반정부]의 생산 및 수입세 수취와 일치한다.
- (6) 보조금은 ①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을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해 일반정부로부터 산업에 일방적으로 급부되고 ②수급자측에서는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상적교부금이다. 공공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정부로부터의 편입금도 보조금에 포함된다. 이 보조금은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일반정부]의 보조금지불과 일치한다.
- (7) 고용자보수의 추계는 『취업구조기본조사』와 『매월근로통계조사』 등을 이용하고, 산업별 고용자수에 1인당 임금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며, 현내개념의 고용자보수를 계상한다.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가계(개인기업 포함)]에서 현내개념의 고용자보수와는 현외에서의 고용자보수(순)만 다르다.
- (8) 수입세·관세는 생산 및 수입세의 일종이며 관세, 수입품 상품세 및 수입품에 관련된 소비세금이며, 수입한 사업소의 所在縣에서 계상된다. 경제활동별로는 배분하지 않고, 일괄처리 한다.
- (9) 총자본형성에 관련있는 소비세는 설비투자와 재고투자에 관련된 소비세 공제액이 된다. 수입세·관세에서와 같이 경제활동별로 배분하지 않고 일괄처리 한다.
- (10) 귀속이자는, 수취이자 및 배당과 지불이자의 차액이지만, 이 차액은 금융업의 귀속서비스라 간주하며, 수수료수입과 함께 금융업의 산출액을 구성한다. 또, 이 귀속서비스는 각 산업에서는 코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간투입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활동별로 배분한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더미산업을 만들어 일괄처리한다. 이 더미산업을

통하여 귀속서비스관련 귀속이자를 중간투입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동액에 해당하는 負(-)의 영업잉여를 계상한다. 이처럼 의제산업을 만들어 줌으로써 금융업의 생산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4. 추계상의 유의점

### (1) 생산의 범위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제조업 등의 물적생산 뿐 아니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공무 등의 서비스 생산도 포함된다. 또한, 농가의 자가소비로 충당된 생산물과 소유자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의 서비스처럼 화폐와 교환되지 않는 생산물과 편익도 평가되어 포함된다.

### (2) 추계의 단위

생산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계단위는 원칙으로서 사업소가 된다. 사업소라는 것은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물리적 장소」를 나타낸다. 공장, 제련소, 광산, 상점, 농가, 병원, 사무소 등이 해당하고,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경제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는 일정한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일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인택시와 농가어가 등의 경우는 편의상 그 업주의 주거를 사업소로 본다.

1사업소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과거 1년간 총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1사업소에서 일관작업등을 행하고, 생산과정이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본사, 공장, 영업소 및 시험장 등의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소·기업 통계의 산업분류에 따르고 본사, 공장은 「제조업」에, 영업소는 「도매업」에, 시험장은 「연구기관 등」에 각각 분류한다.

### (3) 본사와 사업소의 관계

사업소의 산출액은, 본사의 산출액(일반관리비, 물적諸경비, 인건비 등 소위 본사의 경비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비들은, 통상 공장 등의 사업소에서는 지출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생산물이 시장에 공급되는 사이에 당연히 필요한 경비로 생각되고, 코스트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업소 소재현과 본사 소재현이 동일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경우는 사업소가 해당경비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의 중간투입(사업소 본사의 서비스 구매)으로 해서 계상한다. 이와같이 본사 서비스에 대한 縣外로부터의 이입도 고려한다. 이같은 처리는 본사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든 생산활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그 활동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첨부 참조.

## 5. 산출액의 안분지표

생산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추계단위를 사업소로 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縣에 있어서도 물건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유료도로는 반드시 각 현에 사업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용은 현에 있어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 이용으로부터 영업수입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유료도로 자체를 사업소로 간주하고, 거기에 산출액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안분지표로서는 교통량과 도로연장킬로를 이용한다.

산출액의 추계에 있어서는 현별의 영업수입 등의 금액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별 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値와 국민경제계산 추계値 등을 분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할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 현의 산업활동의 실태가 가능한 한 반영되도록 안분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 6. 산출액의 연도전환

현민경제계산은 종래의 추계방법 등을 우선 이용한 후, 연도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경제계산의 산출액은 역년값 뿐이기 때문에 이를 분할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도전환의 필요가 발생한다. 이 연도전환에 이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산업별 추계방법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해당업종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연도전환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 ① 통계지표를 이용한 연도전환

$$\text{연도전환비율} = \text{연도계수} / \text{曆年계수}$$

전환지표 : 임금지수

물가지수

서비스가격지수

기 타

② 사분의 일 이동법(아래의 식)로부터 연도전환

$$T_0 \text{기 연도금액} = (T_0 \text{기 역년금액} \times 3/4) + (T_1 \text{기 역년금액} \times 1/4)$$

## 7. 산업연관표와의 관계

국민경제계산에 있어서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산출액으로부터 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 추계법로부터 구할 수 있다. 산출액 및 투입액 추계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10府省廳이 참가해서 작성하는 산업연관표에서 산출액표로서 V표가, 투입액표로서 U표가 작성되고 있다. 산출액은 V표의 行합으로 구해지고, 중간투입액은 U표의 列합으로 구해진다. 이것으로부터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물적접근에 의한 추계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인적접근추계에 의한 추계상의 [누출]등을 막고 「생산」과 「지출」이 정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된 동시에 「V표」, 「U표」의 작성으로부터 산출, 투입구조의 經年변화(연도를 경과하여 계측수치 등이 변화하는 것 : 편집자주)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V표 및 U표를 정비하는 것으로부터 더블(이중) 디플레이션(실질총생산=실질산출액 마이너스 실질투입액)에 의한 총생산의 실질화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V표, U표의 해설은 아래와 같다.

V표 (경제활동별 재화서비스 산출표)는 행에 산업을, 열에 상품을 표시하고, 각 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를 기록한다. 이 행렬의 대각선상에 계상된 계수는 각 산업이 생산하는 주산물이고, 대각선에서 벗어나 위치에 있는 계수는 그 산업이 생산하는 부차생산물 또는 부산물인 것이다. 주산물과 부차생산물 또는 부산물의 관련은 산업의 산출구조를 나타낸다. V표의 行합은 산업별 산출액을 나타내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요소소득」 표의 경제활동별 산출액과 일치한다. V표의 列합은 재화흐름법에서 추계된 상품별 산출액에 일치(다만, 운임·마진 분은 제외)하고, 생산계열과 지출계열의 정합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V표의 작성은 산업연관표의 부대표로서 작성된 IO-V표를 베이스로, 여기에 SNA 개념을 받아들인 형식으로 재편집하고 이 표를 재화흐름법로부터

상품별 산출액을 모두 컨트롤하여 정확성을 유지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현민경제계산은 V표의 각 행이 있는 산업의 산출구조에 해당하는 것에 주목하고, 사업소 베이스로부터 산출을 직접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계의 접근이 약간 다르다.

U표 (경제활동별 재화서비스 투입표)는 行에 상품을, 列에 산업을 표시하고, 각 산업이 그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상품의 중간투입을 기록한다. 산업의 U표의 列합은 산업별의 중간투입액을 나타내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요소소득」 표의 경제활동별 중간투입액과 일치한다. U표는 생산에 필요한 비용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입원재료의 고저에 따른 상대가격의 추이와 이익최대화를 위하여 계측된 산업활동의 추이를 볼 수 있다.

## 8. 기준개정

국민경제계산에 있어서, 매년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계가 행해지고 있지만, 해당 통계조사가 3년 또는 5년 마다 한번밖에 실시되지 않거나, 결과가 공표되기까지 시일을 필요로하거나 해서, 매년추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통계자료의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기다려서 매년 추계와는 별도로 5년마다 명목치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실질금액은 특정연도의 가격으로 평가되지만, 가능한 한 최근의 경제실태를 반영한 가격체계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도를 고치는 작업도 5년마다 행해지고 있다.

현재, 현민경제계산은 매년 장기간의 자료를 소급 개정한 예도 있지만, 매년 개정하지 않고, 5년마다 縣산업연관표와의 접속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국민경제계산의 기본개정에 준하는 작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제1장 생산자가격표시의 산출액·중간투입

국민경제계산의 SNA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對가계민간 비영리서비스생산자 등 경제활동별로 추계한다.

### 제1절 산업

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생산물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판매하는 생산자(시장생산자)이다. 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소에 의해 구성된다. 사업소는 민간기업의 사업소가 추가 되지만 민간기업의 사업소 이외에 공공기업으로서 산업으로 분류된 정부 관련기관이 있다. 공공기업은 금융업일 경우 금융자산이 총자산의 90%이상의 경우는 공공금융으로, 非금융업은 (1)민간에게 동종의 활동이 있다 (2)가격·요금이 공급하는 양질에 비례한다 (3)구입이 자유의지에 의해 행하여진다. 라는 기준中 두 개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공공 비금융으로 분류된다.

기타, 다음도 산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① 주로 기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비영리단체
- ② 가계가 소유한 주택과 정부 및 민간비영리단체가 직원을 위해 소유한 주택의 귀속서비스
- ③ 가계, 정부 또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한 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활동.

산업의 총생산액은 아래에 기술하는 업종별 추계단위로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하여 구한다. 중간투입이라는 것은, 생산의 과정에서 원재료·광열연료·간접비등으로써 투입되는 비내구소비재 및 서비스를 말하며,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외에, 수주형 소프트웨어(생산자가 1년 넘게 사용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中 수주개발분)등 무형고정자산도 중간투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중간투입이 되는 서비스 중에는 정부의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에도 유의를 요한다.

이들 중간투입액을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한 경우에는, 이미 수주형 소프트웨어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제외되어 있고 또 정부수수료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간투입액을 개개의 통계자료 등으로 집계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특별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집계에 이용되는 통계자료의 중간투입 해당항목에 수주형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정부수수료가 제외된 경우는 그것을 공제 또는 가산할 필요가 있다. 그때의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수주형 소프트웨어를 공제하는 경우의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산업별로 소프트웨어 비율 (수주형 소프트웨어 금액 / 산출액)을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것에 산업별 산출액을 곱하고, 수주형 소프트웨어 금액을 구한다.

● 산업별 수주형 소프트웨어 금액

$$= \text{산업별 산출액} \times \frac{\text{기준년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금액(10 베이스)}}{\text{기준년의 산업별 산출액(10 베이스)}}$$

X 해당 년도의 소프트웨어 비율의 신장률 X 수정율

여기에서,

기준년의 산업별 소프트웨어 금액 : 「1995년 산업연관표」(총무성)의 「고정자본 매트릭스」로 얻음.

기준년의 산업별 산출액 : 「1995년 산업연관표」(총무성)의 전국금액

해당년도의 소프트웨어 비율의 신장률 : 「국민경제계산」의 소프트웨어 비율(=소프트웨어 금액 ÷ 산출액)의 기준년으로부터 해당년도까지의 신장률

● 수정률

수정률은 산업연관표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비율을 국민경제계산 베이스로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text{수정률} = \frac{\text{국민경제계산 베이스의 기준년의 소프트웨어 비율}}{\text{산업연관표 베이스의 기준년의 소프트웨어 비율}}$$

정부수수료를 가산한 경우, 정부수수료의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 「산업이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직접조화·결산서로부터 입수하고, 각 산업을 구분하여 중간투입에 가산한다.

또한, 정부수수료는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2분의 1을 산업분으로 한다. 산업별 비율은 전국 비율을 준용한다.

# 1. 농림수산업

## (1) 농업

농업은 ①농업 ②獸医業 ③농업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다.

### ① 농업

#### a. 산출액

농업의 산출액 = 粗생산액

조생산액 : 『생산농업소득통계』(농림수산성)에서 耕種, 양잠, 축산, 농가가 행하는 농산가공의 품목별 합계액을 집계한다.

또한, 『생산농업소득통계』(농림수산성)에는 본래 임업으로 나누어진 산림용 목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제한다.

#### b. 중간투입

중간투입비율은 『농업경영동향통계』(舊 『농가경제조사』농림수산성)을 사용해서 아래 서술한 추계式으로부터 구하지만, 『농업경영동향통계』는 1992년도부터 조사대상을 쏘농가에서 판매농가로 변경(1991년도는 변경전 계수도 병기하고 있다)하였으므로, 1992년도 이전의 중간투입비율을 쏘농가 상당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조정률을 추계하고, 각 항목의 계수를 조정된 뒤에, 중간투입비율을 추계한다.

조정률 = (1991년도 쏘농가계수 / 1991년도 판매농가계수)

X 해당년도 판매농가계수

농가계수 : 『농업경영동향통계』의 농업경영비, 공과제부담, 농업粗수익의 각 계수  
농가 1호당 중간투입비율은 조정률을 곱한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 式에 의해 구한다.

농가 1호당 중간투입비율 = (농업경영비 + 공과제부담) / 농업조수익

농업경영비 : 『농업경영동향통계』의 농업경영비에서 고용노임, 지불소작료, 기획관리비, 부채이자, 물건세·공과제부담中 집락협의회비 이외의 것,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이다.

공과제부담 : 조세공과제부담中 중간투입에 해당하는 과목, 농업공제조합부담  
기타 단체부담금을 집계한다

② 獸医業

a. 산출액

수의업의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농축위생통계』(농림수산성)의 수의업에 종사하는 총인원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③ 농업서비스업

a. 산출액

농업서비스업의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하여 종업원수의 대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2) 임업

a. 산출액

○육림업 ○素材생산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육림업

산림용 묘목(조림용, 치산용 묘목)의 육성, 조림 및 材木の 보육 보호 등을 행하는 생산활동이 해당된다.

『縣산업연관표』에 의하여 「육림」의 생산액을 집계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육림업 산출액 = 素材생산업 산출액 X (「육림」 생산액 / 「素材」 생산액)

素材생산업 산출액 : 縣추계치(다음 항목에서 추계)에 의한다.

생산액 : 전국의 「산업연관표」로부터 집계한다.



○ 素材 생산업

통나무의 제조, 숯·장작의 제조, 천연 버섯류 등의 채취 등을 행하는 생산활동이 해당된다.

素材생산업의 산출액 = 粗생산액 ([목재생산] + [숯·장작생산] + [재배버섯류 생산] + [임야부산물채취])

粗생산액 : [생산임업소득통계](농림수산성)에서 집계.

또한, 수렵업의 산출액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계하고, 素材 생산업에 가산한다.

수렵업의 산출액 = 종류별 포획수 X 판매단가

종류별 포획수 : 縣主管課 자료로부터 집계. 다만 갑·을·중·인·가·분을 참고로 하고 병·중은 제외한다.

판매단가 : 縣主管課 자료로부터 집계.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또한, 수렵업에 대해서는 縣主管課 자료에 의한다.

(3) 수산업

a. 산출액

○해면어업 ○해면양식업 ○내수면어업 및 ○내수면양식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해면어업 ○ 해면양식업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생산액을 얻는다.

○ 내수면어업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내수면양식업의 산출액 = 수량 X 단가

수량 :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농림수산성)로부터 집계한다.

단가 : 縣主管課, 기타 相關기관 자료에 의한다.

※ 어가가 주로 자가취득물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지에서 건조시키거나 소금에

절여 극히 단순가공한 것과 母船내가공은 수산업에 포함하고, 기타는 제조업의 식품제조업으로 분류한다.

b. 중간투입

○ 해면어업

[어업경제조사보고(어가부분)]·[어업경제조사보고(기업체부분)](모두 농림수산성)에서 집계한다.

○ 해면양식업

[어업경제조사보고(어가부분)]로부터 어선비, 모든 시설비, 어패비, 유류비, 사료대금, 얼음대금, 魚箱대금, 종묘대금, 諸재료비, 임대료, 판매수수료 및 사무비등을 집계한다.

○ 내수면어업 및 ○ 내수면양식업

縣主管課 또는 相關기관 자료로부터 앞의 항목을 집계한다.

## 2. 광업

### a. 산출액

○광업일반(건축재료용 암석채석업 및 쇄석업 이외) ○건축재료용 암석채석업 ○쇄석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 광업일반

광업일반 산출액 = 품목별 생산액 X 보정율

품목별 생산액 : [일본광업의 추세](경제산업성)에서 생산액을 품목별 집계한다.

보정율 : [일본광업의 추세]의 지정품목이외의 광산물을 보정하기위한 확대비율로 하고, 전국의 추계비율(102.3)을 이용한다.

注) 93SNA로의 이행에 맞추어, 석유공단에 대한 석유비축계정은 중앙정부, 일반계정은 공공기업(금융)이 된다.

#### ○ 건축재료용 암석채석업

건축재료용 암석채석업 산출액 = (허가사업소의 석재, 자갈, 모래 등의 채취량 + 허가사업소이외의 추정채취량) X 단가

허가사업소 채취량 및 허가사업소 이외의 추정채취량

: 경제산업국 및 縣主管課 자료로부터 집계.

단가 : 縣主管課 자료 또는 [건설물가통계] (건설물가조사회) 로부터 건설현장 賣渡가격(수송비 포함)을 집계한다.

#### ○ 쇄석업

쇄석업의 산출액 = 출하량 X 단가

출하량 : [쇄석통계연보](경제산업성)로부터 집계한다.

단가 : 縣主管課 자료 또는 직접조회하여 집계한다.

### b. 중간투입

○광업일반 ○건축재료용 암석채석업 ○쇄석업 각각에 대한 자재사용액,

연료사용액, 전력사용액 및 기타 사용액을 [일본광업의 추세](경제산업성) 등에서 집계하거나, 관련기관 등에서 직접 조회한다.

상기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3. 제조업

제조업은 ①제조업 ②屠畜場으로 구성된다.

#### ① 제조업

(1)민간기업 (2)공공기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1) 민간기업

[공업통계표](경제산업성 및 縣主管課)를 이용해서 SNA 중분류로 추계한다.

또한, 각 통계와 SNA 중분류와의 대응은 [SNA 제조업중분류와 공업통계표 대응 표] 등을 참고로 한다.

##### a. 산출액

산출액 = (제조품 출하액등 + 재고순증) X 연도전환비율

제조품출하액等 : 종업원규모 4인이상 및 1~3인을 집계한다.

재고순증 : 종업자 규모별로 아래와 같이 집계한다.

30인이상 : 생산액 - 제조품출하액等

4~29인 : 30인~49인 재고증감 X 4~29인 제조품출하액 등 /

30인~49인 제조품출하액 등

1~3인 : 30인~49인 재고증감 X 1~3인 제조품출하액 등 /

30인~49인 제조품출하액 등

연도전환비율 : (생산지수 연도치/생산지수 역년치) X

(산출물가지수 연도치/산출물가지수 역년치)

생산지수 : [광공업생산지수](縣主管課)의 [생산액가중치] 또는 [부가가치가중치]에서 집계한다.

산출물가지수 : [물가지수월보](일본은행)의 [제조업부문별 산출물가지수의 총합·가중치 베이스]의 지수를 집계한다.

##### b. 중간투입

중간투입=원재료사용액等X연도전환비율+간접비-소프트웨어 금액+정부수수료

원재료사용액等 : 종업원규모 4인이상 및 1~3인을 집계한다.

연도전환비율 : (생산지수 연도치/생산지수 역년치) X

(투입물가지수 연도치/투입물가지수 역년치)

생산지수 : [광공업생산지수](縣主管課)의 「생산액가중치」 혹은 「부가가치가중치」에서 집계한다.

투입물가지수 : 『물가지수월보』(일본은행)의 「제조업부문별 투입물가지수의 총합가중치 베이스」의 지수를 집계한다.

간접비 : 『공업통계표』로부터 구한다. 「원재료사용액등」에는 SNA상의 중간투입항목인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들은 현단독조사 또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파악하여 가산한다.

간접비 = 산출액 X 간접비 비율

간접비 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참고로, 소득추계상 경비와 간접비로서 처리하는 항목을 아래에 예시하였다.

(사업소(공장)에 관련된 간접비)

- 제조원가요소 「경비(간접경비)」 중 다음의 항목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임차료(動産만), 보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보관료 및 기타 복합비 (운반비, 교제비, 접대비, 모집비, 시험연구비, 훈련비등)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요소中 다음의 항목

소모품비, 임차료(동산만), 보험료, 운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및 광고료. 광고선전비(견본비, 신문잡지광고료, 기타 광고료, 통신비), 판매조사비, 판매사무비, 기획비 및 기술연구비

(본사·본점에 관련된 간접비)

-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中 다음의 항목.

판매수수료, 포장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견본비, 보관비, 납입시행비, 복리  
시설후생비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교제비(접대비를 포함),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열비 및 소모품비, 보험료

注) 제조회가요소 「경비」(간접경비) 중 「전력비」는 「공업통계표」의 「원재  
료사용액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접경비에서 공제한다. 또한 「임차료」中  
부동산임차료도 직접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 금액만큼 간접비에서 공제하  
다.

광고선전비등에 광고선전직원의 급료 및 상여가 포함된 경우는 이 소득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제한다. 판매 및 일반관리 관련직원의 임금, 급료도 이와 같  
다.

- 제조업 중분류별로 소프트웨어 금액을 산출하고 중간투입에서 공제. 소프트웨어  
금액의 산출은 1-14 참조.
- 정부수수료는 중간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산업별 비율로 배분한 수수료를  
중간투입에 가산한다.

## (2) 공공기업

국가관련 공공기업은 「공업통계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지방관련 공공기업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공기업 일람표]로부터 추계한다.

[공공기업 일람표]

| 공공기업 해당 기관                | SNA 제조업 중분류 |
|---------------------------|-------------|
| 조폐국특별회계                   | 금융제품(코인)    |
|                           | 기타 제조업(훈장)  |
| 인쇄국특별회계                   | 기타 제조업      |
|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br>알콜제조부문 | 화학          |

a. 산출액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하여 사업수입을 집계한다.

또한, 조폐국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국의 비율을 이용하여 「금속제품」 및 「기타 제조업」으로 분리한다.

b. 중간투입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하여 중간투입 항목을 집계한다.

또한, 조폐국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국의 비율을 이용하여 「금속제품」 및 「기타 제조업」으로 분리한다

- 민간기업에 준하여 소프트웨어 금액을 중간투입에서 공제.
-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1)민간기업의 추계에서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 경우에는 중간투입에 가산할 필요는 없다.



② 屠畜場

SNA 중분류에서는 「식료품」에 해당한다.

a. 민간기업 b. 공공기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a. 민간기업

(a) 산출액

직접조회에 의한다.

(b) 중간투입

직접조회에 의한다.

b. 공공기업

(a) 산출액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에 의한다.

(b) 중간투입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에 의한다.

[참고]

[SNA 제조업중분류와 공업통계표 대응표]

| SNA 제조업중분류 | 공업통계표 중분류  |
|------------|--|
| 식료품        | 12 식료품제조업, 13 음료·담배·사료제조업  |
| 섬유         | 14 섬유공업  |
| 펄프·종이      | 18 펄프·종이·종이가공제조업   |
| 화학         | 20 화학공업  |
| 석유·석탄제품    | 21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
| 요업·토석제품    | 25 요업·토석제품제조업(2581 쇠석제조업은 제외)  |
| 1차금속       | 26 철강업, 27 비철금속제조업   |
| 금속제품       | 28 금속제품제조업   |
| 일반기계       | 29 일반기계기구제조업   |
| 전기기계       | 30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수송용 기계     |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 정밀기계       | 32 정밀기계기구제조업   |
| 기타 제조업     | 15 의복·기타섬유제품제조업, 16 목재·목제품제조업, 17 가구·비품제조업, 19 출판·인쇄·同관련산업, 22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 고무제품제조업, 24 피혁·同제품·모피제조업, 33 무기제조업, 34 기타 제조업 |

[SNA 제조업중분류와 광공업생산지수 대응표]

| SNA 제조업중분류 | 광공업생산지수                 |
|------------|-------------------------|
| 식료품        | 식료품·담배공업                |
| 섬유         | 섬유공업                    |
| 펄프·종이      | 펄프·종이·종이가공품공업           |
| 화학         | 화학공업                    |
| 석유·석탄제품    | 석유·석탄제조품공업              |
| 요업·토석제품    | 요업·토석제품공업               |
| 1차금속       | 철공업, 비철금속공업             |
| 금속제품       | 금속제품공업                  |
| 일반기계       | 일반기계공업                  |
| 전기기계       | 전기기계공업                  |
| 수송용기계      | 수송기계공업                  |
| 정밀기계       | 정밀기계공업                  |
| 기타 제조업     | 플라스틱제품공업, 기타 공업, 출판·인쇄업 |

상기 대응표에 있어서 대응지수가 두개 이상 있는 경우는 다음 式로부터 구한다.

$$\text{생산지수} = \{ \sum (\text{가중치} \times \text{지수}) / \sum \text{가중치} \}$$

[SNA 제조업중분류와 투입·산출물가지수 대응표]

| SNA 제조업중분류 | 투입·산출물가지수                 |
|------------|---------------------------|
| 식료품        | 식료품                       |
| 섬유         | 섬유공업제품                    |
| 펄프·종이      | 펄프·종이·종이가공품               |
| 화학         | 화학제품                      |
| 석유·석탄제품    | 석유·석탄제품                   |
| 요업·토석제품    | 요업·토석제품                   |
| 1차금속       | 철광, 비철금속                  |
| 금속제품       | 금속제품                      |
| 일반기계       | 일반기계                      |
| 전기기계       | 전기기계                      |
| 수송용기계      | 수송기계                      |
| 정밀기계       | 정밀기계                      |
| 기타 제조업     | 의복·기타섬유제품, 제재·목제품, 가구·장비품 |
|            | 기타 제조공업제품                 |

상기 대응표에 있어서 대응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는 다음 式로부터 구한다.

$$\text{투입·산출물가지수} = \{ \sum (\text{가중치} \times \text{지수}) / \sum \text{가중치} \}$$

## 4. 건설업

### a. 산출액

①건축공사·토목공사, ②보수공사로 나누어 추계한다.

#### ① 건축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토목공사의 산출액 = 건설투자추계액 X 거래액베이스의 공사액 縣分비율

건설투자추계액 : 『건설투자전망』(국토교통성)에서 집계

거래액베이스 공사액 縣分비율 : 『건설종합통계연도報』(국토교통성)로부터 건축공사(민간·공공), 토목공사(민간·공공)별 對 전국비를 집계한다.

#### ②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관해서는 자료의 제약에 따라 ①의 산출액에 『산업연관표』상의 해당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보수공사의 산출액 = 건축공사·토목공사의 산출액 X

(「건축」 중의 「건설보수」 / 「건축」 + 「토목」)

건축공사·토목공사의 산출액 : ①에 의한다.

「건설보수」 「건축」 「토목」 : 『縣산업연관표』에서 참조

### b. 중간투입

민간분에 대해서는, 자재구입 등 중간투입 항목을 건설업자등록부의 결산서와 縣單 調査로부터 집계한다.

공공기관 직할분은 결산서에서 자재구입 등 중간투입항목을 집계한다.

상기에 따르지 않으면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5. 전기가스·수도업

전기가스·수도업은 (1)전기업, (2)가스·열공급업, (3)수도업, (4)폐기물처리업으로 이루어진다.

### (1) 전기업

#### a. 산출액

○발전부문, ○송전·배전부문에 나누어 추계한다.

#### ○ 발전부문

전력회사의 발전부문의 산출액을 구한 후, 현별로 분할한다. 다음 식으로 추계한다.

전력회사 발전부문 산출액 = 전력회사의 산출액 ×

(전기사업영업비용중 「발전비」 / 전기사업 영업비용합계)

전력회사의 산출액 : 『전기사업편람』(전기사업연합회) 혹은 결산서로부터 「전력회사의 요금수입 - (地帶間구입 전력료+타사구입 전력료)」를 구한다.

발전비 : 『전기사업편람』 혹은 결산서에 의한 수력, 汽力, 원자력 및 내연력의 발전비를 집계한다.

縣分の 발전부문 산출액 =

전력회사의 발전부문 산출액 X 발전전력량의 自縣구성비

발전전력량의 自縣구성비 : 『전기사업편람』에서 합계를 내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조회에 의하여 自縣분을 집계한다.

발전전력량의 自縣구성비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전력회사 유형고정자산의 발전설비를 이용한다.

#### ○ 송전·배전부문

전력회사의 송전·배전부문의 산출액을 구한 후, 현별로 분할한다. 다음 식으로 추계한다.

전력회사의 송전·배전부문 산출액 =

전력회사의 산출액 - 전력회사의 발전부문 산출액

縣分の 송전·배전부문 산출액 =

전력회사의 송전·배전부문 산출액 X 소비전력량의 自縣구성비

소비전력량의 自縣구성비 : 『전기사업편람』에서 합계를 내고, 相關기관으로 직접 조회하여 自縣분을 집계한다.

소비전력량의 自縣구성비가 얻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회사 유형고정자산의 기타를 이용한다.

또한, 公營기업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손익계산서등에 의한다.

#### b. 中間투입

10개 전력회사 및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로부터 전기사업 영업수익에 대한 일반후생비, 석탄비, 수선비, 보급개발비 등의 中間투입액을 집계한다. 公營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로부터 집계한다.

## (2) 가스열 공급업

### a. 산출액

가스업의 산출액 = 가스공급업자의 영업수입액

가스공급업자의 영업수입액 : 사업자로의 직접조회 또는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공영분에 대해서는 『가스사업통계월보』(자원에너지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회 또는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가스공급이 2縣 이상일 경우는 공급량 비율로 분할한다.

열 공급업의 산출액 = 열 공급업자의 영업수입액

열 공급업자의 영업수입액 : 직접조회에 의한다.

### b. 중간투입

가스업에 대해서는 『가스사업통계월보』 또는 직접조회에 의한 원료비, 전력비, 재료비등을 집계한다.

## (3) 수도업

### a. 산출액

수도업의 산출액 = 영업수입총액 - 수탁공사수익 - 受水費

영업수입총액, 수탁공사수익, 수수비 : 縣에서 행해지는 상수도공사업은, 「縣공영기업결산상황」에서 집계한다. 시정촌분은 法適用, 法非適用간이수도별로 「지방공영기업결산상황」에서 집계한다.

### b. 중간투입

사업결산서로부터 동력비, 수선비, 재료비, 약품비, 기타 항목을 합산 계상한다.

## (4) 폐기물 처리업

### a. 산출액

폐기물 처리업의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로부터 제3차 산업활동지수의 공공서비스업(단체·기타)에 대해서 「연도지수 / 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민영」종업자수의 對전국비율을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6. 도매·소매업

### (1) 도매업

추계는 ○민간분 ○공공분으로 나누어 한다.

#### ○ 민간분

##### a. 산출액

상업활동의 산출액은 유통단계에서 행해지는 재화의 거래에서 발생한 마진액과 상업활동으로부터 파생한 부대서비스액의 합계 및 상업활동과의 경계를 짓기 어려운 생산활동도 상업의 산출액으로 한다.

민간분의 산출액 =

(연간판매액 - 본지점간 이동) X 마진율 + 기타 수입액

연간판매액, 본지점간이동 : 『상업통계표』(경제산업성)로부터 집계한다.

연도전환 : 『상업통계표』는 조사기간이 조사년의 전년 7월부터 조사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도전환을 한다.

『상업동태통계』(경제산업성)의 [월별의 도매업판매액]로부터 (4월까지 12개월간 합계판매액) / (7월부터 12개월간 합계판매액)에 의한다.

마진율 : 縣단독조사 혹은 『상공업실태기본조사보고서』(경제산업성)에서 (粗이익액 - 상품이외의 수입액) / 상품판매액에 의한다.

연도전환 : 『상공업실태기본조사보고서』는 역년치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도전환을 한다.

『법인기업통계계보』(재무성)로부터, 粗이익율 연도치 / 粗이익율 역년치에 의한다. 또한, 粗이익율은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에 의한다.

기타 수입액 : 연간판매액(연도전환 濟值)에 기타 수입액율(전국치)를 곱하여 구한다.

기타 수입액율은 『상업통계표』로부터 기타 수입액(전국치) / 상품판매액(전국치)에 의한다.

※ 『상업통계표』는 주기조사이기 때문에, 非公표년에 있어서는 보완, 보정 추계를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補論1을 참조.

b. 중간투입

도매업의 중간투입은 「운임」, 「포장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판매원여비」, 「기타 판매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교제비」, 「기타」를 범위로 『縣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비율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다.

縣산업연관표 비율 = (내생부문계+가계外소비지출) / 縣內생산액

○ 공공분

국가관련 공공기업의 대상이 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
|---|
| 기 관   |
| 식량관리특별회계<br>축산진흥사업단<br>건설설탕류가격안정사업단<br>알콜전매특별회계 |

a. 산출액

각 기관의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다만, 식량관리특별회계는 영업잉여가 보통 赤字로 나타나고 보조금에 의해 커버되는데, 이때는 영업잉여 赤字分을 '0'으로 계상한다.

b. 중간투입

각 기관의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하여 중간투입 항목을 집계한다.

## (2) 소매업

### a. 산출액

소매업의 산출액 = (소매업의 연간판매액 - 본지점간이동)

X 마진율 + 기타 수입액

※ 상세한 것은 도매업의 추계방법을 참조.

또한, 무점포판매와 露天商의 산출액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직접조회 등에 의한다.

### b. 중간투입

※ 상세한 것은 도매업의 추계방법을 참조.

## [補論 1 : 보완, 보정 방법]

도매·소매업의 추계에 이용하는 상업통계표는 주기조사이므로 시계열처리를 할 경우, 보정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1) 보완

#### ① 연간판매액 - 본지점간이동

1) 당해년의 연간판매액 = 연간판매액 X 상업판매액 對전년도비

2) 본지점간 이동률 = 본지점간이동 / 연간판매액

3) 본지점간 이동액 = 당해년의 연간판매액 X 본지점간 이동률

연간판매액, 본지점간이동 : 『상업통계표』로부터 집계한다.

상업판매액 : 『상업동태통계조사』로부터 집계한다.

#### ② 마진율

마진율 = 상업통계표공표년 마진율 X 粗이익률 對전년도비

粗이익률의 추계방법은 상업통계표 공표년의 마진을 연도전환의 항을 참조.

또한, 「법인」과 「개인상점」을 업종 통합할 경우는 「상업통계표」의 「법인」과 「개인상점」의 연간판매액에서 가중평균해서 통합한다.

추계자료 : 법인기업통계계보

개인기업경제조사

#### ③ 기타 수입액

기타 수입액율 = 기타 수입액 / 연간판매액

기타 수입액 = 당해년의 연간판매액 X 기타 수입액율

기타 수입액, 연간판매액 : 『상업통계표』로부터 집계한다.

당해년의 연간판매액 : 상기의 ①연간판매액 - 본지점간이동을 참조.

#### ④ 중간투입

아래의 방법을 참고해서, 보정한다.

「법인」, 「개인상점」 별로 각각의 중간투입비율을 구한 후, 「상업통계표」의 「법인」, 「개인상점」의 「연간판매액」으로 가중평균하여 中間年の 중간투입비율을 구한다.

中間年 中間투입비율 = 縣산업연관표의 비율 X 보정율

보정율 : (영업경비 / 산출액) 의 對前년도비에 의한다.

영업경비 : 법인은 「법인기업통계季報」에 의한 판매일반관리비(인건비 제외)를 집계한다. 개인은 「개인기업경제조사」(총무성)로부터 영업비(인건비 제외)를 집계한다.

산출액 : 상기 ① ~ ③에 의한다.

## (2) 보정

보정의 방법으로서 보완치와 상업통계표치와의 괴리를 등차평균으로 보정하거나, 기하평균으로 보정하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덧붙여서 「상업동태통계」는 「상업통계표」를 모집단으로 하여 샘플조사를 하고, 그 괴리를 기하평균으로 파악하고, 아래의 방법로부터 「상업통계표」의 신장률에 준거한 보정을 하고 있다.

### ① 상업통계표의 신장률

상업통계표의 신장률 = 今回 商業統計表公表値 / 前回 商業統計表公表値

### ② 보완치의 신장률

보완치 신장률 = 商業동태통계이용 보완치 / 前回 商業統計表

### ③ 기하평균 괴리율

기하평균 괴리율 =

$$5 \sqrt{\frac{\text{상업통계표의 신장률}}{\text{상업통계표보완치신장률}}}$$

### ④ 수정보완치 신장률

수정보완치 신장률 = 보완치 신장률 X 기하평균 괴리율

### ⑤ 보정치의 추계

보정치 = 前回 商業統計表 X 수정보완치 신장률

## [補論 2 : 마진율의 보정]

마진율이 부자연스러운 동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법인기업통계계보』(재무성)와 『개인기업경제조사』(총무성)등의 자료를 참고로 보정한다.

보정마진율 = (粗이익액합계 - 상품이외 수입액) / 연간판매액

粗이익액합계 = 연간판매액(법인) X 粗이익률(법인)

+ 연간판매액(개인상점) X 粗이익률(개인상점)

연간판매액, 상품이외의 수입액 : 『상업통계표』에 의한다.

粗이익률 : 『법인기업통계계보』 및 『개인기업경제조사』에 의한다.

粗이익률의 추계방법은 마진율의 연도전환의 항을 참조.

## 7. 금융보험업

### (1) 금융업

금융업의 산출액은, 다음 식에 의한다.

$$\text{금융업의 산출액} = \text{귀속이자} + \text{수취수수료}$$

$$\text{귀속이자} = \text{수취이자} + \text{수취배당} - \text{지불이자}$$

귀속이자에 대해서

금융업의 생산액을 정의하기 위한 특수한 귀속계산 항목이며, 금융기관의 수취이자 및 배당과 지불이자의 차액을 나타낸다. 이자는 주로 타산업의 부가가치로부터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생산으로 취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되지만, 이 귀속계산을 하지 않고 금융업의 생산액을 수수료만으로 한다면 영업잉여 또는 부가가치까지도 마이너스가 되며 활동실태에 맞지 않게 되어버린다.

SNA에서는, 귀속이자는 전체 산업의 중간소비로서 처리한다. 이 경우 귀속이자를 각 산업부문으로 분할하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에, 더미산업을 만들어 이 산업이 모든 귀속이자를 중간소비하는 것으로 하며, 동시에 이 산업으로 동액의 마이너스 영업잉여가 계상된다. 이렇게 해서 귀속이자의 일부가 가계소비지출로 계상되며, 아울러 국내총생산과 영업잉여가 동액만큼 과대계상되는 것을 피하게 된다.

현민경제계산에서 금융업의 추계에 대하여

귀속이자를 전국과 같은 방법의 추계식으로 구하면, 대부활동이 활발한 중앙 쪽이 과대로 계상되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지점의 활동(예금획득활동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지점간 이동분도 이자 수취·지불의 대상으로 하고, 소득지출계정과도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서 수취이자, 지불이자별로 추계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민간금융기관, ○공공금융기관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민간금융기관

추계대상이 되는 민간금융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국내은행        | 全國 은행의 은행계정   |
| 중소기업금융기관 등  | 신용금고<br>전국신용연합회<br>신용조합<br>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br>노동금고<br>노동금고연합회<br>상공조합중앙금고<br>整理回收機構 |
| 농림수산금융기관    | 농림중앙금고<br>농업협동조합신용사업<br>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br>어업협동조합신용사업<br>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                |
| 在日外銀        | 외국은행재일지점  |
| 국내은행 · 신탁계정 | 국내은행신탁예산계정  |
| 증권투자신탁위탁회사  | 증권투자신탁위탁회사  |
| 딜러 · 브로커    | 전국증권회사<br>단자회사  |
| 파이낸스 회사     | 증권금융회사<br>주택금융전문회사<br>론뱅크<br>농업공제기금<br>아마미군도진흥개발기금                              |
| 비중개형금융기관    | 증권거래소<br>예금보험기구<br>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  |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br>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br>전국신용보증협회<br>농림어업신용기금<br>(임업신용보증업무)<br>외환 브로커<br>투자고문회사 |

a. 산출액

[재무제표에 의한 누적방법] 또는 [분할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ㄱ. [재무제표에 의한 누적방법]

기관별로 ①수취이자, ②수취배당, ③지불이자, ④수취수수료로 나누어 추계한다.

또한, 재무제표로부터 집계할 항목은 별표 [민간금융기관의 추계대상기관별 집계항목표]를 참조

① 수취이자

수취이자는 縣內수취이자와 縣外수취이자로 나누어 추계한다.

$$\text{縣內수취이자} = \text{해당기관 수취이자} \times (\text{해당기관 縣內대출잔고} / \text{해당기관 대출잔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음 식에 의한다.

$$\text{縣內수취이자} = \text{해당기관 縣內대출잔고} \times \text{대출이자율}$$

$$\text{縣內수취이자} = \{ \text{縣內예금잔고} \times (1 - \text{지불 준비율}) - \text{縣內대출잔고} \}$$

X 본지점간 비율

1-지불준비율 : 불명한 경우는 「해당기관 대출잔고 / 해당기관 예금잔고」로 한다.

본지점간 비율 : 불명한 경우는 「(대출이자율+예금이자율) / 2」로 한다.

② 수취배당

수취배당은 예금잔고에 비례하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text{수취배당} = \text{해당기관 수취배당} \times (\text{해당기관 縣內예금잔고} / \text{해당기관 예금잔고})$$

③ 지불이자

지불이자는 자료제약 때문에 다음 式으로부터 구한다.

$$\text{지불이자} = \text{해당기관 지불이자} \times (\text{해당기관 縣內예금잔고} / \text{해당기관 예금잔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式에 의한다.

$$\text{지불이자} = \text{해당기관 縣內예금잔고} \times \text{예금이자율}$$

④ 수취수수료

수취수수료는 활동량에 비례하고 대출잔고, 예금잔고 각각에 관련되며, 다음 式으로부터 구한다.

$$\text{수취수수료} = \text{해당기관 수취수수료} \times \{(\text{해당기관 縣內예금잔고} + \text{해당기관 縣內 대출잔고}) / (\text{해당기관 예금잔고} + \text{해당기관 대출잔고})\}$$

ㄴ. [분할에 의한 방법]

①수취이자, ②수취배당, ③지불이자, ④수취수수료로 나누어 추계한다.

① 수취이자

수취이자는 縣內수취이자와 縣外수취이자로 나누어 추계한다.

$$\text{縣內수취이자}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text{自縣 대출잔고} / \text{전국 대출잔고})$$

$$\text{縣外수취이자} = \{ \text{自縣 예금잔고} \times (1 - \text{지불 준비율}) - \text{自縣 대출잔고} \}$$

$$\times \text{본지점간 비율}$$

대출잔고, 예금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 의한다.

1-지불준비율 : 불명인 경우는 (해당기관의 대출잔고 / 同예금잔고)로 한다.

본지점간 비율 : (대출이자율 + 예금이자율) / 2 로 한다.

대출이자율 : 「전국 수취이자 / 전국 대출잔고」로부터 구한다.

예금이자율 : 「전국 지불이자 / 전국 예금잔고」로부터 구한다.

② 수취배당

$$\text{수취배당}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text{自縣 예금잔고} / \text{전국 예금잔고})$$

전국의 해당계수 : 「귀속이자 - 수취이자 + 지불이자」로부터 구한다.

예금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에 의한다.

③ 지불이자

$$\text{지불이자}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text{自縣 예금잔고} / \text{전국 예금잔고})$$

예금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에 의한다.

④ 수취수수료

$$\text{수취수수료}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left\{ \frac{(\text{自縣 대출잔고} + \text{自縣 예금잔고})}{(\text{전국 대출잔고} + \text{전국 예금잔고})} \right\}$$

전국의 해당계수 : 「산출액 - 귀속이자」로부터 구한다.

예금잔고, 대출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에 의한다.

b. 중간투입

재무제표에서 토지·건물·기계임차료, 보수관리비(營繕費 포함), 도서·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교통비, 교통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 기타를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공공금융기관

추계대상이 되는 공공금융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중앙은행     | 일본은행  |
| 우편저금     | 우편저금  |
| 융자특별회계   |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br>산업투자특별회계<br>도시개발자금융통특별회계  |
| 정부금융기관 등 | 국제협력은행 (99년 10월 이후)<br>(구 일본수출입은행, 해외경제협력기금)<br>(99년 9월 말까지)<br>일본정책투자은행 (99년 10월 이후)<br>(舊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公庫)<br>(99년 9월 말까지)<br>국민생활금융公庫<br>(舊 국민금융公庫, 환경위생금융公庫)<br>(99년 9월 말까지)<br>주택금융公庫<br>농민어업금융公庫<br>중소기업금융公庫<br>공영기업금융公庫<br>사회복지·의료사업단의료계정<br>오키나와 진행개발금융公庫<br>일본육영회<br>연금자금운용기금일반·자금확보사업<br>중소기업종합사업단 (구 중소기업사업단 (99년 6월까지)) 중소기업도산방지 공제계정<br>석유공단 일반계정<br>운수시설정비사업단 철도계정<br>간이보험복지사업단 우편저금 운용사업특별계정 |

a. 산출액

기관별로 추계한다.

• 일본은행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대출잔고 등의 對전국비를 이용한다.

대출잔고 등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가 없는 縣分은 공제한다.

• 우편저금

① 수취이자 = 전국 해당계수 X (自縣우편저금저금잔고 / 전국우편저금저금잔고)

③ 지불이자 = 전국 해당계수 X (自縣우편저금저금잔고 / 전국우편저금저금잔고)

저금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에 의한다.

• 재정용자자금특별합계 (舊 자금운용부 특별회계)

본부(동경도분)과 지부(각 縣分)로 나누어 추계한다.

① 수취이자는 다음 式에 의한다.

본부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1-지방공공단체대부금 / 운용자산합계)

지부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지방공공단체대부금 / 운용자산합계)

X 대부잔고의 對전국비

③ 지불이자는, 다음 式에 의한다.

본부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1-지방공공단체대부금 / 운용자산합계)

지부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지방공공단체대부금 / 운용자산합계)

X 대부잔고의 對전국비

지방공공단체대부금, 운용자산합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 「자산운영명세표」에 의한다.

대부잔고 對전국비 : 전국치는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의 「자산운영명세표」

로부터 집계하고, 縣値는 縣主管課에 의한다.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수취이자, 지불이자를 각각 재무국 재무부의 결산서로부터 누적 계상한다. 또한, 공공금융기관의 지불이자(자금운용부 이외의 原資分은 공제)도 누적 계상한다.

- 산업투자특별회계, 도시개발자금용통특별회계, 공영기업금융公庫, 환경위생금융公庫(99년 9월말까지),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公庫 및 국제협력은행·해외경제협력계정(舊 해외경제협력기금)

수취이자, 지불이자와 함께 전국의 해당계수를 동경都에 계상한다.

- 국제협력은행·국제금융等계정 (舊 일본수출입은행)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③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대부잔고 : 직접조회에 의한다.

- 일본정책투자은행(舊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公庫), 농림어업금융公庫 및 중소기업금융公庫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③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대부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로부터 구한다.

- 국민생활금융公庫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③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대부잔고 : 『업무통계연보』(국민금융公庫)에 의한다.

- 주택금융公庫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③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대부잔고 : 『업무통계』(주택금융公庫)로부터 都道府縣別の 연도말 대부잔고를 집계한다

- 사회복지·의료사업단의료계정 (舊 의료금융公庫)
  - ① 수취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
  - ③ 지불이자 = 전국의 해당계수 X (自縣 대부잔고 / 전국 대부잔고)대부잔고 : 직접조회에 의한다.

- 일본육영회
  - ①수취이자 ③지불이자도 직접조회
  - 본소는 동경, 지소는 동경, 나고야, 오사카

- 중소기업종합사업단(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계정)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가입자수의 對전국비를 준용한다.

아래의 5기관은 동경도로 일괄 계상한다.

- 연금자금운용기금(일반사업계정)
- 상동 (자금확보사업계정) (注) 2001.4.1까지 연금복지사업단
- 간이보험복지사업단(우편저금운용사업특별계정)
- 석유공단(일반계정)
- 운수시설정비사업단(철도계정)

#### b. 중간투입

재무제표에서 토지·건물·기계·임차료·보수관리비(營繕費포함), 도서·소모품비, 수도·광열비, 통신·교통비, 교통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여비, 기타를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민간금융기관의 추계대상기관별 집계항목표]

국내은행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전국은행 은행계정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콜머니이자,<br>구입어음이자, 기타 수입이자<br>(신탁이자)<br>금전의 신탁운용익-금전의 신탁운용損<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 양도성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양도성예금이자, 콜머니이자<br>매도어음이자, 차용금이자<br>기타 지불이자<br>(채권이자)<br>채권이자, 채권발행차금 상각, 사채이자<br>상업어음이자, 전환사채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 역무거래 등 수익 |

중소기업금융기관 등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신용금고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등이자<br>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br>(차입금등이자)<br>양도성예금이자, 차용금이자<br>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전국신용금고연합회       |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등이자<br/>재예탁금이자, 기타 수입이자</p> <p>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차용금이자, 예탁금이자, 기타 지불이자</p> <p>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p>        |
| 신용조합            |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등이자,<br/>기타 수입이자</p> <p>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 양도성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양도성예금이자, 차용금이자<br/>기타 지불이자</p> <p>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p> |
| 전국신용협동조합<br>연합회 |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등이자<br/>재예탁금이자, 기타 수입이자</p> <p>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차용금이자, 예탁금이자, 기타 지불이자</p>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 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勞働금고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금등이자<br>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차용금이자, 양도성예금이자,<br>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노동금고연합회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 금융기관대부등이자,<br>양도성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이익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차용금이자, 양도성예금이자<br>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유가증권대부료 |
| 상공조합중앙금고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 이자)<br>대출금이자, 단기자금이자,<br>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양도성예금이자, 차용금이자,<br>콜머니이자, 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整理回收機構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 단기자금 이자,<br>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신탁이자)<br>금전신탁운용익<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콜머니이자<br>차용금이자, 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역무거래 등 수익 |

농림수산금융기관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농림중앙금고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대출금등이자, 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차입금이자, 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농업협동조합신용<br>사업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br>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저금비용<br>(차입금등이자)<br>차입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신용농업협동조합<br>연합회 |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 수취장려금<br/>(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 수입잡이자</p> <p>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출자등배당)<br/>수취출자배당금, 수취특별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수익배당금</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저금이자, 지불장려금<br/>(차입금등이자)<br/>차입금이자, 지불 잡이자</p> <p>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p>                                  |
| 어업협동조합신용<br>사업  | <p>各縣 어협담당과로부터 집계한다<br/>기초통계자료가, 연안지구출자어협과 업종별 출자어협으로<br/>나누어져 있고, 양자의 합계로 추계한다.<br/>&lt;연안지구출자어협&gt; ... (1) 신용사업수익<br/>&lt;업종별출자어협&gt; ... (2) 신용사업수익</p>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 = {(1) + (2)} / 2<br/>(대출금등이자) = {(1) + (2)} / 2</p> <p>② 수취배당 : 없음</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신용사업직접비</p> <p>④ 수취수수료 : 없음</p> |
| 신용어업협동조합<br>연합회 | <p>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 수취장려금<br/>(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 수입 잡이자</p> <p>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br/>(출자등배당)<br/>수취출자배당금, 수취특별배당금<br/>(신탁배당)<br/>신탁배당수익배당</p> <p>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저금이자, 지불장려금<br/>(차입금이자)<br/>차입금이자, 지불 잡이자</p> <p>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p>                                    |

재일외은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외국은행在日지점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대출금이자, 기타 수입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차입금등이자)<br>기타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기타 경상수익의 1/10 |

국내은행·신탁계정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전국은행신탁계정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기타 수입이자<br>대출금이자, 금전채권수익<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 신탁수익배당<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유가증권수수료 |

증권투자신탁 위탁회사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증권투자신탁위탁회사 | ① 수취이자 : 없음<br>② 수취배당 : 없음<br>③ 지불이자 : 없음<br>④ 수취수수료 : 투자신탁위탁자보수 |

딜러 브로커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전국증권회사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신용거래수취이자·品賃料, 수취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수취배당금, 수취채권이자<br>이익분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신용거래지불이자·品借料, 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수입수수료                                       |
| 단자회사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단가자금이자, 어음이자 및 할인료<br>양도성예금이자, 수입 잡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 및 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콜머니이자, 어음이자 및 재할인료,<br>차입금이자, 지불雜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외국환어음수수료, 수입수수료 |

파이낸스회사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증권금융회사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대부금이자, 수취이자<br>② 수취배당 : 없음<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차입금지불이자, 대차거래지불이자<br>예금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유가증권수수료                     |
| 주택금융전문회사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이자)<br>대출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br>(신탁배당)<br>채권신탁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차입금등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 수입수수료   |
| 농업공제기금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대부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차입금등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없음                                      |
| 아마미군도 진행개발기금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부금등이자)<br>대부금이자, 승계채권이자 및 연체금<br>미수대부이자환입(공제)<br>② 수취배당 : 없음<br>③ 지불이자 : (차입금이자)<br>차입금이자<br>미불차입금이자환입(공제)<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보증료 |

비중개형금융기관 형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증권거래소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대부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지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취수수료)<br>회비, 상장부과금 |
| 예금보험기구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 미수이자환입(공제)<br>③ 지불이자 : 없음<br>④ 수취수수료 : 없음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생명보험계약자<br>보험기구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지불이자   |
| 손해보험계약자<br>보험기구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지불이자   |
| 농수산업협동조합<br>저금보험기구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상환금<br>③ 지불이자 : 없음<br>④ 수취수수료 : 없음   |
| 전국신용보험협회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대출금등이자)<br>손해금<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차입금이자<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보증료, 연체보증료 |
| 농림어업신용기금<br>(임업보증업무) | ① 수취이자 : (예금이자)<br>예금이자<br>② 수취배당 : (유가증권이자배당)<br>유가증권이자수입<br>③ 지불이자 : 없음<br>④ 수취수수료 : 없음  |
| 외환브로커                | ① 수취이자 : (유가증권이자배당)<br>수취이자, 배당금등<br>② 수취배당 : 수취배당금<br>③ 지불이자 : (차입금등이자)<br>지불이자 및 雜지출   |

| 추계대상기관 | 추계집계항목  |
|--------|---|
| 투자고문회사 | ① 수취이자 : (대출금등이자)<br>수취이자<br>② 수취배당 : 없음<br>③ 지불이자 : 없음<br>④ 수취수수료 : (수수료)<br>투자고문비 |

[공공금융기관의 추계대상기관별 추계집계항목]

중앙은행

| 금융기관명 | 추계항목             |  |
|-------|------------------|--|
| 일본은행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어음할인료, 대부이자, 구입어음, 할인료, 국채이자, 기타 채권이자 해외자산수입, △외자채권매각이익, △외환매매익, 국채할인료 |

우편저금

| 금융기관명 | 추계항목             |                                     |
|-------|------------------|-------------------------------------|
| 우편저금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자금운용부예탁금 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저금지불이자, 차입금이자 |

융자특별회계

| 금융기관명            | 추계항목             |                                 |
|------------------|------------------|---------------------------------|
|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유가증권이자, 대부이자, 유가증권상환이익<br>예탁금이자 |
| 산업투자특별회계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대부금이자, 예탁금이자<br>납부금, 주식배당금      |
| 도시개발자금<br>융통특별회계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정부금융기관등

| 금융기관명                               | 추계항목                        |  |
|-------------------------------------|-----------------------------|--|
| 국제협력은행<br>(국제금융등계정)<br>(구 일본수출입은행)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수입 잡이자<br>지불이자<br>보증료, 수입수수료                                     |
| 상동(해외경제협력계정)<br>(구 해외경제협력기금)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br>차입금이자, 채권이자<br>수탁수수료  |
| 일본정책투자은행<br>(구 일본개발은행<br>북해도동북개발公庫)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 대부금이자,<br>수입 잡이자<br>차입금이자, 기탁금이자, 채권이자, 채권발행차금<br>상환<br>보증료, 수입수수료, 기타 수수료 |
| 국민생활금융公庫<br>(구 국민금융公庫,<br>환경위생금융公庫)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수입 잡이자<br>차입금이자, 수탁금 지불이자<br>수탁수수료                                |
| 주택금융公庫                              | (수취이자)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  |

| 금융기관명                           | 추계항목                            |  |
|---------------------------------|---------------------------------|--|
|                                 | (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차입금이자, 재형주택채권이자,<br>채권발행차금상환<br>대부수수료, 수탁수수료   |
| 농림어업금융금고                        | (수취이자)<br><br>(지불이자)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기금예탁이자, 수입 잡이자, 개척계승수입<br>이자<br>차입금이자                            |
| 중소기업금융기고                        | (수취이자)<br><br>(지불이자)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수입 잡이자<br>차입금이자, 채권이자, 지불 잡이자                                     |
| 공영기업금융公庫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차입금이자, 채권이자, 채권발행차금상환<br>수탁수수료                                    |
| 사회복지의료사업단<br>의료계정               | (수취이자)<br>(수취배당)<br>(지불이자)      | 대부금이자, 수취이자, 신탁수익금<br>수취배당<br>차입금이자  |
| 오키나와 진흥개발<br>금융公庫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예금이자<br>수입 잡이자<br>수탁수수료, 주택자금대부수수료수입                                      |
| 일본육영회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수취이자<br>지불이자   |
| 연금복지사업단<br>(일반·자금확보계정)          | (수취이자)<br><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일반사업계상><br>대부금이자, 수취이자, 유가증권이자<br><자금확보사업계정><br>운용수입, 수취이자<br>차입금이자, (상기 2 계정)<br>숙소사용료 |
| 중소기업종합사업단<br>(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br>계정)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수취이자, 운용수익<br>차입금이자<br>없음   |
| 석유공단<br>(일반계정)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대부금이자, 수취이자, 운용 수익<br>지불이자<br>채무보증료수입  |
| 철도시설정비사업단<br>(철도계정)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할부양도수입, 수취이자<br>차입금이자, 채권이자, 채권발행차금상환<br>양도관리비등수입  |
| 간이보험복지사업단<br>(우편저금운용사업특별<br>계정) | (수취이자)<br>(지불이자)<br>(수취수수료)     | 운용수입<br>寄託金이자<br>없음  |

## (2) 보험업

보험업은 ①생명보험, ②연금기금, ③비생명보험으로 이루어진다.

### ① 생명보험

#### a. 산출액

생명보험의 산출액 (귀속서비스료)의 추계식은 아래와 같다.

생명보험의 산출액 = 보험료 - 보험금 - (지불준비금 순증액-재산운용수익)

보험료 : 보험기업이 피보험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보험료

보험금 : 보험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보험금

지불준비금 : 보험금의 지불을 위한 준비금으로, 법정준비금 + 임의적립금

재산운용수익 :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 - 보험계약자배당

####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보험적요소와 함께 저축적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래의 비생명보험과 다르며, 자산거래로서 처리된다. 즉, 생명보험준비금의 가계지분(생명보험기관의 준비금中 보험계약자의 지분에 속한 것)은,가계의 금융자산, 생명보험기관의 부채로 볼 수 있고, 그 증가분이 자본조달계정, 그리고 잔고가 대차대조표계정에 나타난다.

이 때문에 생명보험의 생산액(귀속서비스료)은, 수취보험료 마이너스 지출보험금에서 다시 생명보험준비금가계지분의 증가분을 공제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이것을 가계가 최종소비한다.

#### <생명보험의 각 계정에서의 계상방법에 대해서>

수요측의 지출계정에서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는 가계만이 그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된다.

또, 소득지출계정에서 보면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기관의 공동조직자로 볼 수 있어 보험료와 보험금의 受拂이 동일부문간 거래로 되므로, 소득지출계정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추계한다.

추계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민간생명보험 | 생명보험회사<br>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br>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br>(都道府縣 공제농업 협동조합연합회<br>2000년에 全共連에 통합)<br>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br>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
| 공공생명보험 | 간이생명보험   |

○ 민간생명보험

-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전국공제농업 협동조합연합회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생명보험사업개황』(생명보험협회)의 보유계약 지방별 통계표로부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보유계약고 합계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각 縣主 管課 업무자료, 또는 『종합농협통계표』(농수성)와 『JA공제사업통계』(전국공제농업공동조합연합회)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 계약고 / 전국 계약고

自縣주관과 업무자료에 의한다.

- 전국노동자공제생활공동조합연합회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계약고 / 전국계약고

각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따름.

### ○ 공공생명보험

- 산출액 = 보험료 - 보험금 - 준비금순증 + 재산운용수익

보험료 : 전국의 해당계수에 『우정행정통계데이터(간이보험편)』(우정사업청)의 「都道府縣別통계」의 「연도말 보유계약 보험료액」의 對전국비를 곱하여 구한다.

보험금 : 전국의 해당계수에 『우정행정통계데이터(간이보험편)』의 「도도부현별통계」의 「사망」 및 「만기」 보험금액의 對전국비를 곱해서 구한다.

준비금순증, 재산운용수익

: 전국의 해당계수에 위에서 구한 보험료 自縣추계치의 전국계수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보험업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② 연금기금

### a. 산출액

연금기금의 산출액(귀속서비스료)의 추계식은 아래와 같다.

연금기금의 산출액 = 부담액 - 급부액 - (연금준비금 순증액-재산운용수익)

부담액 : 고용주 및 고용자가 실제로 연금기금에 지불한 부담액.

급부액 : 연금기금이 가계에 실제로 지불한 연금급부액

연금준비금 : 연금의 지불을 위한 준비금

재산운용수익 : 준비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이자배당등 수입 - 지불이자 - 연금계약자배당)

<연금기금>

연금기금은 SNA에서는 앞서의 보험과 동일하고, 귀속서비스료가 생산액이 되며, 이 생산된 서비스는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해당된다.

또 연금기금은 소득지출계정에서는, 금융기관인 연금기금으로부터 가계가 수취하는 사회급부와 가계가 연금기금(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자발적 사회부담금이 경상거래로 기록된다.

연금기금(금융기관)에 있어서 부담금과 급부는 가계의 지분의 변동으로 생각되고, 그 차액은 「소득의 사용계정」에 있어서 가계로의 반환분(연금기금연금준비금의 변동)으로서 조정된다. 또한 동액이 「자본조달계정」에 있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인 보험·연금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추계대상이 된 연금기금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연금기금 |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br>적격퇴직연금<br>노동자퇴직금공제기구<br>석탄광업 연금기금<br>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br>중소기업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

모든 기관이 다음의 식에 의해 추계한다.

$$\text{해당기관의 산출액}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text{분할비율}$$

분할비율 :

-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 →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한 후생연금 가입자수의 對 전국비로 안분
- 적격퇴직연금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全 산업베이스의 고용자수의 對 전국비로 안분
- 노동자퇴직금공제기구 → 自縣 가입자의 對 전국비(아래의 各 공제사업 합계에 의한다)로부터 안분



○ 중소기업퇴직직금공제사업

○ 건설업퇴직금공제사업

○ 청주제조업퇴직금공제사업

○ 임업퇴직금공제사업

• 석탄광업연금기금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광업종업자수의 對 전국비

• 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 → 縣主管課 자료에서 국민연금가입자수의 對 전국비

•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 가입자수의 對 전국비로부터 안분

#### b. 중간투입

전국의 보험업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③ 비생명 보험

#### a. 산출액

비생명보험 산출액(귀속서비스료)의 추계식은 아래와 같다.

$$\text{비생명보험 산출액} = \text{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책임준비금 순증액} \\ - \text{재산운용수익}) + \text{대리업무수수료}$$

보험료 : 보험기업이 피해보험자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보험료와 수취사유가 있으나 未收한 보험료의 합계

보험금 : 보험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보험금과 지불사유가 있으나 未拂한 보험금(지불備金)의 합계

책임준비금 : 장래 발생될 보험금지불에 대비하여 적립해둔 준비금

재산운용수익 : 비생명 보험의 재산운용수익은 보험계약자에 귀속分 뿐이고,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에 의한 금액이 된다.

(이자배당수입-지불이자-보험계약자배당)

$$\times \{(\text{책임준비금 적립분} + \text{지불비금}) / (\text{책임준비금} + \text{지불비금})\}$$

수수료 : 비생명보험은 대리점제도를 통해서 보험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점의 중개수수료를 비생명보험의 산출액에 가산한다.

<비생명보험>

비생명보험기업은, 수취보험료와 지불보험금의 차액을 그 주된 수입원천으로 하지만, SNA에서는, 그 차액이 귀속서비스로서 비생명보험기업의 생산액이 된다. 이 생산된 서비스는, 기업의 중간투입소비와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의 양자로 대응된다.

또, 비생명보험은 계약에 의한 소득의 이동으로서 소득지출계정에 나타나고, 비생명보험기업은 순보험료를 수취하고 보험금을 지불한다. 순보험료라는 것은 수취보험료에서 귀속서비스료를 공제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금과 다름없는 금액이 된다.

<비생명보험의 각 계정의 계상방법에 대해서>

수요측면의 지출계정에서는, 비생명보험은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정부에서 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되지만, 산업에서의 비생명보험은 코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소비에 계상된다.

또, 소득지출계정에서는, 비생명보험기업과 보험계약자는 지불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제도부문별로 소득이전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계상된다.

- 보험금 : 지불 -- 금융기관 (보험)
- 수취 -- 각 제도부문
- 순보험료 : 지불 -- 각 제도부문
- 수취 -- 금융기관 (보험)

순보험료와 보험금은 동액이 된다.

보험료는 (a), 보험금은 (b), (책임준비금순증 - 재산운용익)을 (c),

대리사무 수수료를 (d) 라 하면,

$$\begin{aligned} \text{순보험료} &= \text{총지불액} - \text{귀속서비스료} \\ &= [(a) - (c) + (d)] - [(a) - (b) - (c) + (d)] \\ &= (b) \\ &= \text{보험금} \end{aligned}$$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 추계한다.

추계대상기관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추계대상기관   |
|----------|--|
| 민간 비생명보험 | 本邦손해보험회사 (어선보험중앙회를 포함)<br>외국손해보험회사<br>선주상호보험조합<br>화재공제협동조합<br>농림어업신용기금<br>(농업신용보증업무)<br>농업공제조합<br>농업공제조합연합회<br>어업공제조합<br>어업공제조합연합회 |
| 공공 비생명보험 | 지진재보험<br>농업공제재보험<br>삼림보험<br>어업 및 어선等 재보험<br>무역보험 (61년도까지 수출보험)<br>자동차손해배상책임재보험<br>중소기업신용보험公庫<br>농업공제사업<br>교통화재공제사업                 |

○ 민간 비생명보험

- 本邦손해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

$$\text{산출액} = \text{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책임준비금순증} + \text{재산운용순익} + \text{대리사무수수료}$$

다만, 대리사무수수료는 본방 손해보험회사만 계상한다. 또 1996년도분부터 대리사업수수료는 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 항목의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text{보험료} = \text{전국의 해당계수} \times \text{분할비율}$$

분할비율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對전 국비를 구한다.

보험금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화재보험+자동차보험+自賠償보험) 보험금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화재보험 : 『화재보험통계』(손해보험료율算定會)의 「都道府縣別 物件別통계 표」에 의하여 「주택, 일반, 공장, 창고」計의 新계약보험료 및 지불보험금을 집계한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통계』(자동차보험료율산정회)의 「자동차보험·都道府縣別·담보종목별통계표」에 의하여 「대인, 대물, 탑승자, 차량」計의 계약보험료 및 지불보험금을 집계한다

自賠償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통계』(자동차보험료율산정회)의 「자배 책임보험계약府縣別통계표」에 의하여 新계약보험료 및 지불보험금을 집계한다.

준비금순증, 재산운용순익, 수취대리업수수료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위에서 구한 「보험료」의 自縣추계치의 전국계수에 대한 비율을 구한다.

• 선주상호보험조합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동경, 고베, 이마바리, 후쿠오카, 마츠야마)와 일본 소형선박상호보험조합(동경, 북큐슈)을 추계대상으로 하고 다음 式으로부터 추계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산출액 = 전국 해당계수 X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 :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직접조회 한다.

• 화재공제협동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의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손익계산서를 이용, 다음 式에 의한 산출액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산출액 = 正味수입보험료 - 正味지출보험금 - (준비금증가액-재산운용순익)

正味수입보험료 : 공제掛금 + 再공제반려금 + 기타 수입 - 해약반려금 - 만기반려금 - 再공제료 - 기타 반려금

正味지출보험금 : 공제금 + 지불備金 순증액 - 再공제금

준비금증가액 : 연말책임준비금 - 연초책임준비금

자산운용순익 : 이자 및 배당금수입 - 지불이자

- 농림어업신용기금 (舊 농업신용보험협회)

전국의 해당계수를 동경都에 계상한다.

- 농업공제조합

농업공제조합의 산출액

$$= \{(\text{공제과금} + \text{還付수입금}) - (\text{還付지불금} + \text{보험료} + \text{지불無事戻金})\} - (\text{공제금} + \text{지불備金순증액} - \text{보험금}) - \text{준비금중 보험계약자분의 책임준비금순증} + \text{자산운용순익}$$

-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산출액

$$= \{(\text{공제과금} + \text{再공제수수료수입} + \text{還付수입금}) - (\text{還付지불} + \text{再보험료} + \text{再공제과금} + \text{지불無事戻金})\} - \{\text{보험금} + \text{지불備金 순증액} - (\text{再보험금} + \text{再공제금})\} - \text{준비금중 보험계약자 지분의 책임준비금순증} + \text{자산운용순익}$$

- 어업공제조합

『어업화재보상제도의 현황』(수산청)의 단체별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다음 式으로부터 구한다.

어업공제조합의 산출액

$$= \text{순공제과금} - \text{공제금} - \text{지불備金 순증액} - \text{준비금 중 보험계약자 지분의 책임준비금순증} + \text{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순익 : (사업수익+관리수익) - (사업비용+관리비용)

농업공제조합, 농업공제조합연합회 및 어업공제조합에 대해서는, 上記의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해당계수를 본방 손해보험회사 등의 산출액의 對전국비로부터 분할한다.

- 어업공제조합연합회

전국의 해당계수를 동경都에 계상한다.

○ 公的 비생명보험

- 지진재보험, 농업공제재보험, 삼림보험, 어선재보험·어업공제보험, 무역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재보험, 주택금융公庫주택용자보험, 중소기업신용보험公庫 및 농업공제사업

전국의 해당계수를 동경都에 계상한다.

- 교통화재공제사업

各縣의 시정촌 결산통계의 교통화재공제사업을 이용하며, 다음 式에 의한다.

$$\text{교통화재공제사업의 산출액} = (\text{공제과금수입} - \text{공제위문금}) - \text{미경과공제과금}$$
$$\text{순증액} + \text{이월금} + \text{재산운용순익}$$

b. 중간투입

전국의 보험업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8. 부동산업

부동산업은 (1)부동산중개·관리업, (2)주택임대업 및 (3)부동산임대업으로 구성된다.

### (1) 부동산중개·관리업

#### a. 산출액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로부터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부동산매매·중개업에 대해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또는 縣단독조사 등에서 자료가 얻어지는 경우는 그것에 의한다.

### (2) 주택임대업

주택임대업의 산출액은 주택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로서, 가계가 사용하는 모든 주택 및 병용주택의 거주부분의 粗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이다. 자가 및 차가(借間도 포함)의 개인주택외에도 급여주택 및 각종 공영주택도 포함한다. 또한 자가 및 급여주택에 대해서는 귀속임료를 포함한다.

#### a. 산출액

지출계열에서 추계한 금액을 계상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각 산업이 투입한 부동산 임대료로 파악된 부동산 임대업 부분이며, 자기소유물(주택은 제외)의 유지를 위한 경비는 각 산업에 계상되고 여기서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 임대료의 수불은 소득지출계정의 재산소득의 지불로서는 계상되고, 산업의 생산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a. 산출액

산출액 = 전국의 해당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로부터 제3차 산업활동지수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9. 운수·통신업

### (1) 운수업

운수업은 ①철도업, ②도로운송업, ③水運업, ④항공운수업, ⑤기타 운수업으로 구성된다.

#### ① 철도업

##### a. 산출액

철도업에 있어서는, 驛을 사업소라 보고 自縣사업소부터 他縣사업소까지의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산출액 전부를 自縣이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 JR여객, ○ JR화물, ○ JR이외의 철도·궤도, ○ 공중케이블로 나누어 추계한다.

\* JR은 일본철도(Japan Rail)를 말함: 편집자주

#### ○ JR여객

各社마다 다음의 式으로 구한다.

JR여객 산출액 = 鐵軌道分영업수익 X 분할비율

鐵軌道分영업수익 : 전국제공자료 또는 『철도통계연보』(국토교통성)등에 의한다.

분할비율 : 전국제공자료등에서 승객수의 自縣구성비를 구한다.

#### ○ JR화물

JR화물 산출액 = 鐵軌道分영업수익 X 분할비율

鐵軌道分영업수익 : 전국제공자료 또는 『철도통계연보』(국토교통성)등에 의한다.

분할비율 : 『화물지역유동조사』(국토교통성)의 府縣상호간수송톤수표에서 철도분의 自縣발송톤수 對전국비를 구한다.

#### ○ JR이외의 철도·궤도(여객, 화물)

직접조회 또는 『철도통계연보』(국토교통성)에서 鐵軌道分영업수익을 집계한다.

또한, 관련사업자의 영업구역이 2縣이상 걸친 경우는, 다음의 式에 의한다.

JR이외의 철도·궤도 산출액 = 鐵軌道分영업수익 X 분할비율

鐵軌道分영업수익 : 직접조회 또는 『철도통계연보』(국토교통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직접조회에 의한 승객수(여객) 또는 荷物발송톤수(화물)

의 自縣구성비율 구한다.

○ 공중케이블 (로프웨이 · 리프트)

『철도수송통계연보』(국토교통성)에 의한 自縣분의 여객수입을 집계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② 도로운송업

도로운송업은 ○도로여객업, ○도로화물수송업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a. 산출액

○ 도로여객업

버스(승합, 대절), 회사택시에 대해서 관련사업자에 대한 직접조회 또는 운수국(육운지국) 자료에서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상기에 의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 버스(승합, 대절) 산출액 = 영업수익 X 분할비율

영업수익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전국値를 집계한다.

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수송인원수 對전국비를 구한다.

· 회사택시 산출액 = 영업수익 X 분할비율

영업수익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전국値를 집계한다.

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수송인원수 對전국비를 구한다.

○ 도로화물수송업

도로화물수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도로화물운송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수송톤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③ 수운업

수운업은 ○외양수송업, ○연해·내수면수송업, ○항만운송업으로 구성된다.

a. 산출액

○ 외양수송업

관련사업자에 대해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식에 의한다.

외양수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해운화물운송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항만통계연보』(국토교통성)에서 해상출입화물에 대한 외국무역 화물량(수출)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연해·내수면수송업

관련사업자에 대해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식에 의한다.

연해·내수면수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외양수송업과 동일

분할비율 : 『사무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연해운수업」 및 「내륙수운업」 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항만운송업

관련사업자에 대해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식에 의한다.

항만운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외양수송업과 동일

분할비율 : 『항만통계연보』(국토교통성)에서 해상출입화물량(輸移出+輸移入)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④ 항공운수업

a. 산출액

직접조회하여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직접조회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a) 직접조회에 의한 방법

정기항공, 부정기항공, 영업부문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정기항공

自縣공항관련정기노선에 대하여, 自縣항공發便分の 운임수입(여객·화물·우편물)을 집계한다.

· 부정기항공

自縣항공發便分の 운임수입 (여객·화물·우편물)을 집계한다.

· 영업부문

縣內영업소의 일반관리비, 관리업무비, 인건비 등을 집계한다.

縣內 비행장이 없고 항공회사의 영업소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部門에 대해서만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비행장이 自縣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이 부문에 대해서 추계할 필요 없다.)

(b) 분할에 의한 방법

국내선, 국제선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국내선

국내항공수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항공여객운송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항공수송통계연보』(총무성)등에 의한 「人킬로」(국내선)對 전국비를 구한다.

· 국제선

국제항공수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국내항공운송업과 동일

분할비율 : 『항공수송통계연보』(총무성)등에 의한 「人킬로」(국제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단, 縣內에 비행장이 없고 ○항공수송업의 영업부문만에 대한 산출액을 계상하는 경우는 縣內영업소의 일반관리비, 관리업무비를 중간투입액으로 한다.

⑤ 기타 운수업

기타 운수업은 ○화물운송처리, ○창고업, ○포장업, ○도로수송시설제공, ○기타 수운부대서비스, ○항공시설관리(산업)·기타항공付帶서비스, ○여행·기타운수付帶서비스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a) 산출액

○ 화물운송처리

운송국(육운支局)자료 등에서 화물수송처리사업수입을 집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화물운송처리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철도화물운송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철도관련 화물운송처리실적(톤수) 전국치는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自縣値는 운수국(육운지국) 자료에서 집계하여 당해실적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창고업

창고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창고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에서, 보통창고 연도평균 월말재고량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포장업

포장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 對 개인서비스업(생활관련)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무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포장업」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도로수송시설제공업

고속자동차道, 일반유료도로, 도시내유료도로, 지방공공단체유료도로, 路外주차장, 자동차 터미널로 나누어, 직접조회하여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 고속자동차道

『일본도로공단연보』에서 도로별요금수입을 집계한다.

또한, 도로가 2縣이상 걸친 경우는, 다음 式으로부터 구한다.

고속자동차로의 산출액 = 도로별요금수입 X 분할비율

도로별요금수입 : 『일본도로공단연보』에서 집계한다.

분할비율 : 『일본도로공단연보』의 고속도로구간별 교통량에서 도로별 전 교통량에 대한 自縣교통량의 비율을 구한다.

2縣間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도로연장 킬로의 自縣구성비에 의해 안분하여 自縣교통량을 산출한다.

· 일반유료도로

『일본도로공단연보』에서 도로별요금수입을 집계한다.

또한, 도로가 2천이상 걸친 경우는, 다음 式으로부터 구한다.

일반유료도로의 산출액 = 도로별 요금수입 X 분할비율

도로별 요금수입 : 『일본도로공단연보』에서 집계한다.

분할비율 : 일본도로공단 지방지국에서의 직접조회에 의한 도로연장 킬로의 自縣구성비를 구한다.

· 都市内유료도로

도시내유료도로의 산출액 = 도로별 요금수입 X 분할비율

도로별 요금수입 : 首都고속도로공단 및 阪神고속도로공단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분할비율 : 사업자에 직접조회하여 自縣분 교통량비율을 구한다. 교통량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연장 킬로비율을 구한다.

· 지방공공단체유료도로(유료다리, 유료터널을 포함)

各縣유료도로사업결산서, 지방공영기업결산서 또는 대상사업소의 직접조회에 의한 요금수입을 집계한다.

· 路外주차장

路外주차장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도로수송시설제공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자동차주차장연보』(국토교통성)의 都道府縣별 주차장정비상황에 의한 주차가능대수(도시계획주차장, 신고주차장, 附置의 무주차시설)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위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式에 의한다.

공영분과 민영분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공영분 : 지방공영기업결산서에서 연간주차장 수입을 집계한다.

민영분 = 入場車 1대당 주차요금 X 주차가능대수 X 이용률

入場車 1대당 주차요금 : 사업자에 대한 직접조회 또는 지방공영기업결산서에서 「연간주차장 수입/연간합계주차대수」로부터 구한다.

주차가능대수 : 『자동차주차장연보』(국토교통성)의 都道府縣別 주차장 정비상황에서 도시계획주차장, 신고주차장 및 附置의무주차시설의 주차가능대수를 집계하여, 이로부터 공영분의 주차가능대수를 공제한 후, 年베이스로 환산한다.

이용률 : 縣주차장협회 또는 縣主管課에 직접조회하여 구한다.

· 자동차 터미널

관련사업자에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 기타 수운부대서비스업

기타 수운부대서비스업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해운화물운수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기타 수운부대서비스업」 「민영」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항공시설관리(산업)·기타 항공부대서비스

비행장 所在縣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항공시설관리(산업)·기타 항공부대서비스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항공여객운수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항공수송업의 自縣추계치분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여행·기타 운수부대서비스

여행·기타 운수부대서비스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여행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운송대리점」 「여행업」 및 「운수알선업」 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2) 통신업

통신업은 ①우편업, ②전신·전화업으로 구성된다.

① 우편업

a. 산출액

「우정사업특별회계결산서」에서 업무수입중 우편업무수입을 산출액으로 한다. 지방우편국에서 직접조회하여 현별 우편업무수입을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우편업의 산출액 = 우편업무수입(전국치) X 분할비율

우편업무수입(전국치) : 『우정행정통계데이터(郵便編)』(우정사업청)에 의한다.

분할비율 : 『우정행정통계데이터(郵便編)』로부터 都道府縣별 引受内國우편수의 대 전국치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② 전신·전화업

전신·전화업은 ○전신·전화업, ○기타통신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다.

### a. 산출액

#### ○ 전신·전화업

##### · 국내 전신전화(이동통신은 제외)

직접조회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로부터 自縣分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국내전신전화(이동통신은 제외) 산출액

$$= \text{전국당해계수} \times \text{연도전환비율} \times \text{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국내전기통신업(이동통신은 제외)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전기통신사업자협회연보』(전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전화발신횟수(가입전화)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 이동통신업

직접조회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로부터 自縣分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이동통신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이동통신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전기통신사업자협회연보』(전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전화발신횟수(휴대전화+PHS)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 국제전신전화

직접조회 또는 『유가증권보고서』로부터 自縣分 영업수익을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국제전신전화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국제전기통신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전기통신사업자협회연보』(전기통신사업자협회)에서 가입전화 전화발신횟수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기타통신서비스업

기타통신서비스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국내전기통신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유선방송전화업」 및 「통신 부대서비스업」 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10.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1)교육, (2)연구, (3)의료·보건위생, 간호, (4)기타공공서비스, (5)광고업, (6)업무용물품 임대업, (7)자동차기계수리업, (8)기타對사업소서비스업, (9)오락업, (10)방송업, (11)음식점, (12)여관, (13)세탁·이용·목욕탕업, (14)기타對개인서비스업, (15)분류불명으로 이루어진다.

### (1) 교육

#### a. 산출액

교육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공공서비스업(교육·학술연구)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기타교육시설」의 「민영」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2) 연구

#### a. 산출액

연구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1)교육과 동일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학술연구기관」의 「개인」 및 「회사」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3) 의료·보건위생, 간호

#### ① 의료업

##### a. 산출액

의료업 산출액의 추계방법은, 의료지불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불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총액을 「총의료비」라 한다.

총의료비는 ○傷病치료비, ○정상분만비, ○室料차액등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 傷病치료비

公費부담분, 보험자등 부담분, 노인보건분, 환자 부담분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 公費부담분

= 지불기금경유분 + 국민건강보험경유분 + 지방공공단체 단독실시분

지불기금경유분 : 「기금연보」(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지부별관할 진료보수확정금액에서 「지불총계-사회보험료·노인보건」을 구한다.

국민건강보험경유분 : 「국민건강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의 都道府縣별 보험금부상항에서 「요양 제비용의 他法부담분+노인보건분 의료제비용의 他法부담분」을 구한다.

지방공공단체 단독실시분 : 관할기관의 조회에 의한다.

위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式에 의한다.

公費부담분 = 公費부담분(전국치) X 분할비율

公費부담분(전국치) : 「국민의료비」(후생노동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기금연보」의 지부별 관할진료보수 확정금액에서 「지불총액-사회보험합계-노인보건」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 보험자등 부담분

= 사회보험분 + 국민건강보험분(고액요양비를 포함) + 기타 노동재해보상분

사회보험분 : 「기금연보」의 지부별 관할별 진료보수 확정금액에서 사회보험합계를 집계한다. 공제조합, 조합관할健保에 대해서는, 요양附加給付分을 가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분(고액요양비를 포함)

『국민건강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의 都道府縣別 보험급 부상황에서 「요양급부+요양비+고액요양비」를 구한다.

기타 노동자재해보상분 : 노동자 재해보상, 공무재해 등 관련자료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text{보험자 부담분} = \text{보험자 부담분(전국치)} \times \text{분할비율}$$

보험자 부담분(전국치) : 『국민의료비』(후생노동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기금연보』의 지부별 관할별 진료보수확정금액에서 사회보험합계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노인보건분

노인의료급부액을 관할기관의 정산서로부터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text{노인보건분} = \text{노인보건분(전국치)} \times \text{분할비율}$$

노인보건분(전국치) : 『국민의료비』(후생노동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기금연보』의 노인보건의료급부상황에서 합계금액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환자부담분

환자부담분은 「전액自費分」 및 「公費 또는 보험의 일부부담」이 된다.

$$\text{환자부담분} = \text{환자부담분(전국치)} \times \text{분할비율}$$

환자부담분(전국치) : 『국민의료비』(후생노동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기금연보』의 지부별 관할별 진료보수확정금액(총액)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정상분만비

정상분만비에는 분만료 외에 진료보수自費分, 문서료, 급식비등을 포함한다.

$$\text{정상분만비} = \text{평균정상분만비} \times (\text{출생아수} + \text{임신 만28주이후 사산수})$$

평균정상분만비 : 대표적인 병원에의 직접조회 또는 주관과에서 파악한다.  
 출생아, 임신 만28주이후 사산수 : 縣主管課 자료에서 연도치를 집계한다.

○ 室料차액等

室料차액등은 室料차액, 치과차액,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

상기 항목에 대하여 縣主管課 또는 縣의사회 등에서 적당한 자료를 집계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 式에 의한다.

$$\text{室料차액등} = (\text{○상병치료비} + \text{○정상분만비}) \times \text{室料차액등 비율}$$

[의료업의 SNA 대응표]

| 추계항목     | 조사항목   |
|----------|--|
| 중간투입     | 약품비<br>진료재료비<br>급식재료비<br>진료소모비<br>소모품비·비품비<br>광열수도비·연료비<br>수선비<br>임대비<br>위탁비<br>기타경비(연구·연수, 기타(의료))<br>기타(醫業외 비용-지불이자) |
| 고용자보수    | 급여비<br>복리후생비   |
| 고정자본감모   | 감가상각비  |
| 생산 및 수입세 | 조세공과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의료·보건위생)을 준용한다. 또한, 직접추계에 의할 경우의

항목은上記 [의료업의 SNA 대응표] 를 참조.

## ② 보건위생

### a. 산출액

보건위생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공공서비스업(의료·사회보장)에 대한「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건강상담시설」및「기타 보건위생」의 종업자수합계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의료·보건위생)을 준용한다.

## ③ 간호

### a. 산출액

간호서비스의 산출액은 의료업과 같이 간호서비스의 비용지불자가 간호서비스기관에 납부한 지불총액을「총간호서비스費」로 집계한다.

총간호서비스비는 보험급부분, 公費부담분, 이용자부담분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각각의 부담액은 縣主管課 자료로부터 구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 (4) 기타 공공서비스

### a. 산출액

기타 공공서비스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공공서비스업(단체·기타)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협동조합」 및 「경제단체」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을 준용한다.

(5) 광고업

a. 산출액

광고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광고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b. 중간투입비율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6) 업무용물품임대업

업무용물품임대업은 사무용기계기구등 임대업, 자동차임대업으로 이루어진다.

a. 산출액

○ 사무용기계기구등 임대업

사무용기계기구등 임대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물품임대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자동차임대업」을 제외한 「물품임대업」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자동차임대업

운수국(육운지국) 또는 렌트카 협회에 직접조회하여 영업수익을 집계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음의 식에 의한다.

$$\text{자동차임대업의 산출액} = \text{전국당해계수} \times \text{연도전환비율} \times \text{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자동차임대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렌탈·리스 차량수에 대하여, 전국치를 『육운통계要覽』(국도교통성)에서, 自縣치를 운수국(육운지국) 자료에서 집계하고, 당해차량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의한다.

(7) 자동차기계수리업

자동차기계수리업은 ①자동차정비업, ②기계수리업으로 이루어진다.

① 자동차정비업

a. 산출액

$$\text{산출액} = \text{전국당해계수} \times \text{연도전환비율} \times \text{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개인기업경제조사연보』(총무성)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기  
타수리업및사업서비스업」의 「연도매출액/역년매출액」로 한  
다.

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운수성)에서 「자동차보유차량수」의 對전국비  
로 한다.

b. 중간투입

縣 I O 표의 비율을 준용한다.

$$\text{縣 I O 표의 비율} = (\text{내생부문계} + \text{家計外소비지출}) / \text{縣內생산액}$$

또는,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자동차기계수리업)을 준용한다.

② 기계수리업

a. 산출액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개인기업경제조사연보』(총무성)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기타 수리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年度매출액/曆年매출액」으로 한다.

분할비율 : 『사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기타 수리업」 종업원수의 對 전국 비로 한다.

b. 중간투입

縣 IO표의 비율을 준용한다.

縣 IO표의 비율 = (내생부문계+가계외소비지출) / 縣內생산액

또는,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자동차기계수리업)을 준용한다.

(8) 기타 對사업소서비스업

a. 산출액

기타 對사업소서비스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정 보서비스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종업자수(총수)의 對 전국비 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9) 오락업

a. 산출액

오락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 對 개 인서비스업(교양오락)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종업자수(총수)의 對 전국비 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 비율에 의한다.

(10) 방송업

방송업은 ○공영방송업, ○민간방송업, ○유선방송업으로 이루어진다.

a. 산출액

○ 공영방송업

공영방송업의 산출액 = 수신료 수입 + 교부금수입

수신료 수입 : NHK지방국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교부금수입 : 선거방송에 대한 것과 국제방송에 대한 것이 있다.

선거방송은 다음과 같다.

지사선거분에 대해서는, NHK지방국 또는 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국정선거분에 대해서는 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국정선거분 전국치를 NHK에 직접조회하고, 후보자수의 對 전국비로 분할한다.

국제방송분은 NHK에의 직접조회에 의하고, 동경都에 한해서만 가산한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래에 의한다.

$$\text{공공방송업의 산출액} = (\text{수신료} + \text{선거방송관련교부금}) \times \text{분할비율} + \text{국제방송관련교부금}$$

수신료, 교부금 : 『NHK연감』(일본방송협회)에 의한다.

분할비율 : 『NHK연감』(일본방송협회)에서 각종 방송수신계약수(총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민간방송업

민간방송업의 산출액 = 방송수입 + 제작수입 + 프로그램판매수입 - 대리점수수료  
縣內에 방송설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조회에 의한다.

○ 유선방송업

유선방송업의 산출액 = 방송수입 + 시설사용료수입

사업자에 대한 직접조회에 의한다. 또,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아래에 의한다.

유선방송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방송업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유선방송」종업자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아래의 항목에 대해 직접조회 또는 재무제표에서 집계한다.

항목은 재료비, 임대료, 광고선전비, 기타경비(판매수수료, 운반비, 기타판매비, 복리후생비, 교제비, 시험연구비, 외주가공비, 전력비, 가스수도료, 소모품비, 수선비, 기타 제조경비등).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11) 음식점

a. 산출액

음식점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음식점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에서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를 집계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12) 여관

a. 산출액

여관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의 여  
관기타 숙박소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여관」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13) 세탁·이용·목욕탕업

a. 산출액

세탁·이용·목욕탕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제3차산업활동지수』(경제산업성)에서 제3차산업활동지수 對개  
인서비스업(생활관련)에 대한 「연도지수/역년지수」를 구한다.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세탁·이용·목욕탕업」종업자  
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14) 기타 對개인서비스업

a. 산출액

기타 對개인서비스업의 산출액 = 전국당해계수 X 연도전환비율 X 분할비율

연도전환비율 : (13)세탁·이용·목욕탕업과 동일.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해당범위 종업자수(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중간투입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준용한다.

### (15) 분류불명

분류불명이란 SNA개념으로서는 국내총생산추계의 생산주체中에서 산업부문에 속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산업부문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추계대상으로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2절 정부서비스생산자

정부서비스라는 것은, 정부이외에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 공무 등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현 및 시정촌 등 행정기관 외에도 사회보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사업단 등 정부의 강한 통제下에 있는 것도 포함된다.

### a. 산출액

정부서비스의 산출액은 생산코스트 측면에서 집계한다.

추계순서는,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총액을 작성한 후, 전기가스·수도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생산계정을 작성한 다음 나머지를 공무로 한다.

추계에 있어서는, [정부서비스생산자의 활동분류와 회계구분의 관련표]를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정부서비스생산자의 활동분류와 회계구분의 관련표

| 중분류      | 소분류          | 정부산하기관          | 현·시정촌          |
|----------|--------------|-----------------|----------------|
| 전기가스·수도업 | 하수도<br>폐기물처리 | 없음<br>없음        | 공영사업회계<br>보통회계 |
| 서비스업     | 교육<br>학술연구기관 | 국립학교特會등<br>일반회계 | 보통회계<br>특별회계   |
| 공무       |              | 일반회계<br>사회보장기금  | 보통회계<br>사회보장기금 |

산출액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text{정부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 = \text{①고용자보수} + \text{②중간투입} + \text{③고정자본감모} \\ + \text{④생산 및 수입세}$$

#### ① 고용자보수 :

결산서로부터, 정부서비스생산자가 그 고용자의 노동제공에 대해서 지불한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임금·봉급과 고용자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 등 기타에 대한 고용주의 거출금을 집계한다. 여기에서 고용자란 것은, 정부 서비스 생산자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취업자를 가르키며, 특별직의 공무원이나 의원·위원등도 포함된다.

② 중간투입:

결산서에서 「중간투입」 해당 항목을 집계한다.

또한, 정부서비스생산자가 경상계정에 있어 구입한 새로운 상품의 구입부터 각종 중고품 및 폐품·쓰레기 순판매 (판매-구입)를 원칙으로 공제하지만, 중고품에 있어서도 다른 縣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투입으로 계상한다.

「수주형 소프트웨어」는 결산서등에서 직접공제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으로 중간투입에서 공제한다.

(수주형 소프트웨어(아래의 소프트웨어)의 중간투입에서 공제)

소프트웨어의 금액 :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전국비율)

X (自縣分の 중간투입)

·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의 전국비율 =

(소프트웨어의 전국치) / (중간투입의 전국치+소프트웨어의 전국치)

· 정부서비스생산자의 내역(전기·가스·수도, 서비스, 공무)별로 추계한다.

③ 고정자본감모:

건물의 고정자본감모와 건물이외의 사회자본감모, 수주형 소프트웨어의 자본감모가 있다.

(a) 건물의 고정자본감모 : 다음 式에 의한다.

고정자본감모 = 건물면적 X 단위면적당 평가액 X 감가상각률 + 자본우발손

정부산하기관, 현·시정촌의 보통회계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는 건물에 한한다.

건물면적 :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조회, 현시정촌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상황조」(총무성), 「공유재산표」 등을 이용해 추계한다.

단위면적당 평가액 : 縣자료로부터 추계한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서 추계한 비율에 의한다.

감가상각률 : 縣單獨調査등으로부터 추계한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서 추계한 비율에 의한다. 지방공영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자본우발손 : 전국 자본우발손 X (縣의 감가상각비/전국의 감가상각비)

(b) 건물이외의 사회자본감모

전국의 제공자료에서 집계한다.

또한, 국가, 현, 시정촌의 분할방법은 각각의 고정자본형성의 과거 5년분의 비율에 의한다.

(c) 수주형 소프트웨어의 자본감모

전국의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소프트웨어 감모액 X

自縣 소프트웨어 금액 / 전국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소프트웨어 금액

④ 생산 및 수입세 :

해당 항목으로서는 국유재산소재시정촌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소재시정촌조성교부금, 소비세, 자동차중량세등으로, 이것들의 照會調査 또는 「세입세출결산서」,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등에서 집계한다.

[정부서비스생산자의 細항목의 파악에 대해서]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 = 전기가스·수도업의 산출액 + 서비스업의 산출액 + 공무의 산출액

전기가스·수도업 : 「지방재정통계연보」(자치성) 및 결산서 통계자료에서, 명세항목을 [SN대응표] 로부터 집계한다.

서비스업 : 아래와 같다.

교육은 「지방재정통계연보」(자치성), 결산서통계자료에서 「교육비」 중의 「초등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특수학교비」, 「유치원비」, 「사회교육비」, 「보건체육비중의 학교급식비분」, 「大學校學費」에 대해서는 [SN대응표] 로부터 집계한다.

학술연구기관은, 총무성통계국 「과학기술연구조사연구기

관조사」 또는 결산부속서 등에 의해 費目항목을 [SN대응표] 로부터 집계한다.

公務 : 앞의 2항목의 잔차로서 파악한다.

[SN대응표]

[전기·가스·수도업]

| 추계항목     | 조사항목                                  |
|----------|---------------------------------------|
| 중간투입     | 연료비<br>동력비<br>수선비<br>재료비<br>임차료<br>기타 |
| 고용자보수    | 인건비                                   |
| 고정자본감모   | 감가상각비                                 |
| 생산 및 수입세 | 기타 조세공과                               |

[교육·학술연구기관·사회교육]

| 추계항목     | 조사항목   |
|----------|--|
| 중간투입     | 買入原價<br>소모품비<br>광열수도료<br>인쇄제본비<br>임차비<br>기타 사업경비 |
| 고용자보수    | 인건비  |
| 고정자본감모   | 감가상각비  |
| 생산 및 수입세 | 기타 조세공과  |

(注意)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공통사항임.

### 제3절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는 「교육」 과 「기타」 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 a. 산출액

전국의 당해계수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 (총무성) 종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b. 중간투입

전국의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산출액등에서 중간투입 비율을 구한다.

## 제4절 수입세·관세

### a. 범위

수입세·관세는 수입품 상품세, 수입품에 관련된 소비세가 있다.

관세란 관세定率表에 근거해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이다.

수입품 상품세란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내국소비세이다.

### b. 추계방법

수입세·관세 = 전국의 당해계수 X 분할비율

전국의 당해계수 : 자료상의 제약에 따라 曆年値로 대체한다.

분할비율 :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의 「소계」 (산업+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對전국비율로 분할한다.

또한, 수입세·관세의 산업배분은 그 특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괄해서 난외처리한다.

## 제5절 (공제)총자본형성에 대한 소비세

각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의 소비세공제액의 합계치를, 동액 일괄공제한다.

## 제6절 (공제)귀속이자

금융업에서 산출액으로 계상한 귀속이자를, 동액 일괄공제한다.

## 제2장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총생산

산업별 산출액에서, 산업별 중간투입액을 공제하여 구한다.

## 제3장 고정자본감모

고정자본감모는 건축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 가능한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통상의 마모 및 손실에서 오는 감모분을 평가한 액으로 총생산의 일부로 본다.

또한, 회사자본 및 수주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고정자본감모를 계상한다.

1. 산업, 2. 정부서비스생산자, 3.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모든 활동에 대해 추계한다. 추계순서는, 원칙으로 산출액에 고정자본감모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고정자본감모 = 산출액 X 고정자본감모 비율

고정자본감모 비율 = 감가상각비율 X (1+자본우발손 비율)

자본우발손 비율 : (전국 자본우발손 / 전국 감가상각비)

자본우발손 비율에 대해서는 쏘산업공통이므로, 아래 경제활동별로 감가상각비율을 구한다. 또한,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1. 산업

#### (1) 농림수산업

##### ① 농업

감가상각비율 : 농가1호당 감가상각비 / 농가1호당 농업粗수익

자료 : 『농업경영동향통계』(농림수산성)등에 의한다. (『농업경영동향통계』에 의한 경우는, 농업 중간투입의 추계와 같이 조정율을 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한 것은 농업의 산출액 부분을 참조할 것.)

##### ② 임업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③ 수산업

감가상각비율 : 어가1호당 감가상각비 / 어가1호당 어업粗수익

자료 : 「어가경제조사보고」(농림수산성)

## (2) 광업

감가상각비율 : 1사업소당 감가상각비 / 1사업소당 산출액

자료 : 「本邦광업의 추세」(경제산업성)에서 집계한다.

암석채석업에 대해서는, 사업소 직접조회에 의한다.

## (3) 제조업

감가상각비율 : 「공업통계표」(경제산업성)에서 집계한다.

단, 9인이하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10~29인 규모의 산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율을 준용한다.

## (4) 건설업

감가상각비율 : 縣主管課, 건설업자등록등의 결산서에 의한 비율을 집계한다.

注)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5) 전기가스·수도업

감가상각비율 : 전기가스·수도업은 각각의 관련기관에 조회.

단, 폐기물 처리업은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6) 도매·소매업

감가상각비율 : 縣單獨의 법인기업통계, 개인기업경제조사등로부터, 매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율을 집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7) 금융·보험업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8) 부동산업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9) 운수·통신업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10)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율 : 관련기관에 조회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고정자본감모비율을 준용한다.

## 2. 정부서비스생산자

정부서비스생산자 생산액 추계의 고정자본감모를 참조.

## 3.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전국의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산출액등에서 고정자본감모 비율을 구한다.

## 제4장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순생산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총생산에서 고정자본감모를 공제하여 구한다.

## 제5장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 생산 및 수입세

#### a. 범위

생산 및 수입세라는 것은 ①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된 조세로, ②세법상 비용산입이 인정되어지고, ③그 부담이 최종구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산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소득부등에 대한 경상세와 구별된다.

#### b. 추계방법

생산 및 수입세는 원칙적으로 납세한 경제활동부문으로 계상하며, 모든 경제활동 부문이 납세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①초경제활동부문에 과세되는 생산 및 수입세(부동산관련세등, 이는 산업중의 특정부문이 납세하고 있는 것이 명확) ②각산업부문에 과세되는 생산 및 수입세(주세등)별로 추계한다.

- ① 초경제활동부문(산업, 정부, 비영리)에 과세되는 생산 및 수입세(세목 및 과세주체는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를 참조)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別로,

1.부동산관련세, 2.자동차관련세, 3.사업세등, 4.인지수입, 5.소비세 등을 추계하지만,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는 세제상의 비과세등을 고려해서 부동산관련세, 자동차관련세만 계상한다.

#### ○ 산업

[누적법] 또는 [안분법] 으로 추계한다.

[누적법]

『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 및 縣主管課 등의 자료로부터 縣(전국) 납세액을 집계한다.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구한 납세액은 정부서비스생산자,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에서 추계한 금액을 공제한다.

[안분법]

전국의 당해계수(경제활동별)를 총생산의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1) 정부서비스생산자

결산서 또는 직접조회하여 생산 및 수입세액을 집계한다.

2)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단체실태조사』(縣主管課) 또는 縣單獨調査에 의한 생산 및 수입세액을 집계하거나, 전국 당해계수(생산 및 수입세(공제)보조금) 총생산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3) 산업에 대해 [누적법]에 의한 경우에는 「1), 2)」에서 구한 생산 및 수입세액을 각각의 부동산관련세분과 자동차관련세분으로 분할하고, 또한 부동산관련세에 대해서는 성질(ㄱ.토지분, ㄴ.가옥분, ㄷ.상각자산분)별로 분할한다.

부동산관련세분과 자동차관련세분으로 분리할 때에는 부동산관련세, 자동차관련세의 납세액(정부비영리분공제전)의 구성비를 이용한다.

부동산관련세에 대한 성질(ㄱ.ㄴ.ㄷ.)별로 분할할 때에는, 부동산관련세의 납세액(정부비영리분공제전)의 성질(ㄱ.ㄴ.ㄷ.)별 구성비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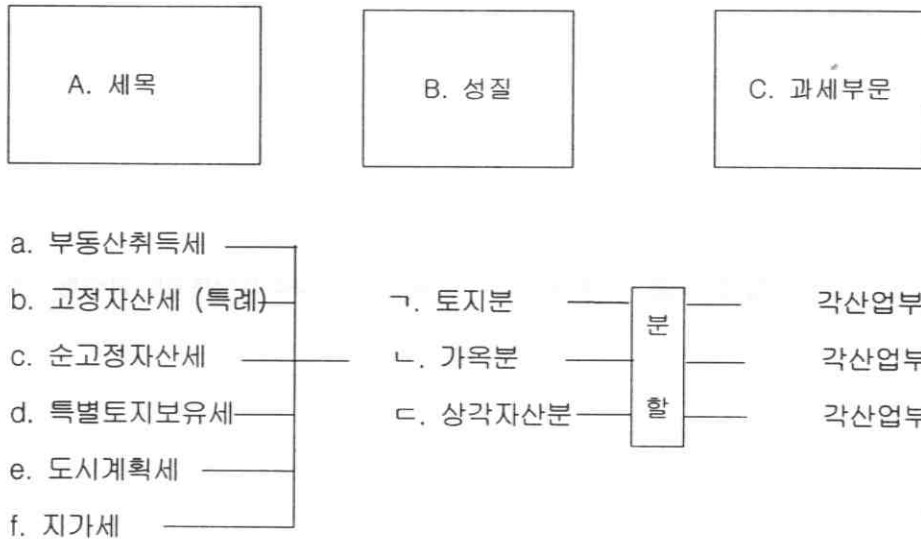
\* 「3)」에서 분리한 생산 및 수입세액은 산업부문 추계할 때 납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생산 및 수입세를 누적법으로 추계할 경우의 구체적인 추계방법]

## 1. 부동산관련세

부동산관련세, 고정자산세(특례분), 순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 지가세

各稅의 납세액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을 성질별 (ㄱ.토지분, ㄴ.가옥분, ㄷ.상각자산분)로 분리해서, 산업부문으로 분할한다. 또한, 성질(ㄱ.ㄴ.ㄷ.)별 단계에서 정부서비스생산자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분을 공제한다.



### A. 세목

#### a. 부동산취득세

『都道府縣의 과세상황에 관한 조사』(자치성)의 「토지조정액」 및 「가옥조정액」의 구성비로 ㄱ.토지분과 ㄴ.가옥분으로 분리한다.

#### b. 고정자산세(특례)

ㄷ.상각자산분으로 한다.

c. 순고정자산세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의 「토지」, 「가옥」, 「상각자산」을 ㄱ.토지분, ㄴ.가옥분, ㄷ.상각자산분으로 계상한다.

d. 특별토지보유세

ㄱ.토지분으로 한다.

e. 도시계획세

「c. 순고정자산세」에 있어 ㄱ.토지분, ㄴ.가옥분의 구성비를 준용한다.

f. 지가세

ㄱ.토지분으로 한다.

B. 성질

「A.세목·a. ~ f.稅」의 성질별 (ㄱ.토지분, ㄴ.가옥분, ㄷ.상각자산분)의 계수를 각각 가산한다.

C. 과세부문

ㄱ.토지분(주택임대업분, 기타 산업분으로 분할한다.)

· 주택임대업분

토지분의 납세액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고정자산의 가격등 개요조서』(총무성)의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 표준액」 /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기타 산업분

기타 산업분은 토지분에서 주택임대업분을 공제한 잔차로 한다.

또, 각 산업부문에 분할비율은 총생산을 이용하지만, 주택임대업(上記推計濟) 및 세제상의 비과세를 고려한 통신업(우편업분)은 제로로 한다.

#### ㄴ. 가옥분

가옥분의 납세액 X 분할비율

분할비율 : 쏘산업의 총생산을 이용하지만, 세제상의 비과세를 고려해 통신업(우편업분)은 제로로 한다.

#### ㄷ. 상각자산분

ㄴ.가옥분의 비율을 준용하지만, 주택임대업분은 제외한다.

## 2. 자동차관련세

자동차관련세는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1/2로 한다.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중량세(양여분), 검사등록인지수입,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경자동차세 이상 각각의 1/2

납세액(정부비영리분공제후) X 산업분할비율

납세액 :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산업분할비율 : 『육운통계要覽』(국토교통성)의 「트럭의 都道府縣別·산업별등록차량수」에서 집계하지만, 당해자료는 평성3년(1991년)도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고정해서 이용한다.

## 3. 사업세等 : 사업세, 사업소세

납세액 X 산업분할비율

납세액 :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산업분할비율 : 산업별 총생산을 이용하지만, 세제상의 비과세등을 고려해 농업, 임업, 광업, 통신업(우편업분), 방송업(공공방송분)은 제외.

## 4. 인지수입

납세액 X 산업분할비율

납세액 :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산업분할비율 : 산업별 총생산을 이용하지만, 세제상의 비과세등을 고려해 통



신업(우편업분)은 제외.

## 5. 소비세

소비세는 「납세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하고,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에 관한 공제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지출계열(자본형성된 것)에서는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에 관한 공제액」이 세액에서 공제되어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계열에 있어서는 「기타」의 항목을 만들어 일괄공제하고, 지출계열과 산업계열을 일치 시키는 것으로 한다.

추계방법의 개요는 「산업분의 소비세」는 납세의무가 생긴 장소(사업소)와 납세지(기업)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사업소베이스)는 직접추계, 법인(기업베이스)은 전국분할로 하는데, 분할비율은 세금의 성격에 따라 총생산(부가가치)을 이용한다.

또한, 각 산업부문에의 분할도 총생산(부가가치)를 이용한다.

$$\text{소비세액} = \{ \text{납세액}(\text{a.개인사업자납세액} + \text{b.법인납세액}) - \text{c.환급금액} + \text{d.설비·재고투자공제액} \} \times \text{e.산업분할비율}$$

a. 개인사업자납세액 :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b. 법인납세액 : 전국납세액 X 분할비율

전국납세액 :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참조.

분할비율 : 비과세업종을 고려해 산업(금융·보험업을 제외) 총생산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c. 환급금액 : 전국환급금액 X 분할비율

전국환급금액 : 『국세청통계연보』에서, 소비세의 환급금액을 집계한다.

분할비율 : 『국세청통계연보』에서, 소비세 收納濟額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d. 설비·재고투자공제액 = 지출계열에서 추계한 全額(민간주택+기업설비분 +재고품증가분)을 계상한다.

e. 산업분할비율

각 경제활동부문에의 분할은 총생산을 이용하지만 아래의 점에 대해서는 주의한다.

ㄱ.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면제

과세매출액 3,000만엔 이하의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각종통계 또는 전국 비율을 준용해 그 비율을 구한다.

또한, 간이과세제도, 한계공제제도등의 부담금경감조치 적용업자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료상의 제약에 따라 산업분할時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ㄴ. 특정업종의 처리

- i. 금융업 : 귀속이자분은 소비세 없음. (수수료만 과세대상)
- ii. 보험업 : 보험업은 비과세 처리하기 때문에 소비세는 없음.
- iii. 부동산업(주택임대업) : 귀속집세분은 소비세 없음. (생산·지출계열의 추계에서는 소비세포함)
- iv. 서비스업(교육·의료·간호) : 비과세 처리이므로 소비세 없음.

② 각 산업부문에 해당되는 생산 및 수입세

[생산 및 수입세 일람표] 를 참조하고, 각 산업부문에 계상한다.

또한,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은 특별회계가 시정촌에 대해 지불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생산 및 수입세로 한다. 또한, 관세와 수입품상품세는 산업별로 배분하지 않고, 「수입세·관세」로 일괄계상한다.

<생산 및 수입세 산업별 과세부문 일람표>

2000년 12월 5일 현재

| 세 목               | SNA 산업분류 | 비 고   |
|-------------------|----------|---|
| 국세                |          | 「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각국세국<br>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
| <수경제활동(산업)부문>     |          |   |
| 지가세               | 전산업      |   |
| 소비세               | 전산업      |   |
| 자동차중량세의 1/2       | 전산업      |   |
| 자동차중량세 (양여분)의 1/2 | 전산업      |   |
| <경제활동(산업)부문>      |          |   |
| 주세                | 식료품      |   |
| 담배세               | 식료품      |   |
| 담배특별세             | 식료품      |   |
| 휘발성세              | 석탄·석유제품  |   |
| 휘발성세(양여분)         | 석탄·석유제품  |   |
| 석유가스세             | 도소매업     |   |
| 석유가스세(양여분)        | 도소매업     |   |
| 석유세               | 광업       |   |
| 항공기연료세            | 운수업      |   |
| 항공기연료세(양여분)       | 운수업      |   |
| 튼세 *1             | 운수업      | * 「1:전국치를 외국무역개항(일본무역<br>협회)」의 <u>주요항별수입액</u> 으로 분할 |
| 특별튼세 *1           | 운수업      |   |
| 지방도로세             | 석탄·석유제품  |   |
| 전원개발 촉진세          | 전기가스수도업  |   |
| 알코올 전매사업특별회계납부금   | 도소매업     |   |
| 기타                | 분류불명     |   |
|                   |          |   |
|                   |          |   |
|                   |          |   |
|                   |          |   |
|                   |          |   |

| 세 목   | SNA 산업분류  | 비 고  |
|---|---|--|
| <p>都道府縣세</p> <p>&lt;全경제활동(산업)부문&gt;</p> <p>사업세<br/>부동산 취득세<br/>고정자산세 (특례) *2<br/>자동차세의 1/2<br/>자동차 취득세의 1/2<br/>지방소비세</p> <p>&lt;各경제활동 (산업)부문&gt;</p> <p>광구세<br/>도부현담배세<br/>골프장이용세</p> <p>경유거래세<br/>법정외보통세<br/>구법에 의한 세</p> | <p>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p> <p>광업<br/>식료품<br/>對개인서비스업<br/>(오락업)<br/>도소매업<br/>분류불명<br/>분류불명</p> | <p>「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 도도부<br/>縣主管課자료등에 의한다.</p> <p>*2: 일정액 이상의 대규모 상각자산분</p> |

| 세 목   | SNA 산업분류  | 비 고                      |
|---|---|--------------------------|
| <p>시정촌세</p> <p>&lt;全경제활동(산업)부문&gt;</p> <p>고정자산세<br/>도시계획세<br/>특별토지보유세<br/>사업소세<br/>경자동차세의 1/2</p> <p>&lt;各경제활동(산업)부문&gt;</p> <p>광산세<br/>시정촌담배세<br/>목욕세</p> <p>水利地益稅<br/>법정외보통세<br/>舊法에 의한 稅</p> | <p>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br/>전산업</p> <p>광업<br/>식료품<br/>對개인서비스<br/>(여관)<br/>분류불명<br/>분류불명<br/>분류불명</p> | <p>도도부縣主管課 자료등에 의한다.</p> |

| 세 목   | SNA 산업분류   | 비 고   |
|---|--|---|
| 세외부담금<br><br><중경제활동(산업)부문><br><br>인지수입 (국가)<br><br><개경제활동(산업)부문><br><br>일본중앙경마회납부액 *3<br>발전水利사용료(都道府縣)<br>발전水利사용료(시정촌)<br>수익사업수입(都道府縣)<br>수익사업수입(시정촌) | 전산업<br><br><br><br><br>對개인서비스(오락업)<br>전기·가스·수도업<br>전기·가스·수도업<br>對개인서비스(오락업)<br>對개인서비스(오락업) | 결산서 및 직접조회에 의한다<br><br><br><br><br><br><br><br><br><br><br>*3:전국치를 서비스업의 총생산으로 분할 |

注 1 : 자동차세,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 및 경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가계부담분은 직접세, 그 이외의 부담분은 생산 및 수입세가 되지만, 가계부담분과 그 이외의 비율 상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등분하고 있다.

注 2 : 아래의 세에 대해서는, 해당년에 폐지했기 때문에,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① 유가증권거래소세→1999년 4월 폐지
- ② 유가증권거래세→1999년 4월 폐지
- ③ 특별지방소비세→2000년 4월 폐지

| 세 목                  | SNA 산업분류    | 비 고   |
|----------------------|-------------|---|
| 국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         |             | 총회계의 결산서등에 의한다.                                   |
| <중경제활동(산업)부문>        |             |   |
| 없음                   |             |   |
| <개경제활동(산업)부문>        |             |   |
| 재무성조폐국특별회계           | 금속제품        |   |
| 재무성인쇄국특별회계           | 출판·인쇄       |   |
| 농수성식량관리특별회계(업무계정) *4 | 도소매업        | *4:총생산으로 분리                                       |
| 농수성국유임야사업특별가계 (업무계정) | 임업          |   |
| 경제산업성 알코올 전매사업특별회계   | 도소매업        |   |
| 우정사업청우정사업특별회계 *5     | 금융·보험업, 통신업 | *5: 「세입세출결산명세서(우정사업청)」의 우편업무수입과 외환대체업무수입의 구성비로 분할 |

## (공제) 보조금

### a. 범위

보조금이란 것은 산업진흥 또는 시장가격을 낮추는 등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급부된, 수급자 측에 있어서 수입으로 처리된 모든 경상적 교부금이다. 공공기업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도 보조금에 포함된다. 보조금에 의해 그 금액만큼 시장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생산 및 수입세라 간주할 수 있다.

한편,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및 가계로의 경상적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경상이전으로 처리한다. 또, 투자 또는 자본자산, 운전자산의 손실보전을 위해 산업에 대해 행해지는 이전은 보조금이 아니라 자본이전으로 분류된다.

### b. 추계방법

[누적법] 또는 [안분법]에 따라 추계한다.

[누적법]

① 중앙정부의 산업보조금, ② 지방정부를 경유한 보조금, ③ 지방공영기업으로의 보조금별로 추계한다.

#### ① 중앙정부의 산업보조금

[보조금 일람표]에 따라 결산서등에서 집계하여, 대응산업으로 계상한다.

#### ② 지방정부를 경유한 보조금

縣主管課 자료등에서 집계하여, 수취산업으로 계상한다.

#### ③ 지방공영기업으로의 보조금

縣主管課 자료등에서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



| 목     | 산업      |
|-------|---------|
| 상수도   | 수도업     |
| 공업용수도 | 수도업     |
| 간이수도  | 수도업     |
| 교통    | 운수업     |
| 전기    | 전기업     |
| 가스    | 가스업     |
| 병원    | 의료·보건위생 |
| 항만정비  | 운수업     |
| 시장    | 도매업     |

| 목     | 산업      |
|-------|---------|
| 도축장   | 식품      |
| 관광시설  | 기타공공서비스 |
| 택지조성  | 건설업     |
| 유료도로  | 운수업     |
| 주차장정비 | 운수업     |
| 기타    | 기타공공서비스 |

[안분법]

전국의 당해계수(경제활동별)를 총생산의 對전국비에 의하여 분할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생산 및 수입세 -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보조금 해당부문 일람표>

(국가관련보조금:일반회계)

2002년 1월 24일 현재

| 성칭명    | 항            | 목                       | SNA산업분류     |
|--------|--------------|-------------------------|-------------|
| 외우본성   | 외우본성         | 정부개발원조국제무화민간단체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공조기구용냉매회수기구도입촉진사업비보조금   | 폐기물처리업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고령자관련시정환경정비사업비보조금       | 분류불명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신사업창출촉진등정보제공등사업비보조금     | 금융업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일본국제박람회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화학물질안전대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해외경제교류등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해외시장조사등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산학연휴인재육성지원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산업부흥지원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정부개발지원해외시장조사등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정부개발지원일본무역진흥회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정부개발지원무역보험특별회계의 도입      | 보험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대학등기술이전촉진비보조금           | 금융업         |
| 경제산업본성 | 경제산업본성       | 일본무역진흥회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공업재배치촉진대책비   | 지역진흥정비공단보급금             | 건축          |
| 경제산업본성 | 경제협력비        | 정부개발보조해외경제협력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협력비        | 정부개발보조경제산업인재육성지원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경제협력비        | 정부개발지원연구협력사업비보조금        | 연구          |
| 경제산업본성 | 항공기국제공동개발촉진비 | 항공기개발조성사업교부금            | 기타운송기계      |
| 경제산업본성 | 광공업기술진흥비     | 신규산업창조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경제산업본성 | 정보처리진흥대책비    | 정보활용인수효율화지원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정보처리진흥대책비    | 정보세큐리티대책추진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정보처리진흥대책비    | 신규산업창조정보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경제산업본성 | 정보처리진흥대책비    | 정보처리기술보급등사업비보조금         | 분류불명        |
| 경제산업본성 | 정보처리진흥대책비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비보조금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섬유산업구조개선대책비  | 섬유산업활성화대책조사위탁비          | 회사업소서비스     |
| 경제산업본성 | 섬유산업구조개선대책비  | 중소기업종합사업단보조금            | 기계기타섬유제품제조업 |
| 후생노동본성 | 후생노동본성       | 정부개발지원아시아노동기술협력회동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후생노동본성 | 사회복지제비       | 사회복지시설직원등퇴직수당공제사업급부비보조금 | 금융업         |
| 후생노동본성 | 과학연구비        | 결핵연구소보조금                | 연구          |
| 후생노동본성 | 과학연구비        | 정부개발원조결핵연구소보조금          | 연구          |
| 후생노동본성 | 국립병원및요양소경영비  | 국립병원특별회계의 도입            | 의료·보건위생     |
| 후생노동본성 | 국립병원및요양소경영비  | 국립병원특별회계의 도입            | 의료·보건위생     |
| 후생노동본성 | 사회복지제비       | 사회복지·의료사업단사무비보조금        | 금융업         |
| 국토교통본성 | 국토교통본성       | 버스운행대책비보조금              | 도로운수업       |
| 국토교통본성 | 국토교통본성       | 정부개발원조해외기술협력진흥사업비등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국토교통본성 | 국토교통본성       | 정부개발원조해외건설계획조사비등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국토교통본성 | 국토교통본성       | 지역진흥정비공단보급금             | 토목업         |
| 국토교통본성 | 운수시설정비사업단보조금 | 운수시설정비사업단보급금            | 금융업         |
| 국토교통본성 | 운수시설정비사업단보조금 | 양도선건설비등이자보급금            | 금융          |
| 국토교통본성 | 해운조성비        | 이도항로선박근대화건조비보조금         | 水運업         |
| 국토교통본성 | 해운조성비        | 이도항로보조금                 | 水運업         |
| 국토교통본성 | 관광사업비        | 국제관광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성칭명    | 항            | 목                       | SNA산업분류  |
|--------|--------------|-------------------------|----------|
| 국토교통본성 | 택지건설등 사업비    | 도시개발자금융통특별회계의 조입        | 분류불명     |
| 국토교통본성 | 택지대책제비       | 주택금융공庫보급금               | 금융업      |
| 국토교통본성 | 택지대책제비       | 도시기반정비공단보급금             | 주택임대업    |
| 국토교통본성 | 택지대책제비       | 특정임대주택건설용자이자보급보조        | 금융업      |
| 국토교통본성 | 택지대책제비       | 농지소유자등임대주택건설용자이자보급금     | 금융업      |
| 국토교통본성 | 선원고용촉진대책사업비  | 선원고용촉진대책사업비보조금          | 분류불명     |
| 국토교통본성 | 철도정비기금조성비    | 철도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재무성본성  | 국민생활금융공庫보급금  | 국민생활금융공庫보급금             | 금융업      |
| 식량청    | 식량청          | 농산물검사인영화이행정비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총무성    | 지방공영기업조성금    | 공영기업금융공庫보급금             | 금융업      |
| 총무성    | 지방공영사업조성금    | 공영지하고속철도사업조성금           | 철도업      |
| 총무본성   | 총무본성         | 정부개발원조통신·방송국제협력진흥사업비보조금 | 對사업소서비스  |
| 총무본성   | 총무본성         | 통신·방송기구조성금              | 對사업소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경영지원대책비보조금          | 분류불명     |
| 내각부    | 오끼나와개발청      |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庫보급금         | 금융업      |
| 농림수산본성 | 국산대두등생산안정대책비 | 대두작경영안정자금등보조금           | 기타 耕種농업  |
| 농림수산본성 | 국산대두등생산안정대책비 | 대두생산자단체등교부금             | 기타 耕種농업  |
| 농림수산본성 | 농업경영대책비      | 농업경영대책민간단체사업추진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축산진흥종합대책사업추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축산진흥종합대책민간단체추진비보조금      | 축산양장업    |
| 농림수산본성 | 농업보험비        | 농업공제사업운영기반강화대책비보조금      | 보험       |
| 농림수산본성 | 우육등관세재원축산진흥비 | 우육등관세재원축산진흥종합대책비보조금     | 축산양장업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어업금융비      | 농산어촌진흥긴급대책비보조금          | 금융업      |
| 외부본성   | 외부본성         | 국제우호단체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외부본성   | 외부본성         | 국제우호민간단체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식량청    | 주요식량수급안정비    | 식량관리특별회계의 조입            | 정곡제분업    |
| 수산청    | 어업조사취체비      | 해양수산자원개발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수산청    | 어업조사취체비      | 어항해황정보서비스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수산청    | 어업조사취체비      | 어업협정등실시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기간어업종합재편추진등민간단체사업비보조금   | 수산업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어업공제사업업무비보조금            | 보험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어업공제사업실시비보조금            | 보험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어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금            | 금융업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어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등보조금         | 금융업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어업재보험및어업공제보험특별회계의 조입    | 보험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국제어업진흥협력사업비보조금          | 수산업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정부개발원조국제어업진흥협력사업비보조금    | 수산업      |
| 수산청    | 수산업진흥비       | 농림어업신용기금보급금             | 금융업      |
| 수산청    | 수산청          | 해외어장조업대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경영안정관련보증대책비보조금          | 금융업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소규모사업경영지원사업비보조금         | 對사업소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연휴조직대책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연휴조직대책추진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기계류신용특례보험보급금            | 보험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긴급금융환경변화대응신용보증협회기금보조금   | 금융업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소규모사업대책추진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경영자원강화대책비보조금        | 對사업소서비스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금융공庫보급금             | 금융업      |

| 성칭명        | 항                       | 목                                     | SNA산업분류  |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경영개선자금융자보급금                       | 금융업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경영지원사업비보조금                        | 분류불명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종합사업단보조금                          | 보험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기업등재해복구자금이자보급금                      | 금융업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대책비                 | 중소상업진흥대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성(이체분) | 오끼나와농업진흥비               | 함삼당대책비보조금                             | 기타 식료품   |
| 농림수산성(이체분) | 오끼나와농업진흥비               | 당업진흥임시조성비                             | 기타 식료품   |
| 농림수산본성     | 수전농업경영확립대책비             | 수전농업경영확립조성등보조금                        |          |
| 농림수산본성     | 종합식료대책비                 | 국제협력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종합식료대책비                 | 정부개발원조국제협력사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종합식료대책비                 | 정부개발원조국제협력사업비민간단체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종합식료대책비                 | 대두비축대책비보조금                            | 도매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계란가격안정대책비보조금                          | 축산양장업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운영비보조금                 | 연구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농축산업진흥사업단교부금                          | 축산양장업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야채가격안정대책비보조금                          | 기타공공서비스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야채수급균형종합추진비보조금                        | 기타 경작농업  |
| 농림수산본성     | 농업생산진흥비                 | 유통사료대책비보조금                            | 기타 식료품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수산업기술진흥비              |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운영비보조금                 | 연구       |
| 농림수산본성     | 우육등관세재원축산진흥비            | 우육등관세재원축산진흥사업단교부금                     | 축산양장업    |
| 농림수산본성     | 우육등관세재원축산진흥비            | 우육등관세재원유통사료대책비보조금                     | 기타 경작농업  |
| 농림수산본성     | 사료수급안정비                 | 식량관리특별회계의 조입                          | 정국제분업    |
| 농림수산본성     | 당가안정대책비                 | 농축산업진흥사업단운영비보조금                       | 도매       |
| 농림수산본성     | 당가안정대책비                 | 농축산업진흥사업단교부금                          |          |
| 농림수산본성     | 농업보험비                   |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농업예산<br>재보험금지불재원부족금차입금이자수입 | 보험       |
| 농림수산본성     | 농업보험비                   |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의 조입                       | 보험       |
| 농림수산본성     | 농업보험비                   | 농업공제사업사무비부담금                          | 보험       |
| 농림수산본성     | 농업보험비                   | 농업공제사업특별사무비보조금                        | 보험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어업금융비                 | 농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금                          | 금융업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어업금융비                 | 농업근대화자금이자보급등보조금                       | 금융업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어업금융비                 | 농림어업금융公庫보급금                           | 금융업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어업금융비                 | 피해농가영농자금이자보급등보조금                      | 금융업      |
| 농림수산본성     | 농림수산본성                  | 농림수산조사연구보급비보조금                        | 연구       |
| 문부과학공성     | 해양개발 및<br>지구과학기술조사연구촉진비 | 해양과학기술센터보조금                           | 연구       |
| 문부과학공성     | 육영사업비                   | 육영자금이자보급금                             | 금융업      |
| 문부과학공성     | 육영사업비                   | 일본육영회보조금                              | 금융업      |
| 문부과학공성     | 과학기술진흥비                 | 특정방사광시설이용연구지원등교부금                     | 연구       |
| 문부과학공성     | 과학기술진흥비                 | 이화학연구소보조금                             | 연구       |
| 문부과학공성     | 학교교육진흥비                 |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보조금                         | 도매       |
| 문부과학공성     | 원자력평화이용연구촉진비            | 일본원자력연구소보조금                           | 연구       |
| 문부과학공성     | 원자력평화이용연구촉진비            | 보장조치교부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임야청        | 삼림개발공단사업조성비             | 녹자원공단보급금                              | 토목업      |
| 임야청        | 임야청                     |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의 조입                        | 임업       |

(국가관련보조금 : 특별회계)

| 성칭명           | 항             | 목                           | SNA산업분류  |
|---------------|---------------|-----------------------------|----------|
| 후생보험특별회계      | 복지시설사업비       | 연금복지사업단교부금                  | 금융업      |
| 도로정비특별회계      | 일본도로공단등사업조성비  | 지방도로공사도시고속도로정비보조금           | 기타 운수업   |
| 도로정비특별회계      | 일본도로공단등사업조성비  | 지방도로공사도시고속도로정비보조금           | 기타 운수업   |
| 자동차검사등록특회     | 업무처리비         | 자동차기준·인증제도국제화대책비보조금         | 연구       |
| 자동차검사등록특회     | 업무처리비         | 자동차검사시정정비대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에너지사용합리화기술개선비보조금            | 분류불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에너지사용합리화기술개발비등보조금           | 연구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에너지사용합리화설비등도입<br>촉진대책비보조금   | 가스·열공급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에너지사용합리화특정설비등<br>자금이자보조금    | 금융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해외탄개발가능성조사비등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신에너지·생산기술종합개발기구교부금          | 연구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석유대체에너지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석유대체에너지특정설비등자금이자보조금         | 금융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비 | 지방도시가스사업천연가스화촉진대책비보<br>조금   | 가스·열공급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산탄지역진흥대책비     | 지역진흥정비공단보조금                 | 토목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탄광업합리화안정대책비  | 광산보안센타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안정공급대책비     | 산유국석유정제기술등대책사업비보조금          | 기타 공공서비스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안정공급대책비     | 석유저장시설용자이자보조금               | 금융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안정공급대책비     | 천연가스탐광비보조금                  | 석유·천연가스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생산유통합리화대책비  | 석유산업정보화촉진대책비보조금             | 석유제품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생산유통합리화대책비  | 석유정제합리화대책사업비등보조금            | 석유제품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생산유통합리화대책비  | 석유제품판매업구조개선대책비사업비등보<br>조금   | 소매업      |
| 석탄·석유·에너지대책특회 | 석유생산유통합리화대책비  | 석유제품품질확보사업비등보조금             | 석유제품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우란농축기술확립비등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풍력발전도입촉진대책비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원자력발전관련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신에너지·생산기술종합개발기구교부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석탄화력발전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전로심혼합화학물연료원자로서설기술개발<br>비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태양에너지등기술개발비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지열개발촉진조사비등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지열기술개발비등보조금                 | 연구       |
| 전원개발촉진대책특회    | 전원이양화대책비      | 분류상석탄가스화발전플랜트개발비보조금         | 對사업소서비스  |
| 도로정비특회        | 일본도로공단등사업조성비  | 일본도로공단보조금                   | 금융       |

## 제6장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

생산자가격표시의 縣內순생산에서, 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하고, 보조금을 더해서 구한다.

## 제7장 고용자보수

분배의 추계방법을 참조.

## 제8장 영업잉여·혼합소득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에서 고용자보수를 차감하여 구한다.

## 제9장 재고품 평가조정의 추계방법에 대해서

### 1. 재고품 평가조정의 의의

SNA에서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재고품증가는 당해상품의 재고증감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수가능한 재고관련의 데이터는 기업회계에 근거하여 후입선출법이나 선입선출법등 기업회계상 인정되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재고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말재고잔고에서 기초재고잔고를 차감한 것은, 기초와 기말의 평가가격차에 의한 금액(일종의 평가손익)도 포함하고 있다. 이 평가가격차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기 위한 조정이 재고품 평가조정이다.

### 2. 추계의 개요

추계방법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① 각목 재고잔고를 구한다.
- ② 당해상품의 가격지수(재고가가격지수)를 작성하고, 이것을 기초로 재고잔고 디플레이터를 구한다.
- ③ 각목 재고잔고를 재고잔고 디플레이터에서 차감한 후 기말, 기초의 실질재고 잔고를 구하고, 양쪽의 차를 취해 실질재고품 증가를 산정한다.
- ④ 재고가가격지수의 기중평균을 취하기 위해서, 기중평균가격지수를 구하고, 이것을 실질재고품 증가에 곱해, 재고품평가조정후의 각목 재고품증가를 산출한다.
- ⑤ ①의 각목 재고잔고 기말에서 기초를 빼고, 재고품평가 조정전의 각목 재고품증가를 구하고, 이것에서 ④를 차감한 것이 재고품가격 조정액이 된다.

<재고잔고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 1) 기초, 기말의 재고품을 평가할 경우, 棚卸(實査에 의한 재고: 편집자주)평가방법 및 재고회전율을 고려해서 재고잔고 디플레이터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棚卸평가방법을 구할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는, 재고잔고를 계측하는 시점의 월별 물가지수를 이용한다.

잔고 디플레이터의 추계자료

|           | 산출 | 투입 | 추계자료               |
|-----------|----|----|--------------------|
| 농림수산업     |    | ○  | 농촌물가지수(출하용가축&해당품목) |
| 광업        |    | ○  | 도매물가지수(광산물 및 해당품목) |
| 제조업       | ○  | ○  | 산출·투입물가지수          |
| 건설업       |    | ○  | 도매물가지수(건설용재료)      |
| 도소매업      | ○  |    | 도매물가지수(해당품목)       |
| 운수·통신업    |    | ○  | 도매물가지수(상동)         |
| 전기·가스·수도업 |    | ○  | 상동                 |
| 서비스업      |    | ○  | 상동                 |

2) 제품 및 재공품·반제품·재고품 평가조정액은 산출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제품·재고잔고 디플레이터를 구할 경우, 1업종=1품목의 산출이라 가정하고 당해물가지수베이스로 한다.

3) 재공품·반제품 재고잔고 디플레이터를 구할 경우는,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재공품·반제품 재고잔고 디플레이터 =

$$\frac{\text{제품잔고 디플레이터} + \text{素材재료잔고 디플레이터}}{2}$$

4) 素材재료잔고는, 투입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재고품평가조정액을 구할 경우, 재고잔고디플레이터는 현 IO표의 해당업종 투입품목에 맞는 당해 도매물가지수로부터 작성한다.

5) 재고품평가조정후의 명목재고품증가를 구하기 위해서, 실질재고품증가에 곱할 期中평균(年平均) 가격지수는 기말잔고 디플레이터에 이용한 지수의 연평균가격지수를 이용한다.

### 3. 재고품평가조정을 행하는 범위

재고품평가조정액은 생산계열, 분배계열, 지출계열에서 각각 공제한다.

생산계열 ———— 산출(재평후) = 산출(재평전) - 在評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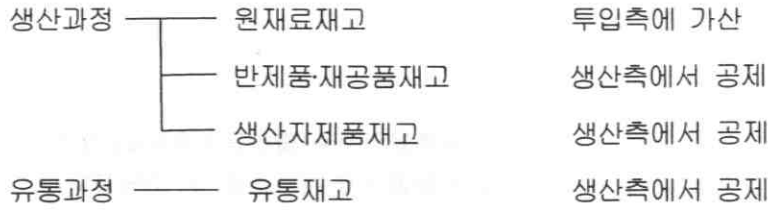
                  └——— 투입(재평후) = 투입(재평전) + 재평액

지출계열 ———— 재고품증가(공공·민간) - 재평액(공공·민간)

분배계열 ———— 기업소득 - 재평액(공공·민간)



또한, 재고의 종류와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



#### 4. 경제활동별 추계방법

현단독조사등으로부터 추계가 가능한 경우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공업통계표에 각종 재고잔고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재고품평가조정액을 구하고, 기타산업에 대해서는 전국의 재고품평가조정액을 안분하고, 해당하는 업종의 산출에서 해당 재평액을 공제한 다음, 投入에 해당재평액을 가산해서, 재평후의 부가가치액을 추계한다.

또한, 재고품평가조정과 산출, 투입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 산출 | 투입 |         | 산출 | 투입 |
|-------|----|----|---------|----|----|
| 농림수산업 |    | ○  | 운수통신업   |    | ○  |
| 광업    |    | ○  | 전기가스수도업 |    | ○  |
| 건설업   |    | ○  | 서비스업    |    | ○  |
| 도소매업  | ○  |    |         |    |    |

注) 중간투입비율로서 전국의 중간투입비율을 이용하는 경우는 재고품평가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① 농림수산업

| 연도 | 전국재고품평가조정액 |       |     | 종업자수(법인) |       |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공공 | ④전국      |       | ⑤현   |     |
|    |            |       |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 2  | 11649      | -8771 | 684 | 210000   | 52000 | 7000 | 500 |

| 농가수     |       | 縣재고품평가조정액     |               |               | 전국재고품증가(재평후) |       |
|---------|-------|---------------|---------------|---------------|--------------|-------|
| 전국      | ⑦현    | ⑧=①x⑤÷<br>④법인 | ⑨=②x⑤÷<br>⑥개인 | ⑩=③x⑤÷<br>④공공 | ⑪민간법인        | ⑫개인   |
| 4330000 | 20000 | 388           | -41           | 7             | -2905        | -2300 |

| ⑬縣公的재고품증가<br>(재평전) | 縣재고품증가(재평후) |           |          |
|--------------------|-------------|-----------|----------|
|                    | ⑭=⑪x⑤÷④법인   | ⑮=⑫x⑦÷⑥개인 | ⑯ =⑬-⑩공공 |
| 7                  | -97         | -106      | 0        |

- 종업자수 (법인) 은,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결과에 의한다.
- 농가수는, 농가경영활동통계의 결과에 의한다. 단, 보정에 대해서는 정수로 하고, 보완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한다.

② 광업

| 년도 | 전국재고품평가<br>가조정액 | 종업자수<br>(법인) |      | 縣재고품평가<br>조정액 | 전국재고품증<br>가(재평후) | 縣재고품증가<br>(재평후) |
|----|-----------------|--------------|------|---------------|------------------|-----------------|
|    | ①법인             | ②전국          | ③현   | ④=①×③÷②<br>법인 | ⑤법인              | ⑥=⑤×③÷②<br>법인   |
| 2  | 1294            | 95000        | 5000 | 68            | 1294             | 68              |

· 종업자수(법인)는,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결과에 의한다.

다만, 보정에 대해서는 정수로 하고, 보완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한다.

③ 제조업

제조업은, 공공을 제외하고 종업자 30인 이상의 재고잔고는 공업통계표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스로 재고품 평가조정액을 구한다.

우선, 재고품 평가조정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공업통계표에서는 구할 수 없는 1~3인 및 4~29인의 재고잔고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종업자 4~29인의 재고잔고의 추계방법을 예시했지만, 종업자수 1~3인의 재고잔고도 종업자수 30~49인의 재고잔고에서 추계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합계치를 종업자수 1~29인의 제조업 재고잔액으로 하고, 종업자 30인 이상의 재고잔고와 합계해서 당해업종의 재고잔고로 한다.

제조업(민간)재고잔고 4~29인 이하의 추계

| 종<br>분<br>류 | ①4~29인 아래의<br>제조품 출하액 | ②30~49인의<br>제조품 출하액 | 30~49인 재고잔액   |      |               |      |
|-------------|-----------------------|---------------------|---------------|------|---------------|------|
|             |                       |                     | ③연초재고잔고       |      | ④연말재고잔고       |      |
|             |                       |                     | 제품·반제품<br>재공품 | 원재료  | 제품·반제품<br>재공품 | 원재료  |
|             | 80000                 | 20000               | 15000         | 5000 | 13000         | 4000 |

| 4~29인 재고잔고    |       |               |       |
|---------------|-------|---------------|-------|
| ⑤=③×①/②연초재고잔고 |       | ⑥=④×①/②연말재고잔고 |       |
| 제품·반제품<br>재공품 | 원재료   | 제품·반제품<br>재공품 | 원재료   |
| 60000         | 20000 | 52000         | 16000 |

③-1 제조업(민간)

| 산업<br>중분류 | 연초재고잔고         |      | 연말재고잔고         |      | 평가전 명목재고잔고             |              |
|-----------|----------------|------|----------------|------|------------------------|--------------|
|           | ①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②원재료 | ③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④원재료 | ⑤=③-<br>①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⑥=④-<br>②원재료 |
|           | 200000         | 8000 | 190000         | 7000 | -10000                 | -1000        |

| 제조부문별<br>출산물가지수 |      |              | 제조부문별<br>투입물가지수 |      |              | 실질연초재고잔고               |                  | 실질연말재고잔고                |                  |
|-----------------|------|--------------|-----------------|------|--------------|------------------------|------------------|-------------------------|------------------|
| ⑦연초             | ⑧연말  | ⑨연평균<br>기중평균 | ⑩연초             | ⑪연말  | ⑫연평균<br>기중평균 | ⑬=①÷⑦<br>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⑭=<br>②÷⑩원<br>재료 | ⑮=③÷⑧<br>제품·반제<br>품 재공품 | ⑯=<br>④÷⑪<br>원재료 |
| 82.4            | 82.3 | 82.5         | 82.4            | 82.3 | 82.5         | 242718                 | 9709             | 230863                  | 8505             |

| 실질재고증                  |              | 재평후명목재고증               |              | 재고품평가조정액               |              |
|------------------------|--------------|------------------------|--------------|------------------------|--------------|
| ⑰=⑮-⑬<br>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⑱=⑯-⑭<br>원재료 | ⑲=⑰×⑨<br>제품·반제품<br>재공품 | ⑳=⑱×⑫<br>원재료 | ㉑=⑤-⑲<br>제품·반제품<br>재공품 | ㉒=⑥-⑳<br>원재료 |
| -11855                 | -1204        | -9780                  | -993         | -220                   | -7           |

| 광공업생산지수<br>생산자제품재고지수<br>(연도전환) |       | 연도실질재고증<br>㉓=(⑰+⑱)<br>×㉔/㉒ | 연도명목재고증<br>㉕=(⑲+⑳)<br>×㉔/㉒ | 연도재고품평가조정액               |                |
|--------------------------------|-------|----------------------------|----------------------------|--------------------------|----------------|
| ㉖연평균                           | ㉗연도평균 |                            |                            | ㉘=㉑×㉔/㉒<br>제품·반제품<br>재공품 | ㉙=㉒×㉔/㉒<br>원재료 |
| 98.0                           | 100.0 | -13326                     | -10993                     | -224                     | -7             |

| 제품출하액   |        | 연도재고품평가조정액<br>제품·반제품 재공품 |                 | 연도재고품평가조정액<br>원재료       |                 |
|---------|--------|--------------------------|-----------------|-------------------------|-----------------|
| ㉚법인     | ㉛개인    | (a)=<br>㉗×㉙/(㉙+㉚)<br>법인  | (b)=㉘-(a)<br>개인 | (c)=<br>㉘×㉙/(㉙+㉚)<br>법인 | (d)=㉙-(c)<br>개인 |
| 8000000 | 800000 | -204                     | -20             | -6                      | -1              |

· 제품·반제품, 재공품에 대해서는 재고품 평가조정액을 산출쪽에서 공제하고, 원재료에 대해서는 투입쪽에 가산한다.

③-2 제조업(공공)

| 연도 | 전국재고품<br>평가조정액 | 종업자수  |     | 縣재고품<br>평가조정액 | 縣재평전<br>재고증 | 縣재평후  |
|----|----------------|-------|-----|---------------|-------------|-------|
|    | ①공공            | ②전국   | ③현  | ④=①×③/②       | ⑤           | ⑥=⑤-④ |
|    | -3540          | 10000 | 500 | -177          | 300         | 477   |

④ 건설업

| 연도 | 전국재고품평가<br>조정액 |     | 건설공사액<br>(진보베이스) |         | 縣재고품평가 조정액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전국              | ④현      | ⑤=<br>①×④÷③<br>법인 | ⑥=<br>②×④÷③<br>개인 |
|    | 19133          | 142 | 62000000         | 7000000 | 2160              | 16                |

| 전국재평후 재고증 |      | 縣재평후 재고증      |               |
|-----------|------|---------------|---------------|
| ⑦법인       | ⑧개인  | ⑨=⑦×④÷③<br>법인 | ⑩=⑧×④÷③<br>개인 |
| 10082     | -783 | 1138          | -99           |

⑤ 도매업(민간)

| 연도 | 전국재고품평가<br>조정액 |      | 법인상품 수종의<br>금액 |        | 개인상품 수종의<br>금액 |       | 縣재고품평가<br>조정액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전국            | ④현     | ⑤전국            | ⑥현    | ⑦=<br>①×④÷③<br>법인 | ⑧=<br>②×⑥÷⑤<br>개인 |
|    | -143773        | -834 | 17000000       | 900000 | 616000         | 50000 | -7612             | -68               |

| 전국재평후 재고증 |       | 縣재평후 재고증      |               |
|-----------|-------|---------------|---------------|
| ⑨법인       | ⑩개인   | ⑪=⑨×④÷③<br>법인 | ⑫=⑩×⑥÷⑤<br>개인 |
| 421252    | 39902 | 22302         | 3239          |

⑥ 도매업(공공)

| 연도 | 전국재고품<br>평가조정액 | 食管회계소득액<br>(기업소득) |       | 縣재고품<br>평가조정액 | 縣재평전<br>재고증 | 縣재평후  |
|----|----------------|-------------------|-------|---------------|-------------|-------|
|    | ①공공            | ②전국               | ③현    | ④=①×③/②<br>공공 | ⑤공공         | ⑥=⑤-④ |
|    | -68332         | 307000            | 20000 | -4452         | 1000        | 5452  |

⑦ 소매업

| 연도 | 전국재고품평가 조정액 |      | 법인상품 수중의 금액 |        | 개인상품 수중의 금액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전국         | ④현     | ⑤전국         | ⑥현    |
|    | -93023      | 6520 | 6890000     | 980000 | 3000000     | 20000 |

| 縣재고품 평가조정액    |               | 전국재평후 재고증 |       | 縣재평후 재고증      |               |
|---------------|---------------|-----------|-------|---------------|---------------|
| ⑦=①×④÷③<br>법인 | ⑧=②×⑥÷⑤<br>개인 | ⑨법인       | ⑩개인   | ⑪=⑨×④÷③<br>법인 | ⑫=⑩×⑥÷⑤<br>개인 |
| -13231        | 43            | 230764    | 73659 | 32823         | 491           |

⑧ 운수·통신업

| 연도 | 전국재고품 평가조정액 |     |     | 법인취업자수  |        | 개인종업자수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공공 | ④전국     | ⑤현     | ⑥전국    | ⑦현    |
|    | 101383      | 41  | 4   | 2660000 | 440000 | 110000 | 20000 |

| JR영업 킬로수 |     | 縣재고품평가 조정액    |               |               | 전국재평후 재고증 |      |
|----------|-----|---------------|---------------|---------------|-----------|------|
| ⑧전국      | ⑨현  | ⑩=①×⑤÷④<br>법인 | ⑪=②×⑦÷⑥<br>개인 | ⑫=③×⑨÷⑧<br>공공 | ⑬법인       | ⑭개인  |
| 21000    | 200 | 16770         | 7             | 0             | -15701    | -203 |

| 縣재평후 재고증      |               | 縣공공재평전재고증 | 縣공공재평후재고증 |
|---------------|---------------|-----------|-----------|
| ⑮=⑬×⑤÷④<br>법인 | ⑯=⑭×⑦÷⑥<br>개인 | ⑰         | ⑱=⑰-⑫     |
| -2597         | -37           | 0         | 0         |

⑨ 전기가스·수도업

| 연도 | 전국재고품<br>평가조정액 |       | 전력회사별 연도말<br>저장품 잔고 |             | 가스사업사업자<br>유동자산잔고 |             | 縣의 당해회사<br>발전량 |             |
|----|----------------|-------|---------------------|-------------|-------------------|-------------|----------------|-------------|
|    | ①전기업           | ②가스업  | ③전국계                | ④縣의<br>당해회사 | ⑤전국계              | ⑥縣의<br>당해회사 | ⑦전국계           | ⑧縣의<br>당해회사 |
|    | 10064          | -2750 | 236000              | 60000       | 436000            | 80000       | 187000         | 3000        |

| 縣의 당해회사<br>공급량 |            | 縣전기<br>재고품평가<br>조정액                        | 縣가스<br>재고품평가<br>조정액                        | 전국전기<br>가스재평후<br>재고증 | 縣전기가스재평<br>후재고증  |
|----------------|------------|--|--|----------------------|--|
| ⑨관할계           | ⑩縣內<br>공급량 | $11=① \times (④ \div ③) \times (⑧ \div ⑦)$ | $12=② \times (⑥ \div ⑤) \times (⑩ \div ⑨)$ | ⑬                    | $14=⑬ \times (③ \times ⑪ \div ① + ⑤ \times ⑫ \div ②) \div (③ + ⑤)$ |
| 300000         | 200000     | 41   | -336                                       | -50098               | -4043  |

⑩ 서비스업

| 연도 | 전국재고품평가 조정액 |       | 법인 종업자  |       | 개인종업자   |        |
|----|-------------|-------|---------|-------|---------|--------|
|    | ①법인         | ②개인   | ③전국     | ④현    | ⑤전국     | ⑥현     |
|    | 17593       | -4045 | 6500000 | 90000 | 3000000 | 320000 |

| 縣재고품 평가조정액                  |                             | 전국재평후 재고증 |       | 縣재평후 재고증                    |                             |
|-----------------------------|-----------------------------|-----------|-------|-----------------------------|-----------------------------|
| $⑦=① \times ④ \div ③$<br>법인 | $⑧=② \times ⑥ \div ⑤$<br>개인 | ⑨법인       | ⑩개인   | $⑪=⑨ \times ④ \div ③$<br>법인 | $⑫=⑩ \times ⑥ \div ⑤$<br>개인 |
| 244                         | -4314                       | 51914     | 22578 | 719                         | 2408                        |

총괄표

| 산업       | 재고품평가조정액 |         |         |      |        |
|----------|----------|---------|---------|------|--------|
|          | 합계       | 민간계     |         |      | 공공     |
|          |          |         | 법인      | 개인   |        |
| 농림수산업    | 354      | 347     | 388     | -41  | 7      |
| 광업       | 68       | 68      | 68      | 0    | 0      |
| 제조업      | -408     | -231    | -210    | -21  | -177   |
| 제품·반제품 등 | -401     | -224    | -204    | -20  | -177   |
| 원재료      | -7       | -7      | -6      | -1   | 0      |
| 건설업      | 2,176    | 2,176   | 2,160   | 16   | 0      |
| 전기가스수도업  | -295     | -295    | -295    | 0    | 0      |
| 전기업      | 41       | 41      | 41      | 0    | 0      |
| 가스업      | -336     | -336    | -336    | 0    | 0      |
| 도·소매업    | -25,320  | -20,868 | -20,843 | -25  | -4,452 |
| 도매업      | -12,132  | -7,680  | -7,612  | -68  | -4,452 |
| 소매업      | -13,188  | -13,188 | -13,231 | 43   | 0      |
| 운수통신업    | 16,777   | 16,777  | 16,770  | 7    | 0      |
| 서비스업     | -187     | -187    | 244     | -431 | 0      |
| 산업계      | -6,835   | -2,213  | -1,718  | -495 | -4,622 |



총괄표

| 산업      | 재고품증가(재고품평가조정후) |         |       |
|---------|-----------------|---------|-------|
|         | 합계              | 민간      | 공공    |
| 농림수산업   | -203            | 203     | 0     |
| 광업      | 68              | 68      | 0     |
| 제조업     | -10,516         | -10,993 | 477   |
| 건설업     | 1,050           | 1,050   | 0     |
| 전기가스수도업 | -4,043          | -4,043  | 0     |
| 도소매업    | 64,307          | 58,855  | 5,452 |
| 도매업     | 30,993          | 25,541  | 5,452 |
| 소매업     | 33,314          | 33,314  | 0     |
| 운수통신업   | -2,634          | -2,634  | 0     |
| 서비스업    | 3,127           | 3,127   | 0     |
| 산업계     | 51,156          | 45,227  | 5,929 |

## 생산계열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 및 요소소득(재고품 평가조정전)

| 경제활동 종류               | 생산자가격표시<br>산출액<br>(1) | 중간투입<br>(2) | 생산자가격표시의<br>縣內 총생산<br>(3) |
|-----------------------|-----------------------|-------------|---------------------------|
| 1. 산업                 | 3,251,000             | 1,950,600   | 1,300,400                 |
| (1) 농림수산업             | 100,000               | 60,000      | 40,000                    |
| (2) 광업                | 1,000                 | 600         | 400                       |
| (3) 제조업               | 1,000,000             | 600,000     | 400,000                   |
| (4) 건설업               | 300,000               | 180,000     | 120,000                   |
| (5) 전기가스수도업           | 100,000               | 60,000      | 40,000                    |
| (6) 도소매업              | 500,000               | 300,000     | 200,000                   |
| (7) 금융보험업             | 200,000               | 120,000     | 80,000                    |
| (8) 부동산업              | 350,000               | 210,000     | 140,000                   |
| (9) 운수통신업             | 200,000               | 120,000     | 80,000                    |
| (10) 서비스업             | 500,000               | 300,000     | 200,000                   |
| 2. 정부서비스생산자           | 28,000                | 8,000       | 20,000                    |
| 3. 對가계민간비영리<br>서비스생산자 | 10,000                | 2,000       | 8,000                     |
| 소 계                   | 3,289,000             | 1,960,600   | 1,328,400                 |
| 수입세·관세                | 100,000               | 0           | 100,000                   |
| 귀속이자                  | 0                     | 150,000     | -150,000                  |
| 합계                    | 3,389,000             | 2,110,600   | 1,278,400                 |

경제활동별 縣內총생산 및 요소소득(재고품 평가조정후)

| 경제활동 종류               | 생산자가격표시<br>산출액<br>(1) | 중간투입<br>(2) | 생산자가격표시의<br>縣內총생산<br>(3) |
|-----------------------|-----------------------|-------------|--------------------------|
| 1. 산업                 | 3,276,271             | 1,969,486   | 1,307,235                |
| (1) 농림수산업             | 100,000               | 60,354      | 39,646                   |
| (2) 광업                | 1,000                 | 668         | 332                      |
| (3) 제조업               | 1,000,401             | 599,993     | 400,408                  |
| (4) 건설업               | 300,000               | 182,176     | 117,824                  |
| (5) 전기가스수도업           | 100,000               | 59,705      | 40,295                   |
| (6) 도소매업              | 525,320               | 300,000     | 225,320                  |
| (7) 금융보험업             | 200,000               | 120,000     | 80,000                   |
| (8) 부동산업              | 350,000               | 210,000     | 140,000                  |
| (9) 운수통신업             | 200,000               | 136,777     | 63,223                   |
| (10) 서비스업             | 500,000               | 299,813     | 200,187                  |
| 2. 정부서비스생산자           | 28,000                | 8,000       | 20,000                   |
| 3. 對가계민간비영리<br>서비스생산자 | 10,000                | 2,000       | 8,000                    |
| 소 계                   | 3,314,721             | 1,980,076   | 1,335,235                |
| 수입세·관세                | 100,000               | 0           | 100,000                  |
| 귀속이자                  | 0                     | 150,000     | -150,000                 |
| 합계                    | 3,414,721             | 2,130,076   | 1,285,235                |

분배계열

현민소득(분배)(재고품 평가조정전)

| 항목                          | 년       |
|-----------------------------|---------|
| 1. 고용자보수                    | 300,000 |
| 2. 재산소득                     | 100,000 |
| 3.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br>소득 지불후) | 302,000 |
| (1) 민간법인기업                  | 240,000 |
| a. 비금융법인기업                  | 200,000 |
| b. 금융기관                     | 40,000  |
| (2) 공공기업                    | 2,000   |
| a. 비금융법인기업                  | 1,300   |
| b. 금융기관                     | 700     |
| (3) 개인기업                    | 60,000  |
| a. 농림수산업                    | 1,000   |
| b. 기타 산업                    | 50,000  |
| c. 자가주택                     | 9,000   |
| 현민소득                        | 702,000 |

현민소득(분배)(재고품 평가조정후)

| 항목                          | 년       |
|-----------------------------|---------|
| 1. 고용자보수                    | 300,000 |
| 2. 재산소득                     | 100,000 |
| 3.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br>소득 지불후) | 308,835 |
| (1) 민간법인기업                  | 241,718 |
| a. 비금융법인기업                  | 201,718 |
| b. 금융기관                     | 40,000  |
| (2) 공공기업                    | 6,622   |
| a. 비금융법인기업                  | 5,922   |
| b. 금융기관                     | 700     |
| (3) 개인기업                    | 60,495  |
| a. 농림수산업                    | 1,041   |
| b. 기타 산업                    | 50,454  |
| c. 자가주택                     | 9,000   |
| 현민소득                        | 708,835 |

지출계열

현민소득(분배)(재고품 평가조정전)

| 항목          | 년         |
|-------------|-----------|
| 1. 민간최종소비지출 | 639,200   |
| 2. 정부최종소비지출 | 127,840   |
| 3. 縣內 총자본형성 | 383,520   |
| (1) 총고정자본형성 | 339,199   |
| (2) 재고품 증가  | 44,321    |
| a. 민간기업     | 43,014    |
| b. 공공       | 1,307     |
| 4. 순이출      | 127,840   |
| 5. 통계상 불일치  |           |
| 縣內 총지출      | 1,278,400 |
| 縣外로부터의 요소소득 | -255,680  |
| 현민 총지출      | 1,022,720 |

현민소득(분배)(재고품 평가조정후)

| 항목          | 년         |
|-------------|-----------|
| 1. 민간최종소비지출 | 639,200   |
| 2. 정부최종소비지출 | 127,840   |
| 3. 縣內 총자본형성 | 390,355   |
| (1) 총고정자본형성 | 339,199   |
| (2) 재고품 증가  | 51,156    |
| a. 민간기업     | 45,227    |
| b. 공공       | 5,929     |
| 4. 순이출      | 127,840   |
| 5. 통계상 불일치  |           |
| 縣內 총지출      | 1,285,235 |
| 縣外로부터의 요소소득 | -255,680  |
| 현민 총지출      | 1,029,555 |

산업분류와 부문별투입산출지수(그로스 웨이트) 와의 대응표

| 산업중분류   | 부문별 투입산출지수 (그로스 웨이트) 항목명<br>{ $\sum(\text{웨이트} \times \text{지수}) / \sum \text{웨이트}$ }   |
|---|---|
| 식료품<br>음료 · 사료 등<br>섬유공업<br>의복 · 기타<br>목재 · 목제품<br>가구 · 장비품<br>종이 · 종이 가공품<br>출판 · 인쇄<br>화학공업<br>석유 · 석탄<br>플라스틱<br>고무제품<br>피혁 · 同제품<br>요업 · 토석<br>철강업<br>비철금속<br>금속제품<br>일반기계<br>전기기계<br>수송용 기계<br>정밀기계<br>기타 제품 | 육제품 · 낙농품, 정곡 · 제분, 기타 식료품<br>배합사료, 음료<br>제사, 점원섬유방적, 화학섬유방적, 섬유, 편물제품<br>기타 섬유제품<br>제재 · 목제품<br>가구<br>펄프 · 종이, 종이제품<br>인쇄 · 출판<br>화학제품<br>석유 · 석탄제품<br>합성수지제품<br>고무제품<br>피혁 · 同제품<br>요업 · 토석<br>철강<br>비철금속지금, 비철금속 일차제품<br>금속제품<br>일반기계<br>전기기계<br>육상수송기계<br>정밀기계<br>신체 주변제품, 잡품 |

참고 : 경제활동별 분류와 일본표준산업분류의 대응표  
 (일본표준산업분류는 1993년 10월 개정된 것임)

| SNA 산업분류   | 일본표준산업분류  |
|--|---|
| 1. 산업<br>(1) 농림수산업<br>[농업]<br><br>[임업]<br><br>[수산업]                    | 01 농업<br>(0113 中 「표고버섯재배농업」 →임업)<br>(015→기타 대 개인 서비스업)<br>844 수의업<br><br>02 임업<br>0113 야채작농업 (버섯류의 재배를 포함)<br>中 「표고버섯재배농업」<br>03 어업<br>04 수산양식업 |
| (2) 광업   | 05금속광업<br>~<br>08 비금속광업<br>2581 채석제조업   |
| (3) 제조업  | 12 식료품 제조업<br>~<br>34 기타 제조업<br>(2581→광업)<br>952 도축장  |
| (4) 건설업  | 09 종합공사업<br>~<br>11 설비공사업   |
| (5) 전기·가스·수도업<br>[전기업]<br><br>[가스업·열 공급업]<br><br>[수도업]<br><br>[폐기물처리업] | 35 전기업<br><br>36 가스업<br>37 열공급업<br><br>381 상수도업<br>382 공업용 수도업<br><br>87 폐기물처리업   |

| SNA 산업분류                | 일본표준산업분류   |
|-------------------------|--|
| (6) 도소매업<br>[도매업]       | 48 각종상품도매업<br>~<br>53 기타 도매업<br>9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내의<br>[시장] |
| [소매업]                   | 54 각종 상품소매업<br>~<br>59 기타 소매업                                  |
| (7) 금융·보험업<br>[금융업]     | 62 은행 · 신탁업<br>~<br>68 증권업, 상품선물거래업                            |
| [보험업]                   | 69 보험업 (보험매개대리업, 보험서비스업을 포함)                                   |
| (8) 부동산업<br>[부동산중개·관리업] | 70 부동산거래업<br>71 부동산임대업 · 관리업 (7112는 제외)<br>지출계열에서 구해진 귀속부분     |
| (9) 운수·통신업<br>[운수업]     | 39 철도업<br>~<br>45 운수에 부대하는 서비스업<br>73 주차장업                     |
| [통신업]                   | 46 우편업<br>~<br>47 전기통신업  |
| (10) 서비스업<br>[교육]       | 9191 직원훈련시설<br>9192 직업훈련시설                                     |
| [연구]                    | 921 자연과학연구소<br>922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 [의료업]                   | 88 의료업   |
| [보건위생]                  | 892 건강상담시설<br>8991 검사업<br>8992 소독업                             |
| [기타공공서비스]               | 85 협동조합(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  |

| SNA 산업분류   | 일본표준산업분류  |
|--|---|
| <p>[광고업]<br/>[업무용물품임대업]<br/>[기타 對사업소서비스]<br/>[오락업]<br/>[방송업]<br/>[음식점]<br/>[여관]<br/>[세탁·이용·목욕업]<br/>[기타 對개인서비스업]<br/>[자동차·기계수리]<br/>[분류불명산업]</p> | <p>941 경제단체</p> <p>83 광고업<br/>79 물품임대업</p> <p>82 정보서비스·조사업<br/>84 전문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844→농업)<br/>(847→오락업)<br/>(848→기타 對개인서비스업)</p> <p>86 기타 사업서비스<br/>80 영화·텔레비 제작업<br/>76 오락업 (영화·텔레비전 제작업 제외)<br/>847 저술가·예술가업</p> <p>81 방송업<br/>60 일반음식업<br/>61 기타 음식점<br/>75 여관·기타 숙박소<br/>(회사안의 기숙사 학생료등을 제외한 숙박소의 활동)</p> <p>72 세탁·이용·목욕업<br/>015 원예서비스업</p> <p>74 기타 생활관련 서비스업<br/>78 기계·가구등수리업<br/>(781→ 자동차·기계수리)<br/>848 개인교수업<br/>771 자동차정비업<br/>781 기계수리업</p> <p>SNA국내총생산추계에 이용한 산업주체中 산업부문에 속한, 또한, 전기의 산업부문에 속하지 않은것</p> |
| <p>2. 정부 서비스생산자<br/>[전기·가스·수도업]</p>  | <p>383 하수도업<br/>87 폐기물처리업(국내·지방공공단체에 의한 활동)</p>   |





| SNA 산업분류 | 일본표준산업분류  |
|----------|---|
| [기타]     | <p>(국내·지방공공단체이외의 자가 설치한 학교의 활동, 민법 제34조의 법인·기타 법인·단체 및 개인이 설치한 사회교육 시설의 활동)<br/> 단, 교육훈련기관(9191,9192,9199 외에 분류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제외</p> <p>92 학술연구기관<br/> (사립학교 내 및 민법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한 연구기관이 행하는 활동)</p> <p>892 건강상담시설</p> <p>90 사회보험·사회보장<br/> (정부내 서비스생산자이외의 자에 의한 활동)</p> <p>93 종교</p> <p>94 정치·경제·문화단체</p> <p>9511 집회장</p> |

## 補論 : 본사사업소의 관계

현민경제계산의 추계에 있어서 [본사사업소의 관계] 는 당연히 고려해야만 하지만, 추계기술상의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계방법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론으로서 여기서 처리한다.

### 1. 추계상의 관점

현민경제계산은 관찰단위를 사업소로 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활동은 기업단위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사업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본사는, 산업분류상 기업체의 일부로서 분류된다.

본사의 업무는 기업내의 관리부문을 담당하고, 직접생산부문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側面에서 생산활동을 원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사도 하나의 사업소(서비스의 생산거점)로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사업소에 판매한다라는 擬制計算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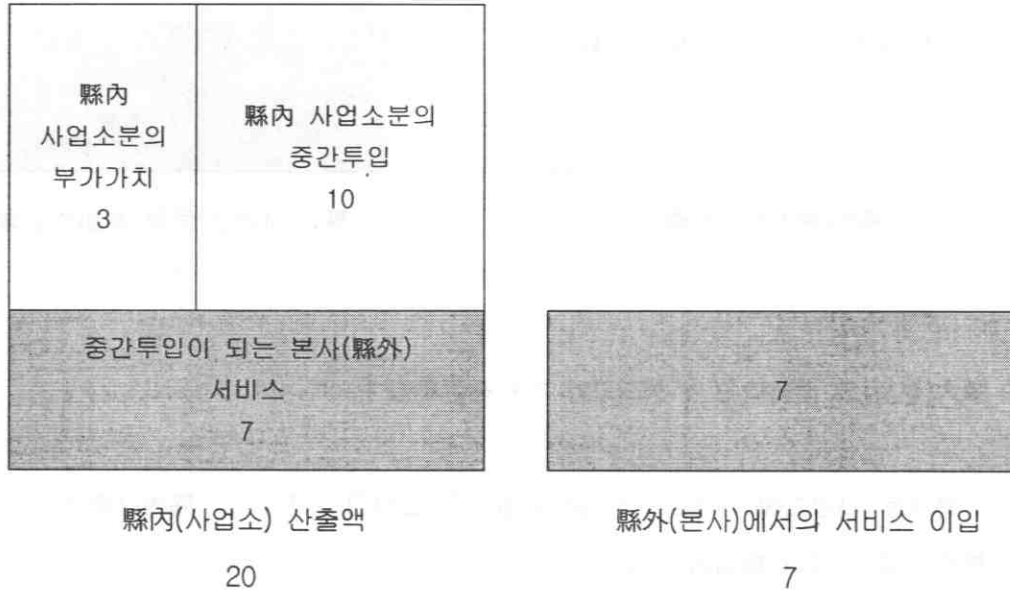
아래 예시를 보면,

#### 1. 기업베이스로 본 경우(縣內에 본사, 사업소도 같이 있는 경우)

|                   |                    |            |
|-------------------|--------------------|------------|
| 사업소분<br>부가가치<br>3 | 사업소분<br>중간투입<br>10 | 사업소 산출액 13 |
| 본사분<br>부가가치<br>2  | 본사분<br>중간투입<br>5   | 본사의 산출액 7  |
| 기업 산출액<br>20      |                    |            |

○ 기업 산출액 20 = 부가가치5 [사업소3 + 본사2]  
+ 중간투입 15 [사업소10 + 본사5]

2. 縣外에 본사가 있고 縣內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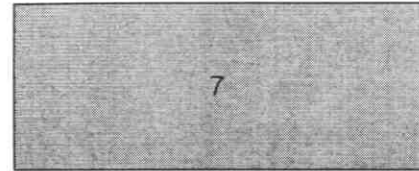
○ 縣內(사업소)의 산출액20 = 부가가치3 + 중간투입17 [사업소10+본사서비스분7]

縣內的 산출액은 「20」이지만, 이 생산활동은 본사서비스를 받아들여 얻어진 결과이다.

여기에서, 사업소는 본사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다고 의제한다. 따라서, 縣內(사업소)의 산출액의 일부 「7」은 縣外(본사)로부터의 서비스 「7」의 移入이 된다.

3. 縣内に 본사가 있고 縣外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                      |                      |
|----------------------|----------------------|
| 본사분(縣内)<br>부가가치<br>2 | 본사분(縣内)<br>중간투입<br>5 |
|----------------------|----------------------|



縣内(본사)의 산출액

7

縣外(사업소)로의 서비스이출

7

○ 縣内(본사)의 산출액 7 = 부가가치 2 + 중간투입 5

본사는 사업소에 서비스 「7」을 판매하고 있다고 의제하고, 縣内산출액 「7」은 縣外(사업소)로의 移出이 된다.

## 제 2 부 분 배 계 열

## 서장 분배계열의 개요

생산활동결과 발생한 소득(부가가치)은 고정자본감모를 제외한 후, 생산에 참가한 경제주체에게 고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이라는 형태로 분배되고, 다시 다양한 재분배 과정을 거쳐 소비되며, 나머지 부분은 저축으로 기록된다. 이것을 계정으로 나타낸 것이 소득지출계정이다. 또한, 저축은 자본조달계정으로 계상되며, 이를 통하여 소득지출계정(실물면)과 자본조달계정(금융면)이 결합된다.

SNA에 있어서 소득지출계정의 제도부문별 분류는, 활동의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가계(개인기업을 포함)」,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5개 제도부문으로 분류된다.

현민소득(분배계열)은 이 소득지출계정을 재구성 하는 것에 의해 추계된다.

이 분배계열에서는 상기中 경상적 거래를 다루는 것으로서, 1.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과 그 종합계정인 2.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 및 3.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주요계열표-2)」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 개요를 설명한다.

### 1.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각 제도 부문간의 경상적 거래를 다루는 계정이다. 계정의 수취항목은 요소소득(고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과 이전소득{재산소득,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 이외의 경상이전)}으로 구성되고, 지불항목은 경상이전과 최종소비지출로 구성되고 있다. 수취와 지불의 차액은 저축으로서, 지불부문의 밸런스항목(잔차)이 되고 있다.

또한,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은 「현민」 개념으로 나타내지며, 요소소득 및 경상이전 소득의 縣外와의 순수취는 각 제도부문의 해당항목으로 계상되고, 縣外와의 거래는 별도 縣外계정으로 처리되게 된다.

以下에서는 요소소득, 이전소득에 대해서 설명한다.

## (1) 요소소득

요소소득이란, 총생산에서 고정자본감모(注1) 생산 및 수입세(순)(注2)를 차감한 순생산(요소비용표시)을 말한다. 요소소득은 고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득지출계정은 「현민」 개념으로 나타내지므로 縣內 요소소득 + 縣外로부터의 순 요소소득으로 계상되고 있다.

① 고용자보수란, 요소소득中 고용자의 분배액이며, 가계부문의 수취항목으로 계상된다.

② 영업잉여·혼합소득은 요소소득에서 고용자소득을 차감한 것이며,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및 가계(개인기업)의 3개 제도부문의 수취항목으로 계상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잉여에는 귀속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注1) 고정자본감모는 구축물, 설비, 기계 등 재생 가능한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통상의 마모 및 손상(감가상각), 예견된 멸실, 통상 발생하는 정도의 사고에 의한 손해 등(자본우발손)에서 오는 감모분을 평가한 금액이고,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총생산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와 동시에 자본조달계정에 계상된다.

(注2) 생산 및 수입세(순)는 (생산 및 수입세-보조금)이다.

생산 및 수입세(순)를 요소비용 표시의 현민소득(요소소득)에 더하는 것에 의해, 시장가격표시의 현민소득이 얻어질 수 있다.

## (2) 이전소득

소득지출계정에 계상되는 이전은, 경상적 수입(고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부터 총당되는 경상적인 이전지출이 대부분이다.

경상이전소득이란, 임금이나 소비활동에 깊이 관련되는 경상적인 거래에 기초한 소득을 말한다.

縣內에 있어서 이전소득의 지불과 수취는 서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즉, 어떤 사람의 지불은 지불받는 사람의 수취가 된다), 縣전체에서는 상쇄되며, 소득지출계정의 縣전체의 통합계정인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에는, 縣外와의 이전의 수취·지불만이 남게 된다.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으로 나타내는 경상이전에는, 재산소득과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 이외의 이전)이 있다.

① 재산소득은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임대료(토지의 순임대료, 특허료, 저작권료)가 된다.



②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이외의 이전)은, 크게 나누면 3종류로 되어 있다.

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이른바 직접세가 여기에 계상된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는 「자본이전」으로 처리되고, 자본조달계정(실물거래)에 기록된다.

나.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의 사회급부와 사회부담금

사회급부 중, 「현물이외에 의한 사회급부」(현금에 의한 사회급부)가 계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무기금)에 기인한 사회보장급부 중,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무기금 고용자 사회급부」가 계상되는 것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에는 기인하지 않는 「사회부조급부」가 계상된다.

또한, 「사회부조급부」는 현금에 의한 것과 현물에 따르는 것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통계의 제약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있다.

사회부담금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금이고, 「실제사회부담금」과 「귀속사회부담금」으로 나누어지며, 실제사회부담금은 다시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과 「고용자의 실제사회부담금」으로 나누어져 기록된다.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이란, 고용주가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는 기금(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회부담금을 가리키는데, 당해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자보수의 구성요소로서 계상하고, 동액을 가계가 일반정부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한 것으로 계상한다.

귀속사회부담금은,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가 고용자보수의 구성요소(「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로도 계상되기 때문에, 이중 수취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 동액을 가계가 고용주에게 지불한 것으로 계상한다.

다. 기타경상이전

이상의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및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에 의한 사회급부·사회부담금」이외의 경상이전으로, 비생명 순보험료·보험금, 일반정부내의 경상이전,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경상이전이 계상된다.

또한,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경상이전」에는 벌금,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기부금, 부담금, 가계간의 송금, 증여금 등의 타항목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상이전 거래가 포함되어 진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은 「기타경상이전」에, 일반정부내의 경상이전은 「기타 분류되지 않는 경상이전」에 포함된다.(편집자주)

(注) 일반정부의 「기타경상이전」에서는 정부산하기관, 현, 시정촌, 사회보장기금 상호간의 재정이전의 상황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어떤 都道府縣에도 속하지 않는 「國庫」라 의제된 거래주체를 설정한다.

### ③ 사회적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이란, 정부단위(사회보장기금을 포함) 및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가 개개의 가계에 대해서 行한 현물에 의한 사회이전으로서 지급한 재화 및 서비스이며, 이것은 정부 또는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가 시장에서 구입했는지 혹은 그 비시장 산출로서 생산한 것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현물사회급부와 개별적 비시장재·서비스의 이전에 관한 지출을 합친 것이며, 지출계열에서 추계한 일반정부의 개별소비지출과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전액을 합계한 것이 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참고)사회적현물이전」에 계상한다.

### (3) 최종소비 및 저축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및 가계의 지불항목에는, 지출계열에서 추계된 「최종소비지출」이 계상되고, 다시 수취합계에서 지출합계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은 「저축」으로 기록된다.

## 2.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은, 5개 제도부문의 소득지출계정을 종합해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지출계정과 같이, 當該縣의 거주자 주체에 대한 분배 및 재분배를 기록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縣外와의 소득의 지불도 포함된다.

이 중 재분배 항목에 대해서는, 縣內 부문간의 것은 수취계=지불계이기 때문에 전부 상쇄되고, 縣外와의 수불분만이 계상된다.

또, 縣外와의 수불은 모든 수취액과 지불액의 차액으로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정 수취의 합계치에는, 5개 제도부문간의 소득지출계정에 있어서 가처분소득을 집계한 「현민가처분소득」이 제표된다. 지불의 합계치에는 그 사용으로서 「현민가처분소득의 사용」이 제표된다.

이 계정에 의해 현민의 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 평균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을 산출할 수 있으며, 매크로 경제분석상 중요한 계정이 되고 있다.

### 3.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는, 제도부문 소득지출계정 각 제도부문의 해당 항목을 재구성하여 표시하는 것에 의해 얻어진다. 다음 주요계열표-2의 제표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 (1) 현민소득(요소비용표시)

현민소득(요소비용표시)이란 「요소비용표시의 현민순소득」을 의미하며, 이것은 현민 총소득에서 고정자본감모와 생산 및 수입세(순)를 공제한 금액이고, 현민 베이스의 고용자보수 + 영업잉여·혼합소득(요소소득) 과 같아진다. 통상, 현민소득이란 이것을 가리킨다.

또한, 주요계열표-2에서 현민소득(요소비용표시)은 고용자보수(소득지출계정에서), 재산소득(비기업부문) 및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지불後)을 내역으로 제표된다.

##### ① 재산소득 (비기업부문)

재산소득(비기업부문)은 소득지출계정의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이외 제도부문의 재산소득이 제표된다.

##### ②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지불後)

기업소득은, 소득지출계정의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재산소득의 지불차액, 즉 순재산소득을 더한 것으로 가.민간법인기업, 나.공공기업, 다.개인기업의 3개 부문별로 소득지출계정으로부터 재구성되어 계상된다.

#### (2)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생산 및 수입세(순) 이다.

#### (3) 현민소득(시장가격표시)

현민소득(시장가격표시)은, 현민소득(요소비용표시)에 생산 및 수입세(순)을 더한 것이다.

#### (4) 기타경상이전(순)

기타경상이전은 ①비금융법인기업 및 금융기관, ②일반정부, ③가계(개인기업을 포함)

④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 나뉘어 제표되고,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의 受拂차액이 계상된다.

### (5) 현민가처분소득

현민가처분소득은 현민소득(시장가격표시)에 기타경상이전(순)을 더한 것이고, 종합계정의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 수취항목 합계치와 일치한다.

#### 4.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의 제표형식

##### 비금융 법인기업

|   |   |
|---|---|
| 1.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임대료<br>2.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br>3.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br>4.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순보험료<br>5. 저축 | 6. 영업잉여<br>7.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br>(4) 임대료<br>8. 귀속사회부담금<br>9.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보험금 |
| 지불  | 수취  |

(株)법인기업의 분배소득에는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재투자 수익이 포함된다.

##### 금융기관

|   |  |
|---|--|
| 1.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br>(4) 임대료<br>2.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br>3.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의 사회급부<br>(1)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br>(2)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br>4.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순보험료<br>비생명 보험금<br>5.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br>6. 저축 | 7. 영업잉여<br>8.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br>9. 사회부담금<br>(1) 실제사회부담금<br>a. 고용주의 자발적 실제사회부담금<br>b. 고용자의 자발적 사회부담금<br>(2) 귀속사회부담금<br>10.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순보험료<br>비생명 보험금 |
| 지불  | 수취   |

일반정부

|   |  |
|---|--|
| <p>1. 최종소비지출</p> <p>2. 재산소득<br/>(1) 이자<br/>(2) 임대료</p> <p>3. 보조금</p> <p>4.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의 사회급부<br/>(1)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br/>(2)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br/>(3) 사회부조급부</p> <p>5. 기타경상이전<br/>    비생명 순보험료</p> <p>6. 저축</p> | <p>7.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br/>(4) 임대료</p> <p>8. 생산 및 수입세</p> <p>9.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p> <p>10. 사회부담금<br/>(1) 실제사회부담금<br/>    a. 고용주의 강제적 실제사회부담금<br/>    b. 고용자의 강제적 사회부담금<br/>(2) 귀속사회부담금</p> <p>11. 기타경상이전<br/>    비생명 보험금</p> |
| 지불  | 수취   |
| <p>(참고) 사회적현물이전<br/>    현물사회급부</p>  |  |

가계 (개인기업 포함)

|   |  |
|---|--|
| 1. 최종소비지출<br>2. 재산소득<br>(1) 소비자 부채이자<br>(2) 기타 이자<br>(3) 임대료<br>3.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br>4. 사회부담금<br>(1) 실제사회부담금<br>a.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br>b. 고용자의 사회부담금<br>(2) 귀속사회부담금<br>5.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순보험료<br>6. 저축 | 7. 영업잉여·혼합소득<br>(1) 영업잉여 (자가주택)<br>(2) 혼합소득<br>8. 고용자보수<br>(1) 임금·봉급<br>(2) 고용주의 사회부담금<br>a.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br>b.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br>9. 재산소득<br>(1) 이자<br>(2) 배당<br>(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br>(4) 임대료<br>10.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의 사회급부<br>(1)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br>(2)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br>(3) 무기금 고용자 사회급부<br>(4) 사회부조급부<br>11.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보험금<br>12.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 |
| 지불  | 수취   |
| (참고) 가처분소득<br>저축율 (%)   | (참고) 사회적현물이전<br>현물사회급부   |

(注) 1. 가처분소득 = (수취-12) - (2~5의 합계)

2. 저축율 = 저축 ÷ (가처분소득 +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   |
|--|---|
| 1. 최종소비지출<br>2. 재산소득<br>(1) 이자<br>(2) 임대료<br>3. 사회적현물이전 이외의 사회급부<br>(1) 무기금 고용자 사회급부<br>(2) 사회부조급부<br>4.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순보험료<br>5. 저축 | 6. 재산소득<br>(1) 이자<br>(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br>(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br>(4) 임대료<br>7. 귀속사회부담금<br>8. 기타경상이전<br>비생명 보험금 |
| 지불   | 수취  |



## 5. 현민가처분소득 사용계정의 제표형식

|                                       |   |
|---------------------------------------|---|
| 1. 민간최종소비지출<br>2. 정부최종소비지출<br>3. 현민저축 | 4. 고용자보수(縣內 활동에 의한다)<br>5. 縣外로부터의 고용자보수(순)<br>6. 영업잉여·혼합소득<br>7. 縣外로부터의 재산소득(순)<br>8. 생산 및 수입세<br>9. (공제) 보조금<br>10. 縣外로부터의 기타경상이전(순) |
| 현민가처분소득의 사용                           | 현민가처분소득   |

## 6.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 분배의 제표형식

| 항목                           |
|------------------------------|
| 1. 고용자보수                     |
| (1) 임금·봉급                    |
| (2)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
| a.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
| b.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              |
| 2. 재산소득 (비기업 부문)             |
| a. 수취                        |
| b. 지불                        |
| (1) 일반정부                     |
| a. 수취                        |
| b. 지불                        |
| (2) 가계                       |
| ① 이자                         |
| a. 수취                        |
| b. 지불                        |
| ② 배당 (수취)                    |
| ③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
| ④ 임대료 (수취)                   |
| (3)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 a. 수취                        |
| b. 지불                        |
| 3. 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     |
| (1) 민간법인기업                   |
| a. 비금융 법인기업                  |
| b. 금융기관                      |
| (2) 공공기업                     |
| a. 비금융 법인기업                  |
| b. 금융기관                      |
| (3) 개인기업                     |
| a. 농림수산업                     |
| b. 기타 산업 (비농림수·비금융)          |
| c. 자가주택                      |
| 4. 현민소득 (요소비용표시) (1 + 2 + 3) |

- 5. 생산 및 수입세 (공제) 보조금
- 6. 현민소득 (시장가격표시) (4 + 5)

7. 기타경상이전(순)

- (1) 비금융 법인기업 및 금융기관
- (2) 일반정부
- (3) 가계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 (4)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8. 현민가처분소득 (6 +7)

- (1) 비금융 법인기업 및 금융기관
- (2) 일반정부
- (3) 가계 (개인기업을 포함한다)
- (4)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제1장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

### 제1절 고용자보수

고용자보수는, 고용자가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현금이나 현물급여이며, 이외에 고용주가 고용자복지를 위해 직접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도 고용자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자보수의 구성항목으로서 계상된다.

고용자보수는 소득지출계정 가계부문의 대변으로 계상되고, 그 내역은 (1)임금·봉급, (2)고용주의 사회부담금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항목                 |
|------------|--------------------|
| (1) 임금·봉급  | (2)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
| ①현금급여      | ①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
| ②현물급여      | a.고용주의 강제적 실제사회부담금 |
| ③임원급여수당    | b.고용주의 자발적 실제사회부담금 |
| ④의원 세비등    | ②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     |
| ⑤급여주택 차액집세 | a.퇴직 일시금           |
|            | b.공무 재해보상비         |
|            | c.기타               |

소득지출계정은 거래주체를 전제로 한 제도부문별 계정으로, 추계는 縣內의 고용자보수 이외에 縣外로부터의 고용자보수(수취), 縣外로의 고용자보수(지불)를 추계하고, 현민 기준으로 추계한다.

현민기준의 고용자보수는 소득지출계정 「가계」의 수취와 주요계열표의 主-2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로 계상된다.

또한, 縣內베이스 고용자보수는 생산계정의 縣內요소소득의 내역으로서 계상된다.

(注) 雇傭者란, 縣內에 상시거주지를 갖고, 산업 및 정부서비스생산을 포함하는 모든 생산활동에 常雇·日雇에 상관없이 종사하는 취업자中, 개인업주와 무급의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며, 법인기업의 간부, 특별직의 공무원, 議員 등도 고용자에 포함된다.

고용자와 관련하여 縣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상시 거주지주의를 택하여, 상시거주지에 속하는 현의 거주자만 고용자로 한다. 3개월 이상 他縣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는 국세조사에 준거하여 근무지를 상시거주지로 본다.

## 1. 임금·봉급

### (1) 현금급여

고용자가 노동제공의 보수로서 받는 임금·봉급 중 화폐로 지불되는 것으로, 임금·급여, 수당, 상여, 세비, 보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는 배당으로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고용자數에 1인당 임금액을 곱해서 추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농림수산업

##### a. 농업

###### (a) 농가

농가1호당 농업고용노임 × 農家戶數에 의하여 추계한다.

농업고용노임 × 농가호수 : 『농업경영통계조사』(농림수산성)

###### (b) 기타(농업기업 등)

농업법인사업체의 고용자보수는, 縣主管課자료 혹은 縣단독조사등에 의해 추계  
가산한다.

##### b. 임업

사업소에 직접조회하여 임금·봉급 지불액을 추계하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각각의 縣內순생산에 인건비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 (a) 국유림

국유림의 縣內순생산 × (인건비/순생산)에 의한다.

인건비, 순생산 : 縣內所在營林署의 사업결산서 등에 의한다.

###### (b) 민유림

민유림의 縣內순생산 × 임야면적의 현별 개인분할률 × 고용노임률에 의한다.

고용노임률 : 『林家경제조사보고』(농림수산성)의 고용노임/순생산에 의한다.

산업별 縣內순생산은 생산계정의 「임업」으로 한다.

또, 임업 법인사업체에 있어서 고용자보수는 각 현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추  
계한다.

c. 수산업

수산업의 縣內순생산 × 고용노임률에 의한다.

고용노임률 : 『어업경제조사보고』(농림수산성)의 海區別表 등에서 산출한다.

d. 유급가족종업자의 현금급여 가산

유급가족종업자분의 현금급여를 다음 式에 따라 추계하고, 위의 추계액에 가산한다.

$$\text{유급가족종업자의 현금급여} = \text{유급가족종업자 1인당 연간평균급여} \times \text{유급가족종업자수에 의한다.}$$

상기의 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a) 유급가족종업자 1인당 연간평균급여

전국의 유급가족종업자 1인당 연간평균급여(1979년)를 이용하고, 그 前後를 별도 관련통계의 動向으로 보완 추계한다.

- 농업은 『농촌물가임금통계』(농림수산성) 농업고용노동임금의 남녀평균 신장률에 의한다.
- 임업은 『임업노동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후생노동성)의 職種計에 의한다.
- 수산업은 중소어업평균고용노임에 의한다(『어업경제조사보고(기업체의 部)』 등).

(b) 유급가족 종업자수 :

가족종업자수 × 전국의 가족종업자총수에서 차지하는 有給의 비율에 의한다.

가족종업자수 : 『국세조사보고』(총무성)의 가족종업자수를 농림수산업 이외 산업의 상용고용자수 보완방법에 준해서 보정·보완한다.

② 농림수산업 이외의 산업

상용고용자와 임시·日雇 및 유급가족종업자로 나눠서 추계한다.

단, 서비스업中の 교직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료상 제약으로 별도추계 가산한다.

a. 상용고용자(서비스업中の 교직원·공무원을 제외)

산업별 상용고용자의 임금·봉급은 상근임원포함 상용고용자수 × 상근임원포함 상용고용자 1인당 임금·봉급 - 상근임원 소득액(급여수당)의 式에 의해 구한다.

\*上記와 같이 추계하는 것은 (b)의 1인당 임금·봉급 추계에 사용하는 『매월근로 통계조사보고』(후생노동성)가 상근임원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a) 상근임원을 포함하는 상용고용자수

$$\text{상근임원포함 상용고용자수} = \text{상용고용자수} \times \text{二重고용비율} + \text{상근임원수(二重고용조정제)} - \text{임사·日雇 노무자}$$

상용고용자수 : 『국세조사보고』(총무성)의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취업구조 기본조사보고』(총무성)의 산업별 고용자수, 『매월근로통계 조사보고-地方調査-』(후생노동성)의 상용고용자수 등을 이용 보정·보완 추계하여, 각 연차별 고용자수를 추계한다.

二重고용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下記1) 참조

상근임원수(이중고용조정後) : (3)에서 상근임원수 × 이중고용비율을 집계한다.

임사·日雇노무자 : 다음 쪽 c. 에 의하여 추계(下記2) 참조

\* 1) 『국세조사』에서는, 1인의 일을 초가 되는 것 하나로 한정하고 있지만, SNA에서는, 2개 이상의 일에 종사하고 동시에 사업소도 다른 경우, 각각 1인으로 센다. 그 때문에, 副業者분을 가산하기 위해서 상기와 같이 이중고용비율을 곱해 추계하고 있는 것이다.

2) 임사·日雇분을 공제하는 것은, 상기에서 추계한 상근임원을 포함하는 고용자수에, 임사·日雇 노무자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b) 상근임원을 포함하는 1인당 현금급여 총액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甲30명이상-로부터 아래의 산업대분류별로 구한다.

○광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운수·통신업, ○전기·가스·수도업, ○서비스업(교직원 제외)

산업별 소규모 1인당 현금급여액은

$$(\text{30이상의 1인당 현금급여액} \times \text{30인이상의 상용고용자수}$$

$$+ \text{29인이하의 1인당 현금급여액} \times \text{29인이하의 상용고용자수}) /$$

(30인이상의 상용고용자수 + 29인이하의 상용고용자수) 에 의한다.

또한, 위 식의 계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한다.

- 30인 이상의 1인당 현금급여액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地方調査-』 常雇 30인 이상의 1인당 현금급여총액 의한다.

- 29인 이하의 1인당 현금급여액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의 결과를 기초로, 현단독조사 또는 『민간급여 실태통계조사결과보고』(국세청) 등에서, 30인 이상과 29인 이하의 급료수당의 격차를 이용해서 추계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격차를 준용한다.

- 30인 이상과 29인 이하의 고용자수

『사업소통계조사보고』에서 구한다.

(c) 상근임원의 소득액

後述의 (3) 임원급여수당을 참조.

b. 서비스업中 교직원·공무원 등 상용고용자

(a) 서비스업中 교직원

교직원 중 공립은 縣교육위원회 자료, 국립 및 사립은 직접 조회하여 얻은 소득액 또는 『학교기본조사보고서』(문부과학성) 등에서 추계한다.

(b) 공무원

국가공무원 및 자위대원은 직접 조회, 지방공무원은 縣인사위원회, 기타 소관과에 직접 조회한다.

c. 임시·日雇

산업별 日雇의 1인당 평균일액 × 산업별 취업延人員에 의한다.

산업별 日雇의 1인당 평균일액 :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지방조사-』 산업별 日雇의 1인당 평균일액(임금·봉급에서와 같이 規模보정한다.)에 의한다. 단지, 1990년부터 상기 항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매월근로통계조사보고-지방조사-』의 「常雇(여자)의 정기급여」 증감률을 이용, 元年度値를 연장추계해서 구한다.

산업별 취업延人員 :

『日雇취직상황조사』(縣主管課)에 의한다. 또한, 『日雇취직상황조사』의



산업별 취업연인원 파악이 누락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업소통계조사보고』의 임시 및 日雇 고용자수와 실업대책사업 등의 가동일수를 이용한다.

#### d. 유급가족종업자

1인당 1~29인 상용고용자 평균현금급여 × 유급가족종업자로 구한다.

1인당 1~29인 상용고용자 평균현금급여 :

上記의 농림수산업 이외산업의 상근임원을 포함하는 1인당 현금급여 총액

의 29인 이하의 1인당 현금급여액 {1.-(1)-②-a.-(b)} 에 의한다.

유급가족종업자수 : 가족종업자수 × 가족종업자총수에서 차지하는 유급의 비율

가족종업자총수에서 차지하는 유급의 비율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2) 현물급여

자사제품 등의 현금이외에 의한 급여지불, 식사 또는 통근정기권 등의 지급이나, 소비물자의 영가판매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이 있다.

그런데, 자위대원의 식량피복의 지급은 일반정부서비스생산자의 중간투입으로 처리하며, 고용자보수의 현물급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현물급여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지급에 필요한 비용(원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고용자의 부담분은 제외한다.

고용자의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생산자의 이익이 되는 것 예를들면, 건강진단이나 스포츠시설, 레크레이션시설 등의 제공은 생산자의 중간투입이며, 고용자보수가 아니다.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현금급여소득 × 현물급여비율

현물급여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上記는 어느 쪽도 임시·日雇·상근임원·가족종업자를 포함)

또한,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추계시에 현물급여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 (3) 임원급여수당

상근비상근에 관계없이 법인기업의 임원에 대해서 지불되는 급여수당으로, 기업회계상 비용처리되는 것만을 기록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는 배당으로 처리한다.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인당 임원급여수당 × 임원수에 의한다.

상기中的 계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① 1인당 임원급여수당

1인당 현금급여(상근임원을 포함) × 전국의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

1인당 현금급여 : 1. - (1)에 의한다.(2-15쪽 참조: 편집자주)

전국의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 : 전국의 「임원/상근임원을 포함하는 상용고용자」를 준용한다.

② 임원수

「국세조사보고」를 기초로 추계한 임원수(상근 및 기타임원)에 二重고용비율을 곱해서 추계한다. 二重고용비율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상근임원분은 전국의 상근임원비율을 이용해서 구한다.

또한,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현금급여추계時 임원급여수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 (1) -②-a. 농림수산업 이외산업의 상용고용자 임금봉급에서 공제하는 상근임원분의 1인당 현금급여액 추계時에 이용하는 전국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는 「상근임원/상근임원을 포함하는 상용고용자」를 이용한다.

(4) 의원세비 등

縣市町村會 議員의 보수, 지방공공단체의 委員수당, 그리고 국회의원中 縣內에 생활근거를 갖고 현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의원의 세비를 포함한다.

직접조회 및 현·시정촌의 결산서로부터 추계한다.

(5) 급여주택 차액집세

사택, 공무원주택 등에서 시중 집세보다 저렴한 집세로 종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의 종업자의 지불집세와 時價(시정촌 평균집세)와의 차액을, 입주자가 받는 현물급여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계상한다.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1개월 1㎡당 시중 평균집세(민영설비전용, 同설비공용, 공영의 각 借家집세의 가중평균) - 1개월 1㎡당 급여주택집세} × 급여주택면적 × 12개월

## 2.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일반정부 부문에 속하는 사회보장기금 및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연금기금에서의 고용주 부담금으로서, 전자를 「고용주의 강제적 실제사회부담금」, 후자를 「고용주의 자발적 실제사회부담금」이라 한다.

추계대상범위는 아래와 같고, 「제5절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 이외의 이전)의 2. 실제사회부담금」의 항을 참고로 해서 추계한다.

### A. 고용주의 강제적 실제사회부담금

#### (1) 특별회계

##### ① 후생보험 (아동수당 제외)

- a. 정부관할 건강보험
- b. 후생연금

##### ② 노동보험

- a.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 b. 고용보험(舊 실업보험)

##### ③ 선원보험

#### (2) 공제조합

##### ①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동연합회

##### ②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동연합회

##### ③ 舊 공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 ④ 기타

- a.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 b. 지방직원공제조합(단체공제부)
- c. 지방의회의원공제회
- d.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 (3) 조합관할 건강보험

- ① 정부관련 건강보험조합
- ② 민간건강보험조합

#### (4) 아동수당

- ① 민간분

② 공무원분

#### (5) 사회보장기금

- ①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
- ② 소방단원등의 공무재해보상等 공제기금

### B. 고용주의 자발적 실제사회부담금

- (1) 후생연금기금·동연합회
- (2) 석탄광업연금기금
- (3) 적격퇴직연금
- (4)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 (5) 중소기업종합사업단 (1999년 6월까지의 중소기업사업단) 소규모 기업공제계정

### 3.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

퇴직일시금 및 사회보장기금에 의하지 않는 업무재해보상 등은 고용주부담금으로 처리한다.

#### (1)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지급에 필요한 고용주의 비용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발생 베이스로 기록해야 하지만, 기초자료의 제약으로 실제의 지불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간주하여 계상한다.

##### ① 민간분

國稅局管内 원천소득세中 퇴직소득의 기타 민간분 × 同원천소득세액의 縣內分/管内分

『국세청통계연보서』(국세청) 縣內·현민비율 등에서 현민베이스로 고친다.

다만, 세무통계의 퇴직소득에는 고용주로부터 지불된 퇴직일시금 외에 연금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부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기 위해, 별도 직접조회등을 통하여 추계 공제한다.

단, 연금기금의 직접조회는 자료적 제약으로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에 대해서만 추계한다.

## ② 정부·정부관련기관분

국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조회에 의해, 현·시정촌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다.

## (2) 공무재해보상비

민간고용자에 대한 勞災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급부액을 사회보험료의 고용주부담금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자보수에 가산한다.

단지,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재해보상기금은 고용주의 강제적 실제사회부담금에 포함해, 여기에서는 제외된다.

국가산하기관 및 현·시정촌의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다음의 항목을 계상한다.

### ① 국가공무원, 3공사 직원에 해당한다(1984년도까지)

- a. 공무재해보상비
- b. 특별조위금
- c. 조위금

### ②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 a.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의 인건비중 재해보상비의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부담금이외

## (3) 기타

上記 이외의 고용자복지를 위한 고용주부담금으로서, 다음의 것이 대상이 된다.

○법정보상, ○노동자재해보상책임보험, ○勞災보험에의 부가급부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손해보험에 따르지 않는 勞災보험에의 부가급부, ○건강보험에의 부가급부, ○교통상해보험 등 고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의 부담금, ○고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 등에의 부담금 중 다른 곳에서 추계되어 있지 않은 것,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에 대한 장려금·급부금이 포함된다.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금급여 × (전국 고용자보수의 기타 / 전국의 현금급여)

현금급여 : 상근인원을 포함하는 농림수산업, 공무이외의 산업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

생산계열에서 추계된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분배계열 관련(人的)자료를 이용하여, 비금융 법인기업(민간과 公的으로 구분), 금융기관(민간과 公的으로 구분), 가계(개인기업[농림수산업, 기타산업, 자가주택으로 구분]을 포함한다)의 각 제도부문별로 분할하고,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구한다.

이 경우, 각 제도부문과 경제활동부문의 추계단위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직접 각 제도부문의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직접 제도부문으로 분류될 수 없는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각 제도부문별로 우선 관련자료에서 기업소득을 구하고(개인기업의 기타산업을 제외한다), 이 기업소득을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구한다. (상세한 것은 3)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 참조)

추계는 다음의 순으로 한다.

- 「1)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의 추계」
- 「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
- 「3)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

또한, 본 항목에 있어서 영업잉여·혼합소득은 재고품평가조정後의 계수를 이용한다.

### 1)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의 추계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 = 산출액 - 중간투입 - 고정자산감모 - 생산 및 수입세(순)

모든 계수 : 생산계열의 계수를 적용한다.

####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의 推計圖]

##### [경제활동별 분류]



## 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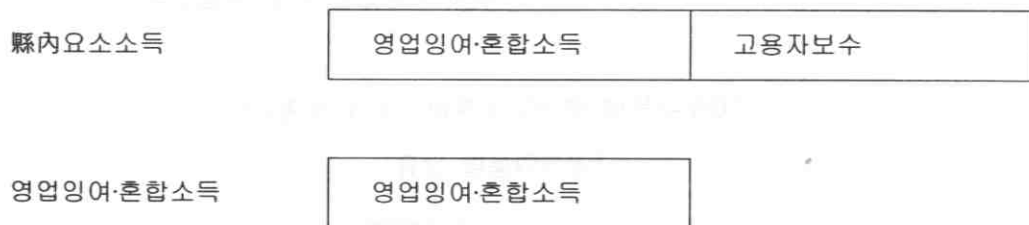
「1)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의 추계」에서 구한 縣內순생산(요소비용표시) = 縣內요소소득(요소비용표시)이며, 다음 式으로부터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구한다.

$$\text{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 = \text{縣內요소소득} - (\text{內베이스}) \text{ 고용자보수}$$

(內베이스) 고용자보수 : 「제1절 고용자보수」의 계수를 적용한다.

###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도]

#### [경제활동별 분류]



## 3)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

「영업잉여」란, 「법인기업이 貸出 또는 借入을 행하고 있는 금융자산 또는 유형비생산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지불이자, 임대료 또는 동종의 요금 등이 고려되기 前단계에서, 법인기업이 생산에서 발생하는 흑자적자를 계측하는 것」(國連 93SNA)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가계(개인기업)의 영업잉여는 「혼합소득」이라 한다. 이를 받아들여 국민계정에서도 지금까지의 영업잉여만의 개념으로부터 가계부문에서는 새롭게 혼합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가계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영업잉여 : 가계부문의 「자가주택」 분만

혼합소득 : 임금·봉급의 수취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은 가계(개인기업)의 경제활동베이스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부터 「자가주택」 분을 차감한 잔차(생산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보수에 관한 요소)

즉,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중 「자가주택」 분에 대해서는 「영업잉여」, 가계 중 「농림수산업」 「기타산업」에 대해서는 「혼합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에서 구한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 전환한다.

이때, 「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을 「1. 직접추계의 영업잉여」와 「2.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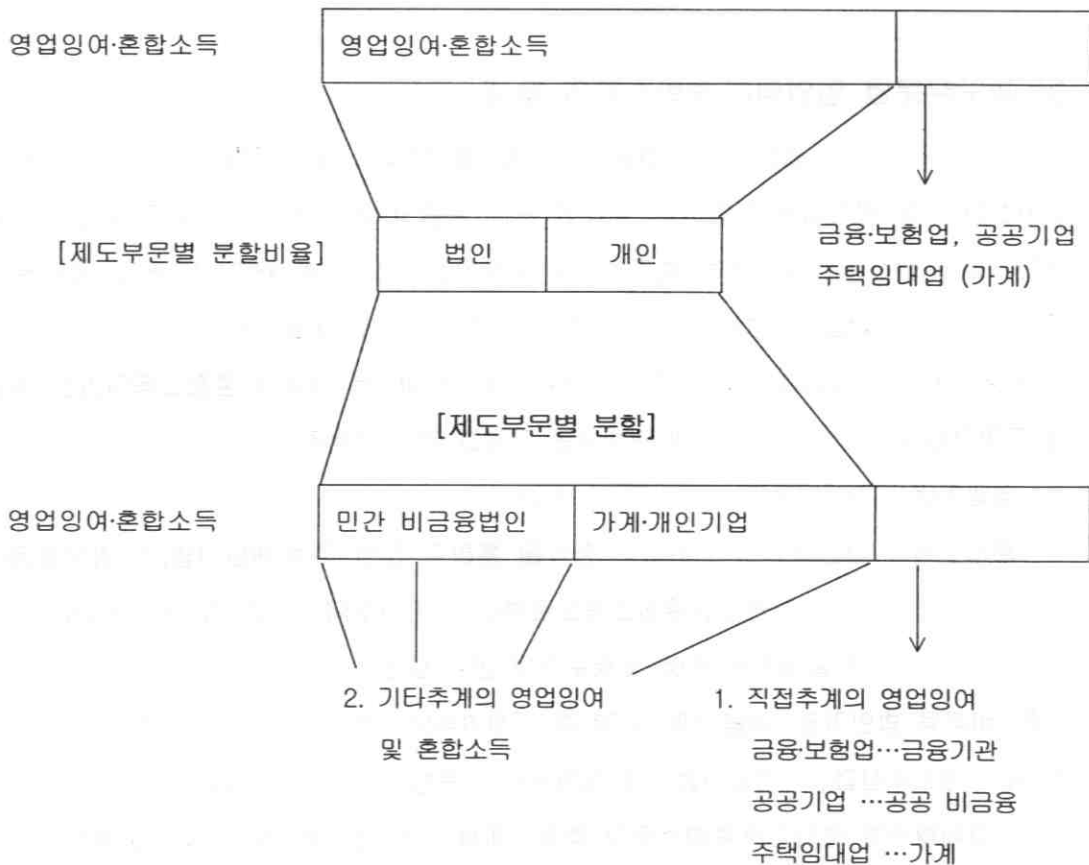
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 별로 분류하고, 「1. 직접추계의 영업잉여」는 각 경제 활동부문과 각 제도부문의 추계단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각 제도부문의 영업잉여로 계상한다.

한편, 「2. 기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과 각 제도부문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 분할비율]을 작성하고, 이 비율을 이용해서 각 제도부문으로 분할한다.

$$\begin{aligned} \text{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 &= \text{직접추계의 영업잉여} \\ &+ \text{기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 \end{aligned}$$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추계도]

[경제활동별 분류]





## 1. 직접추계의 영업잉여

다음 3개의 경제활동부문에 대해서는, 경제활동부문=제도부문이기 때문에, 경제활동별 영업잉여를 그대로 직접추계의 영업잉여로 한다.

직접추계의 영업잉여 = [금융보험업 + 공공기업(금융기관을 제외) + 주택임대업(자가주택)]의 경제활동별 영업잉여

### (1) 금융보험업(민간, 공공)

금융보험업(공공+민간)의 영업잉여에서 귀속이자를 공제한 것을 금융기관의 영업잉여로 한다.

### (2) 공공기업(금융기관을 제외 한다)

각 공공기업은 각각의 결산서 등에서 추계한 영업잉여를 비금융 법인기업(공공)의 영업잉여로 한다.

### (3) 주택임대업(자가주택)

부동산업 중 주택임대업의 영업잉여에서 자가주택을 분리해서 가게(개인기업)의 주택임대업의 영업잉여로 하며, 가게(개인기업)에 귀속시킨다.

가게(자가주택)의 영업잉여 = 주택임대업의 영업잉여 × 자가주택 비율

자가주택 비율 : 지출계열·직접추계법에서 추계한 「자가주택床면적/전체주택床면적」에 의한다.

## 2. 기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

「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에서 「1. 직접추계의 영업잉여」를 공제한 잔차에, 다음의 비율[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 분할비율]을 곱하여,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민간 비금융법인, 가계(개인기업)로 분할)을 구한다.

기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

$$= ( \text{「2) 경제활동별 영업잉여·혼합소득」} - \text{「1. 직접추계의 영업잉여」} ) \times [ \text{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 분할비율} ]$$

[제도부문별 영업잉여·혼합소득 분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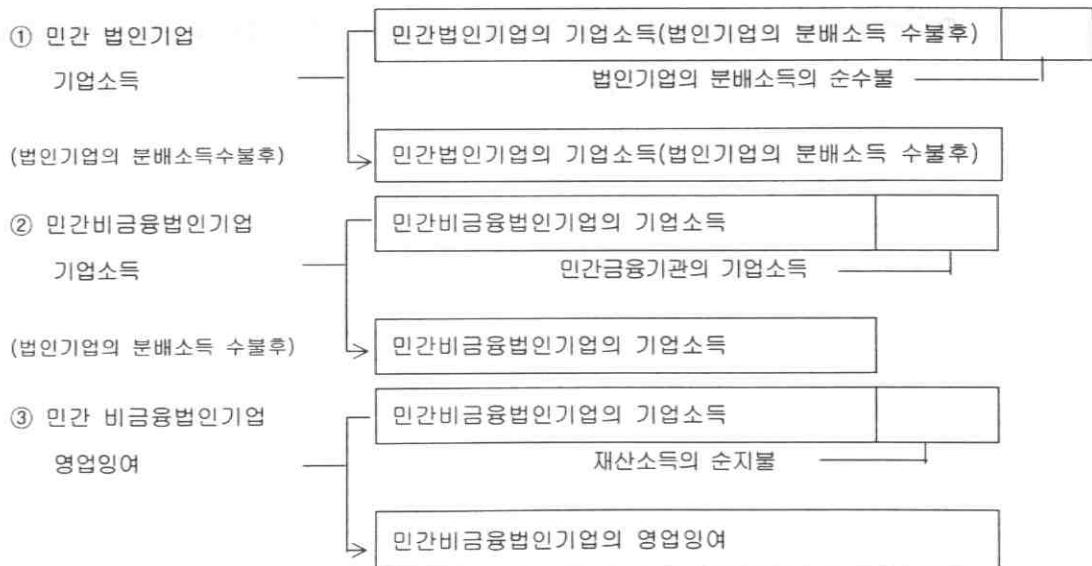
이 비율은 (1)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2) 개인기업별로 세무통계 등 인적자료를 이용해서 영업잉여·혼합소득을 구하고, 양자의 비율로서 기타추계의 영업잉여 및 혼합소득을 제도부문별(비금융법인 및 가계)로 분할하는 것이다.

### (1)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민간 비금융법인기업의 영업잉여의 추계는,

- ① 민간 법인기업의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受拂後)의 추계
- ②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기업소득의 추계(비금융·금융으로 분할)
- ③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의 추계(영업잉여로의 전환)의 순서로 추계한다.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의 추계도]



① 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의 추계

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

$$= \text{민간 법인기업소득(법인기업 분배소득 수불전)} - \text{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순지불}$$

○ 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전)

「법인사업세」(縣세무과) 및 「세무통계로 본 법인기업의 실태」(국세청)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전)

$$= \text{A. (법인소득} \times \text{연도전환비율)} + \text{B. 공제액 등} + \text{C. 기부금}$$

A. 법인소득

법인소득 : 아래의 「a.」 ~ 「c.」 소득의 합계로 한다.

또한, 「a.」 「b.」는 「법인사업세에 관한 조사」(縣세무과); 「c.」는 「비과세 사업에 관한 조사」(縣세무과)에 의한다.

a. 稅法人의 소득 = 「보통법인 + 특별법인 + 공익법인 기타」의 소득

b. 입금액 과세법인의 소득 = 「전기, 가스 공급업 + 생명, 손해보험업」의 소득

c. 사업법인의 소득

연도전환비율 :

「법인사업세」와 현민경제계산에서는, 대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월별 조정액을 이용해서 연도전환비율을 작성한다.

또한, 「법인사업세」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세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都道府縣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월의 2개월 후를 신고납부월로 하고 다음과 같이 월별의 납세액을 이용해서 연도전환비율을 작성한다.

$$\text{연도전환비율} = \sum(\text{해당월 조정액} \times \text{당해월수} / 12) / \text{당해연도 조정액}$$

B. 공제액 등 : 아래의 「a.」 + 「b.」 - 「c.」로 한다.

또한, ( )안은 「세무통계로 본 법인기업의 실태」(국세청)에서 집계한다.

a. 이월결손금당기공제액 = A. 법인소득 × (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액 / 調査소득금액이익)

b. 세법상 소득공제액 = A. 법인소득 × (준비금 등의 순증가분 / 調査소득금액·이익)

c. 결손회사 결손금 = A. 법인소득 × (調査소득금액·결손 / 調査소득금액·이익)

C. 기부금 : (A.법인소득 + B. 공제액等) × 기부금 비율에 의한다.

기부금 비율 : 전국의 금융기관·비금융 법인기업으로부터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기부금을 전국의 민간 법인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전)으로 나누어 구한다.

#### ○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순지불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순지불 = 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전)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 : 전국 민간법인기업의 분배소득의 순지불 / 전국의 민간법인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전)에 의한다.

#### ②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기업소득의 추계 (비금융·금융의 분할)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기업소득 = ②민간 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 분배소득 수불후) × 제도부문 분할비율

제도부문 분할비율 : 「법인사업세에 관한 조사」(縣세무과)에서, 全산업에 대한 금융·보험업 이외산업의 소득액 또는 事業稅額의 구성비로 한다.

#### ③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의 추계 (영업잉여로의 전환)

민간비금융법인 영업잉여 = ①민간비금융법인 기업소득 × 영업잉여 전환비율

영업잉여 전환비율 : 전국 민간비금융법인영업잉여 / 전국 민간비금융법인기업소득

### (2) 개인기업

농림수산업, 기타산업 및 주택임대업中 자가주택에 의한 영업잉여·혼합소득 등 3가지로 나뉘어서 추계한다.

전국의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영업잉여·혼합소득의 비율 등을 참고로 해서 기업소득을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 전환한다. 이 중, 자가주택에 의한 주택임대업의 영업잉여는 경제활동별 영업잉여에서 직접 옮겨 전환한다.

(참고)

제도부문별 비율작성을 위한 개인기업 혼합소득의 추계는, 민간 비금융법인기업의 추계와 같이, 세무통계(「개인사업세」 등)를 이용해서 개인기업의 기업소득을 추계하고, 이를 혼합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세의 납세의무자에 한정된다)

① 농림수산업

$$\text{농림수산업 혼합소득} = \text{同業순생산(요소비용표시)} - \text{同業(內베이스) 고용자보수} - \text{同業 민간법인기업 영업잉여}$$

同業순생산(요소비용표시) : 생산계열의 계수를 이용한다

同業(內베이스) 고용자보수 : 「제1절 고용자보수」의 계수를 적용한다

同業 민간법인기업 영업잉여 : 민간법인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 × 산업분할비율 × 영업잉여 전환비율

민간법인기업소득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 :

「(1) 민간비금융법인기업, ①민간법인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불후)의 추계」에 의함.

산업분할비율 : 「법인사업세에 관한 조사」(縣세무과)에서, 全産業에 대한 농림수산업의 비율을 이용한다.

영업잉여 전환비율 : 「전국의 농림수산업 개인기업의 혼합소득 / 전국의 농림수산업 개인기업의 기업소득」을 준용.

② 기타산업

$$\text{기타산업 혼합소득} = \sum \text{각 산업 (a.1개인기업당 혼합소득} \times \text{b.개인기업數)} + \text{c.內職 혼합소득} + \text{d.겸업혼합소득} - \text{e.유급가족종업자 급여}$$

a. 1개인기업당 혼합소득 : 전국의 산업별 1개인기업당 혼합소득 × 소득격차에 의한다.

소득격차 : 「국세청통계연보서」(국세청)의 신고소득세에서, 영업소득 1인당 소득금액의 全國値와의 격차에 의한다.

b. 개인기업수 : 개인기업수는 『국세조사보고』(총무성)를 기초로 하여, 中間年은 『縣노동력조사』(縣主管課)에 따르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취업구조기본조사보고』(총무성) 및 『사업소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해 보정보완 추계한다.

또한, 內職혼합소득은 별도추계하기 때문에, 內職자수를 여기에서 공제한다.

c. 내직혼합소득 : 제조업, 서비스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내직혼합소득} = 1\text{개인기업당 혼합소득} \times \text{내직소득할} \times \text{내직자수}$$

내직소득할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내직자수 : 『국세조사보고』(총무성)에서 집계한다.

또한, 中間年는 同資料의 「내직자수 / 業主數」의 비율을 各年의 개인기업수에 곱해서 구한다.

d. 겸업혼합소득 : 서비스업, 非서비스업 별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겸업혼합소득} = \text{개인기업 혼합소득} \times \text{겸업비율}$$

e. 유급가족종업자 급여 : 고용자보수의 유급가족종업자 급여를 이용한다.



### 제3절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

생산계열의 추계방법 참조.

「일반정부」의 (수취)생산 및 수입세, (지불)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사업소 소재지역의 일반정부가 실제로 수취하는 收納濟額이지만, 縣內경제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취)생산 및 수입세를 縣內정부가 받는 생산 및 수입세로 간주한다.

또한, 보조금도 똑같이 처리한다.



## 제4절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어떤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금융자산, 토지 및 저작권·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 그 결과로서 생기는 소득이며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및 「임대료」로 분류된다. 이것들은 발생주의 원칙대로 이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불의무 발생시점에서 계상하고,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금의 소액나 이윤획득時가 아니라 지불의 의무발생시점에서 계상하고 있다.

### 재산소득의 내역항목

| 재산소득                  |
|-----------------------|
| (1)이자                 |
| (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 (a. 배당)               |
| (주식·출자금 배당 등)         |
| (임원상여)                |
| (b. 준법인기업 소득인출)       |
| (공공 준법인소득인출)          |
| (해외지점수익)              |
| (c.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재투자수익) |
| (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
| (4) 임대료               |

(注) 1. 괄호안의 항목은 편의상 내역이며, 제표항목은 아니다.

2.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재투자수익」은, 「국민경제계산」에서는 법인기업의 분배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독립적인 항목이다.

제도부문별 추계항목

| 항목                | 분류 | 제도부문별 분류 |      |      |             |            |         |      |      |             |
|-------------------|----|----------|------|------|-------------|------------|---------|------|------|-------------|
|                   |    | 지불       |      |      |             | 수취         |         |      |      |             |
|                   |    | 비금융법인기업  | 금융기관 | 일반정부 | 가계 (개인기업포함) |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비금융법인기업 | 금융기관 | 일반정부 | 가계 (개인기업포함) |
| 이자                |    | ○        | ○    | ○    | ○           | ○          | ○       | ○    | ○    | ○           |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    | ×        | ○    | ×    | ×           | ×          | ○       | ○    | ○    | ○           |
|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        | ○    | ×    | ○           | ×          | ×       | ○    | ×    | ×           |
| 실제사회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     |    | ×        | ×    | ○    | ×           | ×          | ×       | ×    | ○    | ×           |
|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    | ×        | ○    | ×    | ×           | ×          | ×       | ×    | ○    | ×           |
| 귀속사회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무기금 고용자 사회급부      |    | ○        | ○    | ○    | ×           | ○          | ×       | ×    | ○    | ×           |
| 사회부조급부            |    | ×        | ×    | ○    | ×           | ○          | ×       | ×    | ○    | ×           |
| 기타경상이전            |    | ○        | ○    | ○    | ○           | ○          | ○       | ○    | ○    | ○           |

(注) ○표시는 추계되는 것. ×표시는 추계되지 않는 것임.

1. 이자

이자의 추계는 예저금, 어음, 채권, 기타 대출금이나 차입금 및 소비자 채무 등에 관해서 발생한 실제의 이자지불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불이자

① 금융기관

a. 민간기관

(a) 민간금융기관

생산계열에서 추계한 지불이자액을 계상한다.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재무제표에 의한 누적방법

당해기관 지불이자 × (당해기관 縣內 예금잔고 / 당해기관 예금잔고)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지불이자 = 당해기관 縣內 예금잔고 × 예금이자율

나. 분할에 의한 방법

전국의 민간금융기관별 지불이자 × 분할비율에 의한다.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민간금융기관별 예금잔고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또한, 구체적인 금융기관별 지불이자의 추계는 생산계열 금융기관의 지불이자를 참조.

(b) 생명보험

가. 생명보험회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생명보험사업개황』(생명보험협회)에서, 보유계약고(개인보험·단체보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縣主管課 업무자료 혹은 『종합농협통계표』(농림수산성) 손익계산서의 공제차입금이자에 의한다.

다.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JA공제사업통계』에서 공제보유계약고의 都道府縣別 對전국비를 구한다.

라. 都道府縣공제협동조합연합회 (2000년에 全共連으로 통합)

각 縣主管課 업무자료 혹은 『JA공제사업통계』 손익계산서의 재산운용비에 의한다.

마.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바.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c) 연금기금

가.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연보』(사회보험청) 후생연금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나. 석탄광업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광업종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다. 適格퇴직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전산업 베이스 고용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라.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가입자수의 對전국비(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 건설업퇴직금공제사업, 清酒제조업퇴직금공제사업 및 임업퇴직금공제사업의 합계)에 의한다.

마.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바. 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d) 비생명보험

가. 손해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自賠償보험(보험료수입-지불보험금)

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보험통계』(손해보험  
요율산정회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통계』(자동차보험요  
율산정회편), 자배책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통계』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편)에 의한다.

나. 기타 비생명보험

선주상호보험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농림어업신용기금, 농업공제조합, 농업  
공제조합연합회, 어업공제조합, 어업공제조합 연합회.

縣內 각 機關에 對하여 지불이자를 집계한다.

또한,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에 준해서 전국의 당해계수  
를 분할한다.

b. 공공기업

(a) 공공금융기관

가. 우편저금특별회계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우편저금 예저금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나. 運用部특별회계

자금운용부의 본부를 동경으로 해서, 지부는 각 현에 소재(재무국·재무부)하  
는 것으로 하고, 본부의 처리분과 각 현의 재무국, 재무부 처리분으로 나눠서  
추계한다.

○ 본부 처리분

동경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 재무국, 재무부 처리분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地方債통계자료』(총무성)에서 차입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다. 우편저금특별회계, 자금운용부특별회계를 공제한 공공금융기관

전국의 공공금융기관별 지불이자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금융기관별 대출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생명보험

가. 간이생명보험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우정행정통계데이터, 간이보험編』(우정사업청)에서 연도말  
보유계약의 보험료액과 연금액 합계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c) 비생명보험

전국의 당해계수를 생산계열의 생산액 추계에 준해서 분할한다.

② 비금융 법인기업

a. 민간기업

縣단독법인조사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지불이자 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지불이자 비율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이자 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비금융법인기업 지불이자 / 민간비금융  
법인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법인(금융·보험업 제외)  
중 회사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공공기업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지불이자 비율에 따르던지, 전국의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지불이자 비율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이자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비금융법인기업 지불이자 / 공공비금융법인  
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 ③ 일반정부

#### a. 정부산하기관, 사회보장기금

##### (a) 정부산하기관

법무성 「공탁금이자」, 재무성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이자 및 할인율」, 「연금복지사업단의 지불이자」 등이 있다.

「공탁금이자」, 「연금복지사업단의 지불이자」는 縣內 관련기관에의 조회에 의해 구하고, 기타의 이자는 전국의 당해항목 중앙분의 일반정부 지출이자를 국채모집액 또는 국채消化상황 등의 對 전국비로 분할한다.

또한, 1983년부터 국채모집액을 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예금잔고中 전국은행 연도말 예금잔고의 對 전국비율로 대체한다.

##### (b)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특별회계(사회보험회계), 국민건강보험(사업계정), 노인보건의료, 공제조합, 조합관할건강보험, 기금.

縣세입, 세출결산서 및 각각의 공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 收支계산서 등으로부터 집계한다.

#### b. 현 · 시정촌

보통회계의 지방채이자상환액, 일시차입금이자 및 일반정부에 해당되는 공익기업, 공익사업회계(공공하수도, 공익전당포)의 지불이자, 사업채이자상환액 등에 의한다.

### ④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⑤ 가계(개인기업을 포함)

a. 소비자부채이자 + b. 자가주택의 지불이자(주택 지불이자) + c. 농림수산업의

지불이자 + d. 비농림수산업의 지불이자에 의한다.

a. 소비자부채이자

다음의 기관에 직접조회하여, 금융기관별 업종별 평균대출잔고(내개인의 운전자금) × 평균금리를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소비자 부채이자 추계대상기관

|   |   |
|---|---|
| <p>(a) 민간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은행(은행계정)</li> <li>· 전국은행(신탁계정)</li> <li>· 신용금고</li> <li>· 신용조합</li> <li>· 노동금고</li> <li>· 농업협동조합 신용사업</li> <li>· 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li> <li>· 론뱅크</li> <li>· 생명보험회사</li> </ul> <p>(b) 공공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저금</li> <li>· 국민금융公庫</li> <li>· 오키나와 개발진흥기구</li> <li>· 간이생명보험</li> </ul> | <p>(c) 공제조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대부회계)</li> <li>· 지방공무원 공제조합(대부회계)</li> <li>· 사립학교 직원공제조합(대부회계)</li> <li>·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대부회계)</li> <li>· 母子·寡婦복지자금</li> </ul> |
|---|---|

(a) 민간금융기관

가. 전국은행(은행계정)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의 전국은행계정 주요업종별·자금융도별 대출잔고표에서 尙銀업종별대출잔고 개인운전자금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생명보험회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생명보험사업개황』(생명보험협회)에서 보유계약고(개인보험·단체보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다. 기타

전국의 당해계수를 상기 전국은행에 있어서 對전국비율을 준용하거나 또는 대출잔고의 對전국비율로부터 분할한다.

b. 자가주택의 지불이자 (주택 지불이자)

각 관련기관에의 직접조회에 의해, 금융기관별 업종별 평균대출잔고(內개인의 설비자금) × 평균금리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자가주택의 지불이자(주택 지불이자) 추계대상

|  |  |
|--|--|
| <p>(a) 민간금융기관</p> <p>전국은행(은행계정)<br/>전국은행(신탁계정)<br/>신용금고<br/>신용금고 연합회<br/>신용조합<br/>전국신용조합 연합회<br/>노동금고<br/>농업협동조합 신용사업<br/>공제농업협동조합 연합회<br/>론뱅크<br/>생명보험회사<br/>손해보험회사</p> <p>(b) 공공금융기관</p> <p>국민금융公庫<br/>주택금융公庫<br/>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公庫</p> | <p>(c) 공제조합 등</p> <p>국가공무원공제조합(대부회계)<br/>지방공무원공제조합(대부회계)<br/>사립학교직원공제조합(대부회계)<br/>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대부회계)<br/>母子·寡婦복지자금</p> |
|--|--|

가. 전국은행(은행계정)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의 전국은행계정 주요업종별·자금융도별 대출잔고표에서 全銀업종별대출잔고 개인설비자금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주택금융公庫

관련기관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업무연보』(주택금융공고)에서 (개인주택대부+분양주택대부) 연도말 대부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다. 기타

직접조회, 혹은 전국의 당해계수를 상기 전국은행에 있어서 對 전국비율을 준용하거나 또는 각각의 대출잔고 對 전국비율에 의해 분할한다.

c. 농림수산업의 지불이자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에 의한다.

분할비율 : 전국은행 농림수산업 대부잔고 + 농업협동조합 대부잔고 + 어업협동조합 대부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농업협동조합 대부잔고, 어업협동조합 대부잔고는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집계한다.

全銀 농림수산업 대부잔고는 全國値를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의 특별게재 「전국은행 업종별대출」에서 집계하고, 自縣値를 대장성 재무국의 『재정통계연보』, 현단위조사 등으로부터 집계한다.

d. 非농림수산업의 지불이자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에 의한다.

분할비율 : 비농림수산업 개인기업數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 (2) 수취이자

### ① 금융기관

#### a. 민간기관

##### (a) 민간금융기관

생산계열에서 추계한 수취이자액을 계상한다. 이와 관련한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재무제표에 의한 누적방법

縣內분과 縣外분으로 나뉘어서 추계한다.

縣內수취이자 = 수취이자 총액 × (縣內대출잔고/대출잔고)에 의한다.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縣內수취이자 = 당해기관 縣內대출잔고 × 대출이자율

縣外수취이자 = {당해기관 縣內예금잔고 × (1-지불준비율)  
- 당해기관 縣內대출잔고} × 본지정간 비율

1-지불준비율 : 불명확한 경우는 「당해기관 대출잔고 / 당해기관 예  
금잔고」로 한다.

본지정간 비율 : 불명확한 경우는 「대출이자율 + 예금이자율) / 2」

##### 나. 분할에 의한 방법

縣內수취이자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대출잔고의 對전국비  
를 집계한다.

縣外수취이자 = {예금 잔고 × (1-지불준비율) - 대출잔고}  
× {(대출이자율+예금이자율) / 2}

대출잔고, 예금잔고 : 「금융경제통계월보」에서 집계한다.

1-지불준비율 : 불명확한 경우는 「전국 대출잔고 / 전국 예금잔고」로  
한다.

구체적인 금융기관별 수취이자의 추계는 생산계열의 금융기관 수취이자를  
참조.

(b) 생명보험

가. 생명보험회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생명보험사업개황』(생명보험협회)에서 보유계약고(개인보험·단체보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縣主管課 업무자료 혹은 『종합농협통계표』(농림수산성) 손익계산서의 공제대부금 이자에 의한다.

다.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JA공제사업통계』에서 공제보유계약고의 都道府縣別 對전국비를 구한다.

라. 都道府縣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2000년에 全共連으로 통합)

縣主管課 업무자료 혹은 『JA공제사업통계』 손익계산서의 재산운용익에 의한다.

마.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바.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c) 연금기금

가.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연보』(사회보험청)의 후생연금 가입자수에 의한 對전국비에 의한다.

나. 석탄광업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광업종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다. 適格퇴직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尙산업베이스 고용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라.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가입자수의 對전국비(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 건설업퇴직금공제사업, 淸州제조업퇴직금공제사업 및 임업퇴직금공제사업의 합계)에 의한다.

마.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바. 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d) 비생명보험

가. 손해보험회사, 외국손해보험회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자배책보험(보험료수입-지불보험금)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보험통계』(손해보험요율산정회編),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통계』(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編), 자배책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통계』(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編)에 의한다.

나. 기타 비생명보험

화재공제협동조합은 『화재공제협동조합 결산개황집계표』(쇼일본화재공제협동조합연합회자료)에서 수취이자를 잡고, 선주상호보험조합, 농림어업신용기금, 농업공제조합, 농림공제조합연합회, 어업공제조합, 어업공제조합연합회는 縣內 각 관련기관에의 조회에 의해 수취이자를 집계한다.

또한,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에 준해서 전국의 당해계수를 분할한다.

b. 공공기관

(a) 공공금융기관

가. 우편저금특별회계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自縣 저금잔고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재정용자자금특별회계(舊자금운용부특별회계)

본부 처리분과 각 현의 재무국, 재무부 처리분으로 나뉘어서 추계한다.

○ 본부 처리분

동경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한다.

○ 재무국, 재무부 처리분

全國値를 縣結산서 부채의 部, 자금운용부자금 차입잔고(『지방채통계자료』(총무성)의 對 전국비로 분할한다.

다. 우편저금특별회계, 자금운용부특별회계를 제외한 공공금융기관

전국의 공공금융기관별 수취이자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대출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생명보험

가. 간이생명보험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우정행정통계데이터, 간이보험편』(우정사업청)에서 연도말 보유계약의 보험료액과 연금액의 합계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c) 비생명보험

전국의 당해계수를 생산계열의 생산액 추계에 준해서 분할한다.

② 비금융 법인기업

a. 민간기업

縣단독법인조사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영업잉여에 대한 수취이자 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수취이자비율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수취이자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비금융법인기업 수취이자 / 민간비금융 법인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법인(금융·보험업 제외

외)中 회사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공공기업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수취이자 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공공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수취이자 비율

공공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수취이자 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비금융법인기업 수취이자 / 공공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③ 일반정부

a. 정부산하기관, 사회보장기금

(a) 정부산하기관

일반회계 「예탁금이자」 등, 특별회계 「外爲특별회계 수취이자」,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등, 연금복지사업단 「대부이자」 등에 의한다.

각 기관에 대한 재정수지조사, 조회조사에 따르던지, 혹은 전국의 당해계수를 정부산하기관 고용자수의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b) 사회보장기금

가. 사회보험특별회계(사회보험회계)

예탁금 이자를 집계하던지, 또는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보험료 수납제액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보험료收納濟額 :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서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의 收納濟額의 합계치를 집계한다. 또한, 후생연금보험의 收納濟額은 보험료 징수상황표에서 집계한다. 또, 국민연금보험의 收納濟額은 인지대금·보험료 수취액 및 검인상황표의 인지수입검인액+현금수입합계를 집계한다.



나. 국민건강보험, 노인보험의료  
세입, 세출결산서 등에 의한다.

다. 공제조합  
수취이자 등을 집계한다.

縣內소재 支部기관등의 운용분은 조회조사에 의해, 본부 운용분은 전국수치를 조합 가입자수의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라. 조합관할건강보험, 기금

縣內 각 조합, 기금에 대한 조회조사에 의한다. 단지, 이것에 의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전국수치(『조합결산상황보고』(건강보험조합연합회))를 조합 가입자수 또는 사회보장부담금액의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c) 현·시정촌

「縣세입세출결산서」 등으로부터 누적하여 추계한다.

#### ④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를 이용하여, 가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⑤ 가계(개인기업을 포함)

가계의 수취이자는 예저금이자와 채권이자를 추계하고, 이것들의 합계액을 계상한다.

a. 예저금이자

(a) 일반 예저금이자

일반 예저금이자란 가.신탁계정이외의 예저금이자, 나.신탁계정(전국은행)의 예저금이자로 구분된다.

가. 신탁계정이외의 예저금이자

일반 예저금이자에는 금융기관간의 예금이자(우편저금 이외), 해외에의 지불

이자(전국은행)가 포함되는데, 가계의 수취이자 추계에서는 공제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지불이자 추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전국의 기관별 일반예저금이자 × 분할이자

전국의 기관별 일반예저금이자 : 전국 제공자료에서 집계한다. (전국 제공 자료에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해외에 의 지불이자가 공제되고 있다)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自縣기관별 개인 예저금 잔고 / 전국기관별 예저금잔고)를 구한다.

나. 신탁계정(전국은행)의 예저금이자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개인구성비

분할비율 : (自縣 신탁잔고 / 전국은행 신탁계정 부채잔고)에 의한다.

自縣 신탁잔고는 각 지역의 신탁은행 혹은 신탁협회 등에서의 직접조회에 의해, 전국은행 신탁계정 부채잔고는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집계한다.

또한, 부채잔고는 금전신탁, 연금신탁, 재산형성급부신탁, 대부신탁, 증권투자신탁에 의한다.

개인구성비 : 현조회조사에 따르던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b) 社内 예금이자

노동기준국等に 직접조회를 하던지, 전국의 당해계수를 일반 예저금이자의 추계 방법에 준해서 분할한다.

社内예금의 현별 예저금잔고계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른 기관의 분할비율을 참고해서 추계한다.

b. 유가증권이자

(a)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공사공단·公庫채, 사업채, 전환사채) 및 (b) 금융채의 가계에 대한 지불이자에 의한다.

(a) 유가증권(국채, 지방채, 공사공단公庫채, 사업채, 전환사채)의 이자

自縣 유가증권 현재고 × 개인분 비율 × 평균이율에 의한다.

自縣 유가증권 현재고 : 전국 유가증권 현재고 × 분할비율로부터 구한다.

○ 전국 유가증권 현재고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국채 : 『금융경제통계월보』의 「정부채무내국채」에서 집계한다.
- 지방채, 전환사채 : 『금융경제통계월보』의 「공사채 발행·상환현재고」에서 집계한다.
- 공사공단公庫債, 사업채 : 전국의 당해계수에 의한다.
- 분할비율 : 신고소득의 이자소득 『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對 전국 비율에 의한다.
- 개인분 비율 : 縣 조회조사에 따르던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평균이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의 「公社債店頭基準氣配」에서 「年·기·월중 평균」이율의 평균치를 집계한다.

(b) 금융채의 이자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개인분 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예저금잔고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개인분 비율 : 縣 조회조사에 의한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2.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기업에의 출자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이전이며,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는 민간 비금융 법인기업·협동조합의 잉여금의 분배(임원상여를 포함)외에, 법인격을 갖지 않는 정부기업 잉여금의 일반정부로의 이전(이른바, 일반정부의 공공기업에서의 인출)이나 기업의 해외 지점수익, 해외자회사의 미분배수익 등도 법인기업의 분배소득으로 처리된다.

또한, 신탁수익 및 보험계약자 배당은 각각 이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해외 자회사의 미분배수익은, 「국민경제계산」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으로 처리되지만, 「현민경제계산」에서는 법인기업의 분배소득으로 처리된다.

### (1)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지불

#### ① 금융기관

##### a. 민간기관

縣단독조사로부터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지불 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민간금융기관의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지불비율

민간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금융기관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지불(소득지불계정) / 민간금융기관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 조사보고」(총무성)의 법인(금융·보험업)중 회사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b. 공공기관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지불비율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금융기관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지불(소득지불 계정) /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② 비금융 법인기업

### a. 민간기업

縣단독법인조사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민간 비금융법인기업의 영업잉여 × 지불비율

민간 비금융법인기업의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비금융법인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지불 / 민간 비금융법인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법인(금융·보험업을 제외한다) 중 회사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b. 공공기업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지불비율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비금융법인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지불 / 공공 비금융법인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2) 법인기업 분배소득의 수취

### ① 금융기관

#### a. 민간기관

縣단독조사로부터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지불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 민간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수취비율

민간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수취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금융기관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 / 민간금융기관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민간금융기관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 b. 공공기관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수취비율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전)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수취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금융기관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수취(소득지불계정) / 공공금융기관 영업잉여)를 준용한다.

####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② 비금융 법인기업

#### a. 민간기업

縣단독법인조사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비율에 따르던지,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지불비율

민간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지불비율 : 전국의 비율(민간비금융법인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수취 /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민간 비금융법인기업의 법인기업 분배소득 지불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b. 공공기업

기관별 결산서의 누적에 의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있어서 영업잉여에 대한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비율에 따르던지, 전국의 당해계수의 분할에 의한다.

○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수취비율

공공 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 : 「제2절 영업잉여·혼합소득」에 의한다.

수취비율 : 전국의 비율(공공 비금융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 / 공공비금융법인기업 영업잉여)을 준용한다.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종업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③ 일반정부

a. 정부산하 관련기관

재무성 物納증권의 배당수입, 재무성인쇄국 특별회계수입금, 고용촉진사업단 숙소시설 등 수입, 공무원숙소 대부료수입 등에 의한다.

b. 현, 시정촌 관련

공영주택 대부수입 등에 의한다

c. 사회보장기금

숙소대부료 등에 의한다.

직접조회 조사 및 각각의 결산서로부터 누적 추계한다.

④ 가게

a. 배당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통계연보서』(국세청)의 신고종류별표에서 배당소득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임원상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임원(상근비상근)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⑤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가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3.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 (1)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은 ①생명보험(연금기금 포함)의 귀속수익, ②비생명보험의 귀속수익, ③보험계약자 배당으로 구분된다.

#### ① 생명보험(연금기금 포함)의 귀속수익

생명보험(연금기금 포함)의 귀속수익은 a.생명보험의 귀속수익, b.연금기금의 귀속수익으로 구분된다.

또한, 귀속수익이란 재산운용 수익 중 보험법인 적립분이지만, 생명보험 및 연금기금에 대해서는 재산운용순익의 전액이 보험 귀속수익이 된다.

#### a. 생명보험의 귀속수익

민간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공공생명보험 (간이생명보험)별로 추계한다.

#### (a) 민간기관

생명보험 귀속수익을 가계의 지분으로서 귀속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으로 계상한다.

#### ○ 생명보험회사

{경상수익(이자 및 배당금 수익) - 경상비용(지불이자)

- 경상비용(사원 배당금)}에 의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생명보험사업개황」(생명보험협회)에서, 보유계약고(개인보험·단체보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

공제대부금이자 - 공제차입이자

各縣 담당과 업무자료, 縣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자료에 의한다.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금융기관별 예저금잔고(농협)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都道府縣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2000년에 전공련으로 통합)

재산운용익(수취이자를 포함) - 재산운용비(지출이자를 포함) - (지불 割戻금 - 수입割戻금)

各縣 담당과 업무자료, 縣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자료에 의한다.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금융기관별 예저금잔고(농협)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재산운용익 - 재산운용비 - 지불割戻금

상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계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서, 금융기관별 예저금잔고(농협)의 對전국비를 집계한다.

○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재산운용수익 - 재산운용비용 - 割戻금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재산운용순익 - 재산운용비용비 - 지불割戻금 - 이용고 割戻금

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다.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分 계약고 / 전국 계약고

(b) 공공기업

○ 간이생명보험

이자수입 - 분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우정행정통계데이터, 簡易保險編』(우정사업청)에서 연도말  
보유계약의 보험료액과 연금액 합계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연금기금의 귀속수익

(가)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연보」(사회보험청)의 후생연금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나) 석탄광업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 광업종업자수의 對전국비.

(다) 適格퇴직연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의 전산업베이스 고용자수의 對  
전국비를 집계한다.

(라) 노동자퇴직금공제기구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自縣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 건설업퇴직  
금공제사업, 청주제조업퇴직금공제사업 및 임업퇴직금공제사업  
의 합계)에 의한다.

(마)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바) 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各縣主管課 업무자료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② 비생명보험의 귀속수익

비생명보험 귀속수익이란, 재산운용순익 중 비생명보험 법인적립분이다.

### a. 민간기관

#### ○ 비생명보험회사

$$\{(\text{적립보험료등 운용익} + \text{이익 및 배당금}) - \text{지불이자} - (\text{사원배당금} + \text{보험 계약자 배당금})\} \times (\text{책임준비금적립분} + \text{지불비금}) / (\text{책임준비금} + \text{지불비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自賠償保險(보험료수입-지불보험금)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 외국 비생명보험회사

$$\{(\text{이자배당수입} - \text{지불이자})\} \times (\text{책임준비금적립분} + \text{지불비금}) / (\text{책임준비금} + \text{지불비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비생명보험회사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 기타 비생명보험

|                |  |
|----------------|--|
| (가) 선주상호보험조합   | 이자배당수입                                   |
| (나) 화재공제협동조합   |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                            |
| (다) 농림어업신용기금협회 |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                            |
| (라) 농업공제조합     |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                            |
| (마) 농업공제조합연합회  |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                            |
| (바) 어업공제조합     | (사업수익+관리수익)의 수취이자 -<br>(사업비용+관리비용)의 지불이자 |
| (사) 어업공제조합연합회  | (사업수익+관리수익)의 수취이자 -<br>(사업비용+관리비용)의 지불이자 |

(注) 表中의 추계식에, (책임준비금 적립분+지불備金) / (책임준비금+불備金)을 곱해서 추계한다.

「책임준비금中 보험료적립분이 집계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계열의 재산운용수익 / (수취이자 - 지불이자 - 보험계약자 배당)

(가), (나)의 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당해계수의 분할로 하고(下記참조), (라), (마)의 기관에 대해서는 조회조사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 (다), (사)에 대해서는 재보험특별회계에 준하며, 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은 동경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각현에 있어서는 재보험특별회계로부터 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수취를 계상한다. (바)에 대해서는 統計書에서 집계한다.

(가) 선주상호보험조합

일본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동경, 고베, 후쿠오카, 마츠야마), 일본소형선상호보험조합(기타큐슈, 동경)의 2개 조합.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당해 都道府縣별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나) 화재공제협동조합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縣單조합 (이자배당수입 - 지불이자)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다) 어업공제조합

『어업재해보상제도의 현황』(수산청)의 단체별 손익계산서에 의한다.

b. 공공기업

재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생산액을 동경도에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분은 동경도에서 계상하고, 각현에 있어서는 재보험특별회계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수취가 계상된다.

범위와 추계방법은 별지의 표에 의한다.

③ 보험계약자 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은 a.생명보험계약자 배당, b.연금기금계약자 배당, c.비생명보험계약자 배당으로 분류된다.

a. 생명보험계약자 배당

생명보험 기관별로, 당해기관의 자료에서 집계한다. 혹은 전국의 수치를 분할한다. 분할비율은 앞에서 서술한 당해기관의 보험귀속수익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b. 연금기금계약자 배당

연금기금 기관별로, 당해기관의 자료에서 집계한다. 혹은 전국의 수치를 분할한다. 분할비율은 앞에서 서술한 당해기관의 보험귀속수익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c. 비생명 보험계약자 배당

비생명보험 기관별로, 당해기관의 자료에서 집계한다. 혹은 전국의 수치를 분할한다. 분할비율은 앞에서 서술한 당해기관의 보험귀속수익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② 비생명보험의 귀속수의 ~공적기업의 범위와 추계방법~

| 보험의 종류                      | 항목                                    | 추계방법  |
|-----------------------------|---------------------------------------|---|
| ①지진재보험                      | 이자수입                                  | 화재보험, 자배책보험 등의 순보험료의 對진 국비를 준용한다.             |
| ②농업공제재보험                    | 이자수입(농림, 가축, 과수, 원예)                  | 縣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의 직접조회 또는 「농업공제재우주통계」(농림공제기금)에 의한다 |
| ③상림보험                       | 예저금이자                                 | 縣주관과에 직접조회                                    |
| ④어업 및 어선 등 재보험              | 이자수입((어선보통, 어선특수, 승조원급여, 어업공제 등 각 계정) | 縣어선보험조합, 어업공제조합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
| ⑤무역보험                       | 이자수입                                  | 수출액의 전국비로 분할                                  |
| ⑥자동차손해배상책임재보험               | 이자수입(보험계정, 보장계정)                      | 화재보험, 자배책보험 등의 순보험료의 對진 국비를 준용한다.             |
| ⑦중소기업신용보험公庫<br>(기계신용보험을 포함) | 이자회수금 + 대부금이자 + 자금운용부 예탁금이자           | 縣신용보증협회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
| ⑧농림공제사업                     | 예금이자 - 지불이자                           | 결산서에 의한다.                                     |
| ⑨교통재해공제사업                   | 예금이자                                  | 결산서에 의한다.                                     |

## (2)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수취

### ① 비금융 법인기업

비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과 동액을, 각 보험마다 전국 당해계수(비생명보험의 제도부문별 분할비율「보험료」)로 분할하고, 비금융 법인기업분을 수취로서 계상한다.

### ② 금융기관

비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과 동액을, 각 보험마다 전국 당해계수(비생명보험의 제도부문별 분할비율「보험료」)로 분할하고, 금융기관분을 수취로서 계상한다.

### ③ 일반정부

비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과 동액을, 각 보험마다 전국의 당해계수(비생명보험의 제도부문별 분할비율「보험료」)로 분할하고, 일반정부분을 수취로서 계상한다.

### ④ 가계

#### a.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 지불의 전액을 계상한다.

#### b. 비생명 보험

비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과 동액을, 각 보험마다 전국의 비율(비생명보험의 제도부문별 분할비율「보험료」)로 분할하고, 가계분으로서 가산 계상한다.

#### c. 연금기금

연금기금의 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 지불의 전액을 가산 계상한다.

### ⑤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비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소득의 지불과 동액을, 각 보험마다 전국의 비율(비생명보험의 제도부문별 분할비율「보험료」)로 분할하고,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분을 수취로서 계상한다.



## 4. 임대료

국제연합 93SNA에서 「임대료」는, 「토지 및 토양 임대료의 합계」로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日本)의 93SNA에서는 토지 등의 순임대료에 덧붙여서, 각종 중개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나 국제수지통계의 특허권을 계상하여 임대료 총액을 기록한다.

한편,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임대료는 토지와 특허권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구축물(주택을 포함), 설비, 기계 등 재생가능한 유형고정자산의 임대차는 상품으로서의 서비스의 구입, 판매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 (1) 토지의 순임대료

토지의 임대료는, 순임대료 즉 토지의 소유에서 발생한 순소득이어서, 토지 임대에 대한 **粗임대료**에서 고정자산세(토지세)를 차감한 것이다. 토지세는 생산 및 수입세이기 때문에 재산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임대료 = 제도부문별 토지의 **粗임대료** - 제도부문별 토지세

#### ① 제도부문별 토지의 지불 **粗임대료**

##### a. 금융기관

###### (a) 민간기업

직접 조회조사 또는 법인기업의 縣단독조사로부터서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사-토지-」(총무성) 중 「소유자별 토지에 관한 조사」에서 법인결정가격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b) 공공기업

조회조사에 의하여 구한다.

##### b. 비금융 법인기업

###### (a) 민간기업

법인기업 등의 縣단독조사로부터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사-토지-」(총무성) 중 「소유자 별 토지에 관한 조사」에서 법인決定가격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공공기업

직접 조회조사에 의하여 구한다.

c. 일반정부

(a) 정부산하기관분

각 省廳 「土地借料」, 방위시설청 「제공시설등 借料」 등을 조회조사하여 집계.

(b) 현, 시정촌분

「세입세출결산서」, 「지방재정상황조사」 및 縣主管課 등 자료에 의한다.

(c) 사회보장기금

각 결산서, 사업보고서 등으로부터 각각을 누적 추계한다.

d. 가계(개인기업)

가계의 토지임대료는 전액 개인기업의 지불로 하고, 농림수산업분, 비농림수산업분, 자가주택분으로 나뉘서 추계한다.

농업은 소작지의 면적, 농업이외는 부지가 借地가 되어 있는 정포 및 기타 併用주택, 同전용 주택의 戶數로부터 추계한다.

(a) 농림수산업분

농업분만을 전담 소작료로서 추계하고, 임업, 수산업의 借地는 추계하지 않는다. 전담 소작료는,

$(\text{논 } 100\text{아르당 소작료} \times \text{현별 소작면적})$

$+ (\text{밭 } 100\text{아르당 소작료} \times \text{밭의 현별 소작면적})$ 에 의한다.

100아르당 소작료 : 「일본부동산연구조사」의 「현별 전담가격 및 소작료조사」에 의한다.

소작지면적 : 「세계농림업센서스」(농림수산업성), 「농림센서스」에서 「차입경지면적」 차입경지의 「전담」 「樹園地」 합계면적에 의한다.

(b) 비농림수산업분

자가주택의 점포 및 기타 병용주택에 관련한 토지 임대료를 집계한다.

자가주택 중, 점포 기타병용주택 부지의

$$\text{借地戶數} \times 1\text{세대당 대지} \times \text{수정배율}$$

자가주택 중, 점포 기타병용주택 부지의 借地戶數 :

『주택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부지의 소유관계, 취득시기, 부지면적별 1戶建·長屋建의 자가주택수(전용주택-特掲)」에서, 점포 기타병용주택의 借地戶數 = 1戶建·長屋建 자가주택 총수의 借地戶數 - 専用주택의 借地戶數에 의한다.

1세대당 지대 : 『가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한다.

수정배율 : 『가계조사보고』에 의한 1세대당 地代는 월별 地代支拂 금액을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총무성)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text{수정배율} = \text{『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9,10,11월)의 1개월 평균치} / \text{『가계조사보고』(9,10,11월)의 1개월 평균치.}$$

(c) 자가주택분

縣専用주택(자가주택)에 관련한 토지 임대료를 집계한다.

자가주택 중, 전용주택 부지의 借地호수 × 1세대당 지대 × 수정배율

자가주택 중, 전용주택 부지의 차지호수 :

『주택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부지의 소유관계, 취득시기, 부지면적별 1호건·장옥건의 자가주택수(전용주택-特掲)」에서 전용주택의 借地호수를 집계한다.

1세대당 지대, 수정배율 : 『가계조사보고』(총무성)자료의 비농림수산업 추계에 이용하는 계수를 代用한다.

e.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② 제도부문별 토지의 수취 粗임대료

a.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수취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지 않는다.

b. 비금융 법인기업

(a) 민간기업

법인기업 등의 縣단독조사에 의해 구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고정자산가격 등의 개요조사-토지-』(총무성) 중 「소유자 별 토지에 관한 조사」에서 법인決定가격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b) 공공기업

직접 조회하여 구한다

c. 일반정부

(a) 정부산하기관분

토지水面임대료,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 사용료수입에 의한다.

(b) 현, 시정촌분

결산부속서 「재산운용수입」의 세부항목에 의한 토지, 건물貸付料에 따르던지, 혹은 縣主管課 자료에서 토지임대료를 집계한다.

(c) 사회보장기금

각 결산서, 사업보고서 등에서 각각 누적 추계한다.

d. 가게

가게의 지불 粗임대료에, 전국의 수취·지불 粗임대료의 비율을 곱해서 추계한다.

e. 對가게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가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업자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③ 제도부문별 토지세

고정자산세(토지분), 특별토지보유세(보유분), 도시계획세(토지분), 국유 및 공유자산  
所在시정촌교부금(토지분)의 借地分으로 한다.

또한, 토지세의 수취, 지불 총액은 자료의 제약으로 同額으로 간주한다.

#### a. 토지세 총액

국유 및 공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토지분)에 대해서는, 縣主管課 등에 직접 조회  
하고,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토지세 × 借地비율에 의한다.

토지세 :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에 의한다.

借地비율 : 『주택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1戶建·張屋建 자가주택 중 부지의  
차지호수 / 1戶建·長屋建 자가주택 호수)를 구한다.

#### b. 제도부문별 분류

##### (a) 수취

일반정부는 국유 및 공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분을 집계한다. 잔액은 비금융법  
인기업(민간), 가계,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수취 粗토지임대료 비율로 분할한  
다. 또한, 비금융 법인기업(공공),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는다.

##### (b) 지불

일반정부는 국유 및 공유자산소재시정촌교부금(수취와 동액)을 집계한다. 잔액  
은, 비금융 법인기업(민간), 금융기관(민간),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가  
계의 지불 粗토지임대료 비율로 분할한다.

또한, 비금융 법인기업(공공), 금융기관(공공)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는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지불도 제도부문별 순임대료를, 粗임대료의 추계  
에 이용하는 분할비율을 참고로 분할한다.

## (2) 저작권·특허권 등 사용료

조회조사를 통하여 추계 가능한 것을 계상한다. 이것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전국 추  
계의 분할에 의한다.

### ① 지불

저작권·특허권 등 사용료의 지불은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 지불총액은 전국의 당해계수 × 총생산의 對전국비율에 의한다.

a. 비금융 법인기업의 지불

(a) 민간기업

비금융 법인기업의 지불 - 공공기업분

(b) 공공기업

조회조사 및 결산서로부터 구한다.

② 수취

수취총액은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특허청공보』(특허청)에서 특허 신고건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a. 비금융 법인기업의 수취

(a) 민간기업

수취총액 - 비금융 법인기업의 공공기업분 - 가계의 수취분

(b) 공공기업

조회조사 및 결산서로부터 구한다.

b. 가계의 수취

(縣分 수취총액 - 縣分 공공기업 수취액) × 전국의 가계 수취총액 / (전국의 가계수취총액 + 전국의 민간비금융법인기업 수취총액)에 의한다.

## 5. 기타

거주지와 사업활동지가 다른 개인기업의 경우, 생산계정에서는 영업잉여·혼합소득을 사업활동縣에 귀속시키며, 소득지출계정에서는 영업잉여·혼합소득의 처분이므로, 영업잉여·혼합소득에서 기업활동에 따른 이자, 임대료의 지불 및 반대급부가 없는 경상이전의 지불을 공제한 것을 거주지 현으로의 재산소득의 지불로서 계상한다. 거주지 현에서는 다른 현으로부터의 재산소득 수취로서 계상한다.

또한, 거주지 현에서는, 縣外거래이기 때문에 영업잉여·혼합소득으로서 처리할 수 없고 다른 소득지출계정 항목으로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재산소득의 내역으로서



## 제5절 기타경상이전(재산소득 이외의 이전)

### 1.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a. 범위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①소득에 부여되는 세금, ②기타 경상세로 이루어진다.  
①소득에 부여되는 세금은 노동제공과 재산대여, 자본이득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조세(소득세, 법인세, 都道府縣民稅 [소득할, 법인세할] 등)이고, ②기타 경상세는 자동차重量稅, 자동차세, 都道府縣民稅(균등할) 등이 있다.

#### b. 추계방법

『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 결산서 및 전국의 계수 등을 이용하여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일람표] 로부터 추계한다. 원칙적으로 지불은 縣 거주자인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에 계상하고, 수취는 縣內징수세액을 일반정부에 계상한다.

### (1) 지불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①소득에 부여되는 세금, ②기타 경상세별로 추계한다.

#### ① 소득에 부여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일본은행납부금별로 추계한다.

#### ○ 소득세

##### 1. 원천소득세

A. 이자소득 등, B. 배당소득, C.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D. 급여소득, E. 퇴직소득, F. 보수요금 등 소득별로 추계한다.

##### A. 이자소득 등

전국징수세액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재산소득에서 가계 수취이자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또한, 전국의 비율을 준용하여,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로 분할한다.



B. 배당소득

縣징수세액을 계상하며, 금융부문이 대부분이라 여겨지므로 縣內=縣民으로 가정한다.

또한 전국의 비율을 준용하여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게로 분할한다.

C.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縣징수세액을 계상한다.

또한, 「B. 배당소득」 비율을 준용하여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게로 분할한다.

D. 급여소득

縣징수세액 × 內民전환비율

內民전환비율 : 현민고용자보수 / 縣內고용자보수로 한다.

가게에 계상한다.

E. 퇴직소득

縣징수세액 × 內民전환비율

內民전환비율 : 현민고용자보수 / 縣內고용자보수로 한다.

가게에 계상한다.

F. 보수요금 등의 소득

縣징수세액 × 內民전환비율

內民전환비율 : 현민고용자보수 / 縣內고용자보수로 한다.

가게에 계상한다.

2. 신고소득세

개인기업이 대부분이므로 縣徵收稅額을 가게에 계상한다.

### 3. 소득세환급금

1., 2.에서 추계한 각각의 소득세에서 환급금을 공제한다.

#### A. 원천소득세의 환급금

a. 원천소득세의 환급금액 = 전국환급금액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전국환급금액 : 『국세청통계연보』에 의해, 원천소득세 환급금을 집계.

분할비율 : 『국세청통계연보』에 의하여, 원천소득세 收納濟額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內民전환비율 : 縣民고용자보수 / 縣內고용자보수

b. 제도부문에의 분할

a.에서 얻은 縣別 「원천소득세 환급금」을, 1에서 얻은 현별 원천소득세의 제도부문별 지불액 구성비로 각 제도부문별 환급금액을 분할한다.

#### B. 신고소득세 환급금

신고소득세 환급금액 = 전국환급금액 × 분할비율

전국환급금액 : 『국세청통계연보』에 의해, 신고소득세 환급금을 집계.

분할비율 : 『국세청통계연보』에 의하여, 신고소득세 收納濟額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금액을 가계에 계상한다.

#### ○ 법인세 : 법인세, 법인특별세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에 의하여, 「법인사업세 수입액」의 對 전국비로 한다.

또한,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의 분할은 縣세무과 자료에 의하여 「법인사업세 업종별 조정액」의 금융보험업, 기타 업종 구성비를 이용한다.

#### ○ 주민세

1. 所得割 - 道府縣民稅(소득할), 시정촌민세(소득할)

縣징수세액을 집계하여, 가계에 계상한다.

2. 법인세할 - 道府縣民稅(법인세할), 시정촌민세(법인세할)

縣징수세액을 집계한다.

또한,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의 분할은, 縣세무과 자료에 의하여 금융

보험업, 기타 업종의 구성비를 이용한다.

### 3. 이자비율 - 道府縣民稅(이자할)

縣징수세액을 집계하고, 「원천소득세, 이자소득 등」의 비율을 준용하여 각 제도부문에 분할한다.

## ○ 일본은행 납부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금융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에 의하여, 대출잔고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금융기관에 계상한다.

## ② 기타 경상세

○자동차관련세, ○수렵자등록세等, ○주민세별로 추계한다.

### ○ 자동차관련세 - 자동차중량세의 1/2, 자동차세의 1/2, 자동차취득세의 1/2, 경자동차세의 1/2

縣징수세액을 집계하여, 가계에 계상한다.

(注) 자동차관련세는, 사업자와 가계 양자가 부담하므로, 가계의 부담금을 편의적으로 반으로 하고, 세액의 1/2을 기타 경상세로 한다.

### ○ 수렵자등록세등 - 수렵자등록세, 입렵세

縣징수세액을 집계하여, 가계에 계상한다.

## ○ 주민세

### 1. 균등할

A. 개인분 - 道府縣民稅(균등할·개인), 시정촌민세(균등할·개인) 縣징수세액을 집계하여, 가계에 계상한다.

B. 법인분 - 道府縣民稅(균등할·법인), 시정촌민세(균등할·법인) 縣징수세액을 집계한다.

또한,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의 분할은 縣세무과 자료에 의하여 금융보험업, 기타 업종의 구성비를 이용한다.

## (2) 수취(일반정부)

소득에 부여되는 세 및 ②기타 경상세를 일반정부에 계상한다.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일람표]

| 세목               |      | 비금융 | 금융 | 가계 | 비고   |
|------------------|------|-----|----|----|------|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      |
| 소득세              | 국 세  |     |    |    |      |
| ○신고소득세           |      | -   | -  | ○  |      |
| ○원천소득세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
| · 배당소득           |      | △   | △  | △  |      |
| ·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 |      | △   | △  | △  |      |
| · 급여소득           |      | -   | -  | ○  |      |
| · 퇴직소득           |      | -   | -  | ○  |      |
| · 보수요금 등의 소득     |      | -   | -  | ○  |      |
| · 비거주자 등 소득      |      | -   | -  | -  | 정부수취 |
| 법인세              | 국 세  | △   | △  | -  |      |
| 법인특별세            | 국 세  | △   | △  | -  |      |
| 道府縣民稅 (소득할)      | 도부현세 | -   | -  | ○  |      |
| 시정촌민세 (소득할)      | 시정촌세 | -   | -  | ○  |      |
| 道府縣民稅 (법인세할)     | 도부현세 | △   | △  | -  |      |
| 시정촌민세 (법인세할)     | 시정촌세 | △   | △  | -  |      |
| 道府縣民稅 (이자할)      | 도부현세 | △   | △  | △  |      |
| 일본은행납부금          |      | -   | ○  | -  |      |
| [기타 경상세]         |      |     |    |    |      |
| 자동차중량세의 1/2      | 국 세  | -   | -  | ○  |      |
| 자동차세의 1/2        | 도부현세 | -   | -  | ○  |      |
| 자동차취득세의 1/2      | 도부현세 | -   | -  | ○  |      |
| 경자동차세의 1/2       | 시정촌세 | -   | -  | ○  |      |
| 狩獵者등록세           | 도부현세 | -   | -  | ○  |      |
| 入獵稅              | 도부현세 | -   | -  | ○  |      |
| 道府縣民稅 (균등할, 개인)  | 도부현세 | -   | -  | ○  |      |
| 시정촌민세 (균등할, 개인)  | 시정촌세 | -   | -  | ○  |      |
| 道府縣民稅 (균등할, 법인)  | 도부현세 | △   | △  | -  |      |
| 시정촌민세 (균등할, 법인)  | 시정촌세 | △   | △  | -  |      |

비금융, 금융, 가계는 지불제도부문이고, 「○」는 전액을 계상, 「△」는 분할하여 계상, 「-」는 미계상 한다.

## 2. 사회부담금 및 3. 사회급부

### 2-A : 강제적 사회부담금

사회보장급부의 지불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부담금 중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日本)에서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중 민간기금인 연금기금은 강제적인 부담금이 없으므로, 강제적 사회부담금은 일반정부(사회보장기금)에만 발생하는 것이 된다.

고용주의 강제적인 실제사회부담금, 고용자의 강제적 사회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금에 직접 지불하는 부분은 그것을 우선 고용자보수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가계가 사회보장기금에 대하여 지불한 것으로 본다. 고용자의 강제적 사회부담금은, 고용자가 고용자보수 중에서 사회보장기금에 지불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부담액이므로, 사회보장기금에 해당하는 각 제도의 결산서·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게 된다.

### 2-B : 자발적 사회부담금

자발적 사회부담금이란,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부담금 중에서 고용주 및 고용자가 민간기금인 연금기금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부담금이다. 강제적 사회부담금처럼 고용주의 자발적인 실제사회부담금 및 고용자의 자발적 사회부담금으로 이뤄지며, 고용주가 연금기금에 직접 지불하는 것은 우선 고용자보수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가계가 연금기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자의 자발적 사회부담금은 고용자가 고용자보수 중에서 연금기금에 지불하는 것이다.

각 연금기금별로 재무제표 등의 보고서를 사용하여 추계한다.

또한, 「고용자의 자발적 사회부담금」은 실제로 연금기금에 대하여 고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아래의 정의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록한다.

고용자의 자발적 사회부담금

$$= \text{고용자가 연금기금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한 금액} + \text{추가부담금(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 중 연금기금분)} - \text{서비스료(연금기금의 산출액)}$$

연금기금의 재산운용순익은 귀속계산에 의하여 가계의 수취(보험계약자에 귀속하는 재산소득)로서 계상되는데, 실제로는 연금기금(금융기관)에 유보되는 성격이므로, 이 재산소득분은 추가부담금으로서 가계가 연금기금에 환불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

### 3-A-1 :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에는 사회보장기금(일반정부)이 가계에 지불하는 사회급부 중에서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노령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고용보험에 의한 급부금(실업급부), 아동수당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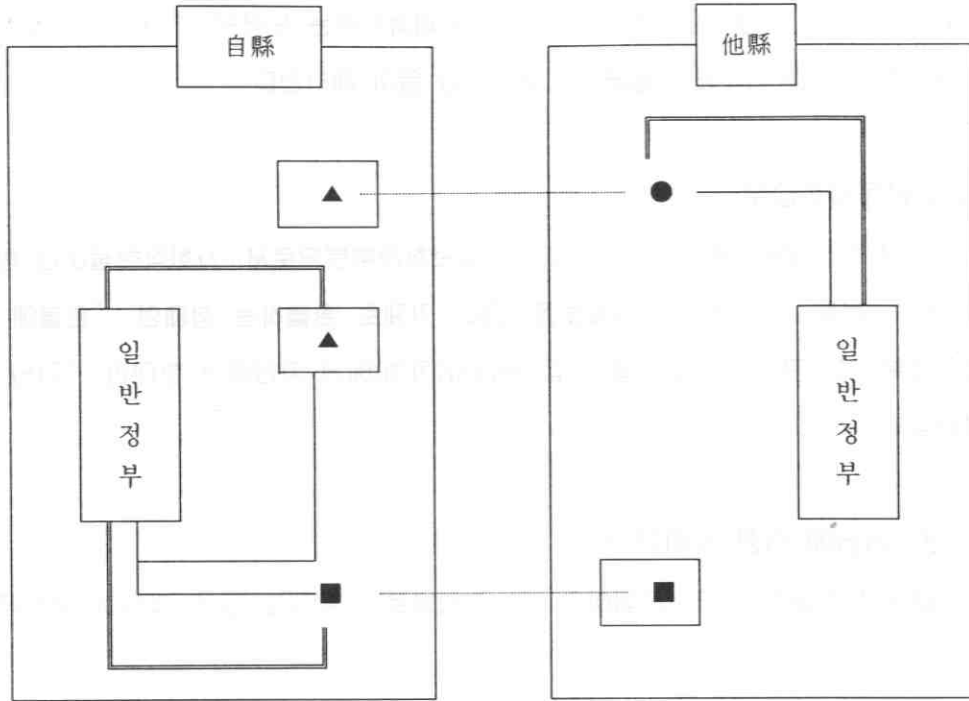
### 3-A-2 : 현물사회급부

종래 「사회보장급부」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보험급부분으로서, 사회적현물이전 항목의 하나가 된다. 현물사회급부에는 사회보장기금이 가계로 환불하는 형태인 「환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수급자(가계)에게 지급하는 형태인 「기타 현물 사회보장급부」가 있다.

### 3-B :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연금기금에서 지불하는 급부금액이다. 각 기금별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급부금액을 추계한다.

[강제적 사회부담금 및 사회급부의 이전도]



● : 自縣에서 거주하고, 他縣에서 근무하는 가계  
 ▲ : 自縣에서 거주하고, 他縣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가계  
 ■ : 他縣에서 거주하고, 自縣에서 근무하는 가계  
 — : 강제적 사회부담금    - : 사회급부    — : 縣外로의(로부터의) 이전  
 위 그림의 이전거래를 아래와 같이 계상한다.

|                   |                   |
|-------------------|-------------------|
| ○강제적 사회부담금        | ○사회급부             |
| (지불) 가계 (현민베이스)   | (지불) 일반정부 (縣內베이스) |
| (수취) 일반정부 (縣內베이스) | (수취) 가계 (현민베이스)   |

또한, 縣內·현민베이스의 전환에 사용한 內民(民內)전환비율은 아래의 식에 의한다.  
 內民(民內)전환비율 = 民(內)베이스임금·봉급 / 內(民)베이스임금·봉급

## 2-A. 강제적 사회부담금

(1)특별회계, (2)국민건강보험, (3)노인보건의료, (4)공제조합, (5)조합관할건강보험, (6)아동수당, (7)기금별로 사회보장부담금 및 사회보장급부를 추계한다.

또한 직접조회 및 縣主管課 자료 등과 관련된 것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제도의 개요에 관한 것은 참고1을 참조한다.

### (1) 특별회계

#### ① 후생보험(아동수당 제외)

##### a. 건강보험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보험료징수상황에서 「收納濟額」을 집계한다.

##### b. 후생연금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집계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보험료징수상황에서 「收納濟額」을 집계한다.

#### ② 국민연금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인지대금보험료收納濟額 및 검인상황에서 「인지대금 收納濟額」을 집계한다.

(수취) 지불 = 수취

#### ③ 노동보험

##### a. 勞災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약칭: 편집자주)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보험료징수상황에서 「收納濟額」을 집계한다.

b. 고용보험

『고용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노동보험료징수상황에서 「收納濟額」 「日雇印紙보험료액」을 집계한다.

④ 선원보험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보험료징수상황에서 「收納濟額」을 집계한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서 부담금을 구한다.

○ 부담금

(지불) 연도별, 都道府縣別 회계상황-수입-에 의하여 「보험료」를 집계한다.

(수취) 지불 = 수취

(3) 공제조합

①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국가공무원급여等실태조사보고서』(人事院)에 의하며, 『도도 부현별在勤職員구성비』에 의한다.

② 지방공무원공제조합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지방공무원급여실태』(총무성)의 「보통회계관련 직원수의 합계」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③ 舊 공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a. 일본철도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하며, 「철도업 종사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b. 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하며, 「담배제조업 종사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c. NTT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하며, 「전산전화업 종사자 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④ 기타

a.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학교기본조사』(문부과학성 및 縣主管課)에 의하며, 「사립 초·중·고등·맹아학교·농아학교·양호학교·專修학교·각종학교·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대학교」의 교원수 및 직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b. 지방의회의원공제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지방공무원급여실태』(총무성)의 특별직에 속한 직원정수 및 평균급료월액에 의하며, 「都道府縣, 市, 町村의 議員」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c.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의 「농림수산업 법인 종업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4) 조합관할건강보험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산업」 고용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5) 아동수당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국세조사보고」 및 「10월1일 현재추계인구」 (총무성)에 의거하여 「0~4세 이하의 인구」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6) 기금

① 농업종사자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농림수산성통계표」 (농림수산성) 「농업연금기금 가입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② 재해보상기금

a.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수취 × 內民 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3)의 ②지방공무원공제조합의 부담금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 3-A-1.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의 추계

#### (1) 특별회계

##### ① 후생보험 (아동수당 제외) 중 후생연금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연금수권자상황에 의거한 해당항목의 (年度末)年金額-(失權)연금액.

해당항목 : 老齡相当, 通老相当, 장해연금, 유족연금, 通算유족연금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 ② 국민연금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수취 = 지불

(수취) 연금수권자상황에 의거한 해당항목의 (연도말)연금액-(失權)연금액.

해당항목 : 老齡相当, 通老相当, 장해연금, 유족연금, 通算유족연금

##### ③ 노동보험

##### a. 勞災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 의거하여 부담금 및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보험급부지불상황에 의거, 「요양보상급부, 실업보상급부,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葬祭料, 연금 등 급부」의 합계를 구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 b. 고용보험

『고용보험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 의거하여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일반구직자급부의 지불총액, 고연령구직자급부의 지불액, 단기고용특별구직자급부의 지불액, 일일노동구직자급부의 지불총액, 취직促進급부의 지불총액을 집계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④ 선원보험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한다. 급부 중 연금급부 및 실업급부를 구하고, 연금급부 및 실업급부를 구할 수 경우에는 급부액을 전국의 비율로 안분한다.

○ 급부

(지불) 보험급부결정상황에 의하여 피보험자분 및 피부양자분 총계」를 구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2)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관한 것은 장기회계분을 구한다. 장기회계분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국가공무원급여등실태조사보고서』(人事院)에 의하여 「都道府縣別在勤직원구성비」를 구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② 지방공무원공제조합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지방공무원급여실태」(총무성)의 「보통회계관련 직원수합계」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③ 舊공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a. 일본철도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여, 「철도업 종사자 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b. 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여, 「담배제조업 종사자 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c. NTT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여, 「전신·전화업 종사자 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④ 기타

a.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b. 지방의회의원공제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c.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장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업 법인 종사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장기회계처리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3) 아동수당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수취 × 民內전환비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국세조사보고」 및 「10월1일 현재추계인구」(총무성)에 의거하여 「0~4세 이하의 인구」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4) 기금

부담 ○

① 농업종사자 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② 재해보상기금

부담 ○

a.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기금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2) - ②지방공무원공제조합 급부의 분할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b. 소방단원등공무재해보상등공제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 3-A-2. 현물사회급부의 추계

#### (1) 특별회계

##### ① 후생보험(아동수당 제외) 중 건강보험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하여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보험급부결정상황에 의거, 「피보험자분 및 피부양자분 총계」를 구한다.

(수취)  $\text{지불} \times \text{內民 전환비율}$

##### ② 선원보험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거한 급부 중 질병급부분을 구한다. 질병급부분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부액을 전국의 비율로 고르게 분배한다.

##### ○ 급부

(지불) 보험급부결정상황에 의거, 「피보험자분 및 피부양자분 총계」를 구한다.

(수취)  $\text{지불} \times \text{內民 전환비율}$

####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사업연보』(후생노동성)에 의거하여 급부를 구한다.

##### ○ 급부

(지불)  $\text{수취} \times \text{지불}$

(수취) 연도별, 都道府縣별회계처리상황-지출-에서 「보험급부비 합계」를 구한다.

#### (3) 노인보건의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급부

(지불)  $\text{전국의 당해계수} \times \text{분할비율}$

분할비율 : 「국세조사보고」 및 「10월1일 현재추계인구」(총무성)에 의거하여 「70세이상 인구」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수취)  $\text{지불} = \text{수취}$

#### (4)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관한 것은 단기회계분을 구한다. 단기회계분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국가공무원급여등실태조사보고서』(人事院)에 의거하고, 「都道府縣別在勤직원구성비」를 구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② 지방공무원공제조합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지방공무원급여 실태』(총무성)의 「보통회계관련 직원수합계」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③ 舊공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a. 일본철도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고, 「철도업 종사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b. 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고, 「담배제조업 종사자 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 c. NTT공제조합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고, 「전신·전화업 종사자 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 ④ 기타  
 a.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수취) 지불 × 內民전환비율

- b. 지방의회의원공제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급부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 農林業保險費

c.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 ㉡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급부 ㉣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단기회계분 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업 법인  
종사자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

단기회계분 비율 : 전국의 비율(공제조합 중 「기타」)을 준용한다. ㉠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 農林業保險費

(5) 조합관할건강보험 ㉥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급부 ㉧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산업」 고용자수의 對 전국비에 의한다. ㉨

(수취) 지불 × 內民 전환비율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 農林業保險費

부담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 農林業保險費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부담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課税額 × 農林業保險費 × 農林業保險費 (課税)

## 2-B. 자발적 사회부담금 및 3-B.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 ① 후생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 전환비율

분할비율 : 『사업연보』(사회보험청)에 의한 「후생연금가입자수」의 對 전국비.

(수취) = 지불

####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 전환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 ② 석탄광업연금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 전환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거하여 「광업 종사자수」의 對 전국비를 구한다.

(수취) = 지불

####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 전환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 ③ 적격퇴직연금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 전환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거하여 전체 산업베이스

고용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수취) = 지불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 ④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분할비율 : 自縣가입자수의 對전국비(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 건설업퇴직금공제사업, 청주제조업퇴직금공제사업 및 임업퇴직금공제사업의 합계)에 의한다.

(수취) = 지불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 ⑤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분할비율 : 自縣가입자수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수취) = 지불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 內民전환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⑥ 국민연금기금同연합회

전국의 당해계수를 다음에 의거하여 분할한다.

○ 부담금

(지불)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수취) = 지불

분할비율 : 縣主管업무자료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수의 對 전국비를 이용한다.

○ 급부

(지불) = 수취

(수취)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부담금 비율을 준용한다.



## 참고1. 기관별제도의 개요

### (1)-①-a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종 사업소에 고용된 고용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서, 피보험자의 업무 외의 부상, 질병, 사망, 출산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사고에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에는 정부를 보험자로 하는 정부관할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조합을 보험자로 하는 조합관할 건강보험이 있으며, 여기서의 건강보험이란 정부관할 건강보험을 일컫는다.

또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JT, JR, NTT의 공제조합에 의한 短期급부사업이 조합관할 건강보험으로 이관되었다.

### (1)-①-b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은 노동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에 관하여,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JT, JR, NTT(일부)의 공제조합에 의한 장기급부사업(연금 등의 존속분은 제외)이, 후생연금보험으로 이관되었다.

### (1)-②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종래에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등 소위 피고용자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노령, 장애, 사망 사고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③-a 勞災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업무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한 노동자 부상, 질병, 장애사망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지급하고, 재해노동자의 사회복귀 촉진, 재해노동자 및 유가족의 원조, 적절한 노동조건 확보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관할보험이다.

### (1)-③-b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가 실직된 경우 필요한 급부를 시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직을 촉진하며, 더불어 노동자의 취업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업예방, 고용실태의 시정, 고용기회 증대, 노동자 능력의 개발 향상,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④ 선원보험

선원보험은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출산, 실업, 직무상의 사유로 인한 장애, 행방불명, 사망에 대하여 보험을 지급하고, 피부양자의 발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하여 보험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피고용자보험을 적용 받지 않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소의 피고용자, 무직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하여 의료보험과 그 밖의 보험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3) 노인보건의료

노인보건의료는 국민들의 노후건강의 보호유지와 적절한 의료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년기부터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치료, 기능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의료비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제도이다.

### (4)-① 국가공무원공제조합

국가공무원등共濟法에 근거하여, 공제조합은 국가공무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 省廳마다 하나의 조합을 설치하고 있는데, 직무의 특수성, 직장환경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省廳이라도 두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공제조합은 각각 독립법인으로서 단기급부 및 각각의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사업급부에 관한 것으로는 장기급부의 재정(裁定)·지불, 적립금의 관리·운용 등을 공동으로 담당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JR, JT, NTT의 각각의 공제조합 장기급부사업은 1997년 4월 1일 시행하는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후생연금」 및 「후생연금기금동연합회」로 이관되었다.

단, 존속장기분은 종래의 조합이 존속조합으로서 사업을 하며, 업무완료 시점에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 (4)-④-a 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상호부조사업을 담당하고, 복지후생을 도모함으로써 사립학교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④-c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임업조합, 어업협동조합, 농업공제조합 등 소위 농림어업단체 관리직원의 상호부조사업을 담당하고, 복지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 (5) 조합관할건강보험

건강보험을 참조.

#### (6)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아동수당은 기금으로서 운용되고 있지 않지만 민간분과 동일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금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지불액과 동액을 사회보장급부와 사회보장부담금에 포함한다.

#### (7) 농업종사자연금기금

농업종사자연금기금제도는 중심사업인 농업종사자 연금사업 외에, 농지매매임차, 농지취득자금 융자, 연금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離農 급부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농업종사자의 노후생활안정과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8)-① 후생연금기금·동연합회

후생연금기금제도는 후생대신(大臣)의 허가를 받아 특별법인인 후생연금기금을 설치하고, 후생연금보험 중 노령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며, 기업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부가급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NTT공제조합의 장기급부사업 중 일부가 후생연금기금·동연합회로 이관되었다.

#### (8)-② 석탄광업연금기금

석탄광업연금기금은 석탄연금기금법에 의하여, 석탄광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력 확보를 도모하는 석탄대책의 연장으로서 설치된 특별 연금제도이다.

#### (8)-③ 적격퇴직연금

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국세청장관에 의하여 설치가 승인된다. 후생연금기금보다 少人數(15인 이상)라도 설치할 수 있다.

#### (8)-④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법령(후) 발문부(고)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가와 종사자 양쪽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 중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7)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사업단과 건설업·임업퇴직금 공제조합은 통합되었고, 1998년 4월 1일부터 기구가 설립되었다.

#### (8)-⑤ 중소기업종합사업단·소규모기업공제계정

중소기업종합사업단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개인사업주나 소규모 회사의 간부가 폐업·퇴직했을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시말해 「사업주의 퇴직금제도」로 볼 수 있다.

#### (8)-⑥ 국민연금기금·동연합회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령基礎연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자영업자 등의 노후 소득보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1991년에 창설하였다.

종류에는 都道府縣 단위로 설립된 지역형기금과 동종동업의 사람들에 의하여 전국단위로 설립된 직능형기금의 두 가지가 있다.

#### 4. 귀속사회부담금 및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

귀속사회부담금이란 사회부담금 중에서 고용주가 기금 등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무기금으로 행하는 부담금이다. 고용자보수 내역항목으로서 일단 고용주부문에서 가계로 지불한 후에, 가계가 무기금으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擬制한다.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란 이렇게 擬制된 무기금으로부터 가계로 지급되는 급부로서 부담금액과 同額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자보수의 「고용주 귀속사회부담금」과 同額으로서, 퇴직일시금, 공무재해보상, 勞災보험적용前의 법정보상, 비생명보험회사의 노동자재해보상책임보험, 勞災보험 부가급부, 재형(財形)장려금, 단체생명보험료 등이 있다. (추계방법은 제 1절 고용자보수의 「3.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 참조)

#### [제도부문별 추계방법]

##### ① 제도부문별 분할

##### a.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

수취 (가계)

지불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b. 귀속사회부담금

수취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지불 (가계)

##### ② 수취, 지불

급부, 부담금의 수취, 지불 모두 아래에 의거한다.

a. 가계 ... 퇴직일시금, 공무재해보상비 등의 전액을 계상한다.

b. 일반정부 ... 퇴직일시금, 공무재해보상비 중에서 일반정부 해당금액.

c. 비금융 법인기업

d. 금융기관

e.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c., d., e. ... 퇴직일시금이나 공무재해보상비 중 3공사(公社)에 대한 것을 비금

용 법인기업분의 일부로 하고, 잔액은 「사업소기업통계조사」의 고용자총수에 대한 각각의 고용자수 비율에 의하여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 분할한다.

## 5. 사회부조급부

사회부조급부는 일반정부 및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가 가계에 지불하는 부조급부 중에서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나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정부가 지불하는 것으로는 생활보호비, 교부국채(國債)의 원리상환금, 유가족연금, 연금 등을 들 수 있고, 민간 비영리단체가 지불하는 것으로는 장려금 및 교육, 연수를 위한 부조급부를 들 수 있다.

### 지불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일반정부가 지급하는 지불액은 「결산서」의 관련항목을 따르고,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분은 전국의 당해계수를 「사업소기업통계조사보고」(총무성)에 근거하여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사자수의 對전국비에 의거 분할한다.

### 수취 (가계)

수취 중에서 생활보호비는 지불액을 수취액으로 하지만, 기타 연금은 고용자보수의 縣內, 현민 베이스비율로 바꾼 수취금액을 사회부조급부 수취액으로 한다.

## 6. 기타경상이전

### (1) 비생명보험금 및 비생명보험 순보험료

#### ① 비생명보험료·보험금 관련

경상이전에 관련된 것 중 하나로,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생명보험금·비생명보험 순보험료가 있다.

화재, 지진, 수해 등 우연 발생적인 사고의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 이룸하여 비생명보험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험금(보험 위험비용)과 제도를 운용해 나가기 위한 諸경비(보험 서비스료)가 필요하다. 諸經費는 비생명보험료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이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보험금 부분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단지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소득지출계정에서의 처리

소득지출계정에서 비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보험금이 가입자 각각의 제도부문별로 수취측에 계상되고, 동시에 가입자 각 제도부문의 지불측에는 보험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中 보험위험비용(risk-cost)이 순보험료로서 계상된다.

또한, 비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부문인 금융기관은 지불측에 보험금, 수취측에 순보험료를 계상하며, 이 두 가지는 같은 금액이 된다.

#### ③ 추계방법

구체적인 縣별·보험종류별 추계에 관한 것은 생산계열의 추계방법을 참조한다. 소득지출계정에서는 비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비생명보험금과 비생명보험 순보험료를 동액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생산계열에서 추계된 縣별·보험종류별 보험금액을 각 제도부문별로 분할하여 추계한다.

##### ○ 비생명보험금

지불 = 생산계열의 추계에서 이용한 보험금 합계액을 금융기관에 계상한다.

수취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종류별 보험금을



「보험료·보험금 제도부문 분할표」를 참고하여 분할한다.

$$\text{지불액} + \text{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순보험료}$$

또한, 수취제도부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각각의 제도부문에 계상하고, 기타의 것에 대해서는 전국의 제도부문 분할비율을 준용하거나, 해당제도부문에 균등하게 계상한다.

○ 비생명보험 순보험료

지불 = 비생명보험금의 수취제도부문에 동액을 계상한다.

수취 = 비생명보험금 지불과의 동액을 금융기관에 계상한다.

또한 지진재보험, 농업공제재보험 등은 생산계열에서 동경都에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지출계정에서도 비생명보험금의 지불 및 비생명보험료의 수취도 동경都에만 계상한다.



(참고) 공공 비생명보험특별회계 보험료, 보험금

(\*) 비생명보험산출액 = (正味수입보험료-미경과보험료순증액) - (正味지불보험금+지불준비금순증액) - 적립부분에 드는 책임준비금순증액 + 재산운용이익 + 대리업무 수수료

지진재보험특별회계

正味수입보험료 = 재보험료

正味지불보험금 = 재보험금 - 잡수입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

① 농업계정

正味수입보험료=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수입 + 일반회계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등재보험료균형수입 + 전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正味지불보험금 = 농업 재보험금 - 잡수입

② 가축계정

正味수입보험료=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수입 + 일반회계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등재보험료균형수입 + 전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正味지불보험금 = 가축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잡수입

③ 과수계정

正味수입보험료=농업공제조합연합회의 수입 + 일반회계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등재보험료균형수입 + 전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과수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지불준비금 - 잡수입

④ 원예시설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농업공제조합연합회로부터의 수입 + 일반회계의 농업공제조합연합회등재보험료균형수입 + 전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미경과재보험료

正味지불보험금 = 원예시설재보험금 - 전년도이월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지불준비금

상림보험 특별회계

正味수입보험료 = 상림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 보험료 환급금 - 기타 환급금

正味지불보험금 = 보험금(상림화재보험금, 상림기상災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보험금 회수

어선재보험 및 어업공제보험 특별회계

① 어선보통보험 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재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재  
 보험금 회수

② 어선특별보험 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특별 재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재  
 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③ 어선 승무원급여보험 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급여 재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재  
 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④ 어업 공제보험 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일반회계의 어업공제보험료 균형수입 + 전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正味지불보험금 = 어업공제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무역보험특별회계

正味수입보험료 = 보험료 및 재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및 수입재보험료 -  
 차년도이월 미경과보험료 및 수입재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보험금 및 재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  
 비금 - 회수금 - 代位취득 채권수입 - 잡수입

중소기업신용보험公庫 (기계류신용보험계정, 중소기업신용보험사업)

正味수입보험료 = 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환입 - 미경과보험료 이월금

正味지불보험금 = 보험금 - 지불준비금 환입 + 지불준비금 이월금 - (회수금-회수금

의 이자) - 잡수입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재보험특별회계

① 보험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재보험료 및 보험료 + 전년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및 보험료 - 차년

도이월 미경과재보험료 및 보험료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재보험금 및 보험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

비금 - 잡수입

② 保障계정

正味수입보험료 = 부과금 + 전년도이월 미경과부과금 - 차년도이월 미경과부과금 - 환불금

正味지불보험금 = 보장금 - 전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차년도이월 지불준비금 - 잡수입

농업공제사업 (시정촌)

正味수입보험료 = 공제부금 및 교부금 + 연합회無事환불금 - 지불無事환불금 - 보험교 및 기술료 + 부과금

正味지불보험금 = 공제금 - 지불비금환입 + 지불준비이월금 - 보험금 및 진료보전금

교통재해공제사업

正味수입보험료 = 공제과금수입 - 미경과공제과금 순증액 + 이월금(보통회계의 것)

正味지불보험금 = 공제위문금

(참고)

보험료·보험금의 제도분류

|                                 |        | 보험료   |                 |          |          |                                |  | 보험금 |                 |          |          |                                |  |
|---------------------------------|--------|---|-----------------|----------|----------|--------------------------------|--|-----|-----------------|----------|----------|--------------------------------|--|
|                                 |        | 합계  | 비금융<br>법인<br>기업 | 금융<br>기관 | 일반<br>정부 | 가계<br>(개<br>인<br>기<br>업<br>포함) | 對가<br>계<br>민<br>간<br>비<br>영<br>리<br>단<br>체 | 합계  | 비금융<br>법인<br>기업 | 금융<br>기관 | 일반<br>정부 | 가계<br>(개<br>인<br>기<br>업<br>포함) | 對가<br>계<br>민<br>간<br>비<br>영<br>리<br>단<br>체 |
| 민<br>간<br>비<br>영<br>영<br>보<br>형 | 화<br>재 | 손해보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br>自<br>동<br>賠<br>償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br>責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br>해<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br>災<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br>타<br>물<br>건<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br>차<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br>타<br>차<br>輛<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br>재<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br>타<br>화<br>災<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공<br>적<br>비<br>영<br>영<br>보<br>형 | 화<br>재 | 외국보험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br>自<br>동<br>賠<br>償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br>차<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br>타<br>차<br>輛<br>손<br>상<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br>주<br>상<br>호<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br>재<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br>업<br>신<br>용<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br>업<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br>업<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br>업<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공<br>적<br>비<br>영<br>영<br>보<br>형 | 화<br>재 | 지진재보험특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공제재보험특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br>업<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br>업<br>공<br>제<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br>역<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br>소<br>기<br>업<br>신<br>용<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br>계<br>류<br>신<br>용<br>보<br>險<br>특<br>별<br>계<br>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自<br>賠<br>責<br>재<br>보<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農<br>業<br>公<br>制<br>保<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        | 漁<br>業<br>公<br>制<br>保<br>險                            | ○               | ○        | ○        | ○                              | ○  | ○   | ○               | ○        | ○        | ○                              | ○  |

- (注) 1. 손해보험회사의 화재·자동차自賠償은 차종별·물건별로 분류한다.  
 화재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제도분할비가 다르다(●표).  
 2. 화재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보험금의 제도분할비가 같다.  
 3. (-)는 분할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② 공단

| 구분 | 항목         | 일반회계 |      |        | 비고 |
|----|------------|------|------|--------|----|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
| 공단 | 석유공단(석유비축) | ○    |      |        |    |

③ 사업단

| 구분          | 항목                           | 일반회계     |          |            | 비고                |
|-------------|------------------------------|----------|----------|------------|-------------------|
|             |                              | 중앙<br>정부 | 지방<br>정부 | 사회보<br>장기금 |                   |
| 사<br>업<br>단 | (신기술개발)                      | ○        |          |            | 1989년까지           |
|             | (신기술)                        | ○        |          |            | 1989 ~ 1996년 9월까지 |
|             | 과학기술진흥                       | ○        |          |            | 1996년 10월부터       |
|             | (일본원자력선 연구개발)                | ○        |          |            | 1985년까지           |
|             | (동력로·핵연료 개발)                 | ○        |          |            | 1998년 9월까지        |
|             | 우주개발                         | ○        |          |            |                   |
|             | (공해방지)                       | ○        |          |            | 1992년까지           |
|             | 환경                           | ○        |          |            | 1993년까지           |
|             | 국제협력                         | ○        |          |            |                   |
|             |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br>금부회계처리        | ○        |          | ○          | 1998년 1월부터        |
|             | 기타                           | ○        |          |            |                   |
|             | 연금복지 (연금재원 강화사업)             |          |          | ○          |                   |
|             | 금속광업<br>(석탄광업)               | ○        |          |            | 1996년 9월까지        |
|             | 중소기업<br>(高度化 출자용자 및 지도연수 계정) | ○        |          |            |                   |
| 고용촉진        | ○                            |          |          |            |                   |
| 일본하수도       | ○                            |          |          |            |                   |

④ 공제조합·협회·진흥화·기금 등

| 구분                 | 항목                     | 일반회계     |          |            | 비고                    |
|--------------------|------------------------|----------|----------|------------|-----------------------|
|                    |                        | 중앙<br>정부 | 지방<br>정부 | 사회보장<br>기금 |                       |
| 공<br>제<br>조<br>합   | 국가공무원공제조합·동연합회 (급부회계)  |          |          | ○          | 1981년까지<br>1997년12월까지 |
|                    | 지방공무원공제조합·동연합회 (급부회계)  |          |          | ○          |                       |
|                    | (지방직원공제조합(단체공제부))      |          |          | ○          |                       |
|                    | (사람학교교직원공제조합 (급부회계))   |          |          | ○          |                       |
|                    | 지방의회의원공제회 (급부회계)       |          |          | ○          |                       |
|                    |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급부회계)    |          |          | ○          |                       |
|                    | 건강보험조합·동연합회 (급부회계)     |          |          | ○          |                       |
| 국민보험조합·동연합회 (급부회계) |                        |          | ○        |            |                       |
| 협<br>회             | 공해건강 피해보상 예방협회         | ○        |          |            | 1987년부터               |
|                    | 심신장애자 복지협회<br>(일본노동협회) | ○        |          | ○          | 1989년부터               |
| 진<br>흥<br>회        | 일본학술진흥회                | ○        |          |            |                       |
|                    | 일본예술문화진흥회 (기금계정)       | ○        |          |            |                       |
| 기<br>금             | 국제교류기금                 | ○        |          |            |                       |
|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          |          | ○          |                       |
|                    | 농업종사자 연금기금 (연금급부)      |          |          | ○          |                       |
|                    |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 보상 등 공제기금  |          |          | ○          |                       |
|                    |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           |          |          | ○          |                       |

⑤ 기타

| 구분 | 항목                                      | 일반합계     |          |            | 비고          |
|----|---|----------|----------|------------|-------------|
|    |   | 중앙<br>정부 | 지방<br>정부 | 사회보장<br>기금 |             |
|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br>(신에너지 계정·알콜제조 계정 제외) | ○        |          |            | 1981년 7월부터  |
|    | 방송대학학원                                  | ○        |          |            |             |
|    | 국민생활센터                                  | ○        |          |            |             |
|    | 국립교육회관                                  | ○        |          |            | 1997년 12월까지 |
|    | (일본사학진흥재단)                              | ○        |          |            |             |
|    | 일본노동연구기구                                | ○        |          |            | 1990년 1월부터  |
|    | 핵연료재활용 개발기구                             | ○        |          |            | 1998년 10월부터 |
|    | 공항주변 정리기구                               | ○        |          |            |             |



제도부문별, 기타경상이전 거래내역표

|              | 지 불                            | 수 취  |
|--------------|--------------------------------|--|
| 기부금          | 비금융 법인기업<br>금융기관<br>일반정부       | (비금융 법인기업)<br>(금융기관)<br>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br>(금융기관)<br>(비금융 법인기업)<br>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br>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 부담금, 신앙비     | 가계                             |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 가계간의 송금, 증여금 | 가계                             | 가계   |
| 일반정부         | 일반정부<br>비금융 법인기업<br>금융기관<br>가계 | 비금융 법인기업<br>금융기관<br>가계<br>일반정부   |
| 채권상각 징수이익    | 비금융 법인기업<br>가계                 | 금융기관   |

(注) ( )는 현재 국민경제계산에서는 추계하고 있지 않음

a.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가 수취하는 기부, 보조금, 회비 등이 있고,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가계가 지불한다.

|       |          |  |
|-------|----------|--|
| 비금융법인 | 기부금      |  |
| 금융기관  | 기부금      |  |
| 일반정부  | 국가산하기관   | 국제문화단체보조금, 사립대학경상비보조금, 사회복지사업진흥회사무비보조금 등 |
|       | 현·시정촌    | 보조비 (1部)                                 |
|       | 사회보장기금   | 신체장애자등 복지대책사업비보조금, 지방공무원공제조합보건회계로의 이월금 등 |
| 가계    | 부담금, 신앙비 |  |

수취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총무성)에 의거하여 가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종사자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지불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일반정부, 가계)

(a)비금융 법인기업, (b)금융기관, (c)일반정부, (d)가계별로 추계한다.

(a) 비금융 법인기업

기부금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세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b) 금융기관

기부금 =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에 의거하여 법인사업세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c) 일반정부

결산서 및 재정수지조사에 의거하여 구한다.

(d) 가계

○2인이상인 세대, ○독신세대별로 추계한다.

○ 2인이상 세대의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 (신앙·제사비+기타 부담비) × 세대수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 『가계조사연보』(총무성)에 의거하여 구한다.

○ 독신세대의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 (신앙·제사비+기타 부담비) × 독신자수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독신세대편)』(총무성)에 의거하여 구한다. 또한 중간년은 「2인이상 세대」의 증감률을 준용한다.

또한, 기타 부담비는 1994년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담비」에 일정비율을 곱하고 하수도사업수익자 부담금 등을 공제한다.

신앙·제사비, 기타 부담비 = (신앙비+부담비×일정비율) × 세대수

b.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이외로의 경상이전

(a) 기부금

가. 지불 (비금융 법인기업·금융기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항목 참조.

나. 수취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항목 참조.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으로의 기부금은 수취와 지불 모두 가능한 한 조회 조사 등에 의거하여 추계한다.

(b) 부담금

가. 지출 (가계)

나. 수취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항목 참조.

(c) 가계간의 송금

가. 지불 (가계)

2인이상 세대, 독신세대별로 추계한다.

또한 송금에 관한 것은 『가계조사보고』 (총무성), 세대수에 관한 것은 『노동력 조사연보』 (총무성)에 의거하여 보정한다.

· 2인이상 세대

(유학송금+기타송금) × 2인이상 세대수

유학송금, 기타송금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총무성)에 의한다.

2인이상 세대수 : 지출계열에서 추계한 것을 이용한다.

· 독신자세대

(유학송금+기타송금) × 독신자 세대수

유학송금, 기타송금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총무성)에 의한다.

독신자 세대수 : 지출계열에서 추계한 것을 이용한다.

나. 수취 (가계)

유학송금, 기타송금별로 추계한다.

또한 송금에 관한 것은 『가계조사보고』(총무성), 세대수에 관한 것은 『노동력 조사연보』(총무성)에 의거하여 보정한다.

· 유학송금

{[유학송금(2인이상 보통세대 전국평균) × 전국 2인이상 보통세대수] + [유학 송금(독신자 전국평균) × 전국 독신자세대수]} × 분할비율

유학송금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한다.

전국농가, 비농가, 독신자세대수 : 『국세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한다.

분할비율 : 『학교기본조사보고』(문부과학성)에 의거하여 「학부학생수」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기타송금

지불 = 수취로 한다.

(d) 일반정부

가. 수취

(가) 국가 산하기관

국회의원補助연금납입금, 실업퇴직수당특별회계 등의 부담금,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 고용촉진사업납부금수입, 금속광업사업단보증수입, 부담금수입 및 잡수입 등을 집계한다.

(나) 현·시정촌

보통회계의 지방양여세 중 특별톤(ton)양여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國庫지출금 중 의무교육분담금, 생활보호비 부담금, 노인의료비 부담금 등을 집계한다.

(다) 사회보장기금

일반회계의 이월, 國庫지출금 등을 집계한다.

나. 지불

(가) 국가 산하기관

외국인유학생 급여, 문화공로자 연금, 일본학사원(學士院) 회원연금, 중요무형 문화재보존 특별조성금, 전상자(戰傷者) 무임승차 등의 부담금, 국립학교특별장학 교부금 등을 집계한다.

(나) 현·시정촌

보조비등 기타中에서 노동자의 실업대책비, 교육비의 사회교육비, 보험교육비의 체육시설비 등을 집계한다.

(다) 사회보장기금

「특별회계 결산참조서」에 의거하여 후생보험 특별회계업무계정, 선원보험 특별회계, 국민연금 특별회계업무계정의 「복지연금사업단에 관한 교부금」, 노동보험 노동자재해계정의 「노동복지사업단에 관한 교부금」, 「고용촉진사업단에 관한 교부금」, 고용계정의 「고용촉진사업단에 관한 교부금」을 집계한다. 각 보험조합원 수의 對 전국비로 분할한다.

(e) 상각채권 징수이익

채권상각징수이익의 원인이 되는 상각이 끝난 채권은, 그 상태로는 시장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닌 불확정자산으로 처리되고, 상각 후에 反却된 상각채권징수이익은 기타 자산변동이 아니라 현금이전으로서 처리한다.

이 경우 상각을 이행한 시점에서 회계상 채권에 근거한 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법률적인 청구권은 있다고 해도)하기 때문에, 그 현금이전은 구(舊)채무자가 빌린 것을 일방적으로 돌려준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과 연결되지 않고 「경상이전」으로서 처리한다.

상각채권징수이익금액은 그 정도가 미미하므로 현민경제계산에서는 추계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② 벌금

a. 범위

아래와 같이, 벌금에는 통상적인 벌금 외에 연체금과 추징금 등도 포함시킨다.

- (a) 국가 산하기관
  - 징벌금 및 몰수금
  - 추징금
  - 연체금
- (b) 현, 시정촌
  - 연체금, 加算金과료

b. 추계방법

- (a) 수취 (일반정부)

- (가) 국가 산하기관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법인사업세 과세표준액의 對전국비에 의한다.

- (나) 현·시정촌

「결산서」에 의한다.

- (b) 지불 (비금융 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직접 지불부문의 계수가 명확한 것은 그에 의거하고, 수취액을 지불액으로 하며, 직접세 총액의 제도부문 분할비율을 준용하여 제도부문에 분할한다.

## 제6절 최종소비지출

지출계열에서 추계된 가계최종소비지출,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일반정부 최종소비지출이 각각의 제도부문에 계상된다.

## 제7절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

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금융부문에 속하며, 연금기금의 준비금은 기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기금에 관한 연금부담금의 지불 및 기금으로부터의 연금급부의 수취는 서로 다른 제도단위간의 이전거래가 아닌 금융거래가 된다.

그러나, 연금기금에서 지급된 연금급부를 이전(移轉)에 의한 소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계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下的 사회보장부담금 및 사회보장급부는 경상이전으로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제도의 연금부담금 및 연금급부도 경상이전으로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결정요소로서도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준비금은, 그것을 가계의 소유로 보는 사실(금융계정·대차대조표)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부담금과 연금급부의 이전(移轉)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를 저축액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가계의 소득에 연금부담금액을 더하고 연금급부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래의 식으로 정의되는 조정항목 「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을 도입하고, 이것을 가계의 수취 측과 금융기관의 지불측에 기록한다.

$$\text{연금기금 연금준비금의 변동} = \text{雇用主의 자발적 사회부담금} + \text{雇傭者의 자발적 사회부담금} - \text{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 제8절 저축

제도부문별로 수취합계로부터 지불합계를 차감하여 구한다.

## 제2장 「현민소득 및 현민가처분소득의 분배」 계상내역

| 항 목  | 추 계 방 법  |
|--|--|
| <p>1. 고용자보수</p> <p>(1) 임금·봉급</p> <p>(2) 고용주의 사회부담금</p> <p style="margin-left: 20px;">a.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p> <p style="margin-left: 20px;">b. 고용주의 귀속사회부담금</p> <p>2. 재산소득 (비 기업부문)</p> <p style="margin-left: 20px;">a. 수취</p> <p style="margin-left: 20px;">b. 지불</p> <p>(1) 일반정부</p> <p style="margin-left: 20px;">a. 수취</p> <p style="margin-left: 20px;">b. 지불</p> <p>(2) 가계</p> <p style="margin-left: 20px;">① 이자</p> <p style="margin-left: 40px;">a. 수취</p> <p style="margin-left: 40px;">b. 지불</p> <p style="margin-left: 20px;">② 배당 (수취)</p> <p style="margin-left: 20px;">③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p> <p style="margin-left: 20px;">④ 임대료 (수취)</p> <p>(3)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p> <p style="margin-left: 20px;">a. 수취</p> <p style="margin-left: 20px;">b. 지불</p> | <p>「가계」가 수취한 현민베이스 고용자보수가 내역별로 상세하게 계상된다.</p> <p>「일반정부」의 재산소득(이자·법인기업의 분배소득,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 임대료)의 수취·지불이 계상된다.</p> <p>「가계」(개인기업 제외)의 이자수취와 소비자 부채 이자의 지불, 배당·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소득·임대료의 수취가 계상된다.</p> <p>「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재산소득의 수취·지불이 계상된다.</p>                       |
| <p>3. 기업소득(법인기업의 분배소득 수취·지불후)</p> <p>(1) 민간법인기업</p> <p>(2) 공공기업</p> <p>(3) 개인기업</p> <p style="margin-left: 20px;">a. 농림수산업</p>   | <p>「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후)에, 각각 재산소득의 수취를 가산하고, 재산소득의 지불을 공제하고, 공공 기업소득을 공제하여 계상한다.</p> <p>「공공 비금융 법인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의 영업잉여(귀속이자 공제후)에 재산소득의 수취를 가산하고 재산소득의 지불을 공제하여 계상한다.</p> <p>「가계」에 포함된 개인기업 중 농림수산업의 혼합 소득에서 소비자부채이자, 기타 지불이자, 지불임대료를 공제하여 계상한다.</p> |



| 항 목   | 추 계 방 법  |
|---|--|
| b. 기타 산업<br>(비농림수산·비금융)<br><br>c. 자가주택  | <p>「가계」에 포함된 개인기업 중 기타 산업의 혼합소득에서 소비자부채이자, 기타 지불이자, 지불임대료를 공제하여 계상한다.</p> <p>「가계」에 포함되는 개인자가주택 영업 잉여에서 소비자부채이자, 기타 지불이자, 지불임대료를 공제하여 계상한다.</p> |
| 4. 현민소득<br>(요소비용표시)   | $1 + 2 + 3$  |
| 5. 생산 및 수입세 (공제)보조금<br><br>6. 현민소득<br>(시장가격표시)  | <p>4.현민소득에서 소득지출계정의 일반정부부문 수취·지불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산출한다.</p> <p>「생산 및 수입세(공제) 보조금」을 더해, 시장가격 베이스로 전환하여 시장가격표시의 현민소득을 계상한다.</p>                    |
| 7. 기타경상이전 (순)<br>(1) 비금융 법인기업 및 금융기관<br>(2) 일반정부<br>(3) 가계<br>(개인기업 포함)<br>(4)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p>제도부문별로 재산소득 이외의 이전항목 수취·지불을 계상한다.</p>   |
| 8. 현민가처분소득 (6 + 7)<br>(1) 비금융 법인기업 및 금융기관<br>(2) 일반정부<br>(3) 가계 (개인기업 포함)<br>(4)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 <p>가처분소득은 제도부문별로 수취한 소득으로부터 경상이전 지불을 공제한 것을 계상한다. 소비와 저축의 합계와 같다.</p>  |

## 참고1. 소득지출계정과 縣外계정의 관련

### (1) 개요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은 현민베이스로서 거래항목의 수취·지불이 추계된다. 그리고 각각의 차액이 縣外와의 거래로서 표현된다. 각각의 거래에 있어서 縣外로부터의 수취, 縣內로부터의 수취, 縣外로의 지불, 縣內로의 지불을 명시적으로 추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거래가 수취·지불의 차이인 net(純)로는 집계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gross-net(총계·순계)표시로 縣外계정의 수취·지불을 계상하기도 한다.

### (2) 계상 방법

#### ① 고용자보수

推計上 縣外로의 고용자보수, 縣外로부터의 고용자보수로 나누어서 추계하므로 문제가 없다.

#### ② 재산소득

縣內부문의 수취합계가 縣內부문의 지불합계보다 크면, 그 차액을 縣外부문의 지불로서 계상한다. 그 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역으로 縣外부문의 수취로서 계상한다.

#### ③ 기타경상이전

고용자보수, 영업잉여·혼합소득, 재산소득, 최종소비지출, 저축 이외의 항목합계가 縣外계정에 계상된다. 이러한 항목들도 재산소득과 동등하게 처리한다.

#### (예시) 재산소득의 수취·지불

|                      | 제도부문합계   |          | 縣外로부터의<br>재산소득 | 縣外로의<br>재산소득 |
|----------------------|----------|----------|----------------|--------------|
|                      | 수 취      | 지 불      | (수취순액)         | (지불순액)       |
| 이 자                  | 58,752.4 | 58,395.9 | 356.5          |              |
| 법인기업의 분배소득           | 1,829.1  | 1,917.8  |                | 88.7         |
|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하는<br>재산소득 | 4,840.1  | 4,840.1  |                |              |
| 임대료                  | 1,674.2  | 1,876.6  |                | 202.4        |
| 합 계                  | 67,095.8 | 67,030.4 | 356.5          | 291.1        |

《65.4》

기타경상이전의 수취·지불

재산소득의 수취·지불과 같은 방법으로 집계하여 계상한다.

|                  | 제도부문합계   |          | 縣外로부터의<br>기타경상이전 | 縣外로의<br>기타경상이전 |
|------------------|----------|----------|------------------|----------------|
|                  | 수 취      | 지 불      | (수취순액)           | (지불순액)         |
| 0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21,725.5 | 21,885.5 |                  | 160.0          |
| 0 실제사회부담금        | 16,100.0 | 16,107.7 |                  | 7.7            |
| 0 현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  | 17,885.5 | 17,820.0 | 65.5             |                |
| 0 연금기금에 의한 사회급부  | 2,201.6  | 2,170.4  | 31.2             |                |
| 0 귀속사회부담금        | 56.1     | 56.1     |                  |                |
| 0 무기금고용자 사회급부    | 56.1     | 56.1     |                  |                |
| 0 사회부조금          | 5,612.8  | 5,600.0  | 12.8             |                |
| 0 기타경상이전         | 12,043.2 | 11,968.2 | 75.0             |                |
| 합 계              |          |          | 184.5            | 167.7          |

《16.8》

{縣外계정}

경상거래

|               |          |             |           |
|---------------|----------|-------------|-----------|
| 재화서비스의 이출     | 25,627.3 | 재화서비스의 이입   | 27,628.6  |
| 縣外로부터의 고용자보수  | 226.6    | 縣外로의 고용자보수  | 168.1     |
| 縣外로부터의 재산소득   | 356.5    | 縣外로의 재산소득   | 291.1     |
| 縣外로부터의 기타경상이전 | 184.5    | 縣外로의 기타경상이전 | 167.7     |
|               |          | 현민경상잉여      | ▲ 1,860.6 |
| 경상유출(수취)      | 26,394.9 | 경상유입(지불)    | 26,394.9  |

참고2. 국가일반회계 세입세출과목 구분표 및 지방보통회계 세입세출 거래분류

(1) 국가일반회계세입과목구분표

| 부·관·항·목           | 93SNA 구분                                   |
|-------------------|--|
| 1000-00 조세 및 인지수입 |  |
| 1100-00 조세        |  |
| 1101-00 소득세       |  |
| 1101-01 원천소득세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1101-02 신고소득세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1102-00 법인세       |  |
| 1102-01 법인세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1103-00 상속세       |  |
| 1103-01 상속세       | 자본이전                                       |
| 1124-00 지가세       |  |
| 1124-01 지가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20-00 소비세       |  |
| 1120-01 소비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04-00 주세        |  |
| 1104-01 주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18-00 담배세       |  |
| 1108-01 담배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06-00 휘발유세      |  |
| 1106-01 휘발유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07-00 석유가스세     |  |
| 1107-01 석유가스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17-00 항공기연료세    |  |
| 1117-01 항공기연료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54-00 석유세       |  |
| 1154-01 석유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11-00 유가증권거래세   |  |
| 1111-01 유가증권거래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16-00 자동차重量세    |  |
| 1116-01 자동차重量세    | 1/2가계분-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br>1/2기타분- 생산 및 수입세 |
| 1114-00 관세        |  |
| 1114-01 관세        | 생산 및 수입세                                   |

| 부·관·항·목                 | 93SNA 구분        |
|-------------------------|-----------------|
| 1115-00 톤(ton)세         |                 |
| 1115-01 톤세              | 생산 및 수입세        |
| 1150-00 舊세              |                 |
| 1150-01 舊세              | 생산 및 수입세        |
| 1200-00 인지수입            |                 |
| 1200-00 인지수입            |                 |
| 1201-01 수입인지            | 생산 및 수입세        |
| 1201-02 현금수입            | 생산 및 수입세        |
| 2000-00 전매납부금           |                 |
| 2200-00 알콜전매사업특별회계납부금   |                 |
| 2201-00 알콜전매사업특별회계납부금   |                 |
| 2201-01 알콜전매사업특별회계납부금   | 생산 및 수입세        |
| 3000-00 官業益金 및 官業收入     |                 |
| 3100-00 관업익금            |                 |
| 3101-00 인쇄국특별회계수입금      |                 |
| 3101-01 인쇄국특별회계수입금      | 재산소득            |
| 3200-00 관업수입            |                 |
| 3201-00 병원수입            |                 |
| 3201-01 공내청병원수입         | 상품·비상품판매        |
| 3201-02 방위청병원수입         | 상품·비상품판매        |
| 3201-03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병원수입  | 상품·비상품판매        |
| 3201-04 국립신체장애자재활센터병원수입 | 상품·비상품판매        |
| 4000-00 정부자금정리수입        |                 |
| 4100-00 국유재산처분수입        |                 |
| 4101-00 국유재산매출수입        |                 |
| 4101-01 토지판매금           | 토지등 무형자산구입 (공제) |
| 4101-02 임목죽(立木竹)판매금     | 토지등 무형자산구입 (공제) |
| 4101-03 건물판매금           | 고정자본형성 (공제)     |
| 4101-04 공작물판매금          | 고정자본형성 (공제)     |
| 4101-05 선박판매금           | 고정자본형성 (공제)     |
| 4101-06 기계판매금           | 고정자본형성 (공제)     |
| 4101-08 귀금속 등 판매금       | 상품·비상품판매        |
| 4101-09 증권판매금           | -               |
| 4140-50 항공기판매금          | 고정자본형성 (공제)     |
| 4150-00 유상관리換수입         |                 |

| 부·관·항·목                            | 9 3 S N A 구분 |
|------------------------------------|--------------|
| 4150-01 유상관리換수입                    | -            |
| 4200-00 회수금 등 수입                   |              |
| 4201-00 특별회계정리수입                   |              |
| 4201-02 薪炭(장작, 숯)수급조절특별회계정리수입      | 자본이전         |
| 4201-03 무역특별회계정리수입                 | -            |
| 4201-04 미국 대일(對日) 원조무역등 처리특별회계정리수입 | -            |
| 4202-00 상속채권정리수입                   |              |
| 4202-01 공단상속채권정리수입                 | -            |
| 4203-00 임대금 등 회수금수입                |              |
| 4203-06 중요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상환금          | 보조금 (공제)     |
| 4203-08 소비생활협동조합자금 대부금 상환금         | -            |
| 4203-10 농지개량자금 대부금 상환금             | -            |
| 4203-12 자위대위생대비 학생 등 대여금 상환금       | -            |
| 4203-13 재해원조자금 대부금 상환금             | -            |
| 4203-14 일본정책투자은행 대부금 상환금           | -            |
| 4203-17 일본자동차터미널주식회사 기부금 상환금       | -            |
| 4205-00 사고보상비 환급금                  |              |
| 4205-01 재일합중국군 사고보상비 환급금           | 자본이전 (공제)    |
| 5000-00 잡수입                        |              |
| 5100-00 국유재산이용수입                   |              |
| 5101-00 국유재산 임대수입                  |              |
| 5101-01 토지 및 水面 임대료                | 재산소득         |
| 5101-02 건물 및 物件 임대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102-03 공무원 숙소 임대료                 | 재산소득         |
| 5102-04 기계 임대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102-00 국유재산사용수입                   |              |
| 5102-01 판권 및 특허권 등 수입              | 재산소득         |
| 5102-02 기숙사비                       | 상품·非상품판매     |
| 5102-03 입장료 등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102-04 비행장 및 항공 보안시설사용료 수입        | 재산소득         |
| 5103-00 배당금 수입                     |              |
| 5103-01 일본은행배당금 수입                 | 재산소득         |
| 5104-00 이자수입                       |              |
| 5104-01 예탁금 이자수입                   | 재산소득         |

| 부·관·항·목                         | 9 3 S N A 구분  |
|---------------------------------|---------------|
| 5104-03 延納(기한 후 납부)이자수입         | 재산소득          |
| 5104-04 소비생활협동조합자금 대부금 이자수입     | 재산소득          |
| 5200-00 납부금                     |               |
| 5201-00 일본은행납부금                 |               |
| 5201-01 일본은행납부금                 |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
| 5201-00 일본중앙경마회 납부금             |               |
| 5202-01 일본중앙경마회 납부금             | 생산 및 수입세      |
| 5203-00 잡(雜)납부금                 |               |
| 5203-02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br>납부금 | 이월수입          |
| 5203-05 가격협정 등 위반자 납부금          | 벌금 (경상이전)     |
| 5203-06 금속광업사업단 납부금             | 이월수입          |
| 5300-00 제(諸)수입                  |               |
| 5301-00 국회의원상조연금법 납부금           |               |
| 5301-01 국회의원상조연금법 납부금           | 기타경상이전        |
| 5302-00 문관(文官)연금비 특별회계 등 부담금    |               |
| 5301-02 문관(文官)연금비 특별회계 등 부담금    | 이월수입          |
| 5303-00 특별회계수입금                 |               |
| 5303-01 농업경영기반강화조치 특별회계 수입금     | 이월수입          |
| 5303-03 국영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수입금         | 이월수입          |
| 5303-07 산업투자특별회계수입금             | 재산소득          |
| 5303-08 자동차검사등록특별회계수입금          | 이월수입          |
| 5303-09 외국환전자금 특별회계 수입금         | 이월수입          |
| 5303-10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수입금         | 이월수입          |
| 5304-00 공공사업비 부담금               |               |
| 5303-01 토지개발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3-03 해안정비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3-05 북해도어항개축(改築)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3-06 농업용시설재해 복구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3-07 하천등 재해복구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08 하천등 재해관련 긴급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09 항만재해 복구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10 치산재해 복구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11 국영공원정비사업비 등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12 치산등 재해관련 긴급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13 지반붕괴 대책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부·관·항·목                         | 9 3 S N A 구분 |
|---------------------------------|--------------|
| 5304-14 직할 지방붕괴방지 시설재해복구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4-15 직할 지방붕괴대책재해관련 긴급사업비 부담금 | 자본이전         |
| 5305-00 수업료 및 입학검정료             |              |
| 5305-01 수업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305-02 입학 및 검정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305-03 강습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306-00 허가 및 수수료                |              |
| 5306-01 수수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306-02 허가료                     | 상품·非상품판매     |
| 5307-00 수탁조사시험 및 역무(役務)수입       |              |
| 5307-01 수탁조사 및 시험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07-02 수탁造修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07-03 수탁연구원비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07-04 수탁측량 등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07-05 측량표이전改埋費수입              | 자본이전         |
| 5307-06 수탁공사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08-00 징벌 및 몰수금                |              |
| 5308-01 벌금 및 과태료                | 경상이전         |
| 5308-02 과태료                     | 경상이전         |
| 5308-03 몰수금                     | 경상이전         |
| 5308-04 국제범칙자 납부금               | 경상이전         |
| 5309-00 변상 및 반납금                |              |
| 5309-01 변상 및 위약금                | 자본이전         |
| 5309-02 반납금                     | -            |
| 5310-00 교정관서작업수입                |              |
| 5310-01 형무소작업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10-02 소년원직업교육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10-03 주부직업교육원직업교육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0 물품판매수입                  |              |
| 5311-01 시험장제품 등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2 간행물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3 특수약품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4 불용(不用)물품 판매금            | 중간소비 (공제)    |
| 5311-05 반환물품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6 방위청 잔반(殘飯)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5311-07 아편 판매금                  | 상품·非상품판매     |



| 부관·항·목                                 | 93SNA 구분  |
|--|-----------|
| 5313-00 화폐회수 준비자금 수입                   |           |
| 5313-01 화폐회수 준비자금 수입                   | 이월수입      |
| 5399-00 잡수입                            |           |
| 5399-01 노동보험료 피보험자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    |
| 5399-02 실업자 퇴직수당 특별회계 등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    |
| 5399-03 수표지불 미납금 수입                    | 자본이전      |
| 5399-04 연체료                            | 벌금 (경상이전) |
| 5399-05 期滿後수입                          | 자본이전      |
| 5399-06 국립한센병치료소 부속간호부 양성소 등<br>급식비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99-07 방위청직원 등 급식비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99-09 노동보험 심사회비 특별회계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    |
| 5399-10 하천관리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    |
| 5399-11 핵연료물질 대부금(貸付金) 등의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99-1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료 수입                 | 상품·非상품판매  |
| 5399-15 학술연구장려금 수입                     | 기타경상이전    |
| 5399-53 화폐교환 차익금                       | -         |
| 5399-99 잡수입                            | 기타경상이전    |
| 5350-00 특별수입                           |           |
| 5350-01 특별수입                           | -         |
| 6000-00 公債金                            |           |
| 6100-00 공채금                            |           |
| 6101-00 공채금                            |           |
| 6101-01 공채금                            | -         |
| 7000-00 전년도 잉여금 수입                     |           |
| 7100-00 전년도 잉여금 수입                     |           |
| 7101-00 전년도 잉여금 수입                     |           |
| 7101-01 전년도 잉여금 수입                     | -         |
| 8000-00 결산정리자금 수입                      |           |
| 8100-00 결산정리자금 수입                      |           |
| 8101-00 결산정리자금 수입                      |           |
| 8101-01 결산정리자금 수입                      | -         |

(2) 국가, 일반회계 세출과목 구분표

|    | 세 출 과 목   | 9 3 S N A 구분      |
|----|---|-------------------|
| 01 | 의원세비(국회의원의 1년간의 보수)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      |
| 02 | 직원기본급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      |
| 03 | 직원 제(諸)수당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      |
| 04 | 초과근무수당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      |
| 05 | 의원비서수당(위원수당), 待命직원급여, 상근직원급여, 非상근직원수당, 통계조사원수당, ○○원수당, 잡수당, 예비대원수당, 휴직자급여, 현해보조원급여, 국제기관 등 파견직원급여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      |
|    | 주둔군 등 노무자 격차급 등 급여  | 경상이전              |
|    | 공무재해보상금, 조위금, 특별조위금   | 고용자보수(무기금고용자복지급부) |
|    | 퇴직수당, 의원비서 퇴직수당   | 고용자보수 (퇴직금)       |
|    | 정부직원 등 실업자 퇴직수당   | 사회부조급부            |
|    | 아동수당  | 고용자보수 (아동수당)      |
| 06 | 속기생도수당, 사법연수생수당, 학생수당, 정부개발원조 일본체제연구생 등 급여  | 경상이전              |
|    | 감사금   | 중간소비              |
|    | 특별급부금, 선원이직자 직업전환 등 급부금   | 사회부조급부            |
|    | 부재중인 가족 등 원조비, 引揚者급여비, 未歸還者특별조치비, 戰傷病者특별원호비   | 사회부조급부            |
|    | 피수용자작업상여금, 직업지도상여금  | 경상이전              |
|    | 아동자립지원시설입소자작업상여금  | 사회부조급부            |
|    | 외국인유학생급여, 아시아지역 파견유학생 급여  | 경상이전              |
|    | ○○상금, ○○포상, 매장문화재 보상금, 국보중요문화재 출진급여금, 협력원조자 재해급부금, 증인等 피해급부금, 범죄피해 급부금                            | 자본이전              |
|    | 피수용자 작업사상(死傷)수당, 직업지도사상수당   | 자본이전              |
| 07 | 보상비   | 자본이전              |
|    | 포상품비  | 중간소비              |

|    | 세 출 과 목   | 9 3 S N A 구분                           |
|----|---|--|
| 08 | (여행비 類) 직원여비 외  | 중간소비                                   |
| 09 | (청비(廳費) 類) 단 임금, 보험료 제외   | 중간소비                                   |
|    | 상기항목 중 임금<br>사회보험료  | 고용자보수 (임금·봉급)<br>고용자보수 (사회보장부담금)       |
|    | 토지건물임차료 중 건물임차료<br>토지임차료  | 중간소비<br>재산소득지불 (토지대)                   |
|    | 초빙외국인 체재비, ○○초빙비, 각 장소 수리, ○<br>○수리비, ○○보상비, 수색비, ○○활동비, ○○식<br>량비, 연회초대비, 특별송달료, 송환비                                     | 중간소비                                   |
|    | 식량비 (방위청)   | 중간소비                                   |
|    | 피복비 (방위청)   | 중간소비                                   |
|    | 교과서 구입비   | 기타경상이전 (지방정부로의)                        |
|    | 귀환자 원조비   | 사회부조급부                                 |
|    | 자동차중량세  | 생산 및 수입세                               |
| 10 | 원재료비  | 중간소비                                   |
| 11 | 입법사무비   | 중간소비                                   |
| 13 | 도절(渡切)비   | 중간소비                                   |
| 14 | ○○위탁비   | 중간소비                                   |
| 15 | (시설비 類), 시설(정비)비  | 총고정자본형성                                |
|    | 선박건조(구입)비, 기계 구입비, 항공기 구입비  | 총고정자본형성 (방위 除外)                        |
|    | 부동산구입(매수)비, 환지청산금   | 토지구입                                   |
| 16 |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br>국가공무원 공제조합 부담금<br>국유재산소재 시정촌 교부금<br>이 밖에도 다양한 것이 있으며, 내용에 의하여 보<br>조금, 경상이전, 자본이전, 사회부조금 등으로 구분<br>된다. | 고용자보수(사회보장·고용주부담금)<br>생산 및 수입세(對 지방정부) |
| 17 | 교제비   | 중간소비                                   |

|    | 세 출 과 목                          | 9 3 S N A 구분          |
|----|----------------------------------|-----------------------|
| 18 | (배상상환 및 환불금 類)                   | 자본이전                  |
| 19 | (보증금 類)                          | 자본이전                  |
| 20 | (보상금 類)                          | 경상이전                  |
| 21 | 국회의원상호연금, 문관등恩給費, 구(舊)군인유족 등 恩給費 | 사회부조급부                |
|    | 문화공로자 연금                         | 기타경상이전                |
|    | 아동부양수당 급부비, 특별아동부양수당 급부비         | 경상이전 (지방으로)           |
|    | 유족연금                             | 사회부조급부                |
| 23 | ○○대부금                            | 금융적인 지출               |
| 24 | ○○출자금                            | 출자·투자, 채권 및 사회지주증권 취득 |
| 25 | 공탁금 이자                           | 재산소득지불 (이자)           |

(注1) 여비, 廳費類 중에서 ○○정비비 등의 항목인 「施設施行旅費(廳費)」 등은 총고정 자본형성이 된다.

(注2) 중앙정부 지출 중에서 자본형성에 사용된 공사諸費는 당해항목 전체가 자본형성이 된다.

### (3) 지방정부(보통회계) 세입항목 거래분류

(지방재정 통계연보 1-3-3표 단체별 세입결산에서)

|    | 세 목 별 항 목         | 거 래 분 류       | 비 고 |
|----|-------------------|---------------|-----|
| 1  | 지방세               |               |     |
| 2  | 지방양여세             |               |     |
|    | 1 지방도로양여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2 특별톤(ton)양여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3 석유가스양여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4 자동차종량양여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5 항공기연료양여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3  | 이자율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4  | 지방소비세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5  | 골프장 이용세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6  | 특별지방소비세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7  | 자동차취득세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8  | 경유인수세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9  | 지방특별 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10 | 지방교부세             |               |     |
|    | 1 보통교부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2 특별교부세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11 |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12 | 분담금 및 부담금         |               |     |
|    | 1 동급 타(他)단체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시정촌으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3 시정촌 부금(賦金)      | 지방정부내 거래      |     |
|    | 4 기타              | 기타 자본이전       |     |
| 13 | 사용료               |               |     |
|    | 1 수업료             |               |     |
|    | (1) 고등학교          | 상품·비상품 판매     |     |
|    | (2) 유치원           | 상품·비상품 판매     |     |
|    | (3) 기타            | 상품·비상품 판매     |     |
|    | 2 보육소 사용료         | 상품·비상품 판매     |     |
|    | 3 공영주택 사용료        | 준법인으로부터의 인출   |     |
|    | 4 발전수리(水利) 사용료    |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5 기타              | 상품·비상품 판매     |     |
| 14 | 수수료               |               |     |
|    | 1 법령에 근거한 것       | 상품·비상품 판매     |     |
|    | 2 조례에 근거한 것       | 상품·비상품 판매     |     |
| 15 | 國庫지출금             |               |     |
|    | 1 의무교육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2 생활보호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3 아동보호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4 결핵의료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5 정신위생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6 노인보호비 부담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7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세 목 별 항 목            | 거 래 분 류                                   | 비고 |
|----|----------------------|---|----|
|    | 8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9 실업대책사업비 지출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0 위탁금               |   |    |
|    | (1) 보통건설사업           |   |    |
|    | (2) 재해복구사업           |   |    |
|    | (3) 기타               | 상품·비상품 판매                                 |    |
|    | 11 재정보금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2 산탄(産炭)지역진흥임시 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3 특정방위시설 주변정리 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4 전원입지촉진대책 등 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5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16 기타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16 | 국유제공시설 시정촌 조성 교부금    |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17 | 都道府縣 지출금             |   |    |
|    | 1 國庫재원을 위한 것         |   |    |
|    | (1) 아동보호비 부담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노인보호비 부담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3)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4)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5) 위탁금              |   |    |
|    | (가) 보통건설사업           | 지방정부내 거래                                  |    |
|    | (나) 재해복구사업           | 지방정부내 거래                                  |    |
|    | (다) 기타               | 지방정부내 거래                                  |    |
|    | (6) 전원입지촉진대책 등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7)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 등 교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8) 기타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都道府縣費만의 것          |   |    |
|    | (1) 보통건설사업비 지출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재해복구사업비 지출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3) 기타               | 지방정부내 거래                                  |    |
| 18 | 재산수입                 |   |    |
|    | 1 재산운용수입             | 注 - 재산소득 (배당)<br>→ 준법인으로부터의 인출<br>기타 재산소득 |    |
|    | 2 재산판매수입             |   |    |
|    | (1) 토지·건물            | 토지 순구입 (공제)                               |    |
|    | (2) 임목죽(立木竹)         | 토지 순구입 (공제)                               |    |
|    | (3) 기타               | 중간투입 (공제)                                 |    |
| 19 | 기부금                  |   |    |
|    | 1 시정촌으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기타로부터의 것           | 기타 자본이전                                   |    |
| 20 | 이월금                  | 금융거래                                      |    |
| 21 | 이월금                  | 금융거래                                      |    |
|    | 1 순이월금               | 금융거래                                      |    |
|    | 2 이월사업비 등 충당재원 이월금   | 금융거래                                      |    |
| 22 | 제(諸)수입               |   |    |

|    | 세 목 별 항 목                       | 거 래 분 류                            | 비고 |
|----|---------------------------------|------------------------------------|----|
|    | 1 연체금, 가산금 및 과태료                | 기타경상이전                             |    |
|    | 2 예금이자                          | 재산소득                               |    |
|    | 3 공영기업대부금 원리(元利)수입              | 이자분 - 재산소득<br>원금분 - 금융거래           |    |
|    | 4 대부금 원리수입                      |                                    |    |
|    | (1) 시정촌으로부터의 것                  | 이자분 - 재산소득<br>원금분 - 금융거래           |    |
|    | (2) 기타로부터의 것                    | 이자분 - 재산소득<br>원금분 - 금융거래           |    |
|    | 5 수탁사업수입                        |                                    |    |
|    | (1) 同級 타단체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시정촌으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3) 민간으로부터의 것                   | 상품·비상품 판매                          |    |
|    | 6 수익사업 수입                       |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                        |    |
|    | 7 이자율 정산금 수입                    | 기타경상이전                             |    |
|    | 8 구입                            |                                    |    |
|    | (1) 일부사업조합 배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 개발<br>기구로부터의 것 | 타정부로부터의 자본이전                       |    |
|    | (3) 시정촌으로부터의 것                  | 지방정부내 거래                           |    |
|    | (4) 기타                          | 상품·비상품 판매                          |    |
| 23 | 지방채(地方債)                        |                                    |    |
|    | 1 都道府縣 대부금                      | 지방정부내 거래                           |    |
|    | 2 기타                            | 금융거래                               |    |
| 24 | 특별구 재정조정 교부금                    |                                    |    |
| 25 | 특별구 재정조정 잡부금                    |                                    |    |
| 1  | 도부현세                            |                                    |    |
|    | 1 보통세                           |                                    |    |
|    | (1) 道府縣民稅                       |                                    |    |
|    | (가) 개인균등할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나) 소득할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다) 법인균등할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라) 법인세할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마) 이자비율                        | 소득에 부과되는 세                         |    |
|    | (2) 사업세                         |                                    |    |
|    | (가) 개인분                         |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나) 법인분                         |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3)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VAT)                        |    |
|    | (4) 부동산 취득세                     | 생산에 부과되는 세                         |    |
|    | (5) 도부현 담배세                     | 생산에 부과되는 세                         |    |
|    | (6) 골프장 이용세                     | 생산에 부과되는 세                         |    |
|    | (7) 특별지방 소비세                    | 생산에 부과되는 세                         |    |
|    | (8) 자동차세                        | 1/2 기타 경상세                         |    |
|    | (9) 광구세(鑛區稅)                    | 1/2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세 목 별 항 목  | 거 래 분 류   | 비고 |
|---|--|---|----|
| 2 | (10) 수렵자 등록세<br>(11) 고정자산세<br>(12) 법정외 보통세<br>2 목적세<br>(1) 자동차 취득세<br><br>(2) 경유거래세<br>(3) 입렵세(入獵稅)<br>3 구법에 의한 세  | 기타 경상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br>1/2 기타 경상세<br>1/2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br>생산물에 부과되는 세<br>기타 경상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시정촌세<br>1 보통세<br>(1) 시정촌민세<br>(가) 개인균등할<br>(나) 소득할<br>(다) 법인균등할<br>(라) 법인세할<br>(2) 고정자산세<br>(가) 순고정 자산세<br>i 토지<br>ii 가옥<br>iii 상각자산<br>(나) 교부금<br>(3) 경자동차세<br><br>(4) 시정촌 담배세<br>(5) 광산세<br>(6) 특별토지 보유세<br>(7) 법정외 보통세<br>2 목적세<br>3 구법에 의한 세 | 소득에 부과되는 세<br>소득에 부과되는 세<br>소득에 부과되는 세<br>소득에 부과되는 세<br><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1/2 기타 경상세<br>1/2 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물에 부과되는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br>생산에 부과되는 기타 세 |    |





|   | 구 분               | 거 래 분 류       | 비 고     |
|---|-------------------|---------------|---------|
|   | 2 여비              | 중간소비          |         |
|   | 3 교제비             | 중간소비          |         |
|   | 4 수용비(需用費)        | 중간소비          |         |
|   | 5 역무비             | 중간소비          |         |
|   | 6 비품구입비           | 중간소비          |         |
|   | 7 위탁료             | 중간소비          |         |
|   | 8 기타              | 중간소비          |         |
| 3 | 유지보수비             | 중간소비 (주택분 제외) |         |
| 4 | 부조비               | 사회부조금         |         |
| 5 | 보조비 등             |               |         |
|   | 1 국가에 관한 것        | 중앙정부에 대한 경상이전 |         |
|   | 2 都道府縣에 관한 것      | 회계간 중복        |         |
|   | 3 동급 타단체 부담금      | 회계간 중복        |         |
|   | 4 일부사업조합 부담금      | 회계간 중복        |         |
|   | 5 시정촌에 관한 것       | 회계간 중복        |         |
|   | 6 기타에 관한 것        | 보조금 등         |         |
| 6 | 보통건설사업비           |               |         |
|   | 1 보조사업비           |               |         |
|   | (1) 그 단체에서 이행하는 것 | 총고정자본형성       | 지방정부내거래 |
|   | (2) 보조금           | (자본이전)        |         |
|   | (가) 시정촌에 관한 것     | 기타 자본이전       |         |
|   | (나) 기타에 관한 것      |               |         |
|   | 2 단독사업비           |               |         |
|   | (1) 그 단체에서 이행하는 것 | 총고정자본형성       | 지방정부내거래 |
|   | (2) 보조금           | (자본이전)        |         |
|   | (가) 시정촌에 관한 것     | 자본이전          |         |
|   | (나) 기타에 관한 것      | 자본이전          |         |
|   | 3 국가직할사업 부담금      |               | 지방정부내거래 |
|   | 4 현영(縣營)사업 부담금    |               | 지방정부내거래 |
|   | 5 동급 타단체 시행사업 부담금 | (자본이전)        | 위탁처의 고정 |
|   | 6 수탁사업비           | (자본이전)        | 자본형성계상  |
|   | (1) 보조사업비         |               |         |
|   | (2) 단독사업비         |               |         |
| 7 | 재해복구사업비           |               |         |
|   | 1 보조사업비           |               |         |
|   | (1) 그 단체에서 이행하는 것 | 총고정자본형성       |         |
|   | (2) 보조금           | (자본이전)        |         |
|   | (가) 시정촌에 관한 것     | 자본이전          |         |
|   | (나) 기타에 관한 것      |               |         |
|   | 2 단독사업비           |               |         |
|   | (1) 그 단체에서 이행하는 것 | 총고정자본형성       |         |
|   | (2) 보조금           | (자본이전)        |         |
|   | (가) 시정촌에 관한 것     | 자본이전          |         |
|   | (나) 기타에 관한 것      | 자본이전          |         |
|   | 3 국가 직할사업 부담금     |               |         |
|   | 4 현영(縣營)사업 부담금    | (자본이전)        |         |

|    | 구분                    | 거래분류          | 비고 |
|----|-----------------------|---------------|----|
|    | 5 동급 타단체 시행사업 부담금     | (자본이전)        |    |
|    | 6 수탁사업비               |               |    |
|    | (1) 보조사업비             |               |    |
|    | (2) 단독사업비             |               |    |
| 8  | 실업대책사업비               |               |    |
|    | (1) 보조사업비             | ① 총고정자본형성     |    |
|    |                       | ② 중간소비        |    |
|    | (2) 단독사업비             | ① 총고정자본형성     |    |
|    |                       | ② 중간소비        |    |
| 9  | 공채비                   |               |    |
|    | 1 지방채 원리상환금           | 원금 금융거래       |    |
|    |                       | 이자재산소득(이자) 지불 |    |
|    | 2 일시차입금 이자            | 재산소득(이자) 지불   |    |
| 10 | 적립금                   | -             |    |
| 11 | 투자 및 출자금              | 금융거래          |    |
| 12 | 대부금                   | 금융거래          |    |
| 13 | 繰出金                   | 별지참조          |    |
| 14 | 전년도 繰上(미리 앞당겨 씀:편집자주) | -             |    |
|    | 充用金                   |               |    |

(별지)

실업대책사업비

縣所管課 등의 자료에 의하여 총고정자본형성, 중간소비로 분류한다.

지방채이자상환액

지방채이자상환액은 지방채원리상환액에서 지방채상환액을 공제하여 얻는다.

繰出金

繰出金は 현 및 시정촌이 法비적용기업 및 他회계에 출연한 출자금이다. 이 금액은 2-10-1, 2표의 「繰出金 및 이월금상환」(法비적용공영기업 등 관련)의 금액과 일치한다.

繰出金は SNA에서

- (a) 보조금
- (b) 자본이전
- (c) 채권 및 지분취득
- (d) 차관 공여

로 분할된다.

法비적용기업에 대한 것은 수취측의 표 3-1-2의 구분을 이용하여 대응시킨다. (구성비율로 분할)

| 표 3-1-2 | SNA의 구분           |
|---------|-------------------|
| 자본적 수입  |                   |
| 출자금     | 채권 및 사회지분증권의 취득순액 |
| 보조금     | 자본이전              |
| 借入金     | 차관 공여             |
| 수익적 수입  |                   |
| 보조금     | 보조금               |

法적용기업에 대한 것은 성질구분이 확실치 않으므로 표 2-10-1, 2의 지불측 구분을 이용하고, 성질구분과 대응시킨다.

이 중에서 기금에 대한 것은 지방정부 내부의 것이므로 收支에서 공제시킨다.

| 표 2-10-2          | SNA의 구분 |
|-------------------|---------|
| 사무비 繰出            | 보조금     |
| 운전자금, 건설비, 공채비재원, | 자본이전    |
| 적자보전재원, 기타 繰出     | 자본이전    |

#### 수탁사업비에 관하여

SNA에서 수탁사업비는 위탁처의 자본형성으로서 계상되는데, 수탁사업 중 동급 타단체에 관한 것은 전국베이스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현(縣)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자료에 의한다.

## 제 3 부 지 출 계 열

## 서론 지출계열의 개요

생산활동의 결과 새롭게 생성된 부가가치(총생산)는 소득으로서 분배되고 그 소득은 最終財생산물에 대한 지출로서 整合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이 縣內총지출이다.

또한, 시장가격표시의 縣內총생산에 縣外로부터의 순소득을 첨가한 금액이 현민총소득이다.

주요계열표-3 에서는 재화서비스의 처분상황을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서비스의 이출입 등 수요항목별로 파악하고, 여기에 통계상 불일치를 추가함으로써 縣內총지출을 도출하였다. 참고로, 縣外로부터의 순소득이 추가된다면 현민총소득이 표시된다.

주요계열표-3 에서는 名目値뿐만이 아니라 實質値(디플레이터 기준년은 국민경제계산에 따름)도 작성된다.

실질화는 가격변화분을 제거하고 수량베이스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기준시부터 가격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그 경우의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불변가격 표시방식)이다. 추계방법은 수요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명목치를 그에 적당한 물가지수(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화시키고, 각 항목의 실질치를 가산함으로써 실질총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총액에 관한 디플레이터는 각 항목의 총액을 실질총액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차후에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라고 부른다.

以下에서는 주요계열표-3 「縣內총지출」의 수요항목에 관하여 차례로 그 개요를 설명한다.

### 1. 민간최종소비지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가계최종소비지출과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의 합계이다.

#### (1) 가계 최종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은 거주자인 가계(개인기업을 차감한 소비주체로서의 가계)가 일정기간에 이행한 새로운 재화서비스의 취득에 대한 지출로서, 同種의 중고품과 스크랩의 순 판매액(판매액-구입액)을 공제한 것이다.

가계는 2인이상 세대 및 독신세대로 분류된다.

재화서비스 취득은 현금지출을 동반한 것 외에 농가 농작물의 자가소비 및 급여주택 차액집세, 자가주택의 귀속집세가 포함된다.

정부에서 가게로 이전한 것 중 현물급부로 간주되는 것은 가게최종소비지출이 아닌 정부최종소비지출이 된다.

가게가 구입하는 재화 중에서 가구, 기타 내구소비재는 최종소비지출이 되는데 가게의 토지조성 및 주택건설은 투자활동으로 간주하여 縣內민간총자본형성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세 및 稅外부담금은 경상이전이므로 최종소비지출에서 제외된다.

또한, 송금·증여금·노동조합비 등, 가게간 및 가게에서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로의 이전도 가게최종소비지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덧붙여, 현행 추계에서는 주로 「가계조사보고」(총무성)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고 있어 가게최종소비지출 중에는 거주자가계의 縣外에서의 소비지출이 포함되고, 비거주자가계의 縣內에서의 소비지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민 베이스의 최종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편, 거주자의 縣外에서의 소비지출은 재화서비스의 이입에 포함되고 비거주자의 縣內에서의 소비지출은 재화서비스의 이출에 포함된다.

## (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이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생산액에서 가게에 대한 非상품판매액을 공제한 것이다. 즉 가게로의 판매수입은 생산코스트(= 산출액 = 중간투입 + 고용자보수 + 고정자본감모 + 생산 및 수입세)를 커버하지 못하고, 그 차액이 자기소비로 간주되어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로서 계상된다.

## 2. 정부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시장 및 자가생산물로부터의 조달에 의한 소비합계이며, 현민경제 계산에서는 일반정부를 단순한 소비주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생산주체로도 보고 있어, 생산된 정부서비스는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가 스스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된다.

즉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중간투입 + 고용자보수 + 고정자본감모 + 생산 및 수입세)에서 타 부문에 판매한 금액(상품·비상품판매액)을 차감한 자기소비에, 의료보험 급부



나 교과서구입 등의 가계로의 이전적인 지출(현물사회급부 등)을 가산한 것이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된다.

또한 가계에 판매된 정부서비스(국공립학교의 수업료나 하수도 사용료와 같이 가계가 정부에서 직접 구입한 서비스)에 대한 것은 가계최종소비지출로서 계상된다. 가계로의 이전적 지출은 일반정부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정부최종소비지출이 된다.

### 3. 縣內총자본형성

민간법인, 공공기업,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및 가계(개인기업)의 생산자로서의 지출(구입 및 자기생산물의 사용) 중에서 중간소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품 증가로 이루어진다.

중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구별은 당해기간 내에 모두 사용되거나, 장래에 편익을 가져오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고정자산 등의 修理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정자산의 개조나 새로운 기능추가 등 耐用年數나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킨 지출(자본적 수리)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단순한 파손수리나 정상적인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경상적 수리·유지)은 중간소비로 분류된다. 또한 연구개발비 등은 기업 회계에서 자본적인 지출로 계상되었다고 해도 통상 유형자산으로서 구체화되지 않고 그 지출에 의한 장래편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간소비로서 취급된다. 광고비에 관한 것도 위와 같다.

#### (1) 총고정자본형성

민간법인, 공공기업, 일반정부,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및 가계(개인기업)가 신규로 구입한 유형·무형 자산(중고품이나 스크랩, 토지 등의 순판매액은 공제, 마진과 이전경비는 포함)으로 아래의 것들이 해당된다.

##### ① 유형고정자산

주택, 주택이외의 건물 및 구축물, 수송기구, 기계설비, 육성자산(種畜, 乳牛, 果樹等). 민간전용이 가능한 방위관련설비 등을 포함한다.

##### ② 무형고정자산

광물탐색, 컴퓨터 소프트웨어(생산자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수탁개발분).

### ③ 유형비생산자산의 개량

토지의 조성 및 개량, 광산농지등의 개발 및 확장 등.

또한 건물, 도로, 댐, 항만 등 건설물의 건설중인 공사는 건설발주자의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되는데, 重機械器具의 진행중인 공사는 그 재산생산자의 재고품 증가로 분류된다.

#### a. 민간

총고정자본형성은 다음의 기준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을 속지주의(縣內개념)에 의하여 추계한다.

- (a) 내용년수 1년 이상, 1품목 1건당 금액이 약 20만엔 이상인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한 지출.
- (b)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
- (c) 수선보수中 개량개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단순한 수선보수는 제외).
- (d) 철도용 레일 및 전선 등 교체자산의 교체분.
- (e) 건설공사(건물, 도로, 기타 건물 등)에서 건설가계정(假勘定)에 계상되어 있는 건설중인 공사(지출파악 시점은 진척베이스에 의함).
- (f) 토지개량 및 주택건축에 대한 개인(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단체 포함)의 지출.
- (g) 大동식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고정자산으로 다루어지는 大동식물의 취득은 기업설비에 계상함).
- (h) 중고자산은 他縣간 이전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구입한 縣은 취득가액을 기업설비에 계상함과 동시에 이입으로 계상하고, 매각한 縣은 기업설비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이출로 계상한다.
- (i) 2개 이상의 縣에 걸쳐 사용된 이동성 상각자산(선박, 차량, 항공기 등)은 총무성에서 시정촌에 배분하는 당해고정자산의 평가액을 조사하여 계상한다.
- (j) 주택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민간 거주전용주택, 산업병용주택의 거주용 부분, 분양주택(도시기반정비공단, 주택공급공사 등의 분양분을 포함), 법인소유社宅에 관하여 계상한다.

## b. 공공

공공 고정자본형성의 추계대상은 보통회계, 非기업회계 및 공공기업이다. 또한 공공 고정자본형성을 파악할 때에는, 공공사업관련의 조사비·계획비는 건설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의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것만을 계상하고, 工事事務費는 현장사무소의 경비만을 계상한다.

그리고 공공 고정자본형성은 진척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직할 공공사업으로서 2개縣 이상에 걸친 경우는 그 縣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계상한다. 자본보조금(주로 시설·설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자본형성을 이행하는 주체에 계상한다.

차량等 이동성고정자산은 소속된 사업소가 소재하는 縣에서 계상하는데, 수탁공사에 관한 것은 그 공사 위탁자의 고정자본형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반정부에 포함된 사업단의 고정자본형성은 기계설비의 구입等도 계상한다. 참고로 공공 고정자본형성은 재정통계에서 말하는 공공투자개념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공공 고정자본형성은 用地費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토지자산 구입은 부가가치의 창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정자본형성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공공인 것과 민간의 구별에 있어서 공공투자는 자금원천주의를 취하는데 반하여 공공 고정자본형성에서는 最終支出主體主義를 채택한다. 예를들어 지역주민에 의한 토지개발사업等에 관한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공 고정자본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재고품 증가

재고품 증가는 기업 및 일반정부가 소유하는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의 棚卸자산(賣査에 의한 재고자산: 편집자주)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물량적인 증감을 그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설비공사中인 重機械器具도 포함된다. 민간기업의 재고품 증가, 공공기업의 재고품 증가 및 일반정부의 재고품 증가로 분류된다. 또한 금융기관, 對가계민간 비영리단체는 재고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재고품 증가는 사업소주의로 계상하는데,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 이동성 상각자산의 진행중인 공사분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수주자의 재고로 계상하고, 인도 후에 재고가 감소함과 동시에 발주자의 고정자본형성에 계상한다.

또한, 재고품 증가는 재고품 평가조정(생산계열 제9장 참조)후에 평가한다.

#### 4. 재화서비스의 이출      5. (공제)재화서비스의 이입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거래이다. 이 중에는 거주자(비거주자)에 의한 縣外(縣內)에서의 재화서비스의 직접거래인 직접구입이 포함된다. 단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에 대하여 지불된 고용자보수나 재산소득 등은 縣外로부터(縣外로)의 소득이므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6. 통계상 불일치

縣內총지출과 縣內총생산은 개념상 일치해야 하지만 추계상의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계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불일치를 통계상 불일치라 하며, 계정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표된다.

현민경제계산에서는 국민경제계산과는 달리, 지출계열에 계상한다.

#### 7. 縣內총지출(시장가격)

상기1 ~ 6의 합계이다. 통계상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縣內총생산과 일치한다.

#### 8. 縣外로부터의 소득(純)

생산요소에 대하여 지불된 고용자보수나 재산소득의 수취와 지불이다. 현민소득에서 縣內순생산을 차감하여 구한다.

#### 9. 현민총소득(시장가격)

縣內총지출에 縣外로부터의 순소득을 더하여 현민베이스의 총소득을 구한다.

10. 縣內총지출(명목, 실질)의 제표형식

| 항 목  |
|--|
| 1. 민간최종소비지출<br>(1) 가계최종소비지출<br>(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br><br>2. 정부최종소비지출<br><br>3. 縣內 총자본형성<br>(1) 총고정자본형성<br>a. 민간<br>(a) 주택<br>(b) 기업설비<br>b. 공공<br>(a) 주택<br>(b) 기업설비<br>(c) 일반정부<br>(2) 재고품 증가<br>a. 민간기업<br>b. 공공(공공기업·일반정부) |
| 4. 재화·서비스의 이출입(순)·통계상 불일치<br>(1) 재화·서비스 이출<br>(2) (공제)재화·서비스 이입<br>(3) 통계상 불일치   |
| 5. 縣內총지출 (시장가격) (1 + 2 + 3 + 4)  |
| (참고) 縣外로부터의 소득(순)<br>현민총소득(시장가격)   |

## 제1장 縣內총지출

### 제1절 민간최종소비지출

#### 1. 가계최종소비지출

##### (1) 추계 개요

가계조사법과 직접추계법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① 가계조사법

세대를 a.2인이상 세대와 b.독신자세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10대 費目別로 추계한다.

a. 2세대1호당 비목별소비지출액 × 인원조정계수 × 2인이상세대의 수정률 × 세대수

b. 독신자1인당 비목별소비지출액 × 독신자세대의 수정률 × 독신자수  
단,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한다.

가계조사법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추계하는 집세 및 승용차 구입액, 의료비(자기부담분) 등의 품목 및 증여금·송금 등 소비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품목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직접추계법

가계최종소비지출의 개념범위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가계조사법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아래의 항목 a. ~ b.를 가계조사법에 의한 추계치에 더하고, 가계조사법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아래의 항목 c. ~ h.를 공제한 후, 별도 추계하여 가산한다.

|   |   |
|---|---|
| 가산항목                                      | a. 家計外消費(가계조사에서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돈·사교비)<br>b. 금융기관의 귀속서비스 중<br>(a) 생명보험의 서비스료<br>(b) 연금기금의 서비스료<br>(c) 증권수수료                     |
| 가계조사법에<br>서 공제 후,<br>별도<br>추계하여<br>더하는 항목 | c. 집세(자가주택의 귀속집세 포함)<br>d. 설비수선비<br>e. 부동산 알선비<br>f. 금융기관의 귀속서비스 중 비생명보험 서비스료<br>g. 승용차 구입액<br>h. 의료비(자기부담분)<br>l. 간호비(자기부담분) |

## (2) 가계조사법에 의한 추계

### ① 2인이상 세대

#### a. 세대수等の 추계

##### (a) 세대수

『국세조사보고』(총무성)의 「일반세대총수」 - 「일반세대 중 세대원 1인인 세대」를 5년주기의 기준시점 세대수로 하고, 중간시점은 「인구이동통계조사」(縣主管課 조사) 등에 의한 세대수로 보정·보완하여 추계한다.

##### (b) 1세대당 인원

인구 (c) / 세대수 (a)에 의함.

##### (c) 인구

총인구 - 독신자수에 의함

b. 2인이상세대당 10대비목별 소비지출액의 추계

(a) 『가계조사보고』(총무성)에서, 1세대당 비목별지출액(全世帯)을 구한다.

또한, 아래의 품목에 대해서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도로 추계하는 것 (직접추계)

집세地代, 주택관련 부담비(1995년부터), 진료비(자기부담분), 기타 의료비(자기부담분), 자동차구입액, 자동차보험료, 비생명보험료 등.

○ 소비지출로 간주하지 않는 것 (제외)

신앙·제사비, 송금, 증여금等, 기타 부담비

기타 부담비는, 1994년 이전 것은 「부담비」의 7/10을 제외.

○ 중간소비가 되는 것

설비수선비를 구성하는 諸품목의 일정비율.

설비수선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세든 사람이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집세로 포함되는 부분을 상정하여, 이를 집주인의 중간소비로 간주하고 가계최종소비지출로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세든 사람의 자기부담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로 가산한다.

(b) 현물총액을 『가계조사보고』(총무성)에 의하여 전국, 전세대의 웨이트(weight)로 비목별 배분한다.

(c) 용돈, 사교비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품목에 배분시킨다.

배분비율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해설』(총무성)의 「가계조사집계항목의 지수품목에의 분할통합」의 주석 「용돈·사교비 배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c. 人員調整係數의 추계 (補論1 참조)

『가계조사보고』의 1세대당 인원과 ① - a.에서 구한 1세대당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의 베이스에 맞추기 위하여 『가계조사보고』로 산출한 인원조정계수에 의하여 지출액을 수정한다. 이 인원조정계수는 10대 비목별로 구하고 각 비목별 지출액에 곱한다.

인원조정계수에 의해 지출액을 수정하는 것은, 세대원이 다르면 지출액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차이를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여 수정하는 것은 타당



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d. 2인이상세대의 수정률 추계

『가계조사보고』 샘플수의 과소(전국 약 8,000세대)에 의한 표본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5년에 1회 실시되는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약 53,000세대)를 기초로 하여 비목별 지출액을 수정하여 확정한다.

즉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를 공표하는 해에 『가계조사보고』 베이스의 1세대당 지출액과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베이스의 1세대당 지출액 비율을 10대 비목별로 구하여 이것을 각 연도의 수정비율로 하고, 이 비율을 c. 에서 구한 지출액에 곱해 수정지출액을 산정한다. 단, 수정률은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가계조사보고』에 대하여 세대원의 레벨을 맞추기 위하여 각각 인원조정을 이행한 금액으로 구한다.

$$\text{수정률} = ( \text{『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times \text{인원조정계수} ) / ( \text{『가계조사보고』} \times \text{인원조정계수} )$$

② 독신자 세대

a. 독신자수의 추계

『국세조사보고』(총무성)의 「일반세대中 세대원이 1인인 세대수」 + 「시설等の 인원총수」를 5년마다 기준시점 독신자 세대수로 하고, 中間年은 직선(보정·보완)추계 하거나 기준시점의 독신세대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b. 독신자수1인당 10대비목별 소비지출액의 추계

5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총무성)를 기초로 하여 중간의 年次를 『단독세대收支조사연보』(총무성)로 보정하여 추계한다.

즉,  
독신자1인당 비목별 소비지출액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의 비목별 지출액 × 『독신세대收支조사연보』의 비목별 신장률  
또한,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의 비목별 지출액에서는 상기 2인이상 세대 a. b.

와 같이 집세地代, 주택관련부담비 등을 공제하고, 현물총액, 용돈 등의 費目·품목으로의 배분도 실시한다.

c. 독신자 세대의 수정률 추계

상기 b.에서 기준시점인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의 비목별 지출액을 『독신자세대수지조사연보』의 비목별 신장률로 보정한 경우에 다음 기준시점의 비목별 지출액과는 괴리가 생긴다. 괴리를 보정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수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조사가 실시되는 5년간을 보면, 동 조사의 비목별 신장률과 『독신자세대수지조사연보』의 비목별 신장률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장률을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베이스에 맞추기 위하여 수정률을 마련한다.

수정률은 아래와 같이 10대 비목별로 계산한다.

$$\text{수정률} = (A/B)^{\frac{1}{5}}$$

A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5년간의 신장률

$$A = 5\text{년後의 비목액} / 5\text{년前의 비목액}$$

B : 『독신자세대지출조사연보』 5년간의 신장률

$$B = \text{상동}$$

그리고,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 실시후의 4년간(補外)은, 최신 보정에 사용된 수정률을 그대로 연장하여 이용한다.

(3) 직접추계법에 의한 추계

① 가산항목

a. 가계외소비

산업연관표의 가계외소비와는 다르며, 『가계조사보고』(총무성)의 남편용돈, 未獨立한 부모동거세대원의 근무처 수입에서의 지출 등 누락부분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추계한다.

$$\text{가계외소비 총액} = (\text{1세대당 소비지출액} \times \text{2인이상 세대수}) \times \text{누락률}$$

1세대당 소비지출액 : 『가계조사보고』에 의거하여 「쫄세대」의 1세대당 소비지출액을 집계한다.

2인이상 세대수 : (2) - ① - a. - (a)에 의한다.

· 누락률 : 『1989년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의 「용돈소비지출의 가계부 기입상황분석」에 의거하여 12.3%로 한다.

비목별 배분은 (2) - ① - b. - (c)와 같다.

b. 금융기관의 귀속서비스 中

(a) 생명보험의 서비스료

생명보험의 산출액을 계상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대인보험으로서 가계만이 그 서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산출액 전액이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된다.

(b) 연금기금의 서비스료

연금기금의 산출액을 계상한다. 연금기금도 생명보험과 같이 가계만이 그 서비스를 구입하므로 산출액 전액이 가계 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된다.

(c) 증권수수료

전국의 당해계수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총무성)에 의거하여 2인이상의 보통세대 전세대 1세대당 등의 저축현재잔고中 유가증권을 집계하고, 여기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의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② 가계조사법에서 공제한 후, 별도로 추계하여 가산하는 항목

c. 집세 (자가주택의 귀속집세 포함)

借家の 집세지불액과 자가주택 귀속집세의 합계이다. 자가주택의 집세단가는 借家の 평균집세 단가(床면적당)로 한다.

여기에서 구해진 집세총액이 주택임대업의 산출액이 되고, 동시에 가계최종소비지출로 계상된다.

借家の 집세지불액은 『가계조사보고』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계조사법에서 일단 공제한 후, 여기에 총집세로서 별도로 추계하여 가산한다.

『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상면적 × 단가(1㎡ 당 집세)

로 추계하는데, 중간시점은, 주택床면적은 『건축착공통계』(국토교통성), 단가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로 보정·보완한다.

(a) 基準値의 작성

○ 단가(1㎡ 당 집세)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1㎡ 당 집세를 주택종류별로 구하고, 각각의 床면적으로 가중평균을 구하여, 보증금 비율을 곱한 것(『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얻어진 집세 단가에는 입주시 지불되는 보증금은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한다.

\* 추계방법은 보론2 참조.

○ 床면적

床면적 = 거주전용 상면적 + 거주병용 床면적

거주전용 床면적 :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주택수 × 1주택당 床면적에 의하여 구한다.

거주병용 床면적 : 주택수 × 1주택당 床면적 × 거주분할비율

거주분할비율은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구한다.

지금, 거주전용과 병용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이 있을 때,

|      |              |         |
|------|--------------|---------|
|      | 1주택당 침(다다미)수 | 1주택당 ㎡수 |
| 거주전용 | a            | b       |
| 거주병용 | c            | d       |

거주전용, 병용 모두 거주용부분의 1주택당 침(다다미)수와 1주택당 ㎡수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면

$$b / a = (d \times \text{거주분할비율}) / c \text{ 가 되므로,}$$

거주병용주택 중 거주용부분의 비율은,

$$\text{거주분할비율} = (b \times c) / (a \times d) \text{ 가 된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의 居住産業병용주택 거주분 비율 (70%)을 준용한다.

(b) 중간시점의 보정 및 보완

○ 단가

(a)의 기준시점단가 × 소비자물가지수(집세(전국 및 都道府縣廳소재도시))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집세(전국 및 都道府縣廳소재도시)) × 물가지수 수정  
률

물가지수 수정률이란, 기준시점 단가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정한 경우에 다음  
기준시점 단가와 실제 기준시점 단가와와의 괴리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완의 경우 물가지수 수정률은 보정의 경우에 사용한 수정률을 그대로  
연장하여 이용한다.

○ 상면적(床面積)

(a)의 기준시점 상면적에, 『건축동태통계조사』(국토교통성)에서 얻어진 거주  
전용, 거주비용 상면적을 진척베이스로 바꾸어 가산하고, 當期の 除却 및 災害에  
의한 滅失 床면적을 공제한다.

當期 상면적 = 전기 상면적 + 거주산업비용中 거주용부분 상면적 당기증가분  
+ 거주전용상면적 당기증가분 - 멸실 상면적

거주산업비용中 거주용부분 상면적 당기증가분

: 『건축착공통계』의 1分期前의 상면적에 거주용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그리고 거주용 부분의 비율은 기준시점간을 定  
差보정, 보완한 계수를 이용한다.

거주전용상면적 당기증가분

: 『건축착공통계』의 1분기전의 상면적을 그대로 당기상면  
적의 증가분으로 한다.

멸실 상면적

: 『건축착공통계』에서 당기 除却 및 災害에 의한 거주용 부분  
의 멸실 상면적을 구한다.

d. 설비수선비

가계조사법에서 공제한 후, 借家人의 자기부담부분을 별도로 추계하여 가산한다.

『가계조사보고』의 全세대 1세대당 설비수선·유지비에서 화재보험료를 공제한 금  
액에, 자기부담율(1/3)을 곱하고, 여기에 2인이상 세대수를 곱하여 구한다.

그리고, 독신자세대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계하여 가산한다. 자기부담률은 2인  
이상 세대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e. 부동산 알선료

가계조사법에서 집세와 함께 공제하고, 별도로 추계하여 가산한다.

부동산중개업의 산출액에 산업연관표에서 얻어진 가계소비비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f. 금융기관의 귀속서비스 중 비생명보험 서비스료

생산계열에서 추계되는 손해보험 산출액에 가계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가계분비율은 분배계열의 「비생명보험금 및 비생명보험 순보험료」 추계의 제도부문 분할비율中 가계분을 이용한다.

또한, 비생명보험은 화재, 도난 등 다양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서비스로서, 가계만 한정하여 그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출액 중 가계분만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한다.

g. 승용차 구입액

가계조사법에서 일단 공제하고, 별도로 가산하여 추계한다. 이것은 『가계조사보고』 등의 샘플조사로는 승용차와 같이 단가가 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불규칙한 동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a) 신차분 :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액(縣세무과)을 기준으로 하고, 육운국(陸運局) 자료의 諸분류별 자동차 보유차량수에 의하여 가계분 비율을 구하여 추계한다. (단, 諸분류별 자동차 보유차량수는 1991년도 이후 제표되지 않기 때문에 1990년도 가계분 비율치로 고정한다).

(b) 중고차분 : 縣內가계의 중고차구입액 - 縣內가계의 중고차판매액을 구한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한다.

· 기준년 : 전국 산업연관표의 중고차 마진액 × 분할비율

분할비율 : 『자동차등록통계정보』(중고차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의하여, 都道府縣別, 차종별, 월별, 중고차 등록대수 보통승용차와 소형승용차 합계의 對 전국비로 분할한다.

· 중간년 : 추계년의 신차분 × (기준년의 중고차분 / 기준년의 신차분)

h. 의료비 (자기부담분)

가계조사법 추계시에 일단 공제한 후, 생산계열에서 추계했던 총의료비 중 자기부

담분을 계상한다.

i. 간호비 (자기부담분)

생산계열에서 추계했던 총간호비 중 자기부담분을 계상한다.

## 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생산계열의 對가계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자기소비」(産出額 - 상품·비상품판매)를 집계한다.

그리고,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전액 가계로의 사회적현물이전이 된다.

## 참고 1    가계최종소비지출의 목적별 분류

1. 식료·비알콜 음료 (ND)
  1. 1 식료
    1. 1. 1 빵 및 곡물
    1. 1. 2 육류 및 육가공품
    1. 1. 3 생선 및 수산가공품
    1. 1. 4 우유·치즈 및 달걀
    1. 1. 5 유지
    1. 1. 6 과일
    1. 1. 7 야채
    1. 1. 8 설탕, 초콜릿 및 과자
    1. 1. 9 기타 식료품
  1. 2 비알콜 음료
    1. 2. 1 커피·차·코코아
    1. 2. 2 기타 비알콜 음료
2. 알콜음료·담배 (ND)
  2. 1 알콜음료
  2. 2 담배
3. 피복·신발류
  3. 1 의복
    3. 1. 1 실 및 천 (SD)
    3. 1. 2 의복 (SD)
    3. 1. 3 기타 의복 및 의복장식품 (SD)
    3. 1. 4 클리닝 및 의복 수리비 (S)
  3. 2 신발류 (SD)
    3. 2. 1 가죽 및 기타 신발류
    3. 2. 2 신발 수리비
4. 주거·광열수도
  4. 1 주택임대료 (S)
  4. 2 수도료 및 폐기물 처리



- 4. 2. 1 수도료 (ND)
- 4. 2. 2 폐기물 처리 (S)
- 4. 3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ND)
  - 4. 3. 1 전기
  - 4. 3. 2 가스
  - 4. 3. 3 액체연료
  - 4. 3. 4 고체연료
  - 4. 3. 5 열에너지
- 5. 가구가정기구가사 서비스
  - 5. 1 가구, 장비품, 용단 및 기타 깔개 (D)
    - 5. 1. 1 가구 및 장비품
    - 5. 1. 2 용단 및 기타 깔개
  - 5. 2 가정용 섬유제품 (SD)
  - 5. 3 가정용 기구 (D)
    - 5. 3. 1 가정용 기구
    - 5. 3. 2 가정용 기구 수리비
  - 5. 4 유리기구류, 식기류 및 가정용 기구 (SD)
  - 5. 5 주택 및 정원용 공구비품 (SD)
  - 5. 6 가계 잡비
    - 5. 6. 1 가정용 소모품 (ND)
    - 5. 6. 2 가정서비스 및 가사서비스 (S)
- 6. 보건·의료
  - 6. 1 의료제품 및 기구
    - 6. 1. 1 약품 및 기타 의료제품 (ND)
    - 6. 1. 2 치료용 기구 (D)
  - 6. 2 외래·병원서비스 (S)
  - 6. 3 입원서비스 (S)
- 7. 교통
  - 7. 1 수송기구 구입비 (D)

- 7. 1. 1 자동차
- 7. 1. 2 오토바이
- 7. 1. 3 자전거 및 기타 수송기기
- 7. 2 개인수송기기비용
  - 7. 2. 1 예비부품 및 부속품 (SD)
  - 7. 2. 2 연료 및 윤활유 (ND)
  - 7. 2. 3 개인수송기구의 보수 및 수리 (SD)
  - 7. 2. 4 기타 서비스 (S)
- 7. 3 수송서비스 (S)
  - 7. 3. 1 철도여객수송
  - 7. 3. 2 도로여객수송
  - 7. 3. 3 항공여객수송
  - 7. 3. 4 외양(외해)·연해내수면 여객수송
  - 7. 3. 5 기타 수송서비스
- 8. 통신 (S)
  - 8. 1 우편
  - 8. 2 전화 및 전보
    - 8. 2. 1 국내전화전보
    - 8. 2. 2 국제전화전보
    - 8. 2. 3 기타 통신서비스
- 9. 오락·레저·문화
  - 9. 1 시청각, 사진 및 정보처리장치
    - 9. 1. 1 라디오·텔레비전 수신기 및 비디오 기기 (D)
    - 9. 1. 2 사진·촬영용 장치 및 광학기계 (D)
    - 9. 1. 3 정보처리장치 (D)
    - 9. 1. 4 기록매체 (SD)
    - 9. 1. 5 시청각, 사진 및 정보처리장치의 수리비 (SD)
  - 9. 2 악기
    - 9. 2. 1 악기 (D)
    - 9. 2. 2 악기 수리비 (SD)

- 9. 3 게임·완구·스포츠용구 및 정원, 펫용(애완용) 비용
  - 9. 3. 1 게임 및 완구 등 (SD)
  - 9. 3. 2 스포츠용구 등 (SD)
  - 9. 3. 3 정원, 초목 및 펫 관련상품·서비스 (ND)
- 9. 4 레크레이션 및 문화서비스 (S)
  - 9. 4. 1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서비스
  - 9. 4. 2 문화 서비스
  - 9. 4. 3 갬블성 게임
- 9. 5 신문, 서적 및 문방구
  - 9. 5. 1 서적 (ND)
  - 9. 5. 2 신문 및 정기간행물 (ND)
  - 9. 5. 3 기타 인쇄물 (ND)
  - 9. 5. 4 문방구 및 그림재료 (SD)
- 9. 6 패키지 여행 (S)
- 10. 교육 (S)
- 11. 외식·숙박 (S)
  - 11. 1 음료서비스
  - 11. 2 숙박시설 서비스
- 12. 기타
  - 12. 1 개인케어
    - 12. 1. 1 미용실 및 신체 손질시설 (S)
    - 12. 1. 2 개인 케어용 기구 및 제품 (SD)
  - 12. 2 신체 착용품
    - 12. 2. 1 보석 및 시계 (D)
    - 12. 2. 2 기타 신체 착용품 (SD)
  - 12. 3 보험 (S)
    - 12. 3. 1 생명보험
    - 12. 3. 2 비생명보험
  - 12. 4 금융서비스 (S)
  - 12. 5 기타 서비스 (S)

(注) 괄호 안의 기호는 (D) 내구재, (SD) 반내구재, (ND) 비내구재, (S) 서비스로 분류됨을 나타낸다.

補論1 ----- 인원조정계수에 대하여 (2인이상 세대) -----

가계조사의 1세대당 인원과 SNA베이스로 구한 세대수에 의한 1세대당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SNA베이스의 1세대당 지출액으로 보정하기 위한 비율이다.

x인세대의 지출액을  $C_x$ , x를 낀 정수를 n 및 n+1로 하고, 지출액은  $C_n, C_{n+1}$  사이에서 세대원수의 변화로부터 정차(定差)변화한다고 가정하면,

$$C_x = C_n + (C_{n+1} - C_n) (x - n) / (n + 1 - n)$$

$$= (n + 1 - x) C_n + (x - n) C_{n+1}$$

이 된다. (아래 그림 참조)

《예》

3 < x < 4 일 때,

$$C_x = (4 - x) C_3 + (x - 3) C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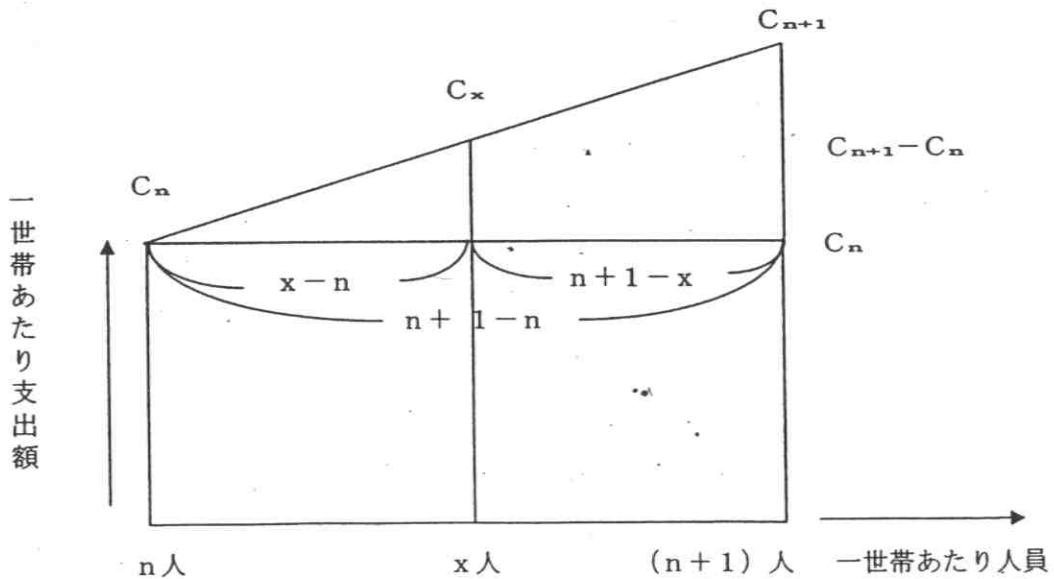
4 < x < 5 일 때,

$$C_x = (5 - x) C_4 + (x - 4) C_5$$

위 식에 의하여  $C_x$ 를 가계조사, SNA베이스로 각각 구해 ( $C_n, C_k$ ),  $C_k / C_n$ 를 인원조정계수로 한다.

세대원별 지출액 ( $C_n$ )는 가계조사의 상세결과표의 연평균 3 - 1표를 이용한다.

또한, 주거비는 집세를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 소비지출」에 관한 것은 소비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다른 부담비」 등은 4 - 1표에 의거하여 「다른 부담비」 등이 「기타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을 3 - 1표의 「기타 소비지출」에 곱하여 산출한다.



## 補論2

### ----- 단가 (1㎡당 집세) 추계방법 -----

#### 1. 주택종류별 집세(1㎡당) 추계

1첩(다다미)당 집세를 1㎡당 집세로 전환하는 전환비율을 구하고, 1주택당, 1㎡당 집세를 산출한다. 전환비율을 구하는 것은,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의 경우, 거주 다다미수와 총 상면적이 다르기 때문(다다미수에 현관, 부엌, 화장실, 욕실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공영 借家」, 「공단·공사(公社)의 借家」, 「민영 借家 (목조·설비전용)」, 「민영 借家 (목조·설비공용)」, 민영 借家 (非목조·설비전용)」, 「민영 借家 (비목조·설비공용)」 별로 1주택당, 1㎡당 집세지불액을 추계한다.

1㎡당 집세지불액 = 1다다미당 집세지불액 × 전환비율

1다다미당 집세지불액 :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에 의거하여 상기의 주택종류별로 1다다미당 집세·방세(공익비·관리비 포함)를 구한다.

단, 「민영 借家 (非목조·설비전용)」, 「민영 借家 (비목조·설비공용)」에 관한 것은 양쪽 다 「민영 借家 (비목조)」의 집세·방세를 이용한다.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의 1다다미당 집세·방세의 주택구분에서는 「민영 借家(非목조)」이 설비전용과 설비공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

전환비율 : 1주택당 다다미수 / 1주택당 총면적

<전환비율을 구하는 방법>

지금, P : 1주택당 집세지불액

X : 1주택당 다다미수

A : 1다다미당 집세지불액

Y : 1주택당 延 床면적

B : 1주택당 1㎡당 집세지불액

이라 하면,

$$P / X = A \dots\dots\dots\textcircled{1}$$

$$P / Y = B \dots\dots\dots\textcircled{2}$$

$$\textcircled{1}\text{에서 } P = A \cdot X \dots\dots\dots\textcircled{3}$$

③을 ②에 대입하면

$B = \bar{X} / \bar{Y} \times \bar{A}$ 를 구할 수 있다. ( $\bar{X} / \bar{Y}$ 가 전환비율)

## 2. 평균단가(1㎡당 집세)의 추계

1.에서 구한 주택종류별 1주택당, 1㎡당 집세지불액을 『주택·토지통계조사』의 주택 종류별 상면적으로 가중평균하고, 거기에 보증금 비율(전국비율을 준용함)을 곱한 것을 1개월당, 1주택당, 1㎡당 집세지불액 평균단가로 한다.

지금,  $B$  : 1주택당 1㎡당 집세지불액

$Y$  : 延 상면적

$R$  : 보증금 비율 이라 하면,

$$\text{집세단가} = \frac{\sum_{i=1}^6 (B_i \times Y_i \times R_i)}{\sum_{i=1}^6 Y_i} \quad \text{이다.}$$

\* 단,  $i = 1, 2, 3, 4, 5, 6$  에서

1 : 공영 借家

2 : 공단·공사(公社)의 借家

3 : 민영 借家 (목조·설비전용)

4 : 민영 借家 (목조·설비공용)

5 : 민영 借家 (非목조·설비전용)

6 : 민영 借家 (非목조·설비공용)

보증금 비율에 관한 것은 보론3을 참조할 것.

### 補論3

#### ----- 보증금비율 추계 -----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얻어진 집세단가에는 입주시 지불되는 보증금은 계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지불되는 보증금은 집세의 일부로 생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의 추계방법에 의거하여 보증금 비율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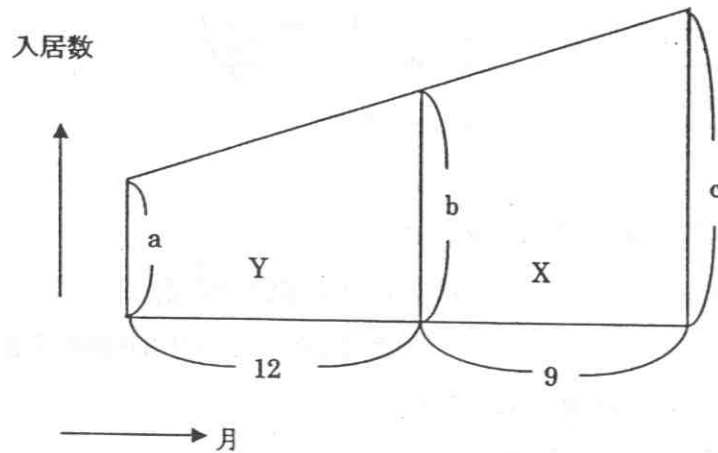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하여, 입주시기별 입주호수를 구한다.

지금, 설비전용, 설비공용별로

X : 9개월 이내에 입주한 戶數

Y : 10 ~ 21개월 이내에 입주한 호수

로 하고, 입주호수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관련식을 얻을 수 있다.



$$(a + b) \times 12/2 = Y \quad \dots\dots\dots ①$$

$$(b + c) \times 9/2 = X \quad \dots\dots\dots ②$$

$$(c - b) / 9 = (b - a) / 12 \quad \dots\dots\dots ③$$



①, ②, ③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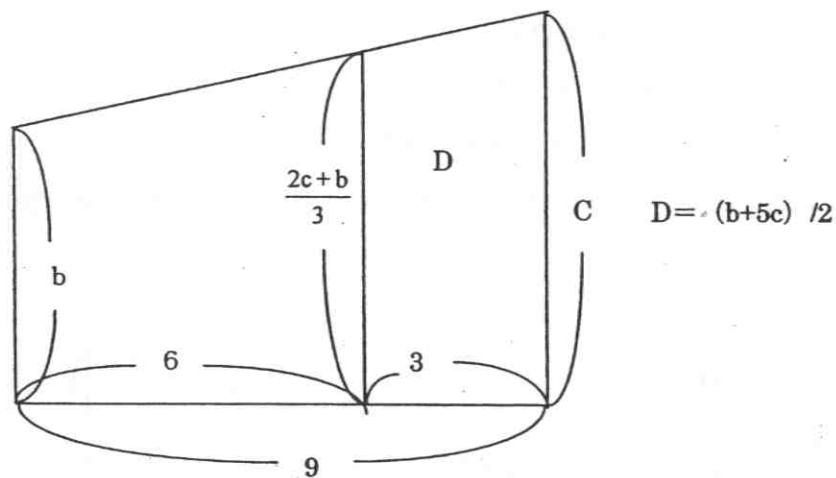
$$c = 0.1587X - 0.0357Y \quad \dots\dots\dots ④$$

$$b = 0.0635X + 0.0357Y \quad \dots\dots\dots ⑤$$

가 얻어진다.

이제, 『주택·토지통계조사』에 의하여, X 및 Y가 얻어지므로, b 및 c를 구할 수 있다.

다음에 과거 3개월(1분기)이내에 입주한 호수(D)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보증금 비율} = \frac{(\text{과거 3개월에 입주한 사람이 지불한 보증금})}{(\text{전체입주자가 과거 3개월에 지불한 집세})}$$

여기에서, D : 과거 3개월에 입주한 수

T : 전체입주자 호수

UK : 분류 불명확

R : 1개월당 집세

m : 보증금으로서 지불된 개월수 (1개월당 집세의 m배)

라 하면,

$$\text{보증금 비율} = (D \times m \times R) / (T - UK) \times 3 \times R = D / (T - UK) \times m / 3$$

이상과 같이, m을 부여하면 보증금 비율을 얻는데, 추계에서는

설비전용 보증금은 집세 2개월분 ( $m = 2$ )

설비공용 보증금은 집세 1개월분 ( $m = 1$ )

공영주택 보증금은 집세 없음 ( $m = 0$ )

이러 가정하고 보증금 비율을 구한다.

## 제2절 정부최종소비지출

생산계열의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자기소비」(산출액 - 상품비상품판매)에, 의료보험급부, 교과서 구입 등의 가계로의 이전적인 지출을 가산한다.

「가계로의 이전적인 지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학교급식비
- 의료비中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급부분
- 간호비中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급부분
- 의료비 이외의 현물급부

교과서 구입비

戰傷病者等無賃乘車船等부담금

공립중학교 기숙사거주비 보조금

아동보호조치비 보조금

위의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 학교급식비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며, 국가 등의 결산서에서 구한다.

- 학교급식용 미곡 매각인하 부담액
-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사업비 교부금
- 학교급식용 밀가루 공급사업비 교부금
- 요보호 및 준요보호 아동학생 원조 보조금(中 학교급식비)
- 특수교육취학장려비 보조금(中 학교급식비)
- 과점소비대책 특별사업비 보조금
- 학교급식용 自主流通米 조성금 등

### ○ 의료비 이외의 현물급부

교과서 구입비 등의 상기 4개 항목은 결산서에 의하여 구한다.

### ○ 의료비中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급부분

생산계열에서 추계한 총의료비 중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급부분을 계상한다.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의 급부분에는 환불에 의한 사회보장급부(고액의료·출산급부금 등)와 기타 현물사회급부(의료보험급부분, 노인보험급부분 등)양측을 모두 계상한다.

○ 간호비中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급부분

생산계열에서 추계한 총간호비 중 사회보장기금의 급부분을 계상한다.

● 개별소비와 집합소비의 분할

정부최종소비지출은 개별소비지출과 집합소비지출로 분류된다. 개별소비지출은 일반정부에서 가계로의 이전적인 지출과 교육, 보건위생 등 정부의 개별적인 서비스활동에 관한 지출을 합친 것으로서, 가계로의 사회적현물이전이 된다.

정부최종소비지출은 다음의 분할방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지출과 집합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 ① 현·시정촌의 최종소비지출은 각 縣의 목적별 세출내역(지방재정통계 2-5-1표에 상당)의 개별·집합 비율로 분할한다.

개별 : 사회복지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생활보호비, 공중위생비(기타 자연환경보호를 제외), 결핵대책비, 보건소비, 실업대책비, 노동비의 기타 중 직업훈련비, 초등학교비,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특수학교비, 유치원비, 사회교육비, 체육시설비, 학교급식비, 대학교비.

집합 : 상기 이외.

- ② 국가 산하기관, 사회보장기금 최종소비지출의 분할

기관별로 개인과 집합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지출액 합계 비율로 분할한다.

기관별 구분은 보건, 오락·문화·종교, 교육 및 사회보호에 관련된 기관은 개별로 하고, 기타 기관(일반공공서비스, 방위,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환경보호 및 주택·지역환경개선)은 집합으로 한다.

그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총액을 ①의 개별소비지출과 집합소비지출 비율을 준용하여 분할한다.

### 제3절 縣內총자본형성

추계는 소비세를 포함(총량 표시)하여 추계하고, 투자의 과대 평가분(총고정자본형성 및 재고품 증가에 관련된 소비세의 공제분)을 수정한다. (수정총량표시)

투자액 (수정총량표시) = 투자액(총량표시) - 매입관련세액 공제액

그리고, 세액 공제액은 생산계열에서 일괄적으로 「총자본형성관련 소비세」로서 난외 처리(공제)된다.

- \* 전국의 당해계수를 배분할 경우에는 당해계수가 수정총량표시 계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세액 공제액은 생산계열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 【투자액(총량표시)의 추계】

##### 1. 총고정자본형성

###### (1) 주택투자

민간분과 공공분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 ① 민간주택

주택투자총액(총량표시) - 공공주택(총량표시)에 의한다.

주택투자총액 = 전국주택투자액 × 분할비율

전국주택투자총액 : 전국의 당해계수

분할비율 : 「건설종합통계」(국토교통성)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공사액(출하액베이스)의 對전국비를 구한다.

###### ② 공공주택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직접조회의 공무원기숙사 시설비 自縣分. (방위관련지출中 「공무원기숙사 시설비」를 포함.)
- 지방정부는 「지방재정통계연보」(총무성)의 보통건설사업비 중 주택비. 공영사업회계분은 각 회계의 결산서나 직접조회로 파악한다.
- 도시기반정비공단(주택도시정비공단) 및 지방주택공급공사의 임대주택에 드는 주택건설비. 단, 분양분은 가계의 주택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제한다. 분양분의 추계는 분양주택·임대주택의 건설호수 등에 의하여 구한다. 以上에서 용지비, 보상비가 포함되었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한다. 집계단계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분류하여 추계한다.

### ③ 제도부문별 분할방법

분할지표로서 『건축착공통계』(국토교통성)의 「주택착공 : 신설주택의 자금별(상면적)」을 이용한다. 「회사」를 법인기업, 「회사가 아닌 단체」를 對가계민간 비영리단체로 간주하고 「개인」을 가계로 한다.

### ④ 회사분양주택의 공제 (가계로의 가산)

분양주택비율은 공공, 민간 모두 동일하게 간주하고 아래와 같이 구한다.

분양주택 상면적 / (회사 상면적 + 공공 상면적)

분양주택 상면적 : 『건설착공통계』(국토교통성)의 「주택착공 : 신설주택의 자금별(상면적)」에서 구한다.

회사, 공공상면적 : 『건설착공통계』의 「주택착공: 신설주택의 건축주별(상면적)」에서 「회사」, 「국가」+ 「都道府縣」+ 「市區町村」을 집계.

### ⑤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의 분할

비금융 법인기업 : 95.87%

금융기관 : 4.13%

『45년 國富調査』(내각부)의 비율로 고정하거나, 총생산비율로 분할한다.

## (2) 非주택투자

### a. 민간기업설비

현단위기업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도부문별로 고정자산의 신설액을 집계한다.

현단위기업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 (a) 농림수산업

가.농업, 나.임업, 다.수산업별로 아래와 같이 구하고, 별도 수주형 소프트웨어분을 가산한다. 아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의 당해계수를 총생산의 對전국비로 분할하여 구한다. (수정총량표시)

그리고, 전국의 당해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분의 수주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 농업

농가1호당 평균투자액 × 농가호수에 의한다.

농가1호당 평균투자액 : 『농업경영동향통계』(농림수산성)의 농가1호당 고정자산의 증가액中 건물 및 자동차의 농업용분, 농기구, 식물 및 동물에 의한다.

『농업경영동향통계』는 1992년부터 조사대상을 전농가에서 판매농가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정률을 이용하여 전농가 상당분으로 조정한다.

$$\text{조정률} = \frac{1991\text{년 전농가1호당 평균투자액}}{1991\text{년 판매농가1호당 평균투자액}}$$

추계년도 순농가1호당 평균투자액 =

$$\text{당해연도 판매농가1호당 평균투자액} \times \text{조정률}$$

농가호수 : 『농업센서스』(농림수산성)를 기준으로 하고, 『농업(구조)동태조사』(농림수산성)를 이용 보정·보완하여 추계한다.

제도부문분할은, 모두 가계(개인기업)로 한다.

#### 나. 임업

##### ○ 축요(築窯)

縣主管調査 등에 의하여

1窯(도자기 굽는 곳:편집자주)당 평균건조비 × 연간신축窯數에 의한다.

##### ○ 기타

縣主管調査 등에 의하여

종류별 기계보유대수 증가수 × 종류별 기계단가에 의한다.

그리고, 제도부문별 분할은 요업, 기타로 나누어 縣主管課자료 등에 의하여 법인, 개인(개인기업)으로 분류한다.

#### 다. 수산업

『어업경제조사보고(어가의 部기업체의 部別)』(농림수산성)의 소속 海區별, 규모별 투자액을 이용하는데 30톤 이상규모와 대형定置船은 전국일괄계수를 이용한다.

을 급한 금액'을 가산함으로써 총량표시 투자액으로 나타낸다.

제도부문별 분할은, 『공업통계조사』의 현별조사를 이용하는데 유형고정자산과 건설가계정의 합계액을 이용, 경영조직구분에 따라 분할한다.

1. 법인, 2. 조합기타법인을 법인기업으로, 3. 개인을 가계(개인기업)로 분류한다.

#### (c) 기타 산업

산업별로 전국의 당해계수(무형고정자산분 포함)를 총생산의 각 현별 對전국비로 분할한다(수정총량표시).

그리고, 제도부문분할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d)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무형고정자산분의 수주형 소프트웨어 포함)를 총생산의 각 현별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또한, 전국의 계수, 비율은 경제활동별, 제도부문별로 얻어지므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에 따라 산업구조가 다르므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조정한다.

### b. 공공기업 설비

각 기업의 결산서로부터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 (a) 잔고증감법

가. 회계장부가 간접법에 따르고 있는 경우

$(\text{기말잔고} - \text{기말총당금}) - (\text{기초잔고 또는 전기말 잔고} - \text{기초총당금 또는 전기말 총당금}) + \text{당기 감가상각비}$

나. 회계장부가 직접법에 따르고 있는 경우

$\text{기말잔고} - \text{기초잔고} + \text{당기 감가상각비}$

어느 경우라도 연도 중에 멸실된 것이 있으면 그 만큼을 가산한다.

#### (b) 직접투자액법

期中투자액 - 용지비 및 보상비에 의한다.

집계단계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나누어 추계한다.



을 곱한 금액'을 가산함으로써 총량표시 투자액으로 나타낸다.

제도부문별 분할은, 『공업통계조사』의 현별조사를 이용하는데 유형고정자산과 건설가계정의 합계액을 이용, 경영조직구분에 따라 분할한다.

1. 법인, 2. 조합기타법인을 법인기업으로, 3. 개인을 가계(개인기업)로 분류한다.

(c) 기타 산업

산업별로 전국의 당해계수(무형고정자산분 포함)를 총생산의 각 현별 對전국비로 분할한다(수정총량표시).

그리고, 제도부문분할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d)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전국의 당해계수(무형고정자산분의 수주형 소프트웨어 포함)를 총생산의 각 현별 對전국비로 분할한다.

또한, 전국의 계수, 비율은 경제활동별, 제도부문별로 얻어지므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에 따라 산업구조가 다르므로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조정한다.

b. 공공기업 설비

각 기업의 결산서로부터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a) 잔고증감법

가. 회계장부가 간접법에 따르고 있는 경우

$(\text{기말잔고} - \text{기말총당금}) - (\text{기초잔고 또는 전기말 잔고} - \text{기초총당금 또는 전기말 총당금}) + \text{당기 감가상각비}$

나. 회계장부가 직접법에 따르고 있는 경우

$\text{기말잔고} - \text{기초잔고} + \text{당기 감가상각비}$

어느 경우라도 연도 중에 멸실된 것이 있으면 그 만큼을 가산한다.

(b) 직접투자액법

期中투자액 - 용지비 및 보상비에 의한다.

집계단계에서 금융과 비금융을 나누어 추계한다.

공공기업 설비인 소프트웨어의 추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① 국민경제계산에서 산출액(총액)에 대한 소프트웨어 금액의 비율을 구한다.
- ② 그 비율을 각 縣의 산출액(총액)에 곱하여 소프트웨어 금액을 구한다.
- ③ 1995년 산업연관표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공·민간 비율을 구하여, ②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금액을 '공공'과 '민간'으로 분할한다.
- ④ ③에서 구한 '공공 소프트웨어액'에서 별도추계한 정부의 소프트웨어액을 공제하고, 공공기업의 소프트웨어액으로 한다.

### c. 일반정부

국가의 일반회계 및 비기업특별회계의 산하기관에 관한 것은 직접조회하고, 지방의 보통회계 및 비기업회계에 관한 것은 각각의 결산서에서 관련항목을 확인하고 계상한다. 용지비와 보상비는 『건설업무통계연보』(국토교통성), 총무성 '자치행정국 자료, 縣 주관과 자료에서 집계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방위관련지출中 민간전용 가능한 고정자산은 총고정자산분형성으로서 계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整備비」를 계상한다.

또한, 다음의 무형 고정자산분도 가산한다.

#### (a) 수주형 소프트웨어

생산계열에서 추계한 소프트웨어액을 가산.

#### (b) 광물탐사

광물탐사는 석유공단의 「국내석유천연가스 기초조사비」, 금속광업사업단의 「광역지질구조조사비」, 「정밀지질구조조사비」를 일반정부의 고정자산분형성으로서 계상한다. 추계는 관련기관에의 직접조회에 의한다.

또한, 탐색지점의 현에 계상한다.

## 2. 재고품 증가

재고품 평가조정前에 추계하고, 별도추계한 재고품 평가조정액을 차감하여, 재고품 평가조정後의 개념으로 추계한다.

생산계열의 제9장 「재고품 평가조정의 추계방법에 관하여」를 참조하고,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다.

## (1) 민간

縣단위기업조사를 실시한 縣에서는 在庫자산의 증감을 제도부문별(민간 비금융법인, 가계(개인기업))로 구한다.

縣단위기업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의한다.

### ① 제조업

「공업통계표」(경제생산성)에서 재고年間증감액을 구한다.

종업자 29인 이하에 대해서는 출하비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그리고, 제도부문 분할은 「공업통계조사」를 현별로 집계하고 재고年間증감액을 이용하여 경영조직구분(1.법인, 2.조합기타법인, 3.개인)으로 분할한다. 이 중에서 1.을 비금융 법인기업으로 하고, 2.와 3.을 가계(개인기업)로 분류한다.

### ② 기타 산업

산업별로 전국의 당해계수를 분할하여 구한다. 분할비율은 생산계열의 재고품 평가조정 추계방법을 참조한다.

제도부문 분할은 전국의 비율을 준용한다.

## (2) 공공(공공기업·일반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일반정부(사업단 등) 및 국가, 시정촌 공공기업의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에서, 저장품, 원재료 등 재고로 간주되는 유동자산 항목에 관하여 기업별, 항목별로 해당 기말잔고에서 전기말 잔고를 차감하여 구한다.

또한 일반정부는, 구체적으로 석유공단(비축계정), 핵연료사이클기구(舊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 우주개발사업단 등이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로서 계상한다.

## (3) 재고품 평가조정

생산계열의 재고품 평가조정 추계방법을 참조한다.

## 【세액 공제액의 추계】

### 1. 총고정자본형성

#### (1) 주택

##### ① 민간주택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국민경제계산에 준하여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공공주택

공공기업의 설비투자 항목을 참조한다.

## (2) 기업설비

### ① 민간

#### a. 농림수산업 중 농업

과세매출액 5억엔 이하의 농가가 대부분이므로 모두 간이과세선택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 기타 산업(전국의 계수를 분할하여 추계하는 산업을 제외)

투자액(총량표시) × 투자세액 공제비율

투자세액 공제비율 : 전국비율 중 「투자세액 / 총량」을 이용한다.

#### c. 전국 계수를 분할하여 추계하는 산업

투자액(수정총량표시) × 투자세액 공제비율

투자세액 공제비율 : 전국비율 중 「투자세액 / 수정총량」을 이용한다.

### ② 공공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은, 납세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특별회계분 중에서 과세업자가 투자를 실행할 때에 드는 소비세액이다.

투자액(총량표시) × 투자세액 공제비율

투자세액 공제비율 : 전국비율을 준용한다.

조회조사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 a. 과세매상비율 95%미만, 특정수입비율 5% 이하의 경우

투자액 (순액표시) × 0.05 × 과세매상비율

과세매상비율 : 과세매출액(稅제외) / (과세매출액 (稅제외) + 비과세 매출액(稅제외))에 의한다.

\* 특정수입비율은,

특정수입액 / (매상액(과세+비과세)(稅제외) + 특정수입액)을 말한다.

또한 특정수입이란 조세, 보조금, 기부금, 부당금, 회비 등 매상對價가 아닌 수입을 말한다.

#### b. 과세매상비율 95% 미만, 특정수입비율 5% 초과인 경우

(투자액(순액표시) × 0.05 × 「과세매상비율」 - 「사용용도가 투자로 한정되어 있는 특정수입」 × 5/105 × 「과세매상비율」} × 매출액(稅제외) / (「사용용도가 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수입」 + 매출액(稅제외))

c. 과세매상비율 95% 이상, 특정수입비율 5% 이하의 경우

투자액(순액표시) × 0.05

d. 과세매상비율 95% 이상, 특정수입비율 5% 초과인 경우

(투자액(순액표시) × 0.05 - 「사용용도가 투자로 한정되어 있는 특정수입」 × 5/105) × 매출액(稅제외) / (「사용용도가 투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수입」 + 매출액(稅제외))

### (3) 일반정부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2. 재고품 증가

(1) 민간, (2) 공공 모두 기업설비에 준한다.

## 제4절 재화서비스의 이출입

### 1. 추계의 기본

縣단독조사인 상품유통조사, 법인기업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추계한다.

그에 의하지 않는다면, 縣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추계한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추계방법은 아래와 같다.

移出 : 縣산업연관표에서 구한 이출률을 각 연도의 산출액에 곱하여 이출액을 구한다.

移入 : 縣산업연관표에서 구한 이입률을 각 연도의 최종수요액에 곱하여 이입액을 구한다.

그리고, 상품유통조사에 의한 이출입과 산업연관표에 의한 이출입은 補論1의 예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산업연관표의 개념에 맞추어 추계한다.

### 2. 추계방법

#### (1) 재화서비스의 이출

##### ① 산업연관표 공표년

a. 이출액, 생산액을 縣산업연관표에 의해 공급부문별로 구한다.

b. a.의 부문별 이출액, 생산액을 경제활동별(SNA베이스)로 재편성하여, 이출률(이출액 / 생산액)을 구한다.

c. b.에서 구한 경제활동별 이출률을 생산계열에서 구한 활동별 산출액에 곱하여, 경제활동별 이출액을 산출한다.

##### ② 중간년

①-b.에서 구한 이출률을 중간년에서도 준용하여, 추계연도의 활동별 산출액에 곱하여 구한다.

#### (2) 재화서비스의 이입

##### ① 산업연관표 공표년

a. 縣산업연관표에 의한 이입액, 최종수요액 합계(단, 이출액 제외)의 부문합계액

(列합계)을 구하고, 이입률(이입액/수요액)을 구한다.

- b. a.에서 구한 이입률에 제1절, 제2절, 제3절에서 구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 縣內총자본형성의 합계액을 곱하여, 이입액(SNA베이스)을 산출한다.

## ② 중간년

- ①-b.에서 구한 이입률을 중간년에서도 준용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縣內총자본형성의 합계액에 곱하여 구한다.

또한, 거주자(비거주자)의 직접구입이란, 거주자(비거주자)에 의한 縣外(縣內)에서의 재화서비스의 직접거래를 말하는데 현민경제계산에서는 재화서비스의 이출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補論1.

--- 상품유통조사와 산업연관표의 개념상의 차이에 대하여 ---

상품유통조사 등에 의한 이출입과, 산업연관표에 의한 이출입은 다음과 같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 예-1 이출입액의 불일치



縣內도매업이 縣外제조업에서 재화 80을 구입하고, 그것을 縣外로 100에 매각한 경우,

|              |    |                |
|--------------|----|----------------|
| 상품유통조사에서는    | 이출 | 100 (도매업)      |
|              | 이입 | 80 (도매업) 이 된다. |
| 한편, 산업연관표에서는 | 이출 | 20 (도매업)       |
|              | 이입 | 0              |

이 되어, 계상액이 달라진다.

### 예-2 이출입 산업의 불일치



縣內도매업이 縣內제조업에서 재화 80을 구입하고 그것을 縣外로 100에 매각하고, 縣內제조업이 재화 200을 縣外로 매각한 경우,

|           |    |                |
|-----------|----|----------------|
| 상품유통조사에서는 | 이출 | 100 (도매업)      |
|           | 이출 | 200 (제조업)이 된다. |



|              |    |           |
|--------------|----|-----------|
| 한편, 산업연관표에서는 | 이출 | 20 (도매업)  |
|              | 이출 | 280 (제조업) |

이 되어, 계상되는 산업이 다르게 된다.

## 제5절 통계상 불일치

縣內총생산 - (민간최종소비지출+縣內총자본형성+재화서비스의 이출-재화서비스의 이입)에 의한다.

## 제6절 縣外로부터의 소득(순)

현민소득 - 縣內소득(요소비용표시의 현민순생산-縣內순생산)에 의한다.

## 제2장 실질縣內총지출

### 【추계개요】

縣內총지출의 구성항목 각각에 대응하는 디플레이터로 실질화시킨다. 실질縣內총지출은 각 구성항목의 실질치 합계로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디플레이터의 기준년은 「국민경제계산」의 기준년에 일치시킨다.

### 제1절 민간최종소비지출

#### 1. 가계최종소비지출

『도시소비자물가지수(縣廳소재도시분)』의 ‘10대 비목별’을 기초로 하여 실질화하며, 縣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 2. 對가계민간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전국 당해항목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치를 구한다.

### 제2절 일반정부 최종소비지출

전국 당해항목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시킨다.

### 제3절 縣內총자본형성

#### 1. 총고정자본형성

민간주택, 민간기업설비, 공공주택·공공기업설비, 일반정부로 나누어 전국 당해항목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시킨다.

#### 2. 재고품 증가

재고품 평가조정의 추계과정에서 얻어진 금액을 계상한다.

전국 당해계수를 분할하여 재고품 평가조정을 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추계한다.

당기말 재고잔고(명목치)를 당기의 전국 재고잔고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당기말 실질 재고잔고를 구한다. 그 후 전기말을 당기의 기초로 가정하고, 前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말

의 실질 재고잔고를 구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얻어진 당기말과 전기말(당기의 기초)의 실질재고잔고의 차이가 당기의 실질재고품 증가가 된다.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경제계산의 플로·디플레이터(各항목 재고품증가 / 실질재고품 증가에 의하여 구함)로 실질화시킨다.

## 제4절 재화서비스의 이출입

### 1. 이출

품목별 이출액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매물가지수를 종합하고, 각 항목 이출액을 실질화시킨다. 수출에는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한다.

### 2. 이입

품목별 이입액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매물가지수를 종합하고, 각 항목 이입액을 실질화시킨다. 수입에는 수입물가지수를 이용한다.

## 제5절 통계상 불일치

縣內총지출(통계상 불일치를 제외)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실질화시킨다.

## 제6절 縣外로부터의 순소득

縣內총지출(통계상 불일치를 포함)의 임플리시트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실질화시킨다.